



#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91호 2026. 3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차례

## 특집 부여에서 삼국으로-부여인의 유산과 그 계승

장병진 ▮ 고구려의 ‘부여’ 계승과 그 실제 7

이장웅 ▮ 백제 부여씨 왕실의 기원과 부여계 이주민 55

이종록 ▮ 5~6세기 물길의 부여 진출과 두막루 101

이승호 ▮ 고려·조선 시기 부여와 부여사 인식 147

## 논문

오대양 ▮ 길림 서남부와 요동 북부 접경권 초기 철기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그 의미 195

오시진 ▮ 조약과 제국주의-19세기 말 국제법 체계의 이론적 한계와 모순을 중심으로 243

조대호 ▮ 민국 초, 강항호와 중국사회당 연구 305

## 서평

박찬근 ▮ 15~16세기, 동전이 약동하는 동중국해-大田由紀夫, 『錢躍る東シナ海: 貨幣と贅沢の一五〜一六世紀』(講談社, 2021) 341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6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Contents

## Special Issue Study of the Yongdusan Balhae Royal Tomb Complex

Jang Byungjin ■ The Buyeo Succession of Goguryeo and Its Historical Reality 7

Lee Jangwoong ■ Origins of Buyeo Clan Royal Family in Baekje and the Immigrants of the Buyeo Family Line 55

Lee Jongrok ■ The Wuji's Advance into Buyeo and Dumolu in the Fifth and Sixth Centuries 101

Lee Seungho ■ Perceptions of Buyeo and Its History in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147

## Articles

Oh Daeyang ■ Regional Patterns and Its Implications in the Early Iron Age of the Southwestern Jilin-Northern Liaodong Borderland 195

Oh Sijin ■ Treaties and Imperialism: Focusing on the Theoretical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of the Late Nineteenth-Century International Legal System 243

Cho Daeho ■ A Study on Jiang Kanghu(江亢虎) and the Chinese Socialist Party(中國社會黨) in Early Republican China(中華民國) 305

## Book Review

Park Changuen ■ 15th-16th Centuries, Coins Leaping in the East China Sea 34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특집

부여에서 삼국으로-부여인의 유산과 그 계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고구려의 ‘부여’ 계승과 그 실체

장병진 | 경상국립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 I. 머리말
- II. 고구려의 ‘부여 출자’와 부여 관계의 복합성
- III. 고구려의 부여 통합과 부여 유산의 계승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고구려의 기원과 국가 성립 과정은 일찍부터 부여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었다. 계통을 막론하고 고구려 건국설화는 일관되게 시조 주몽이 부여에서 왔음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국 사서에서도 고구려를 “부여별종(夫餘別種)”으로 표현한다.<sup>1</sup> 이러한 전승과 기록은 고구려가 스스로를 부여와 연관된 존재로 표상했거나, 최소한 주변 사회가 고구려를 부여와 긴밀히 연결된 집단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른바 ‘고구려의 부여 출자’는 근대 역사학의 성립 이후 오랫동안 신화적 장치나 정치적 수사에 기댄 표방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 전승이 고구려 국가 성립의 실제적 맥락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고구려 발흥지 일대의 토착 세력과 부여 사이에 형성되었을 정치적 관계, 그리고 양자의 장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축·변형된 고구려 국가 체제의 특징은 충분히 분석되지 못했다.

특히 고구려의 ‘부여 출자’를 단순한 신화적 허구나 후대의 윤색, 혹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표상으로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고구려 초기의 권력 재편과 지배 질서 형성 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한 기억과 인식의 층위를 반영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건국설화에 포함된 초자연적 요소나 전승 과정에서 가해진 윤색을 전제하면서도, 그 서사 구조와 핵심 모티프가 형성·유통된 사회적 조건과 정치적 배경을 함께 살

---

\* 투고: 2026년 1월 14일, 심사 완료: 2026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26년 2월 13일

\*\* 이 연구는 2025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신진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GNU-NFRG-0067.

1 『三國志』 권30, 오환선비동이전, 고구려,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後漢書』 권85,동이열전, 고구려, “東夷相傳以爲夫餘別種”

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부여’가 고구려 초기 지배집단의 정체성 구성과 대외 관계 인식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구려 건국설화의 전승 양상과 그 안에서 ‘부여’가 표상되는 방식을 검토하고, 계루부(桂婁部) 왕실의 부여 기원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 고구려 초기 부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국내외 사서에 등장하는 ‘복수의 부여’를 역사적 실체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북부여(北夫餘)·동부여(東夫餘) 등의 명칭이 등장하는 맥락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특정 시기 ‘부여’라는 명칭이 단일한 정치체를 일관되게 가리킨 것이 아니라, 분화된 정치 세력과 그 거점의 변동을 반영해 서로 다른 대상들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동북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고구려의 대외 팽창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북부여와 동부여가 고구려의 지배 질서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여의 성쇠 과정을 고구려와의 관계를 매개로 재구성하고, 부여가 단일한 정치체로서 일시에 소멸한 것이 아니라 분화와 재편, 통합을 거치며 고구려 국가 체제 속으로 흡수되어 갔음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고구려 국가 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부여계 주민 집단이 차지한 위상과 역할, 그리고 부여의 정치·제도적 전통이 고구려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규명하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삼는다.<sup>2</sup>

---

2 필자는 그간 몇 편의 글을 통해 고구려의 부여 계승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고구려의 ‘부여’ 계승과 그 실체”를 구명한다는 논지에 맞춰, 이전의 단편적인 논의들을 유기적으로 종합하고 재구성한 결과물임을 밝혀둔다. 이 글의 토대가 된 기발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장병진, 2016, 「고구려 출자 의식의 변화와 『集安高句麗碑』의 건국설화」, 『人文科學』 106,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b,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a, 「고구려본기의 부여 관계 기사와 ‘동부여’의 실체」, 『사학연구』 136.



## II. 고구려의 ‘부여 출자’와 부여 관계의 복잡성

### 1. 고구려 건국설화의 ‘부여 출자’

『삼국지』 동이전에는 ‘고구려’가 본래 5족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다.<sup>3</sup> 그런데 초기 고구려를 구성한 5족 가운데 4개 집단이 공통으로 ‘~노(奴)’, 혹은 ‘~나(那)’의 명칭을 갖는 것에 비해, 계루부만 ‘계루(桂婁)’라는 이질적 명칭을 띠고 있다는 점은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명칭의 차이는 계루부가 고구려 발흥 지역의 토착 집단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집단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sup>4</sup> 계루부의 기원을 부여계 집단과 연결시키려는 해석으로 나아갔다. 실제로 고구려 건국설화 전반에서 시조 주몽(추모)이 ‘부여’에서 나왔다는 서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중국 사서 역시 고구려를 ‘부여별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건국설화의 서사를 통해 계루부의 기원을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화적 모티프가 강하게 결합된 데다, 전승 과정에서 수식과 윤색이 가해져 자료마다 세부 내용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채록 시기와 작성 주체에 따라 서사 구조와 인물 배치가 달라진다는 점도 해석상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건국설화 자료는 5세기를 전후해 제작된 금석문이다. 광개토왕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안고구려비」와 414년 장수왕대에 건립된 「광개토왕릉비」에는 건국설화의 핵심 요소가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왕실이 공인한 건국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 외에도 5세기 중엽의 「모두루묘지」와 멸망 후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인 「고자묘지명」, 「천남산묘지명」 등에서도 건국설화의 요소가 확인된다.

3 『三國志』 권30, 오환선비동이전, 고구려, “本有五族 有涓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4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54~55쪽.

중국 사서에 전하는 고구려 건국설화 가운데는 『위서』 고구려전의 기록이 중요하다. 이 기록은 551~554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중국 사서의 건국설화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며, 내용 또한 가장 상세하다.<sup>5</sup> 『위서』의 고구려전은 435년 평양을 방문한 북위 사신 이오(李敖)의 견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up>6</sup> 이후 『주서』, 『수서』, 『북사』 등 중국 사서의 고구려 건국설화는 대체로 이 기록을 저본으로 삼아 서술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려시대에 편찬된 국내 문헌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동명왕편」(『동국이상국집』) 등에도 고구려 건국설화가 전해진다. 이들 자료 역시 기본적으로 「광개토왕릉비」나 중국 사서와 비슷한 서사 구조를 띠지만, 세부 요소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해모수와 유화의 사통(私通)이나 동부여 금와왕의 이야기 등은 「광개토왕릉비」나 중국 사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소이며, 주몽과 동행한 인물의 정보도 『위서』와 『삼국사기』가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착오라기보다, 전승의 계통이 서로 달랐던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국내 문헌에서 시조 주몽의 왕호를 ‘동명(東明)’으로 전하는 사실이다. 중국 사서에서 동명은 예외 없이 부여의 시조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며, 고구려의 시조 주몽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부여 시조 동명에 관한 설화는 이미 1세기 중엽 왕충(王充)의 『논형』에

5 『魏書』 권100, 열전, 고구려, “高句麗者 出於夫餘 自言先祖朱蒙 朱蒙母河伯女 爲夫餘王閉於室中 爲日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 既有孕 生一卵 大如五升 夫餘王棄之與犬 犬不食 棄之與豕 豕又不食 棄之於路 牛馬避之 後棄之野 衆鳥以毛茹之 夫餘王割剖之 不能破 遂還其母 其母以物裹之 置於暖處 有一男破殼而出 及其長也 字之曰朱蒙 其俗言 朱蒙者 善射也 … 夫餘之臣又謀殺之 朱蒙母陰知 告朱蒙曰 國將害汝 以汝才略 宜遠適四方 朱蒙乃與鳥引鳥遶等二人 棄夫餘 東南走 中道遇一大水 欲濟無梁 夫餘人追之甚急 朱蒙告水曰 我是日子 河伯外孫 今日逃走 追兵垂及 如何得濟 於是魚鼈並浮 爲之成橋 朱蒙得渡 魚鼈乃解 追騎不得渡 朱蒙遂至普述水 遇見三人 其一人著麻衣 一人著納衣 一人著水藻衣 與朱蒙至紇升骨城 遂居焉 號曰高句麗 因以爲氏焉.”

6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340쪽; 임기환, 1998, 「4~6세기 중국사서에 나타난 한국고대사상」, 『韓國古代史研究』 14, 171쪽.

기록되어 있는데,<sup>7</sup> 그 내용이 주몽의 고구려 건국설화와 상당히 유사하다.

『논형』에 수록된 동명 설화와 『위서』 고구려전의 주몽 설화를 비교해보면, 하백과 난생의 요소, 그리고 주몽과 동행한 인물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서사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일찍이 『논형』의 동명 설화를 고구려 건국설화가 전도되어 전해진 결과로 보거나, 동명이 세운 부여를 ‘줄본부여’, 즉 고구려 자체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sup>8</sup>

그러나 현전 자료의 성립 시기로는 부여 동명의 건국설화가 고구려 건국설화보다 훨씬 앞서 채록되었다. 따라서 고구려 설화를 원형으로 간주해 부여 설화의 독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sup>9</sup> 오히려 ‘동명형’의 설화가 부여계 집단들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고, 고구려에서도 이러한 설화적 전통을 차용·변형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여·고구려·백제가 모두 동명형 설화를 공유했다는 사실은, 이 신화가 특정 정치체의 독점물이 아니라 부여계 문화권 전반에 확산된 공통의 신화적 자산이었음을 시사한다.<sup>10</sup>

7 『論衡』 권2, 김희편, “北夷 橐離國王侍婢有娠 王欲殺之 婢對曰 有氣大如鷄子 從天而下 我故有娠 後產子 捐於猪溺中 猪以口氣噓之 不死 復徙置馬欄中 欲使馬藉殺之 馬復以口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 令其母收取奴畜之 名東明 令牧牛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掩淲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 東明得渡 魚鼈解散 追兵不得渡 因都王夫餘 故北夷有夫餘國焉 東明之母初妊時 見氣從天下 及生 棄之 猪馬以氣吁之而生之 長大 王欲殺之 以弓擊水 魚鼈爲橋 天命不當死 故有猪馬之救命 當都王夫餘 故有魚鼈爲橋之助也.”

8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5-9, 35~40쪽; 金廷鶴, 1948, 「朝鮮神話의 科學的考察(一)」, 『太陽神과 宇宙卵說話』, 『史海』 1, 72쪽; 李丙燾, 1959, 『韓國史 - 古代篇 -』, 乙酉文化社, 216쪽; 金庠基, 1964, 「國史上에 나타난 建國說話의 檢討」, 『學術誌』 5, 建國大, 22쪽.

9 부여 건국설화를 부정하는 견해에 대한 지적은 이흥직, 1959, 「고구려의 흥기」, 『국사상의 제문제』 4·5, 국사편찬위원회;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93~99쪽을 참조.

10 盧明鎬, 1981,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 - 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10.

이와 같은 설화의 차용과 재구성 과정을 전제하면, 고구려 건국설화에 보이는 부여 출자를 곧바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일찍이 주몽의 부여 출자를 새로 복속한 부여 지역에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설명하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sup>11</sup> 그러나 중국 사서에서 고구려를 ‘부여 별종’이라 표현하며, 언어 등 생활양식이 부여와 유사하다고 기록한 점은,<sup>12</sup> 고구려와 부여의 연관성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세기 중엽 고구려가 ‘부여별종’이라는 인식은 고구려가 대외적으로 부여와의 연관성을 자처한 결과이거나, 중국 측이 견문을 종합해 내린 객관적 판단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건국설화의 차용 여부를 떠나 계루부 왕실과 부여 사이의 실질적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왕호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루(婁)’라는 어미가 부여에서 기원했다는 해석<sup>13</sup>과 그 연장에서 ‘계루’라는 명칭 자체가 부여계 집단임을 가리킨다는 해석<sup>14</sup>은 참고가 된다. 한편, 건국설화의 내용을 토대로 계루부를 부여 출신의 이주 집단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sup>15</sup> 고구려 사회의 주도 세력이 부여계 이주 집단이었다면 부여 특유의 묘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sup>16</sup>

11 白鳥庫吉, 1936, 「夫餘國の始祖東明王の傳説に就いて」, 『服部先生古稀祝賀記念論文集』(1970, 『白鳥庫吉全集』 5, 岩波書店 재수록); 李成市, 1984, 「『梁書』高句麗傳と東明王」, 『中國正史の基礎的研究』, 早稻田大學出版部;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2 『三國志』 권30, 오환선비동이전, 고구려,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13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71~74쪽.

14 조영광, 2010, 「고구려 5那部の 성립과정과 영역 검토」, 『大丘史學』 98, 4쪽.

15 池内宏, 1941, 「高句麗の建國傳説と史上の事實」, 『東洋學報』 28-2(1951, 『滿鮮史研究 - 上世 第1冊 -』, 吉川弘文館 재수록).

16 田村晃一, 1990, 「高句麗の積石塚」, 『東北アジアの考古學』, 六興出版.

이에 따라 계루부를 부여계 이주 집단과 고구려 발흥지의 토착 집단이 결합된 혼성 집단으로 파악하려는 보완적 해석이 제기되었다.<sup>17</sup> 특히 기원전 1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인 망강루 적석묘는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주목받았다.<sup>18</sup> 망강루 적석묘는 외형상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전형적인 특징을 공유하지만, 출토된 금제 이식(耳飾)이 부여 지역의 서차구·노하심 유적 출토품과 같은 계통으로 확인되어 양 지역 간의 교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집안 운봉댐 수몰지구 적석묘의 금제 이식 역시 노하심 유적의 것과 궤를 같이한다.<sup>19</sup> 물론 부여의 주된 묘제가 토광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적석묘를 부여계 이주민의 직접적인 조영물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고학적 정황은 적어도 기원전 1세기 무렵 환인과 집안을 아우르는 고구려 발흥지에 부여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세력이 넓게 분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20</sup> 이러한 자료들은 부여계 집단의 이주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21</sup>

- 
- 17 余昊奎, 1996a,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신편)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26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57~58쪽.
- 18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4-2; 여호규, 1996b, 「압록강 중류유역에서 고구려의 국가 형성」, 『역사와 현실』 21, 62쪽; 李新全, 2005, 「五女山山城及其周圍的高句麗早期遺迹」,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127~130쪽; 王綿厚, 2008, 「試論桓仁“望江樓積石墓”與“卒本夫餘”」, 『초기 고구려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40~43쪽.
- 19 安文榮·唐音, 2008, 「鴨綠江右岸雲峰水庫淹沒區古墓葬調查與發掘」, 『2007 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78~83쪽.
- 20 이한상, 2013b, 「耳飾으로 본 古代 東北아시아 各國 사이의 交流」, 『百濟文化』 49, 185~186쪽. 오강원은 운봉댐 수몰지구 적석묘를 망강루 적석묘보다 다소 늦은 1세기 초~중엽의 유지로 추정했다(吳江原, 2014, 「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금속제 이식의 시공간성과 제작 방식」, 『湖南考古學報』 48, 83~84쪽).
- 21 한강 하류인 김포 운양동에서도 같은 양식의 이식이 출토되어 부여와 초기 고구려, 마한(백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이한상, 2013a, 「김포 운양동유적

한편, 기존의 논의는 ‘부여 출자’ 전승의 배경을 주로 시조 주몽 당대의 이주 문제에 국한하는 경향이 강했고, 고구려 토착 세력과 부여 사이에 형성된 정치적 관계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압록강·혼강 유역에는 이미 이른 시기부터 현지화된 부여계 집단이 존재했을 여지가 충분하며,<sup>22</sup> 이들 선주(先住) 집단의 정착 과정이 후대의 ‘부여 출자’ 서사로 집약되었을 개연성도 짙다.

더 나아가 고구려 발흥지와 그 주변의 토착 세력 중 소노부 중심의 초기 고구려국에 편입되지 않고 부여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머물렀던 집단들이 존재했을 공산도 크다. 이들은 고구려가 아닌 부여로 자처하거나 대외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 건국설화에서 고구려 건국 이전의 졸본 지역의 선주 세력을 ‘졸본부여’라 칭한 사례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추론하게 하는 유력한 단서가 된다.<sup>23</sup>

요컨대 고구려 건국설화의 ‘부여 출자’는 단순한 시조 개인의 내력을 넘어, 고구려 발흥지 일대에서 전개된 부여계 집단의 이동과 정착, 그리고 토착 세력과의 결합이라는 장기적인 역사적 동태를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은 고구려 국가 성립 이후 전개되는 부여와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구려 초기 부여 관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출토 금제이식에 대한 검토, 『김포 운양동유적 II (2권)』, 한강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259~266쪽; 2013b, 위의 글, 187~190쪽).

22 여호규, 2011, 「高句麗의 種族起源에 대한 일고찰 - 夫餘別種說과 貊族說의 종합적 이해를 중심으로 -」, 『史林』 38, 123~124쪽. 좀 더 앞서 이루어진 부여계 선주민의 남하가 후대의 부여 출자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姜賢淑, 1999, 「高句麗 積石塚의 登場에 대하여」, 『京畿史學』 3, 48쪽).

23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년.

## 2. 고구려 초기 부여 관계와 복수의 부여

고구려 건국 이후 부여의 관계는 단순한 출자의 표방을 넘어 복합적인 역학 구도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료마다 다른 시조의 출신지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5세기 초 고구려 왕실이 제작한 금석문인 「광개토왕릉비」와 귀족 가문의 「모두루묘지」에는 시조의 출자를 ‘북부여’로 명시한 반면, 6~7세기 중국 사서들은 이를 단순히 ‘부여’로 기록했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고려시대 이후 문헌은 주몽이 ‘동부여’에서 나왔다는 서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전승상의 혼란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인 금석문들이 ‘북부여’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은, 고구려 건국설화의 원형이 북부여 출자 전승에 기반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크게 한다. 중국 사서의 건국설화는 『위서』 고구려전을 저본으로 삼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광개토왕대의 전승과 궤를 같이한다. 『위서』에 언급된 ‘부여’ 또한 지리적으로는 길림 방면의 북부여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고구려의 북쪽 경계가 ‘구부여(舊夫餘)’에 닿는다고 기술한 것 역시,<sup>24</sup> 시조의 탄생지로 설정된 공간과 동일한 범주를 상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sup>25</sup>

이러한 맥락에서 고구려 건국설화는 본래 북부여 출자를 골자로 성립되었으며, 동부여 출자 전승은 후대의 정치적·이념적 필요에 의해 추가되거나 변개된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다.<sup>26</sup> 다만 이러한 설명은 설화 자체의 형성 과정을 해명하는 데에는 유효할지 모르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수록된 방대한 부여 관계 기사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해석상의 간극을 남긴다.

24 『魏書』 권100, 열전88, 高句麗, “遼東南一千餘里 東至柵城 南至小海 北至舊夫餘 民戶參倍於前.”

25 노태돈, 1999, 앞의 책, 28~30쪽.

26 노태돈, 1999, 위의 책, 34~44쪽; 宋基豪, 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韓國古代史研究』 37, 28쪽.

〈표 1〉 고구려본기 부여 관계 기사 일람<sup>27)</sup>

| 연번 | 시기                       | 기사 주요 내용                                                                                                                                                                             |
|----|--------------------------|--------------------------------------------------------------------------------------------------------------------------------------------------------------------------------------|
| ①  | 동명성왕 1년<br>(기원전 37)      | 부여의 해부루가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 했고, 옛 도읍에는 해모수가 와서 도읍했다. 해부루의 뒤를 이은 금와가 유화를 거두었고, 유화가 동부여에서 주몽을 낳았다. 주몽은 동부여에서 박해를 피해 졸본으로 도망해 고구려를 세웠다.                                                  |
| ②  | 동명성왕 14년 8월<br>(기원전 24)  | 유화가 동부여에서 죽자, 금와가 태후의 예로 장례 지내고 신묘를 세워주었다.                                                                                                                                           |
| ③  | 동명성왕 14년 10월<br>(기원전 24) | 부여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주어 보답했다.                                                                                                                                                             |
| ④  | 동명성왕 19년 4월<br>(기원전 19)  | 왕자 유리가 부여에서 그 어미와 함께 도망해 왔다.                                                                                                                                                         |
| ⑤  | 유리명왕 1년<br>(기원전 19)      | 유리왕이 부여에 남아 있었을 때, 아버지가 없다고 굴욕을 당했고, 이후 신묘를 찾아 졸본으로 와서 왕위를 이었다.                                                                                                                      |
| ⑥  | 유리명왕 14년 1월<br>(기원전 6)   | 부여왕 대소가 인질 교환을 요청했는데, 부여의 강대함을 두려워해 태자 도절을 보내려 했으나 가지 않았다.                                                                                                                           |
| ⑦  | 유리명왕 14년 11월<br>(기원전 6)  | 대소가 5만의 군대로 침략했으나, 큰 눈을 만나 실패하고 돌아갔다.                                                                                                                                                |
| ⑧  | 유리명왕 28년 8월<br>(9)       | 대소가 사신을 보내 부여를 섬길 것을 요구해 받아들일려고 했으나, 왕자 무휼이 나서 사신을 불러 경고하고 요구를 거절했다.                                                                                                                 |
| ⑨  | 유리명왕 29년 6월<br>(10)      | 검은 개구리와 붉은 개구리가 싸워 검은 개구리가 죽었는데, 북쪽의 부여가 파멸할 징조라고 했다.                                                                                                                                |
| ⑩  | 유리명왕 31년<br>(12)         | 왕망이 고구려의 병사를 징발했는데, 새외로 도망해 도적이 되었다. 요서 대운이 이들을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 책임을 고구려에 묻고자 하니, 엄우는 고구려가 반발하고, 여기에 ‘부여지속’이 호응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왕망은 엄우에게 공격을 명해 고구려 장수 연비를 유인해 죽이고, 고구려왕을 하구려후라 격하시켰다. |
| ⑪  | 유리명왕 32년 11월<br>(13)     | 부여가 쳐들어오자 왕자 무휼이 학반령에서 크게 물리쳤다.                                                                                                                                                      |
| ⑫  | 대무신왕 3년 10월<br>(20)      | 대소가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붉은 까마귀를 고구려에 보냈다.                                                                                                                                                   |

27 장병진, 2019a, 앞의 글, 54~56쪽(표 1).



| 연번 | 시기                    | 기사 주요 내용                                                                                                    |
|----|-----------------------|-------------------------------------------------------------------------------------------------------------|
| ⑬  | 대무신왕 4년 12월<br>(21)   | 부여로 출정하는 길에 비류수에서 술과 장부를 얻어 부정씨 성을 주었다. 이물림에서는 금새와 병기를 얻었고, 북명인 괴유와 적곡인 마로가 합류했다.                           |
| ⑭  | 대무신왕 5년 2월<br>(22)    | 부여왕을 죽였으나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했다. 고구려 군대도 큰 피해를 입었다.                                                              |
| ⑮  | 대무신왕 5년 3월<br>(22)    | 신마 거루가 부여말 100필을 거느리고 돌아왔다.                                                                                 |
| ⑯  | 대무신왕 5년 4월<br>(22)    | 대소의 아우가 갈사수에 나라를 세우고 왕을 칭했다. 부여가 망할 것을 알고 무리를 이끌고 압록곡에 와서 해두왕을 죽이고 백성을 빼앗아 갈사수로 와서 갈사왕이 되었다.                |
| ⑰  | 대무신왕 5년 7월<br>(22)    | 부여왕의 종제가 투항해 오며 말하길, 대소가 죽고 사실상 나라가 망했다고 했다. 연나부에 안치하고 낙씨 성을 주었다.                                           |
| ⑱  | 태조대왕 1년 11월<br>(53)   | 태조왕의 모후가 부여 사람이었다. 태조왕이 7세에 왕위에 오르니 태후가 수렴청정했다.                                                             |
| ⑲  | 태조대왕 16년 8월<br>(68)   | 갈사왕의 손자 도두가 항복해 오자, 도두를 우태로 삼았다.                                                                            |
| ㉑  | 태조대왕 25년 10월<br>(77)  | 부여 사신이 와서 뽕이 셋인 사슴과 꼬리가 긴 토끼를 바쳤다.                                                                          |
| ㉒  | 태조대왕 53년 1월<br>(105)  | 부여 사신이 와서 호랑이를 바쳤다.                                                                                         |
| ㉓  | 태조대왕 69년 10월<br>(121) | 부여에 행차해 태후의 사당에 제사 지내고, 백성을 위안하고 물건을 차등을 두어 하사했다. 숙신의 사신이 와서 자줏빛 여우 가죽옷과 흰 매와 흰 말을 바쳤다. 사신에게 크게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
| ㉔  | 태조대왕 69년 11월<br>(121) | 태조왕이 부여로부터 돌아왔다.                                                                                            |
| ㉕  | 태조대왕 69년 12월<br>(121) | 왕이 마한과 예맥의 1만 기병을 이끌고 현도성을 포위했다. 부여왕의 아들 위구태가 2만의 군대를 보내 한(漢)과 협세하니, 고구려군이 크게 패했다.                          |
| ㉖  | 태조대왕 70년<br>(122)     | 왕이 마한, 예맥과 요동을 공격하니, 부여왕이 구원해 고구려군이 패했다.                                                                    |
| ㉗  | 문자명왕 3년 2월<br>(494)   | 부여의 왕과 왕비, 왕자가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
| ㉘  | 문자명왕 13년 4월<br>(504)  | 고구려가 사신 예실불을 복위로 보내 조공했다. 예실불이 황제를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황금이 부여에서 나는데, 부여가 물길에 쫓겨 바칠 수 없다고 했다.                        |

〈표 1〉은 고구려본기에 수록된 부여 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고구려 건국 직후 부여의 우위 속에 시작된 양국 관계는, 경쟁과 갈등을 거쳐 고구려가 부여를 점진적으로 복속해가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시간적으로 격차가 큰 문자 왕대 기사(㉔~㉗)를 제외하면, 동명왕부터 태조왕까지의 기사(㉑~㉕)들은 대체로 고구려본기 고유의 독자적 전승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유리왕 31년 기사(㉑)는 『한서』 왕망전을,<sup>28</sup> 태조왕 69년 및 70년의 기사(㉔~㉕)는 『후한서』 안제기와 고구려전을 저본으로 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sup>29</sup>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시조 주몽(동명성왕)은 ‘동부여’에서 나고 자랐으며, 이후 부여 왕실의 박해를 피해 졸본에 터를 잡고 고구려를 건국했다. 주몽의 고구려는 종래 그 지역의 패자였던 비류국 송양을 제압했고,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정치적 성장을 거듭했다. 고구려의 정치적 성장은 동명왕대 행인국과 북옥저를 시작으로 태조왕대 동옥저 정벌까지, 주변 세력을 차례로 복속하고 동쪽으로 창해, 남쪽으로 살수에 이르는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한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sup>30</sup>

고구려가 이 지역의 새로운 정치적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부여는 고구려를 견제할 필요가 생겼다. 고구려에 질자의 파견(㉑)이나 사대의 예우를 요구한 사실(㉒)은 고구려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는 부여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sup>31</sup> 그러나 고구려를 겨냥한 대규모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고(㉑, ㉒), 주변의

28 중국 사서는 고구려후 ‘騶’를 죽였다고 했지만, 고구려본기는 장수 ‘延丕’라고 했다. 아마도 고구려 고유의 전승을 함께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임기환, 2006, 「고구려본기 전거 자료의 계통과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42, 32~34쪽).

29 중국 사서에서는 고구려가 동원한 예맥과 마한의 기병을 ‘수천’이라고 했으나, 고구려본기에서는 ‘1만여’라고 했다. 찬자의 수정인지, 독자 전승을 참고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全德在, 2016,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原典과 完成 - 광개토왕대 이전 기록을 중심으로 -, 『東洋學』 64, 62쪽).

30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태조왕 4년.

31 김미경, 2007, 「高句麗 前期의 對外關係 研究」,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61~62쪽. 당시 부여의 인질 요구는 양국의 국력이 대등한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도 한다(梁起錫, 1981, 「三國時代 人質

부여계 집단들이 점차 고구려로 기울면서 두 나라의 힘의 균형은 뒤바뀌기 시작했다.

비록 고구려의 시각에서 정리된 사료라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부여의 몰락을 예고하는 상징적 설화(⑨, ⑫)가 전해지는 것은 당시 정세가 부여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특히 왕망 정권에서 ‘부여지속(扶餘之屬)’이라 불린 무리들이 고구려에 동조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사실(⑩)은, 부여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고구려의 정치적 구심력이 강화되었음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적어도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기준으로 본다면, 부여는 대무신왕 이후 고구려의 영역으로 완전히 흡수되었거나, 비록 정권이 해체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고구려에 예속된 처지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부여가 고구려에 상서로운 물건을 바치는 모습(⑳, ㉑)은 이미 두 나라 사이의 위계가 결정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태후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부여에 방문한 태조왕의 활동(㉒)은 지방에 대한 순무(巡撫) 행위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이렇듯 고구려본기는 건동명왕에서 태조왕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년 이상에 걸친 고구려와 부여 관계가 비교적 상세하고 연속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관건은 이 부여 관계 기사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건국설화를 비롯한 고구려본기의 ‘부여’ 관계 기사들을 모두 북부여와의 관계로 일괄해 파악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광개토왕릉비」에서 동부여가 추모왕의 속민이었다는 표현<sup>32</sup> 역시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고구려 지배층이 부여를 동류(同類)로 인식하고 고구려의 천하 질서 속에 통합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상징적 수사로 이해된다.<sup>33</sup> 즉, 초기 기록 속 동부여는 실재하는 정치체가 아니라, 고구

---

의 性格에 對하여, 『史學志』 15, 51쪽).

32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33 노태돈, 1999, 앞의 책, 388~390쪽.

려의 부여 정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고구려본기에서 시조의 출자가 동부여로 나타난 것은 고구려 후기 집권 세력 변동과 연계되어 6세기 중반 이후 건국설화가 변개된 결과라고 했다.<sup>34</sup>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부여 관계 기사의 구체성을 해명하기에 역부족이다. 고구려본기의 기록은 단순한 정벌 기사에 그치지 않고, 복속 이후에도 지속된 사신 왕래, 진헌(進獻), 제사, 통혼(通婚) 등 국가 간 교섭의 구체적 실상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기사들이 단순한 후대의 관념적 구성물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실제 고구려본기 내에서 ①~②에 이르는 부여 관계 기사는 문맥상 대체로 동부여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35</sup> 무엇보다 고구려와 대립·경쟁한 부여왕 대소가 금와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서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한다. 내용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모순을 발견하기 어렵다. 만약 시조의 출자가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변개된 것이라면, 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후속 부여 관계 기사들 역시 본래 북부여와의 관계를 투영한 것이어야 하나,<sup>36</sup> 이를 단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위략』에서 말하기를 그 나라는 매우 부강해 선대 이래로 일찍이(적에게) 파괴된 일이 없다고 했다.〉 그 인문(印文)에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고 이르고, 나라 안에 ‘예성(濊城)’이라 불리는 옛 성이 있으니, 아마도 본래 예맥의 땅이었음

34 노태돈, 1999, 위의 책, 33~44쪽.

35 ⑨에서는 당시 고구려와 경쟁하던 부여를 ‘북부여’로 지칭하는데, 이것이 동부여와 다른 별개의 부여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검은색이 북방의 색이라는 인식에서 보듯, 해당 표현이 고구려와의 상대적 위치를 반영한 것임은 분명하다. 동부여 역시 고구려의 동북방에 위치하므로, 남북의 위치 관계로 설정하더라도 해석상 큰 무리는 없다(金基興, 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韓國史研究』 113, 12쪽). 따라서 ⑨의 ‘북쪽의 부여’를 동부여로 이해하더라도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임기환, 2016, 「고구려 건국전승의 始祖 出自와 北夫餘, 東夫餘」, 『高句麗渤海研究』 54, 174쪽).

36 노태돈, 1999, 앞의 책, 44~45쪽.

이다. 부여가 그 가운데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스스로 ‘망인(亡人)’이라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듯하다.<sup>37</sup> (『삼국지』 권30, 오환선비동이전, 부여)

만약 고구려본기의 기사가 본래 북부여와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간주하면, 중국 사서의 기록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 사서에는 부여(북부여)가 3세기 중반까지 외부 세력에 의해 파괴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구려본기에서는 이미 1세기 전반인 대무신왕대에 이르러 부여왕 대소가 전사하고 국가가 복속되는 등 전혀 다른 역사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고구려본기에 기술된 부여 관련 기사들을 건국설화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는 관념적 서사로 치부하기도 한다.<sup>38</sup> 즉, 실제 사건이 아닌 설화적 전승이 기록으로 고착되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고구려본기는 단순히 부여 정벌이라는 일회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복속 이후 고구려와 부여 사이에 전개된 구체적 교류(㉑~㉒)까지 전하고 있다. 이처럼 후속 기사들이 보여주는 서술의 구체성과 정합성은 고구려본기의 부여 관계 기사를 단순히 후대에 가공된 허구로 단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편, 태조왕 69년과 70년의 부여 관계 기사는 해석상 큰 의문을 던진다. 태조왕 69년 10월, 왕이 부여에 가서 태후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돌보았다는 기록(㉒)은, 부여가 이미 고구려의 지배권 아래 들어오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국왕이 자신의 영향 아래 있는 지방을 순행하면서 제사를 주관하고 민심을 살피는 행위로 이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월에 왕이 부여에서 돌아오고(㉓), 한 달만에 돌연 부여가 중국 군현과 합세해 현도성

37 “〈魏略曰 其國殷富 自先世以來 未嘗破壞〉其印文言藏王之印 國有故城名藏城 蓋本藏貊之地 而夫餘王其中 自謂亡人 抑有以也” (〈 〉은 배송지의 주석).

38 노태돈, 1999, 앞의 책, 44~45쪽. 노태돈 역시 고구려본기의 부여와 중국 사서의 부여(북부여)가 동일한 실체가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고, 고구려본기의 부여 관계 기사도 일정한 역사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노태돈, 1999, 앞의 책, 56~57쪽).

을 공격했다<sup>39</sup>). 심지어 이듬해에는 부여가 고구려 군대를 크게 물리치는 기사<sup>40</sup>까지 이어진다. 직전까지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던 부여가 순식간에 강력한 적대국으로 돌변한 것이다.

부여와 중국 세력의 협공은 태조왕의 순행과 불과 한 달 차이를 두고 벌어진 일이다. 당시 부여 내부나 주변 정세가 그토록 급격히 변할 만한 특별한 계기는 보이지 않는다. 고구려 국왕이 직접 부여를 살피면서도, 2만 명의 정예 병력이 움직이는 기색을 전혀 몰랐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태조왕의 어머니가 부여인이었고, 그 이전부터 부여의 지배층은 고구려 왕실과 혼인을 맺거나 봉작을 받는 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처럼 앞뒤 맥락 없이 급변하는 관계는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모두 북부여와의 관계로 몰아서 보더라도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중국 사서와 고구려본기 속의 부여, 혹은 고구려본기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묘사되는 부여의 모습은 북수의 부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sup>39</sup> 따라서 여러 사료에 등장하는 ‘부여’를 단일한 정치체로 전제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정치적·공간적 실체를 가리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태조왕 69~70년의 전투 기록은 『후한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때의 부여는 길림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교류하던 북부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태조왕의 제사와 행차, 그리고 그 이전 시기의 기록들에 등장하는 부여는 고구려본기 특유의 서술 흐름으로 볼 때, 고구려와 오랫동안 경쟁하고 복속되며 얹혀온 또 다른 부여, 곧 동부여로 이해할 여지가 크다.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동부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국가적 성장을 이루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고구려의 동향은 길림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한 부여(북부여)가 고구려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충돌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고구려가 동부여를 복속시키고, 아울러 숙신의 세력<sup>40</sup>까지 동요하게

39 윤성용, 2005, 「고구려 建國神話와 祭儀」, 『韓國古代史研究』 39, 17쪽.

40 숙신의 後身이 읍루라고 하는데(『三國志』 권30, 오환선비동이전, 읍루, “古之肅

만든 사실②은, 부여(북부여)가 중국 군현 세력과 손잡고 고구려에 맞서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sup>41</sup> 당시 ‘예왕(濊王)’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부여계 정치 세력은 물론 예맥 사회 내에서 ‘종주(宗主)’적 위상을 누리던 부여로서는 고구려의 행보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 부여의 한 부류였던 주몽 집단이 고구려의 왕위를 차지한 뒤, 주변의 ‘부여지속(扶餘之屬)’을 장악하며 자신들의 세력권을 위협, 잠식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가 예맥 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으로 대두한 상황 자체가 부여에게는 커다란 위기감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 3. 동부여의 역사적 실체

고구려 초기의 부여 관계는 단일한 부여와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으며, 고구려 본기·중국 사서·금석문 자료에 나타난 복수의 부여를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동부여에 실체적으로 접근하고, 그 역사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특히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5세기 초 고구려 왕실이 직접 세운 「광개토왕릉비」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준다.

옛날에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다.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나왔으며, ... (영락 20년 경술, 동부여는 예전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해 조공하지 않았다. 왕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정벌에 나섰다. 군대가 여성(餘城)에 이르니,

慎氏之國也”), 읍루가 漢代부터 부여에 신속해 있었다고 한다(『三國志』 권30, 오환선비동이전, 읍루, “自漢已來 臣屬夫餘”). 고구려본기 태조왕 기사에 등장하는 ‘속신’은 고구려가 曹魏의 인식을 수용하여 읍루에 해당하는 주민집단을 속신으로 일컬었을 가능성이 크다.

- 41 속신 외에 동부여도 (북)부여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승호, 2018, 「夫餘 政治史 研究」,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일찍이 주몽이 기원한 동부여는 (북)부여의 諸加가 別主하는 四出道의 하나로 이해하거나, 혹은 부여라는 단일한 정치체의 동부 지역으로 파악하려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sup>42</sup> (「광개토왕릉비」)

비문에서는 시조의 출자를 북부여로 기록하는 한편, 동부여에 대해서는 과거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다가 중간에 배반해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에 광개토왕이 직접 정벌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기록은 북부여와 동부여의 구분이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고구려 지배층이 명확하게 서로 다른 정치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의 자료인 「모두루묘지」 역시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묘지에는 추모성왕이 북부여에서 나왔으며, 광개토왕대에 ‘영북부여수사(令北夫餘守事)’가 파견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sup>43</sup> 이는 북부여가 단순히 설화 속 시조의 출신지가 아니라, 5세기 초 고구려가 직접 행정력을 발휘하며 다스리던 실질적인 통치 구역이었음을 뜻한다. 결국 북부여와 동부여라는 구분은 후대의 관념적 설정이 아니라, 고구려 지배 질서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던 공간 개념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본기와 달리 시조의 출자를 ‘북부여’로 기록하고 있어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 단지 복수의 부여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구려본기에 나타나는 서술의 혼란을 설명하기 힘든 것이다. 일찍이 고구려본기 초기 기록에 나오는 ‘동부여’의 실재를 부정하는 견해<sup>44</sup>가 제기된 이유이다.

42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 廿年庚戌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

43 「牟頭婁墓誌」, “河泊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 元出北夫餘 … 教遣令北夫餘守事 ….”

44 池內宏, 1930, 「夫餘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3(1951, 앞의 책 재수록); 盧泰敦, 1989, 「夫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4; 1999, 앞의 책; 박경철, 1992, 「扶餘史 展開에 關한 再認識 試論」, 『白山學報』 40, 67쪽;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78쪽; 宋基豪, 2005, 앞의 글;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420쪽.



나아가 동부여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3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파악했다.<sup>45</sup> 285년(태강 6) 모용씨 세력의 침입으로 부여왕이 자살하고 그 자제가 (북)옥저 지역으로 도망한 일이 있었다.<sup>46</sup> 당시 옥저로 피신한 부여 왕실의 자제는 이후 서진(西晉)의 도움을 받아 본거지로 돌아와 ‘복국(復國)’했는데,<sup>47</sup> 당시 부여의 일부 세력이 북옥저 일대에 계속 남아 동부여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결국 5세기 초에 작성된 「광개토왕릉비」에 북부여와 구분되는 동부여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처럼 3세기 말 동부여가 새롭게 성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온 것이다.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으며, 큰 바닷가에 접해 산다. 그 지형은 동북 사이가 좁고, 서남 사이는 길어서 천 리나 된다. 북으로는 읍루·부여, 남으로는 예맥과 접해 있다.<sup>48</sup> (『삼국지』 권30, 오환선비동이전, 동옥저)

그런데 『삼국지』 동이전에는 한반도 동북쪽 해안에 있던 옥저가 북쪽으로 부여와 맞닿아 있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삼국지』가 대체로 280년대 초, 늦어도 284년 무렵에는 완성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sup>49</sup> 이 기록은 그보다 앞선 시

45 노태돈, 1999, 위의 책, 511~519쪽.

46 『晉書』 권97, 열전67 사이, 동이 부여국, “至太康六年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47 『資治通鑑』 권81, 진기3, 태강 6년, 7년, “是歲 慕容廆爲其下所殺 部衆復迎涉歸子廆而立之 涉歸與宇文部素有隙 廆請討之 朝廷弗許 廆怒 入寇遼西 殺略甚衆 帝遣幽州軍討廆 戰於肥如 廆衆大敗 自是每歲犯邊 又東擊扶餘 扶餘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廆夷其國城 驅萬餘人而歸 七年 … 夏 慕容廆寇遼東 故扶餘王依慮子依羅求帥見人還復舊國 請援於東夷校尉何龕 龕遣督護賈沈將兵送之 廆遣其將孫丁帥騎邀之於路 沈力戰 斬丁 遂復扶餘.”

48 “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濱大海而居 其地形東北狹 西南長 可千里 北與挹婁夫餘 南與濊貊接.”

49 윤용구, 2008, 「『삼국지』 부여전의 문헌적 검토」,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22쪽.

기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부여 성립의 계기로 알려진 285년의 모용씨 침공 전부터 이미 한반도 동북쪽에서 옥저와 부여가 남북으로 이웃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살펴본 태조왕 69년(121)의 기사(㉔)는 중요한 단서를 던져준다.

겨울 10월에 왕이 부여에 행차해 태후의 사당에 제사 지내고, 백성으로 곤궁한 자들의 안부를 물어 차등이 있게 물건을 하사했다. 숙신의 사신이 와서 자주색 여우갓옷과 하얀 매와 말을 마쳤다. 왕이 잔치를 열어 그를 위로해서 보냈다.<sup>50</sup>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69년)

태조왕 69년 왕이 부여에 행차해 태후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고, 이때 숙신에서 보낸 사신이 찾아왔다고 한다. 왕이 행차한 부여와 인접한 지역에 숙신이 자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숙신의 후신(後身)이라고 하는 읍루는 부여의 동북쪽으로 천 리쯤 떨어진 바닷가에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북옥저와 맞닿아 있었다고 한다.<sup>51</sup> 따라서 왕이 행차한 지역은 고구려의 동북쪽 변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sup>52</sup>

모용씨가 부여를 공격하기 훨씬 전부터 고구려의 동북쪽 방향에 부여라고 불리는 실체가 이미 있었다면, 고구려본기 초기 기록에 나오는 동부여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북옥저 주변에 길림 지역의 북부여와는 다른 부여가 따로 있었다면, 그 세력을 동부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53</sup> 동부여가

50 “冬十月 王幸扶餘 祀太后廟 存問百姓窮困者 賜物有差 肅愼使來 獻紫狐裘及白鷹白馬 王宴勞以遣之.”

51 『三國志』 권30, 오환선비동이전, 읍루, “挹婁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52 이도학, 2007, 「高句麗의 夫餘 出源에 관한 認識의 變遷」, 『고구려발해연구』 27, 136~137쪽; 이승호, 2018, 앞의 글, 97~98쪽.

53 이도학, 2007, 위의 글, 131쪽; 이승호, 2018, 위의 글, 73쪽.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sup>54</sup> 북옥저가 지금의 훈춘 일대라면, 동부여 역시 그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55</sup>

(건광 원년, 121년) 겨울 12월에 고구려, 마한, 예맥이 현도성을 포위했다. 부여왕이 아들을 보내어 주군(州郡)과 힘을 합해 그들을 쳐서 깨뜨렸다.<sup>56</sup> (『후한서』 권5 안제기, 건광 원년)

(연광 원년, 122년) 봄 2월에 부여왕이 아들을 보내 병력을 이끌고 현도를 구원했다. 고구려, 마한, 예맥을 쳐서 그들을 깨트리니, 마침내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sup>57</sup> (『후한서』 권5 안제기, 연광 원년)

건광 원년 ... 가을에 궁(宮)이 마침내 마한, 예맥의 군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현도를 포위했다. 부여왕이 아들 위구태를 보내어 2만여 명을 거느리고 주군(州郡)과 힘을 합해 그들을 쳐서 깨뜨리고 500여 명을 참수했다.<sup>58</sup> (『후한서』 권85,동이열전, 고구려)

12월에 왕이 마한과 예맥의 1만여 기병을 거느리고 나아가 현도성을 포위했다. 부여왕이 아들 위구태를 보내 병력 2만을 거느리고 와서, 한(漢)의 병력과 힘을 합쳐 대항해 싸워서 아군이 크게 패했다.<sup>59</sup>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69년)

54 동부여의 위치에 대한 여러 논의는 宋基豪, 2005, 앞의 글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55 동부여의 성립에 대해 吉林을 중심으로 한 부여가 동쪽으로 ‘敦化-延吉-琿春’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따라 북옥저, 읍루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한 과정과 관련해 이 해한 연구(이승호, 2018, 앞의 글)가 참고된다. 연구에서는 琿春은 책성이 설치된 북옥저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敦化-延吉’ 일대를 동부여의 위치로 주목했다. 필자 역시 이러한 논의에 대체로 동의한다.

56 “冬十二月 高句驪馬韓穢貊圍玄菟城 夫餘王遣子與州郡并力討破之.”

57 “春二月 夫餘王遣子將兵救玄菟 擊高句驪馬韓穢貊 破之 遂遣使貢獻.”

58 “秋 宮遂率馬韓穢貊數千騎圍玄菟 夫餘王遣子尉仇台 將二萬餘人 與州郡并力討破之 斬首五百餘級.”

59 “十二月 王率馬韓穢貊一萬餘騎 進圍玄菟城 扶餘王遣子尉仇台 領兵二萬 與漢兵并力拒戰 我軍大敗.”

왕이 마한, 예맥과 함께 요동을 침략했다. 부여왕이 병력을 보내 이를 구하고 쳐부수었다.<sup>60</sup>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70년)

그렇다면, 이후 기록(㉔~㉕)에서 중국 군현 세력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한 부여의 정체는 무엇일까? 고구려본기의 ㉔, ㉕ 기사는 전투 시기는 『후한서』의 본기(안제기)를 따르고, 구체적인 전투 상황은 『후한서』의동이열전(고구려) 기록을 따랐다. 병력의 수치나 세부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 측 기록을 바탕으로 삼았음이 분명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이 부여는 고구려본기 초기 기록(㉑~㉓)의 동부여와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대상이다.<sup>61</sup>

잘 알려져 있듯이 『삼국지』와 『후한서』가 다루는 부여는 길림 지역에 자리잡았던 부여국, 즉 북부여를 말한다. 만약 태조왕 69년의 기사(㉒~㉔)에서 앞뒤의 부여가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한 달 사이에 부여의 태도가 돌변한 것처럼 보였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본기의 기록과는 다르게 부여가 3세기 중반까지도 건재했다는 중국 사서의 기록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통해 의문을 풀 수 있게 된다.

한편,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대무신왕은 부여 정벌에 나서 대소왕을 죽이는 성과를 거두었지만(㉔), 정작 국왕 자신은 정벌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자책했다. 하지만 부여왕의 종제가 했던 말처럼,<sup>62</sup> 부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배층이 분열되고 흩어지면서 결국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전반의 건문을 바탕으로 기록된 『위서』 고구려전에서 주몽의 증손자인 막래(莫來)<sup>63</sup>가 부여를 정복했다는 기록<sup>64</sup>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0 “王與馬韓穢貊侵遼東 扶餘王遣兵救破之.”

61 이도학, 2007, 앞의 글, 136~137쪽.

62 『三國史記』 권14,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5년 7월, “我先王身亡 國滅民無所依 王弟逃竄 都於曷思 吾亦不肖 無以興復.”

63 『魏書』에서는 고구려의 초기 왕계가 ‘주몽-여달-여율-막래’로 이어진다고 해 고

비록 기록마다 왕위 계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부여를 사실상 굴복시킨 주체가 대무신왕 시기를 전후한 고구려였다는 점만은 공통으로 전하는 것이다.

고구려본기에서 ‘동부여’는 시조 주몽의 출신지이자 대무신왕의 정복지로 나오는데, 「광개토왕릉비」에 적힌 “동부여는 옛날부터 추모왕의 속민이었다”라는 구절과 잘 맞아떨어진다. 비문에는 추모왕(주몽)의 뒤를 이은 유류왕(유리왕)이 유명(遺命)을 이어받아 “이도흥치(以道興治)”했고, 그다음 대주류왕(대무신왕)이 “소승기업(紹承基業)”했다고 서술했다. 이는 추모왕에서 시작된 고구려 건국의 대업(大業)이 대주류왕에 이르러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sup>65</sup> 다시 말해, 고구려 지배층의 인식 속에서 동부여는 국초부터 이미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가 실질적으로 미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3세기 말 동부여 성립설과 관련해 3세기 말 모용외의 공격을 받고 옥저 지역으로 피신한 부여의 지배층들이 이 지역에서 일정한 세력을 이루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다만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 아래 있었던 지역에서 이들 세력이 완전히 독립적인 정치체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sup>66</sup> 오히려 고구려가 동부여 지역에서 동류로 인식될 수 있는 부여의 지배층을 지배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sup>67</sup> 추정이지만, 관구검의 군대가 숙신의 남계를 거쳐 회군한 사실,<sup>68</sup> 그리고 고구려가 국력을 회복하고 서북방의 위(魏), 진(晉), 모용

---

구려본기의 계보와 차이를 보인다. 일찍이 ‘莫來’의 자형이 ‘慕本’과 유사하다고 해 막래를 모본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었으나(津田左右吉, 1922,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 『滿鮮地理歷史報告』 9; 池內宏, 1940, 「高句麗王家の上古の世系について」, 『東洋學』 3(1951, 앞의 책 재수록); 부여를 정복했다는 막래의 事蹟은 오히려 대무신왕과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노태돈, 1999, 앞의 책, 46~49쪽).

64 『魏書』 권100, 열전88, 고구려.

65 임기환, 2016, 앞의 글, 175~177쪽.

66 노태돈, 1999, 앞의 책, 433~435쪽.

67 2군 故地에서 중국계 유이민과 토착 漢人들을 관리했던 방식은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안정준, 2024, 『고대 동아시아의 이주와 고구려 -고구려의 중국계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 역사비평사를 참조.

68 『梁書』 권54, 열전48 제이, 고구려, “(正始)六年 儉復討之 位宮輕將諸加奔沃沮

씨 세력 등과 다시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다른 변경 지역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Ⅲ. 고구려의 부여 통합과 부여 유산의 계승

#### 1. 부여의 쇠망과 고구려의 부여 통합

3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부여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는 단순히 특정 세력이 침략해 일어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부여 주변의 정세가 급격히 변한 결과였다. 특히 후한이 멸망하고 삼국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원의 질서가 뒤바뀌고, 북방 유목 세력이 빠르게 성장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부여는 남쪽에서 압박해오는 고구려와 서쪽으로는 선비 모용씨 세력의 팽창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결국 285년, 모용외의 침입으로 부여의 수도가 함락되고, 국왕 의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부여 왕실과 상당수 주민은 북옥저 방면으로 피난했고, 국가 체제는 사실상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듬해 의려의 뒤를 이은 의라가 동이교위 하감의 지원을 받아 ‘복국’했지만, 반복되는 모용씨의 침공과 대규모 인구 유출로 인해 이전과 같은 국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4세기 초 서진 정권이 무너지고 남쪽으로 옮겨 가면서, 부여는 외부적으로 군사나 외교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고립된 처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여는 더 이상 길림 일대의 원래 수도를 지키기 어려워졌고, 서쪽으로 옮겨가 전연과 가까운 지역에 기대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거

---

儉使將軍王頎追之 絕沃沮千餘里 到肅慎南界 刻石紀功 又到丸都山 銘不耐城而還.”

점을 옮긴 것은 단순히 모용씨 세력의 압박 때문만은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고구려가 북쪽으로 세력을 넓히며 부여의 기존 중심지를 장악해가던 정세와도 깊이 맞물려 있었다.

처음 부여는 녹산에 거하다가 백제의 침략을 받게 되어 부락이 쇠락하고 흩어졌다. 서쪽으로 연(전연) 가까이 옮겼으나 방비하지 않았다.<sup>69</sup> (『자치통감』 권97, 진기19 목제 영화 2년)

여기서 ‘녹산’은 길림 일대에 있던 부여의 전통적인 중심지를 뜻하며, 4세기 중반이 되기 전에 이미 부여가 오랫동안 지켜온 근거지를 잃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기록에 침략의 주체가 ‘백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시 상황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4세기 전반의 백제가 요동이나 길림 지역까지 직접 군대를 보내 전쟁을 치렀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기록을 옮겨 적거나 전해지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로 보이며, 실제로는 당시 부여를 압박하던 고구려나 물길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sup>70</sup>

이 시기 고구려는 서진 동이교위와 보조를 맞추며 모용선비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었고, 285년 이후 부여의 재건 과정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sup>71</sup> 하지만 서진 무제 사후, 8왕의 난을 거치며 서진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요동 정세가 크게 동요했다. 이 무렵 고구려 역시 혼하 유역을 중심으로 서북방 진출을 본격화했고, 결국 세력을 키우던 모용선비와 직접적인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가을 8월에 모용외가 침략해 왔다. 왕이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고자 했다. 행차

69 “初 夫餘居于鹿山 爲百濟所侵 部落衰散 西徙近燕 而不設備.”

70 盧泰敦, 1989, 앞의 글, 48~50쪽.

71 이승호, 2012, 「3세기 후반 「晉高句麗率善」印과 高句麗의 對西晉 관계」, 『韓國古代史研究』 67, 329~334쪽.

가 곡림에 이르렀는데 모용외가 왕이 나간 것을 알고 병력을 이끌고 이를 추격했다. 거의 따라잡게 되자 왕이 두려워했다. 그때 신성제 북부 소형 고노자가 500의 기병을 거느리고 왕을 맞이하러 왔다가 적을 만나 그들을 힘껏 공격하니, 모용외의 군대가 패해 물러갔다. 왕이 기뻐하고 고노자에게 벼슬을 올려 대형을 삼고, 이에 겸해 곡림을 식읍으로 내려주었다.<sup>72</sup>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봉상왕 2년)

가을 8월에 모용외가 침략해 왔다. 고국원에 이르러, 서천왕의 무덤을 보고 사람을 시켜 파게 했다. 파는 사람 중에 갑자기 죽는 자가 있고, 또 무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므로 귀신이 있는가 두려워해 곧 물러갔다. 왕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모용씨는 병마가 정력이 있고 강해 우리의 강역을 거듭 침범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했다. 국상 창조리가 대답하기를 “북부 대형 고노자는 현명하고 또 용감합니다. 대왕께서 만일 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려면, 고노자 말고는 쓸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왕이 고노자를 신성 태수로 삼았는데 백성을 잘 다스려 위세와 명성이 있었으므로, 모용외가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sup>73</sup>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봉상왕 5년)

봉상왕대 모용외는 기병을 활용한 유목세력 특유의 기동력을 앞세워 고구려 도성까지 위협했다.<sup>74</sup> 이때 기록에 등장하는 ‘신성’이 고구려의 서북 변경이라

72 “秋八月 慕容廆來侵 王欲往新城 避賊 行至鵠林 慕容廆知王出 引兵追之 將及王懼 時新城宰北部小兄高奴子 領五百騎迎王 逢賊奮擊之 廆軍敗退 王喜 加高奴子爵爲大兄 兼賜鵠林爲食邑.”

73 “秋八月 慕容廆來侵 至故國原 見西川王墓 使人發之 役者有暴死者 亦聞壙內有樂聲 恐有神乃引退 王謂羣臣曰 慕容氏兵馬精強 屢犯我疆場 爲之奈何 相國倉助利對曰 北部大兄高奴子 賢且勇 大王若欲禦寇安民 非高奴子無可用者 王以高奴子爲新城太守 善政有威聲 慕容廆不復來寇.”

74 모용선비가 요동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은 311년경이며, 319년 요동을 장악해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296년 고구려의 수도를 공격했다는 기사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511쪽). 모용선비가 부여의 국성을 함락



는 주장도 있으나,<sup>75</sup> 모용외의 공격을 피해 왕이 급히 몸을 숨기고 신성의 관리(제)가 마중 나와 구원했던 곳은 지리적으로 동북방의 신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이후 모용외의 침입을 직접 막아냈던 ‘신성’은 적의 길목을 지키던 서북방의 신성을 가리킨다.<sup>76</sup> 정황상 두 곳의 ‘신성’을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서북 신성의 위치는 현재 무순의 고이산성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곳은 혼하와 요하 하류에 펼쳐진 요동 평원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자리 잡아, 고구려 말기까지 서북방의 중진으로 기능했다. 고구려가 요동의 한복판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 기지인 동시에, 요동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길목에서 차단하는 방어의 요충지였다. 고구려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걸쳐 혼하 상류 일대를 장악하며,<sup>77</sup> 요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78</sup>

한편, 이 시기 모용씨 세력 역시 요동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했다. 309년 요동태수와 동이교위가 대립하고, 311년에는 선비 소희련(素喜連)과 목환진(木

---

시키고 영유하지는 않았던 사실에서 보듯, 당시 군사 활동은 영토 확장보다는 약탈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박세이도 당시 모용외의 고구려 공격을 노략질 정도로 파악했다(박세이, 2014, 「4세기慕容鮮卑 前燕의 성장과 고구려의 대응」, 『韓國古代史研究』 73, 52쪽). 모용선비가 일찍이 曹魏의 고구려 공격에 참여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당시 고구려 공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75 권오중, 2005, 「遼東郡 中部都尉와 高句麗의 新城」,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재단. 권오중은 신성으로 가려진 봉상왕이 모용외의 공격을 받아 곡립으로 피신한 것으로 해석하고, 서천왕대 이후 신성 기사를 모두 서북 신성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신성으로 순행했을 때, 해국태수가 고래의 눈을 바친 사실 등으로 보아 내륙인 서북 신성에 한정해 보기는 어렵다.

76 金瑛河,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35~40쪽.

77 여호규도 4세기 초에는 고구려가 혼하 상류 일대를 장악했을 것으로 보았다(여호규, 2014, 앞의 책, 511~512쪽).

78 『梁書』 권54, 제이열전, 고구려, “晉永嘉亂 鮮卑慕容廆據昌黎大棘城 元帝授平州刺史 句驪王乙弗利頻寇遼東 廆不能制.”; 『北史』 권95, 열전, 고려, “晉永嘉之亂 鮮卑慕容廆據昌黎大棘城 元帝授平州刺史 位宮玄孫乙弗利頻寇遼東 廆不能制.”

丸津)의 침공이 이어지면서 요동 정세가 크게 동요하자, 모용외가 수습에 나섰다.<sup>79</sup> 특히 모용외는 근왕 정책을 표방하면서 적극적인 한화(漢化)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한족(漢族) 유이민들의 신망을 얻어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sup>80</sup> 모용씨 세력의 확대를 경계한 평주자사 최비(崔毖)는 고구려와 선비 우문씨, 단씨 세력 등과 협력해 모용외를 공격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320년(미천왕 21) 고구려가 요동에서 모용인의 군대에 크게 패하면서<sup>81</sup> 요동의 패권은 일단 모용씨로 넘어가게 되었다.<sup>82</sup>

이로써 요동에서 고구려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했다. 모용씨 세력의 동향을 살피며 새로운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고구려는 모용씨 주변 세력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모용씨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요동의 정세가 혼란해진 틈을 타 (북)부여 지역으로 진출을 단행했다.<sup>83</sup> 335년(고국원왕 5)에 신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이러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신성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증축함으로써 서북쪽 변방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sup>84</sup>

79 『晉書』 권108, 재기8, 모용외; 『資治通鑑』 권87, 진기9, 永嘉 3년, 5년.

80 朴漢濟, 1988, 『中國胡漢體制研究』, 一潮閣, 35~39쪽; 李椿浩, 2010, 「五胡時期 慕容前燕의 建國과 그 性格 -‘勤王’의 出現 및 그 運用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13, 74~84쪽; 여호규, 2012, 「4세기-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67, 86~87쪽; 박세이, 2014, 앞의 글, 54~55쪽.

81 『三國史記』 권17, 고구려본기5, 미천왕 21년; 『晉書』 권108, 재기8, 모용외; 『資治通鑑』 권91, 진기13, 太興 3년.

82 모용외가 東晉에 사신을 보내 요동을 평정한 사실을 전하자 ‘監平州諸軍事 安北將軍 平州刺史’로 책봉했고, 이듬해 다시 ‘使持節 都督幽州東夷諸軍事 車騎將軍 平州牧 遼東郡公 大單于’에 제수했다(『晉書』 권108, 재기8, 모용외). 이것은 東晉이 모용외에게 평주, 요동에서 군정과 민정의 책임자임을 인정하는 관호를 수여한 것이었다(여호규, 2012, 앞의 글, 88쪽).

83 余昊奎,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南道와 北道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91, 18~22쪽.

84 권오중, 2005, 앞의 글, 40~41쪽.

4세기 초·중엽 고구려가 북쪽으로 세력을 넓히던 정세를 고려하면, 부여가 남동쪽에서 가해지는 고구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원래 중심지를 떠나 이동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고구려가 점차 부여의 본거지였던 길림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부여는 더 이상 그 지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부여가 서쪽으로 이동한 뒤, 길림 일대는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간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옛 중심지를 잃은 부여는 서쪽으로 거점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346년(영화 2), 전연왕 모용황은 세자 모용준과 모용각, 모여근 등에게 1만 7,000명의 군사를 주어 부여를 공격하게 했다. 이 침공으로 부여는 국왕 현을 포함해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sup>85</sup> 전연은 현에게 ‘진동장군(鎭東將軍)’이라는 작위를 내리고 혼인 관계를 맺는 등 회유책을 펴기도 했으나, 이는 실상 부여의 지배층을 전연의 통치 질서 속에 묶어두려는 의도였다. 결국 부여는 핵심 세력과 주민 기반을 한꺼번에 상실하며 사실상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물론 이 사건으로 부여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370년 전진의 부견이 전연의 수도 업성을 공격할 당시, 부여 왕족 출신인 여율(여蔚)이 북문을 열어 전진의 군대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때 여율은 부여와 고구려, 상당(上黨)의 질자 5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sup>86</sup> 부여가 전연에 질자를 보낼 만큼 종속적인 처지였으나, 346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의 정치 단위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부여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존속했음은 5세기 중반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457년 부여가 북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대표적이다.<sup>87</sup> 결국 346년 전연의 침공은 부여 국가의 실질적 붕

85 『晉書』慕容皝載記; 『資治通鑑』 권97, 永和 2년.

86 『資治通鑑』 권102, 晉紀24 太和 5년 11월, “戊寅 燕散騎侍郎餘蔚帥扶餘高句麗及上黨質子五百餘人 夜開鄴北門納秦兵.”

87 『魏書』 권5, 高宗紀 太安 3년 12월, “于闐扶餘等五十餘國各遣使朝獻.”

괴와 중심 세력의 해체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였음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부여의 완전한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여는 전연과 전진, 그리고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 아래 종속된 상태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435년 고구려를 방문한 북위 사신 이오의 견문이 반영된 『위서』에는 고구려가 북쪽으로 옛 ‘부여’에 이른다고 했다. 346년 이전에 고구려가 부여의 원래 중심지를 장악했고 부여는 서쪽으로 밀려났던 상황을 고려하면, 옛 부여의 역사적 의미는 분명해진다. 즉, 4세기 중반 이후 과거 부여의 본거지였던 길림 일대는 더 이상 부여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아니라,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완전히 편입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5세기 자료인 「모두루묘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비록 묘지의 판독이 불완전해 세부적 이해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지만, 고국원왕대 이래 광개토왕과 장수왕대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북부여 지배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특히 광개토왕대에 모두루를 ‘영북부여수사(令北夫餘守事)’로 파견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 시기에는 북부여 지역에 대해 지방관을 파견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 편제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모두루 가문이 선대 이래 북부여 지역에 깊은 연고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모두루묘지」에 따르면, 모두루 가문의 시조는 추모성왕의 ‘노객(奴客)’으로서 북부여에서부터 고구려 건국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모두루에 앞서 고국원왕대에는 북부여에서 대형 염모가 공훈을 세웠고, 그 공로로 모두루의 조부와 대형 두 명이 대대로 관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광개토왕대에 이르러 모두루 역시 이러한 선대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영북부여수사’로 파견되는 관을 입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등용이 아니라, 북부여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가 현지 유력 가문을 포섭하고, 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모두루묘지」의 파편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고국원왕대 염모의 행적과 관련해 등장하는 반역, 모용선비 등의 표현은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대립

과 경쟁 국면에서 북부여 지역 유력자들의 향배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아마도 고구려가 북부여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부여의 유력 세력이었던 모두루 가문이 고구려에 적극 협력했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정한 통치 권한을 위임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러한 권한은 대를 이어 계승되면서, 북부여 지역의 지배 구조 속에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부여에 대한 수사의 파견은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력이 이미 상당히 공고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늦어도 광개토왕대에는 서쪽으로 이동해 명맥을 유지하던 부여에 대해서도 고구려의 정치적·군사적 강제력이 일정 부분 미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sup>88</sup> 더 나아가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410년(영락 20)에 동부여 지역에 반독자적 세력으로 잔존해 있던 부여계 정치 집단 역시 완전히 고구려의 지배 질서 아래로 통합되었다. 이는 고구려가 부여의 전통적 판도를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도 이를 자국의 지배 체제 속에 편입시켰음을 의미한다.

## 2. 고구려 국가 체제의 부여 유산

고구려와 부여의 역학 관계 변화는 고구려 왕실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왕실의 신성성과 통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건국설화가 새롭게 정립되었다. 이는 소수림왕대의 체제 정비와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sup>89</sup> 4세기 이후 고구려가 ‘구부여’를 판도에 넣게 된 사실이 설화 재정립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주몽의 이주 후 400년이 지

88 당시 북부여수사의 관할 범위가 부여의 원래 거점인 길림 방면 외에도 “西徙近燕”한 농안 방면의 부여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안정준, 2009, 「4~5세기 高句麗의 영역 지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27쪽).

89 盧泰敦, 1993,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 『韓國古代史論叢』 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57쪽.

난 시점에서 이미 쇠락한 부여를 계승한다는 의식만으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존재한다.<sup>90</sup> 그러나 부여를 시조의 출자지로 표방한 것은, 부여(혹은 부여의 동명)를 계승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부여를 고구려의 판도 내에 편입시키고 시조 주몽에게 직접 ‘동명’의 위상을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sup>91</sup>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고구려 초기 왕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여 계통의 정치 세력으로 출발해 고구려 왕위를 차지한 계루부 왕실은, 기존 구성 집단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기 위해 왕실의 권위와 신성성을 강조해야 했다. 이는 부여 계통 세력들에게 신앙의 대상이자 시조신이었던 ‘동명’을 숭배하고 계승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sup>92</sup> 이들은 동명 계승을 통해 건국의 정당성을 내세웠으며, 이를 주변 부여계 집단을 아우르는 통치 기제로 활용했다. 따라서 3세기 중엽까지 고구려 왕실의 출자 인식은 “시조가 부여로부터 왔다”는 것보다, “시조가 동명을 계승하였다”는 것이 실상에 가까웠다.<sup>93</sup>

하지만 3세기 말에서 4세기를 거치며 고구려 왕실은 동명형의 건국설화를 확립했고, 시조 주몽에게 동명의 지위를 직접 부여함으로써 그 자체로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부여를 건국 초기부터 고구려에 종속된 존재로 위치 지으면서 더 이상 동명 계승을 내세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부여 계승 의식은 부여를 단순히 주몽의 출신지로 내세우는 정도의 흔적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sup>94</sup>

90 朱甫墩, 1999, 「書評: 盧泰敦 著《고구려사 연구》-(서울: 사계절, 1999)-」, 『歷史學報』 164, 383~384쪽.

91 장병진, 2016, 앞의 글, 232쪽.

92 盧明鎬, 1989, 「百濟 建國神話의 原形과 成立背景」, 『百濟研究』 20,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58쪽.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왕실의 계통에서 부여와의 관련성을 보이는 백제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만, 백제의 기원과 건국설화에 대한 이해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유사성 외에 고구려와는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93 장병진, 2016, 앞의 글, 223~226쪽.

이러한 인식의 완성은 금석문을 통해 실증된다. 「광개토왕릉비」는 북부여에서 졸본으로의 이동을 ‘위협에 따른 탈출’이 아니라 “**명가**(命駕) 순행남하(巡幸南下)”로 묘사하며, 북부여를 이미 고구려 영토의 일부로 인식했음을 드러낸다.<sup>95</sup> 또한 동부여에 대해서도 “구시추모왕속민(舊是鄒牟王屬民)”이라고 명시하면서 고구려의 역사적 종주권을 강조했다. 「모두루묘지」 역시 북부여를 추모성왕의 ‘소생지(所生之地)’로 표현했고,<sup>96</sup> 북부여를 포함한 국군(國郡)을 추모성왕 이래로 다스려 왔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태도는 일찍이 동명 계승을 표방함으로써 ‘부여별종’으로 인식되던 시기의 부여 인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늦어도 「광개토왕릉비」가 세워진 시점(414)에는 주몽을 건국주로 하는 고구려 중심의 동명형 건국설화가 확고히 성립되었음이 분명하다.<sup>97</sup>

고구려의 지배 아래 명맥을 유지하던 부여는 5세기 후반 물길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존립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다. 마침내 문자명왕 3년(494), 부여왕이 왕비와 왕자를 이끌고 고구려에 항복함으로써 부여는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sup>98</sup> 이 과정에서 부여의 지배층과 주민 대다수는 고구려 사회로 흡수·재편되었다. 한편, 일부 세력은 북방으로 이동해 두막루와 같은 새로운 정치 집단을 형성하기도 했다.

부여가 고구려의 지배 아래 편입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부여 지배층이 해체되어 피지배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중앙 귀족으로 적극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무신왕이 부여왕의 종제를 왕으로 봉해 연나부에 안치한 사례나(㉗), 갈사왕손 도두에게 우태 관등을 수여한 사례(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더 나아가 대무신왕이 갈사왕의 손녀와 혼인한 사실<sup>99</sup>은 양국

94 장병진, 2016, 위의 글, 232쪽.

95 이승호, 2011,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천제지자(天帝之子) 관념 형성의 사적(史的) 배경」, 『역사와 현실』 81, 106~107쪽.

96 「牟頭婁墓誌」, “河泊之孫 日月之子 所生之地 來**北夫**餘大兄冉牟.”

97 장병진, 2016, 앞의 글, 226쪽.

98 『三國史記』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왕 3년 2월.



지배층 간의 긴밀한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태조왕대에 수렴청정을 한 모후가 부여계 인물이었다는 점(88)은, 부여계 집단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중앙 권력의 최상층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아마도 계루부 왕실 자체가 부여계 집단에서 기원한 사실이 이러한 통합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부여계 세력 집단이 고구려 왕실과 지배층의 핵심 성원을 형성함에 따라, 부여의 전통은 고구려의 국가 체제 전반에 깊이 반영되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관등제는 부여와 마찬가지로 가(加)와 사자(使者)를 축으로 분화·발전했으며, 정비 과정에서도 부여계 위호를 중심으로 체제가 일원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초기 최고위 관등이었던 ‘대로(對廬)’와 ‘패자(沛者)’의 위상 변화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4세기 이후 패자라는 관등이 기록에서 사라진 것과 달리, 대로는 고구려 후기까지 최상위 관등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했다. 성격이 유사했던 두 관등 중 대로만 살아남은 것은 계루부의 위호를 중심으로 관등 체계가 통합되었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패자가 개별 ‘나(那)’ 또는 그 예하 대가급 수장층의 위호에서 기원한 것이라면, 대로는 국왕과 밀접한 계루부 핵심 수장층의 위호였을 가능성이 크다.<sup>100</sup> 기존 연구에서 패자를 각 나부와, 대로를 계루부(왕도의 방위부)와 관련 지어 파악해온 것<sup>101</sup>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계루부가 부여 계통의 정치체에서 기원한 것과 관련해 일찍이 ‘~루(婁)’의 어미가 부여 계통의 명칭이라는 견해가 있었다.<sup>102</sup> 실제로 고구려 광개토왕이

99 『三國史記』 권14,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15년. 대무신왕은 갈사왕의 손녀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 호동왕자를 낳았다.

100 대로는 왕권의 강화와 발맞추어 왕의 직속 관료군인 주부가 상향 분화해 탄생한 관등이자, 대주부와 동일한 실체였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조영광, 2015, 「고구려 초기 관등의 기원과 성격에 대하여」, 『사학연구』 119).

101 尹成龍, 1997, 「高句麗 貴族會議의 成立過程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11, 327~334쪽;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125~125쪽.

102 盧重國, 1988, 앞의 책, 71~74쪽.



동부여를 복속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미구루(味仇婁), 타사루(柁社婁) 등의 세력<sup>103</sup>이나 북부여의 계승을 표방한 두막루(豆莫婁),<sup>104</sup> 혹은 달말루(達末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광개토왕이 동부여를 평정한 후 개설했을 때, 모화(慕化)해 따라온 자들이 공통으로 ‘압로(鴨盧)’를 칭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미구루압로(味仇婁鴨盧)’, ‘비사마압로(卑斯麻鴨盧)’, ‘타사루압로(柁社婁鴨盧)’, ‘숙사사압로(肅斯舍鴨盧)’, ‘□□□압로(鴨盧)’의 다섯 압로가 확인되는데, 각각 동부여를 구성한 주요 세력 집단으로서 미구루, 비사마, 타사루, 숙사사 등이 있었고, 압로는 각 세력의 수장들이 칭하던 위호였을 것으로 이해된다.<sup>105</sup> 계루부 고유의 위호로 짐작되는 대로와 동부여 수장층의 위호로 사용된 ‘압로’가 모두 ‘~로(盧)’의 어미를 갖는 사실은 ‘부여’라는 공통 분모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태 관등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태는 패자나 대주부보다는 하위였지만, 국상이나 중외대부에 임명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지닌 관등이었다. 우태 관등의 기원을 논의하는 데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것이 백제 건국에 대한 이전(異傳)의 내용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즉위기사의 세주(細註)에는 졸본의 소서노가 주몽과 혼인하기 전에 북부여왕 해부루의 서손(庶孫) 우태와 혼인해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는 전승이 전해진다.<sup>106</sup> 여기서 졸본 지역 부여계 유력자의 인명으로 고구려 관등명과 같은 우태라는 동일한 명칭이

103 「廣開土王陵碑」, “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柁社婁鴨盧 肅斯舍鴨盧 □□□鴨盧.”

104 『魏書』 권100, 열전88, 두막루, “豆莫婁國 在勿吉國北千里 去洛六千里 舊北扶餘也.”; 『北史』 권94, 열전82, 두막루, “豆莫婁國 在勿吉北千里 舊北扶餘也.”

105 미구루 등은 동부여 지역의 특정 지명이며, 압로는 ‘加’나 ‘干’과 같이 해당 지역 유력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였을 것으로 보인다(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과학원출판사, 207쪽; 盧泰敦, 1989, 앞의 글, 46쪽; 宋鎬最, 1997, 『부여의 정치와 사회』, 『(신편)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206쪽). 한편, 압로에 대해 해당 지역 고유의 집단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武田幸男, 1989, 앞의 책, 65쪽).

106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년 細註.

등장하는 사실이 흥미롭다.

설화 속 인명은 특정 정치체의 명칭이나 고유의 위호 등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sup>107</sup> 특히 해당 전승은 고구려 건국설화와도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또 고구려본기에서 우태 관등을 최초로 수여받은 인물이 부여계 세력인 갈사왕손 도두였다는 사실도 참고된다(⑨). 우태가 집단의 장을 가리키는 일반적 칭호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sup>108</sup> 아마도 부여계 위호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계루부 왕실이 부여계 집단에서 기원한 사실과 관련해 ‘대로’, ‘우태’와 같이 부여계 위호가 관등으로 활용된 측면이 두드러졌다. 우태와 ‘형(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sup>109</sup> 패자가 탈락하고 대로가 지속되는 양상을 포함해 고구려 관등제의 정비는 부여계 위호를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10</sup> 이 밖에도 부여 지배층의 의례와 정치 관행 역시 고구려 전기 국가 운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음식을 먹고 마심에 모두 조두를 사용하고, 회동에서 술잔을 바칠 때 세작하는 예(禮)가 있으며, 읍양해 오르내린다.<sup>111</sup> (『삼국지』 권30, 오환선비동이전, 부여)

3세기 중엽까지 부여의 지배층 사이에서는 주대(周代) 이래의 봉건제 질서

---

107 비류국왕의 ‘송양’의 이름이 곧 ‘소노’와 의미가 상통하는 것이라는 이해가 참고된다.

108 金哲堉, 1956,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90,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34~235쪽.

109 ‘兄’계 관등의 소지자를 족장층으로 이해했던 초기 논의(金哲堉, 1956, 위의 글; 1990, 위의 책, 234~235쪽)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면서, 우태의 고음이 ‘웃치’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등장하는 ‘兄’계 관등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해는 대체로 받아들여진다(조영광, 2015, 앞의 글, 52~54쪽).

110 이상 대로와 우태에 관한 논의는 장병진, 2020, 「고구려 전기의 지배세력 재편과 관등제」, 『韓國古代史研究』 99, 189~192쪽.

111 “食飲皆用俎豆 會同拜爵洗爵 揖讓升降.”

를 반영하는 세작(洗爵), 음양(揖讓) 등 군신 간의 의례가 행해지고 있었다.<sup>112</sup> 중국인 관찰자들이 부여에서 고례(古禮)의 원형을 발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113</sup> 또한 제가(諸加)가 스스로 전투에 임하고,<sup>114</sup> 호민(豪民)들이 스스로 무장(武裝)을 갖추었던 모습<sup>115</sup>은 선진(先秦) 시기 ‘국인(國人)’, 즉 경(卿)·대부(大夫)·사(士)의 역할과 궤를 같이한다. 즉, 부여는 선진 시기 봉건 질서를 토착 화해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치·사회적 전통은 고구려 전기의 국정 운영 원리와도 긴밀히 맞닿아 있었다.<sup>116</sup>

고구려 전기의 국정 운영은 집권적 관료제가 아닌, 봉건제적 합의와 분장(分掌)의 원리 위에서 전개되었다. 체계적인 관서 조직이 미비한 상황에서 대가가 국정을 분장하고, 그 휘하의 가신 조직이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가 유지되었다. 국왕은 정치권력의 구심점으로서 관등을 수여하고 국정을 주재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제가의 합의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지』 동이전 등에 기록된 회의체나 동맹(東盟)과 같은 국가적 의례는 이러한 합의적 국정 운영의 실상을 방증한다.<sup>117</sup>

고구려 관제는 관료제적 성격과 더불어 작제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3세기 중엽 고구려의 중앙 관제는 선진(先秦) 시기의 작제 질서와 유사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었다.<sup>118</sup> 고구려의 관등이 작제 성격을 지녔음은 누차 지적된 바 있다.<sup>119</sup> 사료에 빈번히 보이는 ‘가작(加爵)’·‘진작(進爵)’의 표

112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해안, 152~153쪽.

113 『三國志』 동이전의 서문에서 “雖夷狄之邦 而俎豆之象存 中國失禮 求之四夷猶信”라고 언급한 사실 역시 상징적 수사로서가 아니라 중국인 관찰자가 3세기 중반의 부여, 고구려 등의 정치, 사회상을 바라본 결과로 이해된다.

114 『三國志』 권30, 오환선비동이전, 부여, “有敵 諸加自戰”

115 『三國志』 권30, 오환선비동이전, 부여, “家家自有鎧仗”

116 장병진, 2025, 「고구려 전기 국정 운영에 관한 小考」, 『白山學報』 133, 19쪽.

117 장병진, 2025, 위의 글, 13~17쪽.

118 하일식, 2006, 앞의 책, 133쪽.

119 노태돈, 1999, 앞의 책, 154쪽.

현은 고구려의 관등이 단순한 위계 표시를 넘어,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려준다.<sup>120</sup> 이러한 양상은 선진 시기 경·대부가 작을 기반으로 사도(司徒), 사마(司馬), 사공(司空) 등의 핵심 직무를 담당하고 휘하 인원을 임의로 선발했던 정치 원리<sup>121</sup>와 궤를 같이한다. 이는 고구려 관제가 작을 중심으로 한 봉건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 제도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고조선과 부여 등 선행 국가의 정치 전통이 계승·변용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고조선과 부여를 매개로 전승된 선진 시기 이래의 정치 전통이 고구려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재해석된 결과인 것이다. 계루부 왕실이 부여계 세력에서 기원했고, 고구려의 발흥지 일대에도 부여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집단들이 산재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고구려 사회 내에서 부여계 주민들은 단순한 피복속 집단이 아니라 국가 성립과 체제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핵심 구성원이었다. 요컨대 부여의 유산은 고구려 건국설화의 재구성을 넘어, 국가 운영 체제의 기틀로서 지속되고 변용되었던 것이다.

## IV. 맺음말

이 글은 고구려의 ‘부여 계승’을 신화적 상징이나 정치적 수사로만 파악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고구려가 부여를 어떤 역사적 실체로 인식했으며 그

120 관직 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의 중국에서는 爵制를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했고, 卿·大夫의 爵이 ‘軍將’과 같은 특정한 직능을 포함하기도 했다. 반대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爵이 수반되어야 했다. 국내의 卿·大夫는 국정의 실질적인 집행자이면서 국정의 논의 과정(議論)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았다(閔厚基, 2000, 『戰國 秦의 爵制 연구 - 爵制에서 官僚制로서의 이행을 중심으로 -』, 『東洋史學研究』 69, 7~11쪽; 하일식, 2006, 앞의 책, 138쪽).

121 민후기, 2006, 『春秋시대의 爵, 官, 軍 - 一體論 - 位階, 官職, 軍職 미분리 상태의 國家運營論』, 『中國學報』 54.

인식이 실제 국가 성립과 체제 정비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고구려의 부여 인식은 국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 고구려가 부여계 원조(元祖)로서 동명의 계승을 표방하며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국가 체제가 공고해진 5세기 전후에는 자국의 시조인 주몽에게 동명의 위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서술을 전환했다. 이는 고구려가 부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시조 주몽을 정점으로 하는 독자적인 건국 전승과 천하관을 확립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료상에 나타나는 ‘복수의 부여’를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 이 글은 길림 방면의 북부여와 고구려 동북방의 동부여를 실체적으로 구분해 파악했다. 3세기 말 모용씨의 침공으로 부여의 중심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구려는 부여의 종래 거점을 장악하고 현지 유력 세력을 포섭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실질적으로 관철시켰다.

부여의 통합은 단순한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 국가 체제의 제도적 정비로 이어졌다. 부여의 지배층은 고구려의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어 혼인과 관등 수여를 통해 지배층의 핵심 성원이 되었다. 또한 대로나 우태와 같은 관등 명칭, 그리고 부여의 정치·의례 관행 등은 고구려의 관제와 정치 운영 원리 속에 선택적으로 수용되어 재편되었다. 결론적으로 고구려의 ‘부여 계승’은 부여라는 정치체와 그 지배층, 제도적 전통이 고구려 국가 체제 속으로 흡수·재편된 실제적인 역사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國李相國集』.

『論衡』, 『三國志』, 『後漢書』, 『晉書』, 『魏書』, 『梁書』, 『北史』, 『資治通鑑』.

「集安高句麗碑」, 「廣開土王陵碑」, 「牟頭婁墓誌」, 「高慈墓誌銘」, 「泉男産墓誌銘」

### 단행본

金哲竣, 1990,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과학원출판사.

朴漢濟, 1988, 『中國胡漢體制研究』, 一潮閣.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안정준, 2024, 『고대 동아시아의 이주와 고구려 -고구려의 중국계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 역사비평사.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李丙燾, 1959,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李弘植,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李成市,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 논문

- 姜賢淑, 1999, 「高句麗 積石塚의 登場에 대하여」, 『京畿史學』 3.
- 권오중, 2005, 「遼東郡 中部都尉와 高句麗의 新城」,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재단.
- 金基興, 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韓國史研究』 113.
- 김미경, 2007, 「高句麗 前期의 對外關係 研究」,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金庠基, 1964, 「國史上에 나타난 建國說話의 檢討」, 『學術誌』 5, 建國大.
- 金瑛河,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 金廷鶴, 1948, 「朝鮮神話의 科學的 考察(一); 太陽神과 宇宙卵說話」, 『史海』 1.
- 金哲堧, 1956,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 盧明鎬, 1981,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10.
- , 1989, 「百濟 建國神話의 原形과 成立背景」, 『百濟研究』 20,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 盧泰敦, 1989, 「夫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4.
- , 1993,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의 起源」, 『韓國古代史論叢』 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 閔厚基, 2000, 「戰國 秦의 爵制 연구 -爵制에서 官僚制로서의 이행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69.
- 민후기, 2006, 「春秋시대의 爵, 官, 軍 一體論 -位階, 官職, 軍職 미분리 상태의 國家運營論」, 『中國學報』 54.
- 박경철, 1992, 「扶餘史 展開에 關한 再認識 試論」, 『白山學報』 40.
- 박세이, 2014, 「4세기 慕容鮮卑 前燕의 성장과 고구려의 대응」, 『韓國古代史研究』 73.
- 宋基豪, 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韓國古代史研究』 37.
- 宋鎬最, 1997, 「부여의 정치와 사회」, 『(신편)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안정준, 2009, 「4~5세기 高句麗의 영역 지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梁起錫, 1981, 「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對하여」, 『史學志』 15.
- 余昊奎,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南道와 北

- 道を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91.
- \_\_\_\_\_, 1996a,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신편)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6b, 「압록강 중류유역에서 고구려의 국가 형성」, 『역사와 현실』 21.
- \_\_\_\_\_, 2011, 「高句麗의 種族起源에 대한 일고찰 - 夫餘別種說과 貊族說의 정합적 이해를 중심으로 -」, 『史林』 38.
- \_\_\_\_\_, 2012, 「4세기-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67.
- 吳江原, 2014, 「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금속제 이식의 시공간성과 제작 방식」, 『湖南考古學報』 48.
- 王綿厚, 2008, 「試論桓仁“望江樓積石墓”與“卒本夫餘”」, 『초기 고구려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尹成龍, 1997, 「高句麗 貴族會議의 成立過程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11.
- \_\_\_\_\_, 2005, 「고구려 建國神話와 祭儀」, 『韓國古代史研究』 39.
- 윤용구, 2008, 「『삼국지』 부여전의 문헌적 검토」,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李道學, 1991, 「方位名 夫餘國의 성립에 관한 檢討」, 『白山學報』 38.
- \_\_\_\_\_, 2007, 「高句麗의 夫餘 出源에 관한 認識의 變遷」, 『고구려발해연구』 27.
- 이승호, 2011,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천제지자(天帝之子) 관념 형성의 사적(史的) 배경」, 『역사와 현실』 81.
- \_\_\_\_\_, 2012, 「3세기 후반 『晉高句麗率善』印과 高句麗의 對西晉 관계」, 『韓國古代史研究』 67.
- \_\_\_\_\_, 2018, 「夫餘 政治史 研究」,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新全, 2005, 「五女山山城及其周圍的高句麗早期遺迹」,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 李椿浩, 2010, 「五胡時期 慕容前燕의 建國과 그 性格 -『勤王』의 出現 및 그 運用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13.
- 이한상, 2013a, 「김포 운양동유적 출토 금제이식에 대한 검토」, 『김포 운양동유적Ⅱ (2권)』, 한강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 \_\_\_\_\_, 2013b, 「耳飾으로 본 古代 東北아시아 各國 사이의 交流」, 『百濟文化』 49.
- 이흥직, 1959, 「고구려의 흥기」, 『국사상의 제문제』 4·5, 국사편찬위원회.
- 임기환, 1998, 「4~6세기 중국사서에 나타난 한국고대사상」, 『韓國古代史研究』 14.



- \_\_\_\_\_, 2006, 「고구려본기 전거 자료의 계통과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42.
- \_\_\_\_\_, 2016, 「고구려 건국전승의 始祖 出自와 北夫餘, 東夫餘」, 『高句麗渤海研究』 54.
- 장병진, 2016, 「고구려 출자 의식의 변화와 「集安高句麗碑」의 건국설화」, 『人文科學』 106,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_\_\_\_\_, 2019a, 「고구려본기의 부여 관계 기사와 ‘동부여’의 실체」, 『사학연구』 136.
- \_\_\_\_\_, 2019b,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0, 「고구려 전기의 지배세력 재편과 관등제」, 『韓國古代史研究』 99.
- \_\_\_\_\_, 2025, 「고구려 전기 국정 운영에 관한 小考」, 『白山學報』 133.
- 全德在, 2016,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原典과 完成 - 광개토왕대 이전 기록을 중심으로 -」, 『東洋學』 64.
- 조영광, 2010, 「고구려 5那部の 성립과정과 영역 검토」, 『大丘史學』 98.
- \_\_\_\_\_, 2015, 「고구려 초기 관등의 기원과 성격에 대하여」, 『사학연구』 119.
- 朱甫暉, 1999, 「書評: 盧泰敦 著《고구려사 연구》-(서울: 사계절, 1999)-」, 『歷史學報』 164.
- 安文榮·唐音, 2008, 「鴨綠江右岸雲峰水庫淹沒區古墓葬調查與發掘」, 『2007 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4-2.
-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5-9.
- 白鳥庫吉, 1936, 「夫餘國の始祖東明王の傳説に就いて」, 『服部先生古稀祝賀記念論文集』(1970, 『白鳥庫吉全集』5, 岩波書店 재수록)
- 李成市, 1984, 「『梁書』高句麗傳と東明王」, 『中國正史의基礎的研究』, 早稻田大學出版部.
- 田村晃一, 1990, 「高句麗の積石塚」, 『東北アジアの考古學』, 六興出版.
- 池内宏, 1930, 「夫餘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3(1951, 『滿鮮史研究 - 上世 第1冊 -』, 吉川弘文館 재수록).
- \_\_\_\_\_, 1940, 「高句麗王家の上古の世系について」, 『東洋學』 3(1951, 『滿鮮史研究

-上世 第1冊-』, 吉川弘文館 재수록).

\_\_\_\_\_, 1941, 「高句麗の建國傳説と史上の事實」, 『東洋學報』 28-2(1951, 『滿鮮史  
研究 -上世 第1冊-』, 吉川弘文館 재수록).

津田左右吉, 1922,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 『滿鮮地理歴史報告』 9.

## 고구려의 ‘부여’ 계승과 그 실체

장병진

이 글은 고구려의 부여 계승을 신화적 허구나 후대적 정치 수사로 환원하는 기존의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구려가 부여를 어떠한 역사적 대상으로 인식했으며 그 인식이 국가 성립과 체제 정비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고구려 건국설화에 나타난 부여 출자 전승의 성격을 검토하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중국 사서, 광개토왕릉비와 모두루묘지 등 금석문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 고구려가 말한 ‘부여’는 단일한 정치체를 일관되게 지시한 개념이 아니라, 시기와 맥락에 따라 북부여와 동부여 등 서로 다른 정치적 실체와 기억의 층위를 포괄하는 인식틀로 작동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3~5세기에 걸친 부여의 쇠망과 고구려의 북방 진출 과정 속에서, 부여계 정치 세력과 주민 집단은 단계적으로 고구려의 지배 질서에 흡수·통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여의 정치·제도적 전통은 고구려 국가 체제의 재편과 고도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논증했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부여’ 계승은 단순한 계보적 주장이나 설화적 표상이 아니라, 역사적 변동 속에서 형성된 인식과 통합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제시했다.

**주제어:** 고구려, 부여, 동부여, 북부여, 출자, 계승

## ABSTRACT

# The Buyeo Succession of Goguryeo and Its Historical Reality

Jang Byungjin

This article critically reexamines prevailing interpretations that reduce Goguryeo's "Buyeo succession" to a mythological fiction or a later political rhetoric, and analyzes how Goguryeo perceived Buyeo as a historical entity and how this perception was concretized in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and institutional consolidation. To this end, it examines the character of the Buyeo-origin tradition embedded in Goguryeo's foundation myths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oguryeo Annals of the Samguk sagi, Chinese historical records, and epigraphic materials such as the Gwanggaeto Stele and the Moduru epitaph.

As a result,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Buyeo" referred to by Goguryeo did not consistently denote a single political entity, but rather functioned as a conceptual framework encompassing different political realities and layers of memory-such as Northern Buyeo and

Eastern Buyeo-depending on period and context. It further argues that, amid the decline of Buyeo from the third to the fifth centuries and Goguryeo's northward expansion, Buyeo-affiliated political groups and populations were gradually absorbed and integrated into Goguryeo's ruling order, and that Buyeo's political and institutional traditions exerted a certain influence on the reorganization and advancement of the Goguryeo state system. In this regard, the "Buyeo succession" of Goguryeo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simple genealogical claim or a symbolic narrative, but as a historically grounded process of perception and integration formed through dynamic historical change.

**Keywords:** Goguryeo, Buyeo, Eastern Buyeo, Northern Buyeo, Origin, Succession

# 백제 부여씨 왕실의 기원과 부여계 이주민

이장웅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강사

- I. 머리말
- II. 3세기 초 구태 건국 전승의 부여 출자와 대방
- III. 3세기 중반 마한 백제국(百濟國)의 성장과 낙랑, 대방인의 이주
- IV. 4세기 중국 기록에 '백제(百濟)'의 등장과 부여계 이주민
- V. 5세기 이후 중국 사서에서 백제 왕실의 부여 기원에 대한 인식
- VI. 맺음말



## I. 머리말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부여에서 내려온 비류와 온조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들에 의해 건국되어 왕실은 ‘부여씨(扶餘氏)’를 칭하였으며, 부여의 시조 동명(東明)을 모신 동명묘에 국가 제사를 지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에는 북부(北部)의 해루(解婁)가 본래 부여인(扶餘人)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sup>1</sup> 백제에는 부여씨 왕실 외에도 ‘해씨(解氏)’를 비롯한 다양한 부여계 집단들이 존재하였다. 개로왕은 472년 북위에 보낸 국서에서 백제가 부여에서 나왔음을 밝혔고, 성왕은 538년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면서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로 바꾸었으며, 백제 멸망 후 일본으로 이주한 백제계 성씨의 상당수도 부여에서 개국한 도모(都慕=동명)의 후손이라는 혈통 인식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보면, 백제는 건국부터 멸망 이후까지 꾸준히 부여 출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백제의 왕을 뜻하는 칭호가 왕실에서는 부여계 지배자를 의미하는 ‘가(加)’와 음운이 상통하는 ‘어라하(於羅瑕)’였지만 백성들은 한어계 지배자를 의미하는 ‘길사(吉師)’나 ‘한기(旱岐)’와 상통하는 ‘견길지(健吉支)’였다는 기록으로 보아,<sup>2</sup> 백제사를 부여계 지배층과 토착 마한계 피지배층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이중성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sup>3</sup> 백제가 위례성(한성)에서 건국된 이후 남쪽 마한 지역으로 지배력을 넓히면서 그들을 아우르기 위해 정체성을 부

\* 투고: 2026년 1월 13일, 심사 완료: 2026년 2월 7일, 게재 확정: 2026년 2월 13일

1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41年, “春正月 右輔乙音卒 拜北部解婁爲右輔 解婁本扶餘人也.”

2 『周書』卷49 列傳41 異域 上 百濟, “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呼爲健吉支 夏言竝王也 妻號於陸 夏言妃也.” 이에 대해서는 노중국, 2018, 『백제 정치사』, 일조각, 48쪽 참조.

3 李基東, 1996, 「백제사의 특성」, 『百濟史研究』, 一潮閣, 2쪽.

여제에서 마한계로 변화시켰다는 견해도 있다.<sup>4</sup> 부여계 집단이 마한 지역에서 성장을 이룬 백제의 모습은 “백가가 바다를 건넜다(百家濟海)”는<sup>5</sup> 뜻을 가졌다 는 ‘백제(百濟)’라는 국호에 대한 인식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종 사서에 백제 왕실이 부여에서 유래하였다고 기록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백제 지역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물질 문화인 고분, 주거지, 토기의 형태로 보면 부여와 백제의 직접 관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sup>6</sup> 이 견해에서는 한반도 중부 지역의 물질 문화가 두만강과 연해주 일대의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와 더 관련이 있으며, 백제를 구성한 다수의 주민은 청동기시대부터 경기-충청-전라 지역에서 성장해온 토착 집단이라는 점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존에 백제의 출자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았던 임진강과 남한강 일대의 적석묘도 부여나 고구려 지역의 적석총과 직접 연결시켜 보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으며, 서울 석촌동의 적석총 이전에 만들어진 집단 토광묘 역시 통화 만 발발자 유적의 집단 토광묘와 연결시키려는 견해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sup>7</sup> 따라서 고고학적으로 백제의 부여 계승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필자는 백제가 다수의 토착 마한계 주민들로 구성되었음에도 지배층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출자를 부여로 인식하면서 이를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삼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백제와 고구려가 끊임없이 경쟁을 지속한 이유도 부여를 계승했다는 정통성이 서로 자신의 나라에 있음을 주장한 이데올로기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백제는 내부의 다양한 부여계 집단과 토착 마한계 집단을 함께 아우르면서

4 김기홍, 2004, 「백제의 正體性에 관한 일 연구」, 『역사와 현실』 54.

5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百濟, “東明之後 有仇台者 篤於仁信 始立其國于帶方故地 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 漸以昌盛 爲東夷強國 初以百家濟海 因號百濟.”

6 권오영, 2018, 「백제와 부여의 계승성 여부에 대한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61.

7 이종수, 2021, 「통화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 『東北亞歷史論叢』 71.



중국과 일본은 물론 북방 유목 민족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대외 교류를 매우 활발히 펼쳤으며, 빠르게 흡수한 외부 문화를 백제화하여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이에 따라 백제의 영토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였으니,<sup>8</sup>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선구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백제 부여씨 왕실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사서의 건국 전승에 대한 논의에서 조금 벗어나, 북방 부여사의 흥망과 연관된 요서와 화북 지역 왕조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부여계 이주민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 ‘이주’ 혹은 ‘이민’이라는 용어에는 들어오는 ‘immigration’과 나가는 ‘emigration’의 개념이 통합되어 있다.<sup>9</sup>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이주가 한쪽으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후한 말의 혼란과 위·촉·오 삼국으로의 분립, 서진의 짧은 통일과 이어진 남북조 시대의 지방 분권적인 모습은 북방 민족들의 대이동을 불러오게 되었고, 그러한 파동은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이 시기에 고구려로 들어온 이주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 성과가 있다.<sup>10</sup> 하지만 백제에 대해서는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sup>11</sup> 북방 부여국과 관련된 이주민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요서 정착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한반도에 자

8 『隋書』卷81 列傳46 東夷 百濟, “其人雜有新羅高麗倭等 亦有中國人.”

9 조운재, 2025, 「백제의 중국계 이주민과 고고자료에 대한 인식」, 『百濟研究』 82, 60~62쪽.

10 안정준, 2024, 『고대 동아시아의 이주와 고구려-고구려의 중국계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 역사비평사.

11 윤용구, 2007, 「중국계 관료와 그 활동」, 『百濟의 對外交涉(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재운, 2012,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사충』 77; 백길남, 2015, 「4-5세기 百濟의 中國系 流移民의 수용과 太守號」, 『동방학지』 17; 김영심, 2022, 『백제의 이주지식인과 동아시아 세계』, 지식산업사.

리했던 백제의 요서 진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이었다.<sup>12</sup> 이에 이 글에서는 모용 선비에 의해 요서 지역으로 사민되었던 부여계 집단이 백제 왕실에 들어왔을 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3세기 초 구태 건국 전승을 통해 부여계 집단의 이동과 후한 공손씨가 설치한 대방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Ⅲ장에서는 3세기 중반 마한 백제국(百濟國)의 성장과 낙랑, 대방인의 이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Ⅳ장에서는 4세기 중국 기록에 ‘백제(百濟)’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요서와 화북 지역의 여러 왕조에 존재했던 부여계 이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Ⅴ장에서는 5세기 이후 중국 사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제 왕실의 부여 기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 Ⅱ. 3세기 초 구태 건국 전승의 부여 출자와 대방

백제의 시조로 기록된 인물은 국내 사서에 보이는 온조(溫祚)와 비류(沸流) 형제 외에도 동명(東明), 도모(都慕), 우태(優台), 구태(仇台) 등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복잡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같은 국내 사서에는 부여·고구려(졸본부여)와의 관계 속에서 온조와 비류가 기원전 1세기에 백제를 건국한 것으로 기록하였지만,<sup>13</sup> 중국 사서에서는 부여 동명의 후손인 시조 구태가 2세기 말 3세기 초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백제를 건국한 것으로 보았다.<sup>14</sup> 한편, 일본 사서에는 백제의 태조(太祖)가 부여에서 개국한 도모대왕(都慕大王)이라고 전한다.

12 姜鍾薰, 1992, 「백제 대륙진출설의 제문제」, 『韓國古代史論叢』 4; 余昊奎, 2001, 「百濟의 遼西進出說 再檢討」, 『진단학보』 91; 박남수, 2019, 「고구려·백제의 遼河 유역 진출과 對中 交易」, 『한국고대사탐구』 32.

13 이장웅, 2008, 「百濟 系統 資料로 본 卒本扶餘의 東明神話」, 『白山學報』 81.

14 이장웅, 2016, 「百濟 始祖 仇台·沸流 傳承의 성립과 高句麗·公孫氏 관계」, 『百濟文化』 55.

이처럼 복잡한 백제 건국 전승을 모두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모두 부여와 관련된 이주민들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백제 당시에는 온조나 비류가 제사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여의 시조인 동명묘 제사가 중시되었고,<sup>15</sup> 그러한 부여 동명의 후손인 구태묘 제사 역시 시조묘로 중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이 장에서는 국내 사서의 온조와 비류 관련 기록은 잠시 접어두고, 중국 기록에서 인식한 3세기 초 구태 건국 전승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백제 지배 집단 속에 후한 공손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여계 이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A-①. 永寧 元年(120)에 嗣子 尉仇台를 보내 궁궐에 와서 朝貢을 바치므로 天子가 尉仇台에게 印綬와 金綵를 주었다. 順帝 永和 元年(136)에 그 왕이 京師에 와서 조회하므로, 帝는 黃門鼓吹와 角抵戲를 행하여 보냈다. (『後漢書』 卷85 東夷列傳75 夫餘國)

A-②. 夫餘는 본래 玄菟에 속했는데 漢末에 公孫度가 海東에서 세력을 확장하여 外夷들을 위력으로 복속시키자 夫餘王 尉仇台는 遼東으로 바꾸어 속하였다. 이때 句麗와 鮮卑가 강성했으므로 공손도는 부여가 두 오랑캐 사이에 있다는 이유로 宗女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 (『三國志』 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A-③. 백제는 그 先代가 대체로 馬韓의 속국이며 夫餘의 別種이다. 仇台라는 자가 처음으로 帶方故地에 나라를 세웠다. … 또 해마다 네 번씩 그 始祖 仇台廟에 제사한다.<sup>16</sup> (『周書』 卷49 列傳41 異域 上 百濟)

15 盧明鎬, 1981,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墓-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10.

16 『周書』 卷49 列傳41 異域 上 百濟,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 有仇台者 始國於帶方故其地界 … 又每歲四祠其始祖仇台之廟.” 여기서 “帶方故其地界”를 “帶方故地其界”가 도치된 것으로 보면, 『隋書』의 “帶方故地”와 같은

A-④. 東明의 후손에 仇台라는 자가 있으니, 어질고 信義가 두터웠다. 帶方故地에 처음으로 그 나라를 세웠다. 漢의 遼東太守 公孫度が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점차 이로써 번창하여 東夷 強國이 되었다. 처음에 百家가 바다를 건넜으므로, 이로 인하여 百濟라 이름하였다. 10여 대 동안 대대로 中國의 신하가 되었으니, 前史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國城에 그 始祖 仇台廟를 세우고, 해마다 네 번씩 제사한다. (『隋書』 卷81 列傳46 百濟)

백제의 시조로 나타나는 구태와 관련하여 A-①의 『후한서』 부여국전에서는 위구태(尉仇台)가 120년에 후한의 궁성을 방문한 부여의 사자(嗣子)로 기록되었고, A-②의 『삼국지』 부여전에서는 부여왕(夫餘王) 위구태(尉仇台)가 2세기 말 3세기 초에 요동 태수 공손도(公孫度, 재임 189~204)의 종녀(宗女)와 결혼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A-③의 『주서』에서는 백제를 마한의 속국이며 부여의 별종(別種)으로 구태(仇台)가 대방고지(帶方故地)에 세운 나라로 인식하면서 그 시조 구태묘에 해마다 네 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A-④의 『주서』에서는 동명의 후손인 구태가 대방고지에서 백제를 건국하고 후한 요동태수 공손도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국성(國城)에 그 시조 구태묘를 세우고 해마다 네 번씩 제사한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서 A-①의 2세기 전반에 활동한 ‘부여 사자(嗣子) 위구태’와 A-②의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활동한 ‘부여왕 위구태’를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고구려어에서 유사하다는 의미로 ‘위(位)’ 또는 ‘위(尉)’를 접두사로 붙였다는 점에서, 2세기 전반의 위구태는 ‘구태’였고, 2세기 말 3세기 초 부여왕의 이름을 그와 닮았다는 의미로 ‘위구태’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17</sup> 두 위구태

기록이 된다는 점에서(김성한, 2014, 「百濟의 건국과 仇台」, 『歷史學研究』 56, 92쪽), 이 수정안을 따른다.

보다 앞선 시기에 원조 구태(우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구태(仇台)’는 고구려 관명(官名)에 등장하는 ‘우태(優台=于台)’와 관련되며,<sup>18</sup> 이는 고구려 내에 있던 부여계 집단을 대표하는 수장의 명칭으로도 쓰였기 때문이다.<sup>19</sup>

또한 A-③의 『주서』에서는 구태가 처음으로 대방고지에 백제를 세웠다고만 하였는데, 이후 A-④의 『수서』에서는 ‘백제 시조 구태’의 행적에 A-②의 『삼국지』에 보였던 ‘부여왕 위구태’와 ‘공손도의 종녀(宗女)’와의 혼인 행적이 덧붙여졌다. 중국사에서 A-②의 『삼국지』 단계에서는 마한에 속한 ‘백제국(伯濟國)’만 인식하였을 뿐 ‘백제(百濟)’는 인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3세기에 실제로 부여계 수장 출신이었던 ‘백제 시조 구태’가 활약하였더라도 그 행적이 ‘부여왕 위구태’의 행적으로 『삼국지』 부여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후한 말 요동군을 지배하던 공손도(재임 189~204)의 아들 공손강(公孫康, 재임 204~221)은 204~207년 사이에 대방군을 설치하고<sup>20</sup> 공손모(公孫模)와 장창(張敞) 등을 보내 유민을 수습하게 하였다.<sup>21</sup> 여기서 공손모는 공손씨 일족으로 유민 수습을 지휘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방 태수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A-②의 『삼국지』에서 부여왕 위구태와 혼인했다고 기록된 ‘공손도의 종녀’가 대방 태수 공손모의 딸이었고, 이후 A-④의 『수서』에서 부여왕 위구태의 행적이 백제 시조 구태 전승에 덧붙여지면서 격을 높여 ‘공손도의 딸’과 혼인한 것으로 변화했다는 견해가 있다.<sup>22</sup> 이로 보면, 요동군과 밀접하게 연결된 대

17 李丙燾, 1976, 「夫餘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219~220쪽.

18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부터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중심 那國에 통합된 那國의 國都 세력을 편제하는 기준으로 작용한 官階라는 견해가 있다(余昊奎, 1992, 「高句麗 初期 那部統治體制的 成立과 運營」, 『韓國史論』 2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52쪽).

19 이장웅, 2016, 앞의 글, 20쪽.

20 권오중, 2011, 「요동 공손씨정권의 대방군 설치와 그 의미」, 『대구사학』 105, 10쪽.

21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建安中(196~220),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방군은 부여나 백제와 깊은 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백제와 대방 사이의 혼인은 뒤에서 살펴볼 B-②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책계왕(재위 286~298)이 즉위 전에 대방왕녀 보과(寶菓)와 혼인했다는 기록과도 관련시켜 볼 수 있다. 구태가 대방 공손씨와 혼인한 것은 3세기 초인 공손도 시기(재임 189~204)이고, 책계왕과 대방왕녀의 혼인은 3세기 중반경이므로, 백제와 대방은 3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지속적인 혼인 동맹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백제는 대방군과 요동군을 통한 황해 연안 항로를 따라 요서 지역을 거쳐 중국 본토와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해도 지역에는 2세기 후반에 완성된 형태의 전축분(塼築墳)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는 공손씨 세력권의 확대와 관련된다고 한다.<sup>23</sup> 요동태수 공손강이 대방군을 설치하면서 주민의 이동과 함께 전축분도 등장한 것이다. 이후 한강 유역에 4세기 중·후반경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백제 횡혈식 석실분의 기원에도 대방 지역 전축분의 영향이 있으며,<sup>24</sup> 여기에 고구려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었다는 연구도<sup>25</sup> 시사하는 바가 크다.

2세기 중·후반에서 4세기 초까지 축조된 한강 하류 지역의 성토 분구묘인 김포 운양동 유적에서는 부여의 유수(楡樹) 노하심(老河深) 유적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의 나선형(螺旋形) 금제 이식(耳飾)이 발견되었고(운양동 1-11지점 12호묘와 2-9지점 1호묘), 부여계 철제 장검(운양동 1-11지점 13호묘와 27호묘)을 비롯한 북방계 유물도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 지역이 백제 왕실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김포를 중심으로 한 한강 하류 지역에서 북방계 유물과 많은 철제 무기가 출토된 것은

22 김성한, 2014, 앞의 글, 89~92쪽.

23 高久健二, 1995, 『樂浪古墳文化研究』, 學研文化社, 188, 219쪽.

24 成正鏞, 2009, 「중부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석실묘의 확산과 그 의미」, 『횡혈식 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25 朴信映, 2019, 「백제 한성기 횡혈식석실묘의 도입과 확산과정」, 『百濟研究』 70, 76쪽.

부여계 집단이 남하하여 이 지역에 정착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후 북한강 유역과 교섭하면서 재지 사회와의 동화 과정을 거쳤다는 견해는<sup>26</sup> 마한과 백제 지역에 다양한 부여계 집단들이 들어와 융화했음을 보여준다.

서울 풍납토성 197번지 나-5호 수혈에서는 부여 계통의 은제 보요형 이식 부속품이 출토되었다. 원형 평면의 U자형 단면을 한 이 폐기 수혈 안에서는 이식 부속품과 함께 기대, 완, 장란형 토기, 시유도기편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청주 오송 유적의 15지점 17호 주구 토광묘에서는 원저(圓底) 단경호(短頸壺), 원저(圓底) 발(鉢), 쇠도끼와 함께 부여계 동병(銅柄) 철검(鐵劍)이 출토되었다. 이는 철검에 청동으로 제작된 돌기가 있는 대나무 마디형 손잡이를 결합하고 손잡이의 끝으로 빠져나온 부분은 옆으로 꺾어 고정시킨 형태인데, 부여의 유수 노하심-서차구 유형에서만 사용된 형식이며, 특히 동병 철검의 손잡이에 돌기가 있는 형식은 노하심 유적에서만 보인다고 한다. 부여의 특정 지역 유물이 한반도의 특정 지역에서 출토되는 모습은 단순한 교역이 아니라 부여계 정체성을 가진 주민들이 이주했음을 보여주며, 노하심 유적과 오송 유적 사이에 연대 차이가 큰 것은 여러 대에 걸쳐 전해지면서 반복 사용된 후에 부장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sup>27</sup>

이러한 모습은 백제 왕실의 중심 집단만이 아니라 김포나 청주 등 한반도 중부 곳곳에 부여계 집단들이 존재하였고, 이들이 점차 백제라는 구심점으로 통합되어갔음을 보여준다.

26 김길식, 2014, 「2~3세기 漢江 下流域 鐵製武器의 系統과 武器의 集中流入 背景 -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무기를 중심으로 -」, 『百濟文化』 50, 155~157쪽.

27 윤정하·강인옥, 2021, 「청주 오송 유적 출토 부여계 동병철검의 의의」, 『한국상고사학보』 112, 46~48쪽.

### Ⅲ. 3세기 중반 마한 백제국(伯濟國)의 성장과 낙랑, 대방인의 이주

조위(曹魏, 220~265)는 238년에 공손씨 정권을 멸망시킨 후 대방태수 유흔(劉昕)과 낙랑태수 선우사(鮮于嗣)를 보내 대방군과 낙랑군을 평정하고, 마한 등 여러 한국(韓國)의 신지(臣智)들에게 읍군(邑君)과 읍장(邑長)의 인수(印綬)를 수여하였다.<sup>28</sup> 이후 246~247년 무렵에는 유주(幽州)의 부종사(部從事) 오림(吳林)이 진한 8국을 분할하여 교섭 창구를 대방에서 다시 낙랑으로 바꾸도록 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의 통역 중 오해가 생기면서 마한의 여러 국(國)들과 중국 군현 사이에 대방군 기리영(岐離營)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sup>29</sup> 이는 조위가 과거 공손씨가 설치했던 대방을 견제하고 다시 낙랑으로 관할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대방태수 궁준(弓遵)과 낙랑태수 유무(劉茂)가 참여한 기리영 전투에서 마한의 여러 국은 궁준을 전사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큰 타격을 입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고이왕이 246년에 조위의 유주자사(幽州刺史) 관구검(毋丘儉)이 낙랑태수 유무, 대방태수 왕준(王遵=弓遵)과 함께 고구려를 정벌하는 틈을 타서 좌장(左將) 진충(眞忠)을 보내 낙랑 변민(邊民)을 습격했다가 돌려보낸 것으로

2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景初中(237~239),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2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幘沾韓忿 攻帶方郡岐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중국 북경의 국가도서관 善本書庫에 소장된 남송대(1127~1279) 3종(蜀刻本·紹興本·紹熙本)의 판본 중 현존 最古의 판본인 蜀刻小字本에 ‘臣幘沾韓忿’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윤용구, 2015, 「3세기 이전 마한백제의 성장과 중국」 『백제의 성장과 중국(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 5)』, 한성백제박물관, 33~35쪽). 기리영 전투에 대한 최근 연구는 이정빈, 2017a, 「기리영(岐離營)을 통해 본 마한 제국(諸國)과 조위(曹魏)」, 『백제학보』 22 참조.



기록하였다.<sup>30</sup> 이는 기리영 전투에 백제도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이 전투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는 백제국(百濟國)설, 목지국(目支國)설, 신분고국(臣濱沽國)설이 있는데, 『삼국지』 판본 분석 결과로 보면 대체로 신분고국이 주도하여 마한의 여러 국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백제국이 성장하였다.

3세기 중반 조위 시기에는 낙랑 외이(外夷)인 한(韓)과 예맥(穢貊)이 조공했다는 기록으로 보아<sup>31</sup> 한이 낙랑을 거쳐 유주자사부(幽州刺史府)를 통해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3세기 후반 서진(西晉, 265~316) 시기에는 ‘마한주(馬韓主)’가 입공(入貢)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대체로 274년에 유주(幽州)를 분할하여 설치한 평주(平州)에 부속된 동이교위부(東夷校尉府)를 통해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B-①. 太康 6년(285)에 이르러 慕容廆의 습격을 받아 패하여 夫餘王 依慮는 자살하고, 子弟들은 도망하여 沃沮를 보전하였다. 武帝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夫餘王이 대대로 충성과 효도를 지키다가 몸을 오랑캐에게 멸망되었음을 매우 가엾게 생각한다. 만약 그의 남은 무리들 중에 復國할 만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방책을 피하여 存立할 수 있도록 하라.” 有司는 護東夷校尉 鮮于嬰이 夫餘를 구원하지 않아서 기민하게 대응할 기회를 놓쳤다고 아뢰었다. 이에 조서를 내려 선우영을 파면시키고 何龕으로 교체하였다. 이듬해(286) 夫餘 後王 依羅는 하감에게 사신을 보내 현재 남은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서 舊國을 회복하기를 원하니 원조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하감은 戰列을 정비하고 督郵 賈沈을 파견하여 군사로 그를 호송하게 하였다. 모용외 또한 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가침이 함께

30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古尔王 13년(246), “秋八月 魏幽州刺史毋丘儉與樂浪太守劉茂朔方太守王遵 伐高句麗 王乘虛 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31 『三國志』卷4 魏書4 三少帝紀 陳留王, “景元二年(261) 秋七月 樂浪外夷韓穢貊 各率其屬來朝貢”

싸워 크게 깨뜨리니, 모용외의 무리는 물러가고 의라는 復國하였다. 이후에도 매번 모용외는 부여 사람들을 잡아 中國에 팔았다. 武帝는 그것을 가엾게 여겨 다시 조서를 내려 官物로 贖還시키고, 司州와 冀州에서 부여 사람들의 매매를 금지시켰다. (『晉書』 卷97 列傳67 東夷 夫餘國)

B-②. 원년(286) 古尔王의 아들로 몸집이 크고 뜻과 기품이 웅장하고 뛰어났다. 고이왕이 돌아가시자 즉위하였다. 王이 丁夫를 징발하여 慰禮城을 보수하였다. 고구려가 帶方을 치자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帶方王의 딸 寶葉에게 장가들어 夫人으로 삼았으므로 말하기를, “대방과 우리는 장인과 사위의 나라이니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군사를 내어 구하니 고구려가 원망하였다. 왕은 그들이 침략하여 노략질할까 염려하여 阿且城과 蛇城을 수리하며 대비하였다. ... 13년(298) 가을 9월에 漢이 貊人和 함께 쳐들어왔다. 왕이 나가서 막다가 敵兵에게 해를 입어 돌아가셨다.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2 責稽王)

B-③. 원년(298) 責稽王의 長子로 어리지만 총명하고 어질며 거동과 모습이 영특하고 빼어나므로 왕이 사랑하여 左右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왕이 돌아가시자 이어서 즉위하였다. ... 7년(304) 봄 2월에 몰래 군사를 보내 樂浪의 서쪽 縣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겨울 10월에 왕이 樂浪 太守가 보낸 자객에게 해를 입어 돌아가셨다.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汾西王)

B-④. 처음 中國의 土民 중에 난리를 피하려는 자들은 북쪽에서 王濊에게 의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왕준은 이들을 어루만지는 데 능하지 못했고 또한 政法이 서지 않아 土民들은 매번 다시 그를 떠났다. 段氏 兄弟는 오로지 무예와 용맹만 숭상하여 士大夫를 예우하지 않았다. 오직 慕容廆만 政事에 밝고 人物을 아꼈으므로 土民 다수가 그에게 귀순하였다. ... 遼東의 張統이 樂浪·帶方 두 郡에 웅거하며 高句麗王 乙弗利(미천왕)와 서로 공격한 것이 여러 해였으나 해결하지 못하였다. 낙랑의 王遼이 장통을 설득하여 그 民 千餘家를 이끌고 慕容廆에게 귀순하니, 모용외가 그들을

위해 樂浪郡을 설치하고, 장통을 太守로, 왕준을 參軍事로 삼았다.<sup>32</sup>

(『資治通鑑』卷88 晉紀10 愍帝 建興元年(313) 夏四月)

B-①의 『진서』 부여전에서는 태강 6년(285) 모용외(慕容廆)에게 부여가 습격당했을 때, 호동위교위(護東夷校尉) 선우영(鮮于嬰)이 부여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하감(何龕)이 대신 임명되어 모용외를 물리치고 부여를 복국한 사건이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285년 이전에 요동의 양평(襄平)에 동이교위가 설치되었음도 알 수 있다.<sup>33</sup> 285년에 모용외의 침입으로 부여 의려왕(依慮王)이 자살하고 자제들이 옥저(沃沮) 지역으로 도망하였으며, 286년에 부여 후왕(後王) 의라(依羅)가 돌아와 동이교위 하감의 도움으로 모용외를 물리치고 복국하는 과정에서 부여 유민들이 산발적으로 한반도 중부 지역으로도 남하했을 가능성이 있다.

2세기 중엽~3세기 말경 요서 지역에서 유행하던 그릇의 영향을 받아 흑색 마연(磨研) 기법을 채용한 백제 한성기 토기(直口 短頸壺, 直口 廣肩壺, 삼죽기 등)가 출현했다는 견해에 의하면<sup>34</sup> 이는 백제가 동이교위부를 통해 서진과 교류한 결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여 유민들과의 연결도 생각해볼 수 있다.

B-②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바로 이 시기에 백제에서는 고이왕이 죽고 책계왕이 즉위하였는데, 앞서 살폈듯이 당시 백제와 대방은 혼인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책계왕은 13년(294) 한(漢)이 맥인(狹人)과 함께 침략하자 이를 막다가 죽었고, B-③에 의하면 분서왕도 7년(304)에 낙랑태수가 보낸

32 『資治通鑑』卷88 晉紀10 愍帝 建興元年(313) 夏四月, “初 中國士民避亂者 多北依王浚 浚不能存撫 又政法不立 士民往往復去之 段氏兄弟專尚武勇 不禮士大夫 唯慕容廆政事脩明 愛重人物 故士民多歸之 廆舉其英俊 隨才授任 …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說統帥其民千餘家歸廆廆爲之置樂浪郡 以統爲太守 遵參軍事.”

33 윤용구, 2005, 「고대중국의 東夷觀과 고구려 - 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64~66쪽.

34 박순발, 1999, 「한성 백제의 대외관계」, 『백제연구』 30, 30~35쪽.

자객에게 시해당하는 시련을 겪게 된다.

B-④는 4세기 초 요동 일대의 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족(漢族)인 유주자사 왕준(王浚)보다 선비족인 모용외가 신망을 얻어 그에게 의탁한 사민(士民)이 많았으며, 낙랑 역시 모용외에게 귀순하여 낙랑 교군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다. 서진에서 영가의 난이 일어난 후 혼란한 시기인 313년경 요서 지역에는 유주자사 왕준과 같은 한족 지방관이 자립하였고 우문부, 단부, 모용부의 선비족 집단도 세력을 키웠다. 그런데 당시 난을 피하려는 중국 사민들은 유주자사 왕준이나 단씨(段氏) 형제에게 의지하기도 했지만, 정사를 잘 처리하고 인물을 아꼈다는 모용외에게 대부분 옮겨 갔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모용외는 창려군(昌黎郡) 일대를 장악하고 서진을 적극 지지하면서 주(州) 단위의 출신지를 기준으로 기양군(冀陽郡:冀州人), 성주군(成周郡:豫州人), 영구군(營丘郡:青州人), 당국군(唐國郡:并州人)의 4개 교군을 설치하였으며, 낙랑군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요서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 시기 고구려에는 많은 이주민이 들어왔으니, 319년 모용외에게 격파되어 도주한 평주자사(平州刺史) 최비(崔毖), 336년 모용황(慕容皝)에게 토벌되어 도주한 모용인(慕容仁)의 수하 동수(冬壽: 안악 3호분 목서)와 곽충(郭充), 338년에 모용황에게 토벌되어 도주한 봉추(封抽)·송황(宋晃)·유홍(游泓), 370년 전진에게 패망한 후 도주한 전연의 태부(太傅) 모용평(慕容評), 372년에 불교를 전한 전진의 승려 순도(順道), 408년에 고구려에서 사망한 유주자사 진(鎭: 덕흥리 벽화 고분), 414년 내란으로 도주한 북연왕 풍발(馮跋)의 아우 풍비(馮丕), 436년 북위에 의해 멸망한 후 들어온 북연왕 풍홍(馮弘) 등이 있다.

고구려에 의해 313년과 314년 낙랑군과 대방군이 소멸되면서 백제도 점차 이 지역으로 진출하였으니, 근초고왕은 371년에 평양성까지 진격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이에 따라 낙랑과 대방 주민 집단도 이주민의 파동 속에서 백제로의 유입이 상당했을 것이다.<sup>35</sup> 그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

35 宋知娟, 2004, 「帶方郡의 盛衰에 대한 研究」, 『史學研究』 74, 21쪽.

만 다음의 기록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C-①. 공의 이름은 軍이고 字는 濫이며, 熊津의 嶠夷人이다. 그 선조는 중화와 같은 조상인데, 永嘉 末에 난리를 피해 동쪽으로 가서 이로 인하여 마침내 일가를 이루었다. (『禰軍 墓誌銘』(678))

C-②. 공의 이름은 素士이고 字는 素이며, 楚國의 琅琊人이다. … 拓拔이 勁騎로 남쪽을 침략하고 宋公이 強兵으로 북쪽을 토벌하니, 하늘과 땅이 혼탁하여 君子가 고달픈 상황에서 자취를 감췄고, 海內가 무너지고 갈라져 현명하고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나라에서 도망쳐 멀리 떠났다. 7代祖 嵩은 淮水와 泗水에서 遼陽으로 바다를 건너 드디어 熊川人이 되었다. (『禰素士 墓誌銘』(708))

C-③. 右衛士督 중 3位 겸 下總守 坂上大忌村 菟田麻呂 등이 表를 올려, “臣 등은 본래 後漢 靈帝의 曾孫인 阿智王의 후손입니다. 漢이 魏로 바뀌자 阿智王은 神牛의 가르침에 따라 帶方으로 出行하였습니다. 홀연히 보물로 장식한 상서로운 띠를 얻었는데 그 모양이 宮城과 비슷하였습니다. 이에 國邑을 세우고 그곳의 사람들을 길렀습니다. 후에 父兄을 불러 놓고는 ‘내가 들으니 東國에 聖主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 귀부하여 따르지 않겠니까. 만약 이곳에 오래도록 머무르면 멸망될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고, 곧 母弟인 迂興德과 七姓民을 데리고 귀부하여 來朝하였습니다. 이것은 譽田天皇(應神天皇, 재위 270~310)이 천하를 다스리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阿智王이 ‘臣은 옛날에 帶方에 살았는데 人民은 남녀 모두 재주와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百濟와 高麗 사이에 살면서 마음속으로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天恩으로 사신을 보내 그들을 불러 주십시오’라고 아뢰어 청하였습니다. 이에 勅을 내려 신하인 八腹氏를 우두머리로 삼아 보냈습니다. 그 人民의 남녀는 모두 落을 들어 사신을 따라 와서 영원히 公民이 되었습니다. 積年이 累代가 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續日本記』 권38 桓武天皇 延暦 4年

(785) 6월 癸酉)

C-①의 「예군 묘지명」(678)에서는 예군(禪軍)이 웅진(熊津)의 우이인(隅夷人)으로 선조가 중화인이었는데 서진 영가(307~312) 말의 난리를 피해 동쪽으로 가서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예군의 동생인 예식진의 아들인 C-②의 「예소사 묘지명」(708)에서는 예소사(禪素士)가 초국(楚國) 낭야인(琅邪人)이라면서 탁발(拓拔)이 남쪽을 침략하고 송공(宋公)이 북쪽을 토벌하는 전란으로 어지러울 때<sup>36</sup> 7대조 송(嵩)이 회수(淮水)와 사수(泗水)에서 요양(遼陽)으로 바다를 건너 웅천인(熊川人)이 되었다고 하였다.

C-①과 C-②는 같은 일족의 묘지명임에도 출자와 계보 상에 차이가 보이고 있고, 선조의 이주 시기도 서진 영가 말의 난리와 북위·류송의 대립 시기라는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남북조 혼란기에 발생한 이주민을 선조로 내세우고 있다.

C-①의 ‘웅진(熊津) 우이인(隅夷人)’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부여 관북리 286호 목간에 ‘우이(隅夷)’가 보이고,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입 시 당 고종이 신라왕 김춘추를 ‘우이도(隅夷道) 행군총관(行軍總管)’에 임명하였으며, 백제 멸망 후 당이 설치한 웅진 도독부 산하 13개 현 중 첫 번째에도 ‘우이현(隅夷縣)’이 보인다. 이를 도성의 동쪽 지역을 뜻하면서 사비 도성을 중심 공간으로 표상하려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보고, 궁남지 315번 목간의 ‘부이(部夷)’가 도성의 ‘부(部)’에 거주하는 ‘이(夷)’로 ‘귀인(歸人=귀화인)’과 조응하여 쓰여졌다고 보아<sup>37</sup> 사비

36 439년 북위가 화북을 통일한 후에도 북위의 남침과 송의 북벌이 이어져 452년 태무제가 피살될 때까지 공방전이 계속된 사건을 말하며, 비록 송이 북위를 물리쳤으나 그 과정에서 江淮 지방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권덕영, 2012, 「백제 유민 禰氏一族 묘지명에 대한 斷想」, 『史學研究』 105, 15쪽).

37 (전면) 西十丁〇ア夷  
(후면) 西ア後巷已達巳斯丁 依活□□□丁/ 歸人[中口四 小口二] 邁羅城法利源 畚五形 (궁남지 315번 목간)

도성에 귀화인들의 거주지가 별도로 설정되었다는 연구도 있다.<sup>38</sup> 그렇다면 예씨 일족은 이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C-③의 『속일본기』 기록에 의하면, 310년경에 후한 영제(靈帝)의 증손이라 하는 아지왕(阿智王)을 비롯한 대방 지역 유민들이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살면서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7성민(姓民)의 혈연 집단 또는 ‘락(落)’이라는 지연 집단을 단위로 하여 왜로 이주하였다. 이로 보면 고이왕 시기부터 이루어진 대방계 인물의 이주가 314년 대방의 소멸 전후에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각축전이 심화되는 355년 전후의 근초고왕 시기에 이주가 더욱 활발해진다.<sup>39</sup>

그런데 낙랑 교군이 요서 지역에 설치되고 백제와 고구려가 옛 낙랑과 대방 지역에서 각축하는 바로 이 시기에 요서와 화북 일대에서 부여계 이주민들이 대규모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중국인의 이주만이 아니라 부여계 이주민들의 백제 지역 이주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V. 4세기 중국 기록에 ‘백제(百濟)’의 등장과 부여계 이주민

중국 사서에 ‘백제(百濟)’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345년 전연의 봉유(封裕)가 올린 상표문이다. 그리고 372년 정월에 백제왕(百濟王) 여구(餘句=近肖古王)가 동진(317~420)에 사신을 파견하고, 6월에 ‘진동장군(鎮東將軍) 영낙랑

38 李鎔賢, 1999, 「扶餘 宮南池 出土 木簡의 年代와 性格」, 『宮南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309~347쪽; 윤선태, 2006,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205~218쪽.

39 정재운, 2012, 앞의 글, 5~12쪽.

태수(領樂浪太守)’로 책봉을 받으면서<sup>40</sup>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된다. 이에 이 장에서는 4세기 중국 기록에 ‘백제’가 등장하는 모습을 부여계 이주민의 동향과 연결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세기 백제는 주로 연안 해로를 이용하여 중국과 교류하였으므로, 중간 기착지에 해당하는 요동과 요서 일대의 정치적 동향이 중요하다. 280년에 중국을 통일한 서진은 281년 이래 창려(昌黎)와 요서 지역을 자주 침공하던 선비 모용부를 격퇴하였고, 앞서 B-①에서 살펴보았듯이 285년에는 모용부의 공격으로 멸망 위기에 몰린 부여를 복국시켜주었다. 302년에는 고구려가 현도군을 공격하였고, 307년에는 모용부의 수장 모용외가 선비(鮮卑) 대선우(大單于)를 자칭하였지만, 이때까지는 서진이 요동과 요서 일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배하여 평주자사(平州刺史) 동이교위(東夷校尉)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하지만 8왕의 난(291~306) 이후 서진은 급속하게 붕괴한다. 흉노족의 유연(劉淵)은 304년에 한왕(漢王)을 자칭하면서 독립하여 308년에는 황제를 자칭하였고, 이어 즉위한 유충(劉聰)은 311년에 서진의 수도 낙양을 함락시키고 회제(懷帝)를 포로로 잡았다. 이어 장안에서 즉위한 민제(愍帝, 313~316)도 316년에 살해되면서 서진은 멸망하였고, 화북 지역은 유목 민족들이 5호 16국을 이루는 격변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하여 백제와 부여계 이주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진의 민제는 선비 모용부가 요서 지역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키워가자 모용외에게 진군장군(鎭軍將軍) 창려(昌黎)·요동(遼東) 이국공(二國公)을 내려 이 지역을 맡겼다. 이후 남천한 동진의 원제(元帝)는 건무(建武, 313~318) 초 모용외에게 가절(假節) 산기상시(散騎常侍) 도독요좌잡이유인제군사(都督遼左雜夷流人諸軍事) 용양장군(龍驤將軍) 대선우(大單于) 창려공(昌黎公)을 내렸고, 320년에는 감평주제군사(監平州諸軍事) 안북장군(安北將軍) 평주자사(平州刺

40 『晉書』卷9 帝紀9 簡文帝 咸安 2年(372), “春正月辛丑 百濟林邑王 各遣使 貢方物 …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鎭東將軍領樂浪太守.”



史)를, 321년에는 사지절(使持節) 도독유주동이제군사(都督幽州東夷諸軍事) 거기장군(車騎將軍) 평주목(平州牧) 요동군공(遼東郡公)을 더해 수여하였다. 이러한 작호는 동진이 모용외에게 중국 동북 이민족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겠다는 표시이며, 이후 선비가 세운 국가는 모두 권력의 중추에 있는 인물들에게 동이교위를 맡겼다고 한다.<sup>41</sup>

310년대 요동 지역에는 스스로 상서령(尙書令)이 된 왕준(王浚)이 임명한 최비(崔毖)가 동이교위 겸 평주자사(平州刺史)로 있었는데, 그는 319년에 고구려 및 선비 우문부와 함께 모용외를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고구려로 도망간다. 당시 대릉하(大凌河) 일대는 선비 모용부(전연)가,<sup>42</sup> 난하(灤河) 일대는 선비 단부(段部)가, 유주(幽州)-기주(冀州) 지역은 후조의 석륵이 장악하고 있었다.

338년에는 전연과 후조가 연합하여 중간에 자리한 단부를 협공하였는데, 후조는 이어 전연까지 정벌하려다가 오히려 대패한다. 이후 전연은 339년 9월 고구려의 신성(新城)을 공격하고 342년 11월에는 환도성까지 함락시켜 5만여 구(口)를 노획하였다. 344년에는 선비 우문부를 정벌하여 5만여 락(落)을 이주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진서』의 345년 기록에 처음 백제가 등장한다.

D-①. 慕容皝의 記室參軍인 封裕가 간하여 말하였다. … 殿下께서는 뛰어난 자질을 타고나 선왕의 업적을 더욱 넓히셨으니, 남으로는 강성한 趙를 꺾어버리고, 동으로는 句麗를 滅하셔서, 3,000리 영토를 개척하시고 10만의 戶를 늘리셨으니, 繼武闡廣의 공은 西伯보다 높습니다. 마땅히 諸苑을 혁파하셔서 流人들이 먹고살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찾아오는 사람으로 자산이 없는 자들에게는 牧牛를 내려주소서, 사람이 이미 전하의 사람이

41 정지은, 2019, 「3~4세기 백제(百濟)의 대중(對中)교섭과 동이교위(東夷校尉)」, 『역사와 현실』 112, 152~153쪽.

42 鮮卑 慕容部는 3세기 말경부터 흥기하여 337년에 慕容皝이 燕王을 자칭하고, 341년에는 東晉으로부터 燕王에 책봉된다. 따라서 33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慕容部, 그 이후는 前燕으로 칭한다.

되었는데, 소를 어찌 잃겠습니까? … 句麗와 百濟 및 宇文部和 段部의 사람들은 모두 전쟁으로 인해 강제로 끌려온 것이며 중국처럼 義를 사모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戶가 10만에 이르러 都城을 비좁게 할 정도이니, 장차 國家의 깊은 해악이 될까 걱정됩니다. 마땅히 그 兄弟 宗屬을 나누어 서쪽 경계의 여러 성으로 옮기게 하여, 은혜로 어루만지고 法으로 단속하여, 흩어져 살면서 나라의 허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소서. (『晉書』 권109 載記 9 慕容皝)

- D-②.慕容皝이 스스로 勁兵 4만을 거느리고 南道로 출정하여 慕容翰과 慕容霸를 선봉으로 삼고, 별도로 長史 王寓 등을 보내 병력 1만 5,000을 거느리고 北道로 출정하여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高句麗王 釗는 동생 武를 보내 精兵 5만을 거느리고 北道를 막게 하고, 자신은 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南道를 방어하였다. 모용한 등이 먼저 도착하여 싸우고 모용황이 이어서 대군을 거느리고 왔다. … 左長史 韓壽가 고구려의 장수 阿佛和度加를 베었고 諸軍들은 승세를 몰아 추격하여 마침내 丸都에 들어갔다. 釗가 單騎로 달아나니 輕車將軍 慕輿泥가 추격하여 그 어머니 周氏와 처를 붙잡아 돌아왔다. (『資治通鑑』 권97 晉紀19 咸康 8年(342) 11월)
- D-③.燕王 慕容皝이慕容恪을 보내 高句麗를 공격하여 南蘇를 함락시키고는 戍를 설치하고 돌아왔다. (『資治通鑑』 권97 晉紀19 永和 원년(345) 10월)
- D-④. 3年(346)世子 慕容儁과 慕容恪을 보내 기병 1만 7,000을 거느리고 夫餘를 습격하여 이겼다. 그 왕과 部衆 五萬餘口를 포로로 붙잡아 돌아왔다. (『晉書』 권109 載記9 慕容皝)
- D-⑤. 처음에 夫餘는 鹿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百濟의 침략을 받아 部落이 쇠약해져 흩어졌다. 서쪽으로 燕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갔으나 대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 燕王 慕容皝이 세자 慕容儁을 보내 慕容軍, 慕容恪, 慕輿根의 세 장군에게 1만 7,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夫餘를 습격하게

하였다.慕容皝은 가운데에 있으면서 지시를 내렸고, 군사의 일은 모두慕容恪에게 맡겼다. 마침내 부여를 공략하여 그 왕 玄과 部落 五萬餘口를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慕容皝은 玄을 鎮軍將軍으로 삼고 딸을 그의 妻로 삼게 하였다. (『資治通鑑』 권97 晉紀19 永和 2년(346) 春正月)

D-①의 『진서』 모용황 재기에는 345년 당시 전연의 봉유(封裕)가 사민(徙民) 집단에 대한 정책을 건의한 상표문(上表文)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전연 도성 주변에 사민된 집단으로 고구려, 백제, 우문부, 단부 등에서 강제로 사민한 인구가 10만 호에 이른다고 하였다. 여기서 고구려, 우문부, 단부는 전쟁 이후 강제로 사민한 기록이 있으므로 함께 나오는 백제도 그렇다고 보아야 하는데, 전연과 백제가 전쟁을 한 기록은 없다. 다만 앞서 살핀 B-①의 『진서』 부여전에서 전연이 285년에 부여를 공격하여 1만여 인을 극성(棘城) 일대로 사민시킨 이후 매년 부여인을 대거 노획하였지만 D-①에 부여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들 부여 유민들을 D-①에서 백제로 칭했다는 견해가 있다.<sup>43</sup> 이에 대하여 280년대의 부여와 340년대의 상표문 사이에는 시기 차이가 많다는 점에서 부여 유민이 아닌 ‘백제’ 표기를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44</sup>

이러한 견해를 염두에 두고 B-①의 『진서』 부여전을 다시 살펴보면, 모용외가 285년에 부여를 공격하여 왕실이 옥저로 도망하였고 286년에 서진의 도움으로 부여가 복국된 이후에도 부여 사람들이 계속 노획당했다는 점에서, 3세기 말 이후에도 부여 유민들은 계속 발생하였다. 따라서 D-① 『진서』 모용황 재기의 345년 상표문에 등장하는 ‘백제’는 부여 유민들 중 일부가 백제를 칭했거나 백제와 관련되었던 사실이 반영되어 처음 기록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D-②에서 전연은 342년 11월에 환도성을 침공하여 고국원왕의 어머니와

43 여호규, 2001, 「百濟의 遼西進出說 再檢討」, 『진단학보』 91.

44 강중훈, 2015, 「『晉書』慕容皝載記와 『資治通鑑』晉穆帝紀 所載 ‘百濟’ 관련 기사의 사료적 가치」, 『大丘史學』 121.

왕비를 사로잡은 후 D-③에서 345년 10월에 고구려의 남소성을 함락시키고 수졸(戍卒)을 설치했으며, 이어 D-④와 ⑤에서 346년 1월에 부여를 정벌한다.

그런데 D-⑤의 『사치통감』 기록에서는 346년 전연의 부여 정벌에 앞서 백제가 부여의 중심지인 녹산(鹿山)을 침략하였고, 이로 인해 부여가 서쪽으로 이주하여 전연에 가까워졌다고 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백제는 고구려의 오기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지만,<sup>45</sup> D-①과 마찬가지로 사료의 백제 표기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346년 이전에 전연의 내전을 틈타 고구려가 북부여 지역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부여를 침략했다는 백제를 고구려로 바꾸어 볼 수는 없다.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는 고국원왕(재위 331~371) 시기에 모용선비(慕容鮮卑, 前燕)의 공격에서 모두루의 선조인 대형(大兄) 염모(冉牟)가 북부여(北夫餘) 지역에서 전공을 세웠고, 이를 계기로 모두루의 조부들이 이곳의 성민(城民)과 곡민(谷民)을 다스린 것으로 유추되는 기록이 보인다.<sup>46</sup> 이 염모의 활약을 346년에 부여를 함락시킨 전연의 군대가 계속 동진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북부여 지역까지 침공했다는 증거로 들기도 하지만,<sup>47</sup> 346년 전연의 부여 공격은 현왕을 비롯한 부여인 포로 5만을 탈취한 후 돌아간 인신 약탈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고구려 침공까지 유추하기는 어렵다. 사료에 없는 내용을 추측하기보다는 D-②에서 전연이 342년 11월 고구려 환도성을 침공하여 왕모와 왕비를 사로잡은 사건이나, D-③에서 346년의 부여 공격에 앞서 345년 10월

45 노태돈, 1999, 「夫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522쪽.

46 「牟頭婁墓誌」, “冉牟令々靈□□□□□慕容鮮卑□□□□□河泊之孫日月之子所生之地來□北夫餘 … 大兄冉牟壽盡 □□於彼喪亡□由祖父□□大兄慈□大兄□□世遭官恩恩□祖之□道城民谷民并領前王□育如此 遷至國崗上大開土地好太聖王緣祖父□爾恩教奴客牟頭婁□□牟教遣令北夫餘守事.”

47 여호규,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47~50쪽; 이승호, 2020, 「부여의 쇠퇴·멸망 과정과 王室 일족의 동향」, 『東國史學』 68, 127~130쪽.

에 전연이 고구려 남소성을 함락시킨 전쟁과 관련하여<sup>48</sup> 염모가 활약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D-⑤에 등장하는 백제는 부여 유민들 중 일부 집단이 백제를 칭했거나 백제와 관련된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부여 중심지를 공격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모용선비(전연)가 285년부터 부여인을 지속적으로 노획하면서 요서 지역 전연의 도성 주변에는 부여계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346년에 부여를 정벌하여 현왕과 5만여 구를 사민시키면서 그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346년 당시 부여 국왕이 부여씨를 칭하지 않고 ‘현(玄)’이라는 이름만 나온다는 점이다.<sup>49</sup> 346년에 부여왕 현(玄)이 전연으로 사민된 이후 4세기 중후반의 요서 지역에서 부여씨를 칭하는 인물들의 활동이 자주 나타나며, 그중 ‘여울(餘蔚)’의 활약이 가장 주목된다. 따라서 부여씨는 부여 왕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후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유민 집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①. 戊寅(7일) 燕 散騎侍郎 餘蔚이 扶餘와 高句麗 및 上黨의 質子 500여  
人을 이끌고 밤에 鄴의 北門을 열어 秦兵을 받아들이니, 燕主 暉가 上庸  
王 評, 樂安王 臧, 定讓王 淵, 左衛將軍 孟高, 殿中將軍 艾郎 등과 함  
께 龍城으로 달아났다. 辛巳(10일) 秦王 堅이 鄴에 들어왔다. (『資治通  
鑑』 卷102 晉紀 24 太和 5年(370) 11月)

E-②. 幽州의 治中인 平規가 말했다. … 만약 밝으신 공께서 신령스런 깃발을

48 南蘇城은 新城(撫順市 高爾山城)의 동쪽에 있으면서 木底城과 함께 국내성으로 가는 교통로상에 있었던 성이다. 대개 渾河와 蘇子河의 합류 지점 동남쪽인 撫順市의 鐵背山城으로 보고 있다(기경량, 2016, 「4세기 고구려 ‘南道·北道’의 실체와 그 성격」, 『한국문화』 7, 262쪽).

49 정재운, 2018, 「중국 遼西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 『東北亞歷史論叢』 61, 273쪽과 278쪽에서는 “부여왕인 餘玄은 전연에서 진동장군 직을 맡았다”고 서술하였으나, 부여왕을 ‘餘玄’이라고 칭한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다.

한번 세우시면 반드시 전 국토에서 구름처럼 따를 것입니다. 지금 燕의 전체를 점령하여 땅이 東海에 이르렀으니, 북으로 烏桓과 鮮卑를 총괄하고, 동으로 句麗와 百濟를 끌어들이면, 활쏘는 병사가 50여 만에서 줄어들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손을 묶고 부르는 대로 나아가서 예측할 수 없는 재앙에 뛰어들고자 합니까. 苻洛은 소매를 걷고 큰 소리로 말했다. “孤(부락)의 계획이 결정되었으니, 이를 막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이에 스스로 大將軍 大都督 秦王을 칭했다. … 사신을 나누어 파견하여 鮮卑, 烏桓, 高句麗, 百濟, 新羅, 休忍 등의 여러 나라에서 병사를 불러 모았다. (『資治通鑑』 卷104 晉紀26 太元 5년(380) 三月)

E-③. 垂는 洛陽이 四面에서 적을 맞을 수 있으므로 鄴를 취하여 그곳에 웅거하고자 하여 이에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갔다. 옛 扶餘王 餘蔚을 滎陽太守로 삼고, 昌黎 鮮卑 衛駒와 함께 각각 그 무리를 거느리고 垂에 항복하였다. 垂가 滎陽에 이르자 群下가 尊號에 오를 것을 굳게 청하니, 垂는 이에 晉 中宗의 故事에 의거하여 大將軍 大都督 燕王을 칭하고 承制하여 일을 행하니, 이를 일러 統府라고 한다. … 餘蔚을 征東將軍 統府 左司馬 扶餘王에 책봉하였다. (『資治通鑑』 卷105 晉紀 27 太元 9年(384) 正月)

E-④. 垂가 鄴으로 가서 太原王 慕容楷를 冀州牧으로 삼고, 右光祿大夫 餘蔚을 左僕射로 삼았다. (『資治通鑑』 卷108 晉紀 30 太元 17年(392) 7月)

E-⑤. 扶餘王을 太傅로 삼았다. (『資治通鑑』 卷108 晉紀 30 太元 21年(396) 5月)

369년 11월에 전연의 모용수(慕容垂)가 전진으로 망명한 후, 전진은 370년 11월에 전연을 멸망시켰다. E-①에 의하면, 이때 여울(餘蔚)은 전연의 산기시랑(散騎侍郎)으로 있으면서 전진과 대응하여 부여(扶餘)와 고구려 및 상당(上黨)의 질자(質子) 500여 인을 이끌고 도성인 업성(鄴城)의 북문을 열어 전연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부여 질자는 모용황에 의한 부여 현왕 등의 사민 집단으로 볼 수 있고, 고구려 질자는 342년 전연의 고구려 침공 시 왕모·왕비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이들과 그 후예로 볼 수 있다. 여율은 당시 상서(尙書)의 주사(奏事)를 담당하면서 국왕의 근시직이었던 산기시랑으로 500여 명의 질자와 함께 도성과 왕궁의 숙위 업무에 종사하였으니, 업성 북문 지역의 수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50</sup>

E-①에서 보다 주목되는 점은 중국 사서에 처음으로 ‘부여(夫餘)’가 아닌 ‘부여(扶餘)’ 표기가 보인다는 점과, 부여와 고구려 질자를 이끈 ‘여율’이 370년 당시 처음으로 ‘부여씨’를 칭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들 자료로 보면 346년 모용황의 침입 당시까지 부여 국왕은 성씨를 칭하지 않았고, 이후 요서 지역에 사민된 부여 유민들 중에 처음으로 ‘부여씨(扶餘氏)’를 칭한 집단이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부여(扶餘)’라는 표기도 나타난 것이다.

E-③에 의하면, 여율은 ‘옛 부여왕(扶餘王)’으로 표현되면서 384년 모용수가 후연을 건국하는 데에도 가담하여 형양태수(滎陽太守)에 임명된다. 당시 여율은 전연이나 전진에서 이미 부여왕에 책봉되었거나 옛 부여왕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창려(昌黎)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비의 수장 위구(衛駒)도 여율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였다. 여율은 전연이 멸망한 뒤에도 요서의 선비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sup>51</sup> 이어 여율은 후연에서 정동장군(征東將軍) 통부(統府) 좌사마(左司馬) 부여왕(扶餘王)에 봉해진다. 이후 E-④에 의하면 여율은 우광록대부(右光祿大夫)에 올랐다가 392년에는 좌복야(左僕射)에 오르고, E-⑤에서 396년에는 부여왕으로 태부(太傅)에 오르는 등 후연에서 매우 출세하였다.

E-②에 의하면, 전진의 유주자사(幽州刺史) 부락(苻洛)이 376년에 대(代)

50 이정빈, 2017b, 「모용선비 전연(前燕)의 부여·고구려 질자(質子)」, 『동북아역사논총』 57, 92~94쪽.

51 이승호, 2020, 앞의 글, 142쪽.

를 정벌한 이후 380년에 다시 서남 변방의 장수로 임명되자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부락은 대릉하 중류의 용성(龍城)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참모였던 평규(平規)가 그의 세력을 ‘연(燕)의 전체를 점령하여 땅이 동해(東海)에 이르렀다면서 북으로는 오환과 선비를 총괄하고, 동으로는 구려(句麗)와 백제(百濟)를 끌어들이면’이라고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

이때는 전진의 지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기인데, 부락은 현도태수, 요동태수, 창려태수, 북평태수 등을 거느리고, 선비·오환·고구려·백제·신라·휴인 등의 병력 동원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부락은 380년 4월에 용성을 출발하여 중원으로 진격하다가 5월에 중산에서 참패하였다.

여기서 380년 전진의 유주자사 부락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참모인 평규가 군대를 동원할 것을 건의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백제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 이전부터 백제로 인식된 집단이 전진과 교섭하면서 인구의 상호 이동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기록에 의하면 380년 당시에는 신라도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진은 383년 11월 동진 정벌에 나섰지만 비수(肥水)에서 대패한 후 지배 질서가 급격히 와해되었다. 특히 모용수가 384년 1월 형양(滎陽)에서 후연을 건국하자 각지에서 도적이 봉기하였다. 고구려는 385년 6월에 요동을 공격하였는데, 후연의 모용좌(慕容佐)가 사마(司馬) 학경(郝景)을 파견하여 요동을 구원하였지만 이를 물리치고 요동과 현도를 점령하였다.

E-①을 보면 당시 전연과 전진에 거주하였던 부여계와 고구려계 이주민들은 상당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진이 붕괴하면서 부여계 이주민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분열되었다. E-③·④·⑤에서 보았듯이 여울을 중심으로 한 집단은 384년 1월 후연 건국에 적극 참여하였다. 하지만 후연의 건절장군(建節將軍)이었던 여암(餘巖) 집단은 385년 7월 기주(冀州) 무읍(武邑)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여암은 4,000여 명을 거느리고 유주(幽州)로 진격하여 평규(平規)를 격파하고 계성(薊城)의 1,000여 호를 약취한 다음, 난하(灤河) 하류의 영지(令支)에 들어가 웅거하였다. 당시 전진의 업성(鄴城)을 함락시키고 각



지에 영향력을 강화하던 후연은 8월에 모용농(慕容農)을 동북 방면으로 출병시켜 11월에 용성(龍城)에 이르렀고, 보기(步騎) 3만을 거느리고 영지를 함락시켜 여암을 참수한 다음, 고구려로 진격하여 요동군과 현도군을 공취하였다.<sup>52</sup>

여암 집단은 385년 7월 모반에서부터 후연의 모용농에게 토벌되는 11월까지 약 4~5개월 정도 난하 중하류 일대를 석권하였다.<sup>53</sup> 여암은 후연 건국에 반발하면서 동진이나 백제와 교섭할 만한 항해술을 갖추고 진의 회복을 내세웠을 가능성도 있다.<sup>54</sup> 여암이 영지에 웅거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 동진이나 백제와의 연계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4세기 후반에 부여씨를 칭한 부여 계통 이주민들이 요서 지역에서 매우 큰 활약을 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보다 주목되는 점은 37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여율’이 요서 지역에서 활약하던 당시에 백제 근초고왕도 한강 유역에서 활약하면서 372년에 ‘여구’라는 이름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근초고왕 여구(餘句)는 369년에 고구려 고국원왕 사유(斯由)를 물리치고 한수(漢水)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면서 황색 깃발을 사용하였으며, 371년에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후 372년에 동진에 사신을 보내 ‘진동장군 영낙랑태수’로 책봉받았다. 이는 백제가 낙랑 지역 대부분을 장악한 현실을 동진에게 인정받은 작호 이기에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sup>55</sup> 또한 근초고왕은 요서 지역 부여계 집단과 동

52 이 사건 이후 後燕은 화북 지역을 장악하였지만, 395~396년경 拓拔魏 정벌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오히려 탁발위에게 화북 일대를 내주고 397년 3월에 龍城으로 도망가게 된다. 용성 천도 이후 398년 4월 慕容垂를 이은 慕容寶가 피살되고, 그를 이은 慕容盛도 401년 8월에 피살되는 등 내분이 끊이지 않다가 407년 7월 慕容熙가 피살되면서 멸망하였다.

53 『宋書』 백제전 등의 백제의 요서 진출 기사는 385년 7~11월 餘巖의 尙支 雄據와 관련한 사료가 와전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여호규, 2001, 앞의 글).

54 여암이 영지에 웅거하던 385년 7~11월에 백제와 연계했다고 보기도 한다(강종훈, 2003, 「4세기 백제의 遼西 지역 진출과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30).

55 김기섭, 2000, 「근초고왕과 요서경략설」,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9~211쪽; 여호규, 2014, 「4세기~5세기 초엽 백제의 대중교섭 양상」, 『백제의 성장과 중국(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5)』, 한성백제박물관, 143쪽.

일한 ‘부여씨’를 사용하여 그들과의 동질감을 국제 무대에 드러내면서 왕실의 부여 출자를 강조하였다.

요서 지역에는 사민된 부여계 이주민 집단이 있었고, 4세기 전반에 진의 작호를 받은 선비 모용부(전연)에 귀부한 낙랑·대방계 유민들도 이 지역에 있었다는 점에서, 백제는 대동강 유역의 기존 낙랑·대방 유민들을 매개로 하여 이들과 교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요서 지역의 부여계 이주민 집단 중에 스스로 백제를 칭한 집단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혹은 화북 지역 국가들에게 백제로 인식된 집단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에 이 지역 출신의 인물들이 많이 망명했듯이, 이 지역에서 백제로의 이주 역시 많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sup>56</sup> 곧, 4세기 중후반에 부여계 이주민들과 백제가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긴밀하게 교섭했던 것이다. 특히 라마동 고분을 통해 4세기 요서 지역에 부여 이주민들이 집단 거주했음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지면서<sup>57</sup> 이들 집단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음이 드러났으므로, 이들과 백제와의 연결 가능성도 높게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중서부에서 4세기 전반~중엽에 선비 계통 마구류가 널리 확인되고 있음이 참고된다. 곧, 북표(北票) 북구(北溝) 8호묘와 조양(朝陽) 왕자분산(王子墳山) M9001호묘 출토 마구가 천안 두정동 출토 마구와 매우 유사한데, 이로 보아 백제가 요서 지역과의 원거리 교역을 통해 기승문화(騎乘文化)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sup>58</sup> 이러한 점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과정 속에서 북조 지역의 이주민과 그 문화가 백제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겠다.

56 조영광, 2017, 「고구려·부여계 유이민의 남하와 백제 부여씨의 등장」, 『先史와 古代』 53, 187~188쪽에서도 선비족 모용씨의 연에 끌려온 부여계 집단들이 부여 왕실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5호 16국의 혼란을 틈타 이들 중 일부가 백제까지 이동해 왔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57 이종수, 2024, 「라마동고분군의 부여 계승에 관한 검토」, 『先史와 古代』 75.

58 성정용, 2003, 「漢城期 百濟馬具의 編年과 그 起源」, 『國史館論叢』 101, 18~21쪽.

## V. 5세기 이후 중국 사서에서 백제 왕실의 부여 기원에 대한 인식

백제 근초고왕이 동진과 교류하면서 부여씨를 칭한 것은 고구려를 의식하면서 요서 지역에 있는 부여계 이주민들과의 친연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는 5세기 이후 남조계 사서에 기록된 백제의 요서 경략 문제와도 관련된다. 요서 지역의 정치적 동향에 따라 부여계 집단과 백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백제의 요서 경략에 대해 부정의 입장이 강하지만<sup>59</sup> 비록 잠깐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려는 입장도 있다.<sup>60</sup> 백제와 동진의 교류는 중간 기착지인 요서 지역에 거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는데, 낙랑과 대방군이 요서 지역으로 이동한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대립은 이 지역에서도 전개되었고, 이것이 요서 경략설이 진 말기에 생성되어 과장된 이유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sup>61</sup> 이처럼 남조계 사서에 기록된 백제의 요서 경략 기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반도에 자리한 백제가 요서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인식만으로는<sup>62</sup>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한반도의 백제가 요서를 경략, 혹은 진출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요서 지역에 백제로 인식된 집단이 존재했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앞장에서 4세기의 모용 선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이 활약한 요서 지역에서 부여계 인물들도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살폈다면, 이 장에서는 5세기 이후 중국 사서에서 백제 왕실의 기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F-①. 百濟國은 본래 高驪와 함께 遼東의 동쪽 千餘里에 있었다. 그 후 高驪는

59 余昊奎, 2001, 앞의 글.

60 강종훈, 2003, 앞의 글.

61 정재윤, 2018, 앞의 글.

62 박남수, 2019, 앞의 글.

요동을 정복하여 차지하였고, 백제는 遼西를 정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晋平郡 晋平縣이라 한다. … 小帝 景平 2년(424)에 映이 長史 張威를 파견하여 조정에 공물을 바쳤다. … 元嘉 27년(450) 餘毗가 方物을 바치며, 晔를 올려 私假한 臺使 馮野夫를 西河太守로 삼을 것을 추천해주고, 表를 올려 易林·式占·腰弩를 요구하자 太祖는 모두 들어주었다. … 大明 2년(458) 餘慶이 사신을 보내 表를 올려 말하기를, “신의 나라는 대대로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문무의 훌륭한 신하들이 대대로 조정의 관작을 받았습니다. 行冠軍將軍 右賢王 餘紀 등 11명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하여 높은 지위에 나아감이 마땅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가엾게 여기시어 모두 관작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行冠軍將軍 右賢王 餘紀를 冠軍將軍으로 삼고, 行征虜將軍 左賢王 餘昆과 行征虜將軍 餘暈를 모두 征虜將軍으로, 行輔國將軍 餘都와 餘父를 모두 輔國將軍으로, 行龍驤將軍 沐衿과 餘爵을 모두 龍驤將軍으로, 行寧朔將軍 餘流와 樂貴를 모두 寧朔將軍으로, 行建武將軍 于西와 餘婁를 모두 建武將軍으로 삼았다. (『宋書』 卷97 列傳57 夷蠻 東夷 百濟國)

F-②. 백제는 옛 來夷로 馬韓에 속하였다. 晋末에 駒麗가 遼東을 공략하여 차지하자, 樂浪 또한 遼西 晋平縣을 차지하였다. (『梁職貢圖』 百濟國記)

F-③. 百濟는 그 시초가 東夷의 三韓國이다. 첫째는 馬韓, 둘째는 辰韓, 셋째는 弁韓이다. 弁韓과 辰韓은 각각 12國이 있었고 馬韓은 54國이 있었다. 大國은 萬餘家, 小國은 數千家로 모두 10餘萬戶였는데, 百濟는 그중 하나였다. 뒤에 점차 강대해져서 여러 小國을 합쳤다. 그 나라는 본래 句驪와 함께 遼東의 동쪽에 있었다. 晋 시기에 句驪가 이미 遼東을 정복하여 차지하자, 百濟도 또한 遼西·晋平 2郡의 땅을 점거하여 스스로 百濟郡을 두었다. (『梁書』 卷54 列傳48 諸夷 百濟)

F-④. 百濟國은 그 선조가 夫餘로부터 나왔다. 그 나라는 북쪽으로 高句麗와 1,000여 리 떨어져 있고, 小海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 延興 2년(472)에 百濟王 餘慶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表를 올려 말하기를, “… 삼가 私署

한 冠軍將軍 駙馬都尉 弗斯侯 長史 餘禮와 龍驤將軍 帶方太守 司馬 張茂 등을 보내 파도에 배를 던져 망망한 바닷길을 더듬게 하였습니다.”  
 … 또 말하기를, “臣은 高句麗와 함께 夫餘에서 나왔으므로 先代에는 우의를 매우 돈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조인 釧가 이웃간의 우호를 가볍게 깨뜨리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의 先祖인 須가 군사를 정돈하고 번개처럼 달려가서 기회를 타 돌풍처럼 공격하여, 화살과 돌이 오고 간지 잠깐만에 釧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달았더니, 그 이후부터는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馮氏의 국운이 다하여 그 遺民이 달아나면서 추악한 무리가 점점 강성해져 끝내 침략과 위협을 당하여 원한이 얹히고 禍가 연이는 것이 30여 년입니다. … 또 馮氏 一族의 사람과 말에게는 鳥畜之戀이 있고, 樂浪 등 여러 郡은 首丘之心을 품고 있습니다.” (『魏書』 卷100 列傳88 百濟)

F-⑤. 勿吉國은 高句麗의 북쪽에 있다. … 지난 延興(471~476) 중에 사신 乙力支를 보내 조회하고 방물을 바쳤다. … 스스로 말하기를 “其國은 먼저 고구려의 10부락을 함락하였는데, 은밀히 백제와 함께 水道를 따라 힘을 합쳐 고구려를 취할 것을 꾀하니, 을력지를 大國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그可否를 청합니다.” (『魏書』 卷100 列傳88 勿吉)

488년에 심약(沈約)이 편찬한 F-①의 『송서』 백제국전에서는 고구려의 요동 경략 이후 백제가 요서를 경략하여 진평군 진평현을 설치했다고 기록하였다. 소역(蕭繹)이 형주자사(荊州刺史) 재임 시(526~539)에 양 무제의 즉위 40년을 맞아 제작한 F-②의 「양직공도」에서는 마한에 속하였던 백제가 진말(晉末)에 고구려의 요동 경략 이후 낙랑의 이름으로 요서 진평현을 차지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636년에 묘사렴(姚思廉)이 편찬한 F-③의 『양서』 백제전에서는 백제가동이 삼한국의 마한 54국 중 하나로 시작하여 점차 여러 소국을 합쳤다는 인식이 보인다. 그리고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에 있다가 진 시기에 고구려의

요동 진출 이후 요서·진평 2군의 땅을 점거하여 스스로 백제군(百濟郡)을 둔 것으로 기록하였다.

554년에 위수(魏收)가 편찬한 F-④의 『위서』 백제전에는 472년에 부마도위(駙馬都尉) 불사후(弗斯侯) 장사(長史) 여례(餘禮)와 대방태수(帶方太守) 사마(司馬) 장무(張茂) 등을 북위에 사신으로 파견하면서 개로왕 여경(餘慶)이 보낸 국서가 실려 있다. 여기서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음을 특기하였는데, 백제가 출자한 지역으로 부여를 강조한 것은 고구려 정벌을 위한 연대에 부여계 유민들을 포함시키려고 한 의도로 볼 수 있다.<sup>63</sup> 개로왕은 북연의 멸망 이후 북위 지역에 있던 부여계 유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또한 고구려가 풍씨(馮氏=北燕) 유민을 받아들이고 강성해졌지만 북연 유민들과 낙랑 등 여러 군이 망국을 그리는 마음이 매우 크다고 한 것은 당시 북위 효문제(孝文帝)를 보위에 올린 북연 출신 문명태후(文明太后) 풍씨(馮氏)를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sup>64</sup> 문명태후는 자신이 키운 효문제를 위해 옛 북연의 수도 용성에 사연사(思燕寺)를 건립하였고, 효문제의 부인 효문소황후(孝文昭皇后) 고씨(高氏)도 용성에서 직접 간택한 것으로 보아, 멸망한 모국 북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F-①에서 450년 백제가 류송에 사신으로 파견한 대사(臺使) 서하태수(西河太守) 풍야부(馮野夫)는 북연계 망명인일 가능성이 높다.<sup>65</sup> 436년에 북연이 북위에 의해 멸망하면서 북연왕 풍홍이 고구려로 망명하였는데, 풍홍의 처리 문제로 고구려와 송이 충돌하면서 일부는 송으로 망명하기도 했으며, 풍홍이 죽임을 당한 후에는 백제로 이주한 인물도 있었던 것이다.

F-⑤의 『위서』 물길전에 의하면, 물길이는 은밀히 백제와 함께 수도(水道)를

63 배재영, 2009, 「백제의 부여 인식」, 『百濟文化』 41, 152~156쪽.

64 서영교, 2019, 「백제 개로왕의 국서와 풍태후」, 『문자와 고대 한국 2 교류와 생활』, 주류성.

65鈴木靖民, 2003, 「倭와 百濟의 府官制」,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347쪽.

따라 힘을 합쳐 고구려를 취하려는 계획을 북위에 알리고 있다. 이로 보면, 당시 백제는 고구려 정벌을 위해 부여계 유민들은 물론, 물길과도 연합하면서 북위를 끌어들이려고 하였다.<sup>66</sup>

이러한 개로왕의 고구려 포위 전략은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한성 백제의 패망으로 귀결되었지만, 이들과의 교류 과정에서도 부여계 유민들이 백제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F-①의 『송서』에서 개로왕 4년(458)에는 모두 11명이 장군호를 수여받았는데, 그중 8명이 부여씨였다. 여기서 좌현왕(左賢王) 여곤(餘昆)과 보국장군(輔國將軍) 여도(餘都)는 각각 개로왕의 아우인 곤지와 문주라는 점에서 당시 근친 왕족 위주로 장군호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개로왕 시기에 장군호를 받은 부여씨 인물들 중 일부에는 부여계 유민들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이 시기 북조계 국가들에서 많이 쓰인 좌현왕이나 우현왕이라는 흉노 계통의 관직명을 백제가 스스로 수용한 점에서<sup>67</sup> 그러하다. 당시 화북 지역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낙랑 교군은 북연 시기까지 존재하였는데,<sup>68</sup> 이곳의 낙랑·대방계 유민과 부여계 유민들이 백제와 계속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부여는 전연, 전진, 후연에 이어 북위, 북연과 고구려의 역학 구도 속에서 절충 지역으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sup>69</sup> 이러한 상황에서 북위와 고구려의 사이에 있던 북연이 436년에 멸망한 사건은 부여에게도 큰

66 이성제, 2006,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111~128쪽.

67 『三國志』 권2 魏書2 文帝紀2 延康 元年(220), “三月 己卯 濊貊·扶餘單于·焉耆·于闐王皆各遣使奉獻.”

부여는 위구태가 왕으로 있던 시기인 220년에 曹丕가 위 황제로 즉위하자 흉노의 총지도자라는 單于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신을 보낸 바가 있다. 또한 4~5세기 북조의 前趙, 後趙, 前秦, 後燕, 北燕 등에서 선우 밑에 보좌하는 속관으로 左·右賢王을 두었다고 한다(남소연, 2023, 「5세기 백제의 左·右賢王 수용 배경과 기능」, 『百濟學報』 45, 64~69쪽).

68 이성규, 2005,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 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205~207쪽.

69 池培善, 1997, 『中世東北亞細亞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31쪽.

충격이었을 것이다. 쇠락해가던 부여는 457년 북위에 사신을 보내 국제 무대에 마지막 모습을 보인다.<sup>70</sup> 그런데 이때 부여의 표기가 ‘부여(夫餘)’가 아닌 ‘부여(扶餘)’로 나타나고 있어, 백제 왕실이나 부여계 유민의 부여씨 표방과 친연성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 457년의 사건은 부여가 백제, 부여계 유민, 물길, 북위와의 연합 전선을 통한 고구려 포위 정책과 연계하여 북위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부여는 494년에 이르러 고구려에 완전히 복속된다.<sup>71</sup>

G-①. 仇台의 사당을 받들어 夫餘의 후예들을 결집하였다[… 『括地志』에는 다 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百濟城에 그 시조 仇台廟를 세워 四時로 제사 지 냈다]. (『翰苑』 蕃夷部 百濟)

G-②. 16년(538) 봄에 도읍을 泗泚[一名 所夫里]로 옮기고, 國號를 南扶餘라 고 하였다.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16년)

G-③. 이달 物部伊勢連 父根과 吉士老 등을 보내 多沙津을 百濟王에게 주 었다. 이에 加羅王이 勅使에게 이르기를 “이 津은 官家를 둔 이래로 臣 의 조공하는 나루터였습니다. 어찌 갑자기 바꾸어 隣國에게 주어서 원래 봉해주었던 경계지를 거스를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勅使 父根 등이 이 때문에 바로 주기 어려워 大嶋로 돌아왔다가 따로 錄史를 보내 결국 扶餘에게 주었다.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3년(529))

G-④. 貴須王은 百濟가 처음 일어난 때로부터 제 16世 王입니다. 대저 百濟의 太祖 都慕大王은 日神이 降靈하여 扶餘에 머물러 開國하였습니다. 天帝가 籙을 주어 모든 韓을 통솔하고 王을 칭하게 하였습니다. (『續日本 紀』 卷40 桓武天皇 延暦 9년(790) 7월)

G-⑤. 과거에 扶餘의 國이 辰韓의 地僻에 있었는데, 鯨海에 의지하여 복종하지

70 『魏書』 卷5 帝紀5 高宗紀 文成帝 太安 3年(457), “十有二月 是月 于闐扶餘等 五十餘國 各遣使朝獻.”

71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王 3年(494), “二月 扶餘王及妻孥 以國來 降.”



않고, 鰲山에 의지하여 공물을 바치지 않았다. 顯慶 4년(659) 雞林道大總管 蘇定方은 專征하라는 制를 받아 이를 정벌하였다. (『馮師訓 墓誌銘』)

G-⑥. 百濟는 後漢末 夫餘王 尉仇台의 후손이다[後魏時에 百濟王의 上表에서는 “臣은 高麗와 함께 선조가 夫餘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처음에 ‘百家濟海’하였으므로 ‘百濟’라 이름하였다. 晋時에 句麗가 이미 遼東을 정략하여 차지하자 百濟 또한 遼西 晋平 二郡을 차지하였다[지금의 柳城과 北平 사이이다]. 晋 이후로 諸國을 병탄하여 馬韓故地를 차지하였다. … 晋代에서부터 蕃爵을 받아 스스로 百濟郡을 두었다. … 後魏의 孝文帝가 무리를 보내 정벌하여 깨뜨렸다. (『通典』 卷185 邊防門1 東夷 上 百濟)

660년에 장초금(張楚金)이 편찬한 G-①의 『한원』 백제전 본문에는 백제가 “구태의 사당을 받들어 부여의 후예들을 결집(奉仇台之祠 纂夫餘之)”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세주에는 642년에 위왕(魏王) 이태(李泰) 등이 편찬한 지리지인 『괄지지』가 인용되었는데, 왕성에 시조 구태묘를 세워 해마다 네 번씩 제사 지냈음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백제가 사비 도읍 시기에 부여계 후손들의 정통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구태를 시조묘 제사로 받들었음을 알 수 있다.

G-②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성왕 16년(538)에 사비로 천도하면서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로 바꾸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북방의 부여가 멸망(494)한 이후에 부여 후예들을 결집하여 구태묘 제사를 지냈다는 G-①의 기록과 잘 부합된다.

G-③의 『일본서기』 계체천황 23년(529) 기록은 백제왕이 다사진(多沙津)을 차지한 것에 대해 가라왕(加羅王)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결국 부여(扶餘)의 소유를 인정했다는 내용으로, 성왕의 사비 천도(538) 이전부터 백제를 부여라는 국호로 지칭한 사례이다.

G-④의 『속일본기』 기록에서는 귀수왕(백제 14대 근구수왕, 재위 375~384)

이 백제의 16세 왕인데, 백제 태조 도모대왕(都慕大王)은 일신(日神)이 강령(降靈)하여 부여(扶餘)에서 개국하였고, 천제(天帝)가 록(鑠)을 주어 모든 한(韓)을 통솔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8세기 일본의 백제 왕계보와 태조 인식을 알 수 있다. 곧, 도모대왕은 부여의 시조 동명을 말하며, 백제에서 부여 동명을 태조로 여기면서 왕계보를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G-⑤는 계림도대총관 소정방의 휘하에서 백제 멸망 전쟁을 수행했던 풍사훈(馮師訓, 618~692)의 묘지명으로,<sup>72</sup> 659년 당시 당에서 백제를 부여(扶餘)의 국(國)이 진한(辰韓)에 자리 잡은 나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801년경에 두우(杜佑)가 편찬한 G-⑥의 『통전』 백제 기록은 남조계 사서보다 북조계 사서를 주로 참고하면서 직접 자료 확보도 하여 당대(唐代)의 인식에 맞춰 백제사를 재구성한 자료라고 한다.<sup>73</sup> 여기에는 백제가 후한말 부여왕 위구태의 후예로, 진 시기에 요서 진평의 2군을 차지한 이후 마한고지(馬韓故地)를 차지하였고, 변작(蕃爵)을 받아 스스로 백제군(百濟郡)을 두었으며, 북위의 효문제가 군대를 보내 정벌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같은 『통전』의 부여 기록에서는 위구태를 비중 있게 기록하였다는 점에서,<sup>74</sup> 두우는 백제와 부여의 밀접한 연관 속에 위구태와 구태를 동일하게 인식하였고, 여기에 협주로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상표문에서 부여 출자를 강조한 사실도 덧붙였다. 이로 보면, 9세기 당의 인식에서도 백제와 부여의 연결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72 이민수, 2019, 「백제 멸망기 당의 신라 침공 계획」, 『한국고대사탐구』 33, 383쪽.

73 송영대, 2019, 「『通典』 百濟節의 서술과 인식」, 『사학연구』 133, 92~102쪽. 『通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송영대, 2025, 『『통전』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소명 참조.

74 『通典』 卷185 邊防門1 東夷 上 夫餘, “其王始死子尉仇台立 更屬遼東 時句麗鮮卑強度 以夫餘在二虜之間 妻以宗女.”

## VI. 맺음말

이 글은 백제 부여씨 왕실의 기원에 대하여 북방 부여사의 흥망과 연결시키면서 북조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이주민들에 주목하였다. Ⅱ장에서는 3세기 초 구태 건국 전승을 통해 부여계 집단의 이동과 후한 공손씨가 설치한 대방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Ⅲ장에서는 3세기 중반부터 마한 백제국(伯濟國)이 성장함에 따라 4세기에 낙랑, 대방인들이 이주하는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낙랑군이 북조의 요서 지역으로 이동하고 백제와 고구려가 옛 낙랑과 대방 지역에서 각축하는 이 시기에 부여계 이주민들이 대규모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Ⅳ장에서는 모용 선비를 중심으로 한 북조 지역 부여계 이주민들과 한반도 마한 백제국의 관계 속에서 4세기 중국 사서에 ‘백제(百濟)’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고, ‘부여씨(扶餘氏)’를 칭한 인물들이 요서 지역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요서 지역의 부여계 이주민인 부여왕(扶餘王) 여울(餘蔚)과 한반도 백제의 근초고왕 여구(餘句)가 370년대에 함께 맹활약한 사실을 주목하였다.

이어 Ⅴ장에서는 5세기 이후 중국 사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제 왕실의 부여 기원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요서 정략설에 대한 논의도 한반도 백제의 요서 진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접근이 아닌, 모용 선비에 의해 요서 지역으로 사민되었던 부여계 집단이 백제 왕실에 들어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송서』와 『위서』에 보이는 개로왕 시기의 많은 부여씨 인물들이 모두 근친 왕족이 아니라 부여계 이주민 집단일 가능성도 생각해보았다.

이처럼 요서 지역 부여 유민의 활동과 북방 유목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 계승 의식을 강하게 지니게 된 백제 지배층의 인식은 멸망 이후까지도 계속 유지되었다. 백제의 영역 안에는 요서 지역 부여 유민의 활동과 북방 유목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부여계 이주민들은 물론, 낙랑이나 대방과 관련되거나

5호 16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중국인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주민의 이동 과정을 겪은 백제의 국가 성격은 매우 국제적인 면모를 띠게 되었으며, 중국 사서에는 백제 주민에 신라인·고려인·왜인은 물론 중국인도 섞여 있다고 기록하였다.

다만, 백제가 부여 계승 의식만 내세운 것은 아니었고, 점차 마한의 옛땅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무왕 시기에는 마한 토착 세력의 진정한 복속을 이루기 위하여 마한의 신화를 수용하고 불교 사원을 통해 정신적 영유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도 보인다.<sup>75</sup>

---

75 이에 대해서는 이장웅, 2012, 「百濟의 馬韓 薯童(武康王) 神話 수용과 益山 彌勒寺」, 『역사민속학』 38 참조.

## 참고문헌

### 자료

『三國史記』.  
『後漢書』, 『三國志』, 『晉書』, 『宋書』, 『梁書』, 『魏書』, 『周書』, 『隋書』.  
『翰苑』, 『資治通鑑』, 『通典』.  
『日本書紀』, 『續日本記』.  
「牟頭婁墓誌」, 「梁職貢圖」, 「馮師訓 墓誌銘」, 「禰軍 墓誌銘」, 「禰素士 墓誌銘」.

### 단행본

高久健二, 1995, 『樂浪古墳文化研究』, 學研文化社.  
김기섭, 2000,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김영심, 2022, 『백제의 이주지식인과 동아시아 세계』, 지식산업사.  
노중국, 2018, 『백제 정치사』, 일조각.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송영대, 2025, 『『통전』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소명.  
안정준, 2024, 『고대 동아시아의 이주와 고구려』, 역사비평사.  
윤선태, 2006,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李基東, 1996, 『百濟史研究』, 一潮閣.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이성제, 2006,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池培善, 1997, 『中世東北亞細亞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 논문

姜鍾薰, 1992, 「백제 대륙진출설의 제문제」, 『韓國古代史論叢』 4.  
강종훈, 2003, 「4세기 백제의 遼西 지역 진출과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30.  
\_\_\_\_\_, 2015, 「『晉書』慕容皝載記와 『資治通鑑』晉穆帝紀 所載 ‘百濟’ 관련 기사의  
사료적 가치」, 『大丘史學』 121.

- 권덕영, 2012, 「백제 유민 褊氏 一族 묘지명에 대한 斷想」, 『史學研究』 105.
- 권오영, 2018, 「백제와 부여의 계승성 여부에 대한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61.
- 권오중, 2011, 「요동 공손씨정권의 대방군 설치와 그 의미」, 『대구사학』 105.
- 기경량, 2016, 「4세기 고구려 ‘南道·北道’의 실체와 그 성격」, 『한국문화』 7.
- 김기흥, 2004, 「백제의 正體性에 관한 일 연구」, 『역사와 현실』 54.
- 김길식, 2014, 「2~3世紀 漢江 下流域 鐵製武器의 系統과 武器의 集中流入 背景 - 김포 운양동유적 철제무기를 중심으로 -」, 『百濟文化』 50.
- 김성한, 2014, 「百濟의 건국과 仇台」, 『歷史學研究』 56.
- 남소연, 2023, 「5세기 백제의 左·右賢王 수용 배경과 기능」, 『百濟學報』 45.
- 盧明鎬, 1981,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墓 - 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10.
- 박남수, 2019, 「고구려·백제의 遼河 유역 진출과 對中 交易」, 『한국고대사탐구』 32.
- 박순발, 1999, 「한성 백제의 대외관계」, 『백제연구』 30.
- 朴信映, 2019, 「백제 한성기 황혈석식실묘의 도입과 확산과정」, 『百濟研究』 70.
- 배재영, 2009, 「백제의 부여 인식」, 『百濟文化』 41.
- 백길남, 2015, 「4-5세기 百濟의 中國系 流移民의 수용과 太守號」, 『동방학지』 172.
- 서영교, 2019, 「백제 개로왕의 국서와 풍태후」, 『문자와 고대 한국 2 교류와 생활』, 주류성.
- 성정용, 2003, 「漢城期 百濟馬具의 編年과 그 起源」, 『國史館論叢』 101.
- \_\_\_\_\_, 2009, 「중부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석실묘의 확산과 그 의미」, 『황혈석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 송영대, 2019, 「『通典』 百濟節의 서술과 인식」, 『사학연구』 133.
- 宋知娟, 2004, 「帶方郡의 盛衰에 대한 研究」, 『史學研究』 74.
- 余昊奎, 1992, 「高句麗 初期 那部統治體制의 成立과 運營」, 『韓國史論』 2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_\_\_\_\_,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 \_\_\_\_\_, 2001, 「百濟의 遼西進出說 再檢討」, 『진단학보』 91.
- \_\_\_\_\_, 2014, 「4세기-5세기 초엽 백제의 대중교섭 양상」, 『백제의 성장과 중국(백제 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5)』, 한성백제박물관.

- 鈴木靖民, 2003, 「倭와 百濟의 府官制」,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윤용구, 2005, 「고대중국의 東夷觀과 고구려 - 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 \_\_\_\_\_, 2007, 「중국계 관료와 그 활동」, 『百濟의 對外交渉(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_\_\_\_\_, 2015, 「3세기 이전 마한백제의 성장과 중국」, 『백제의 성장과 중국(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5)』, 한성백제박물관.
- 윤정하·강인옥, 2021, 「청주 오송 유적 출토 부여계 동병철검의 의의」, 『한국상고사학보』 112.
- 이민수, 2019, 「백제 멸망기 당의 신라 침공 계획」, 『한국고대사탐구』 33.
- 이성규, 2005,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 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서해문집.
- 이승호, 2020, 「부여의 쇠퇴·멸망 과정과 王室 일족의 동향」, 『東國史學』 68.
- 李鎔賢, 1999, 「扶餘 宮南池 出土 木簡의 年代와 性格」, 『宮南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이장웅, 2008, 「百濟 系統 資料로 본 卒本扶餘의 東明神話」, 『白山學報』 81.
- \_\_\_\_\_, 2012, 「百濟의 馬韓 薯童(武康王) 神話 수용과 益山 彌勒寺」, 『역사민속학』 38.
- \_\_\_\_\_, 2016, 「百濟 始祖 仇台·沸流 傳承의 성립과 高句麗·公孫氏 관계」, 『百濟文化』 55.
- 이정빈, 2017a, 「기리영(岐離營)을 통해 본 마한 제국(諸國)과 조위(曹魏)」, 『백제학보』 22.
- \_\_\_\_\_, 2017b, 「모용선비 전연(前燕)의 부여·고구려 질자(質子)」, 『동북아역사논총』 57.
- 이종수, 2021, 「통화 만발발자 유적 집장묘의 계통과 성격」, 『東北亞歷史論叢』 71.
- \_\_\_\_\_, 2024, 「라마동고분군의 부여 계승에 관한 검토」, 『先史와 古代』 75.
- 정재운, 2012,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사충』 77.
- \_\_\_\_\_, 2018, 「중국 遼西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 『東北亞歷史論叢』 61.
- 정지은, 2019, 「3~4세기 백제(百濟)의 대중(對中)교섭과 동이교위(東夷校尉)」, 『역사

와 현실』 112.

조영광, 2017, 「고구려·부여계 유이민의 남하와 백제 부여씨의 등장」, 『先史와 古代』 53.

조운재, 2025, 「백제의 중국계 이주민과 고고자료에 대한 인식」, 『百濟研究』 82.



## 백제 부여씨 왕실의 기원과 부여계 이주민

이장웅

이 글은 백제 부여씨 왕실의 기원에 대하여 북방 부여사의 흥망과 연결시키면서 북조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이주민들에 주목하였다.

Ⅱ장에서는 3세기 초 구태 건국 전승을 통해 부여계 집단의 이동과 후한 공손씨가 설치한 대방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Ⅲ장에서는 3세기 중반부터 마한 백제국(伯濟國)이 성장함에 따라 4세기에 낙랑, 대방인들이 이주하는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Ⅳ장에서는 모용 선비를 중심으로 한 북조 지역 부여계 이주민들과 한반도 마한 백제국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세기 중국 사서에 ‘백제(百濟)’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고, ‘부여씨(扶餘氏)’를 칭한 인물들이 요서 지역과 한반도에 서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V장에서는 5세기 이후 중국 사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제 왕실의 부여 기원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요서 정략설에 대한 논의도 한반도 백제의 요서 진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접근이 아닌, 모용 선비에 의해 요서 지역으로 사민되었던 부여계 집단이 백제 왕실에 들어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제어:** 백제(百濟), 백제국(伯濟國), 부여(夫餘), 부여씨(扶餘氏), 공손씨(公孫氏), 요서(遼西), 모용(慕容) 선비(鮮卑), 북조(北朝)

## ABSTRACT

# Origins of Buyeo Clan Royal Family in Baekje and the Immigrants of the Buyeo Family Line

Lee Jangwoong

This paper focused on the immigrants who appeared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Northern dynasties while linking the origin of the royal family of Buyeo of Baekje with the rise and fall of Buyeo's history in the north.

Chapter Ⅱ examines the movement of the Buyeo group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Daebang established by the Later Han's Gongson clan through the transmission of the old founding of the country in the early 3rd century.

Chapter Ⅲ examines the migration of Nakrang and Daepang people in the fourth century as Mahan's Baekjeguk(伯濟國) grew from the middle of the third century.

Chapter Ⅳ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yeo immigrants in the Northern Dynasty region, centered on Murong Xianbei, and the Mahan's Baekjeguk(伯濟國)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4th century, the name ‘Baekje(百濟)’ first appeared in Chinese librarians, and attention was paid to the appearance of the characters who referred to ‘Buyeo clan’ appearing simultaneously in the Yoseo region and the Korean Peninsula.

Chapter V examines that since the 5th century, Chinese librarians have been steadily aware of the origin of the Baekje royal family. In this regard, the discussion on the theory of Baekje’s Advance in the YoSoe(遼西) Area also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Buyeo group, which was privately housed in the YoSeo(遼西) area by Murong Xianbei, entered the Baekje royal family, rather than an approach to the possibility of Baekje’s advance into Yoseo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Baekje(百濟), Baekjeguk(伯濟國), Buyeo, Buyeo clan, Gongson clan, YoSoe(遼西), Murong Xianbei, Northern dynasties

# 5~6세기 물길의 부여 진출과 두막루

이종록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물길의 위치 비정과 문화에 대한 논쟁
- III. 5~6세기 물길의 부여 진출과 고구려의 대응
- IV. 두막루와 고구려·부여의 관계 및 속말말갈
- V. 맺음말



## I. 머리말

5~6세기 중국 동북지역 및 연해주 일대에 거주한 종족집단인 물길(勿吉)에 대해서는 『위서(魏書)』 물길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5세기 말 물길이 고구려의 북방을 공격하여 10개 부락을 함락하였다고 전하는 한편,<sup>1</sup> 6세기 초 고구려 사신 예실불이 부여가 물길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다는 증언을 수록하고 있다.<sup>2</sup> 이 시기 물길은 북위(北魏)에 직접 사신을 파견하면서 교섭하고 있었으며, 고구려 외에도 두막루 등을 비롯한 북방 주민들과 치열한 각축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물길의 활동은 기존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대상이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늦어도 5세기 말부터 시작된 물길의 확산이 부여의 축출과 더불어, 이후 발해의 구성원인 말갈(靺鞨)의 원류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길은 『위서』의 기록에 따르면 옛 ‘숙신국(肅慎國)’이자, 『신당서(新唐書)』 등의 사료에서 말갈의 옛 이름이라고 전한다.<sup>3</sup> 이와 같은 중국 정사상에서 말갈의 원류란 선진문헌의 숙신-3세기 읍루-5세기 물길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들이 일원적 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이 계보가 실제 사실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는 한중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sup>4</sup> 적어도 물길·말갈은 3세기 읍루의 문화인 폴체 문화와 일정

\* 투고: 2026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6년 2월 9일, 게재 확정: 2026년 2월 13일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6714).

1 『魏書』 卷100 列傳88 勿吉.

2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

3 『新唐書』 卷219 列傳144 渤海, “渤海 本粟末靺鞨高麗者 姓大氏.”

4 중국 학계에서부터 제기된 사료상의 숙신-읍루-물길-말갈 계보를 긍정하고 논의

한 상관관계를 지닌 문화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말갈은 『수서』의 ‘말갈 7부’와 같이<sup>5</sup>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의 위치 및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6세기 이후 사료상에서 말갈의 거주 범위는 북류 송화강의 속말말갈 및 백두산 주변의 ‘백산말갈(白山靺鞨)’의 명칭에서부터 반영된 것처럼 말갈이 과거 읍루의 거주 범위보다 넓게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물론 이 말갈을 모두 동일한 원류와 종족적 성격을 지닌 집단으로 일괄 이해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지금도 의문의 여지는 있다. 이는 ‘말갈’ 자체 혹은 이들이 보유한 ‘말갈문화’라는 문화의 정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결부된 사안이기에는 논의가 쉽지 않다.

물론 큰 틀에서 말갈문화란 소위 ‘말갈관’ 등을 지표로 하는 문화임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이다.<sup>6</sup> 그런데 말갈문화는 그 확산과 형성 과정에 대해 사료상에서 뚜렷하게 그 과정이나 동인을 확인하기 어렵다. 즉, 말갈이 그 원류인 물질이나 읍루보다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었음에도, 그 확산 과정조차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북방 침공 및 부여 축출 기록은 5세기 말갈문화 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사실상의 유일한 기록이 될 것이다.

따라서 5~6세기 부여·고구려와 대립한 물질의 양상을 추적하는 작업은 곧 말갈의 기원과 그 정의 자체를 밝히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

를 전개한 소위 ‘일원적 계통론’에 대한 연구사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김현숙, 2010, 「고구려사에서의 말갈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61, 84~97쪽을 참조.

5 『隋書』 권81 列傳46 靺鞨.

6 일본, 중국과 러시아 학계의 ‘말갈문화’의 정의에 대한 연구사는 강인욱, 2009, 「靺鞨文化의 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3, 11~16쪽을 참조. 이 글에서는 ‘말갈’ 및 ‘말갈문화’의 정의가 논의의 주안점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정리 및 정의를 인용하여 서술한다.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말갈문화란 ‘말갈관’으로 칭해지는 통형관이 분포되는 지역에 거주한 주민집단의 문화로 정의한다.

도 5세기는 삼강평원 일대에서 대규모 성지를 구축한 세력인 봉림문화가 소멸하고, 이어서 6세기 말갈문화가 남쪽으로 전해주, 서쪽으로 북류 송화강 일대까지 확산하였던 역동적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또 5세기 중·후반에 한정한다고 해도 물길의 흥기와 고구려 변경 침략은 단순히 고구려-물길만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 북방 지역 및 중원의 정권과도 결부된 정세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sup>7</sup> 그렇기에 물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다. 특히 그 위치 비정과 이에 대응되는 고고학적 문화집단의 비정에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것은 사료상에서 물길의 공간적 범위는 모호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서는 그 중심지 내지 범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물길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속말말갈(粟末靺鞨)’과의 관계 문제이다. 속말말갈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물길의 5세기 고구려 북변 및 부여 방면 진출로 인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의 거주지가 옛 부여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부여계 곧 예맥 주민의 일원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왔지만, 최근까지의 연구에서 5세기 말 동류 송화강-북류 송화강의 속말말갈을 부여계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부여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지역에 부여의 문화와 일종의 문화 융합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화상에서도 그 비중에 논란이 있겠으나, 부여계 문화의 요소도 분명히 간취되기 때문이다.

또 사료상에서도 물길의 침략-속말말갈 형성 과정에서 ‘부여’라는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고 여긴다. 예시로 속말말갈의 일파인 낙사계의 집단이 ‘부여부대수령(扶餘府大首領)’<sup>8</sup>을 자처하지

7 여호규,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중앙사론』 47, 156쪽.

8 낙사계의 부여부대수령 표방은 2011년 소개된 「諾思計墓誌」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논의한다.

나, 이 지역에 “부유말갈(浮渝靺鞨)”<sup>9</sup>과 같은 존재가 8세기까지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두고 이 지역 주민들이 지닌 부여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는 부여라는 명칭 내지 ‘정체성’이 물질의 진출 이후에도 완전히 소멸한 인식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부여 정체성 표방은 당연하지만, 문화의 잔존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정체성의 표방을 단순한 옛 정치체의 명칭 차용이었다고 보는 것만으로 결론짓는 것도 지나치게 가벼운 해석이 될 것이다. 특히 부여가 정치적으로는 몇 세기 전에 소멸한 집단이었음에도 이를 굳이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에 물질에 의한 축출 이전까지 부여가 구축한, 특히 종족적 계통이 구분되는 집단도 ‘부여’라는 칭호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넓게 보면 기존에 예맥계와 구분되는, 읍루/물길 등을 원류로 두는 집단이 부여를 칭하기도 했던 양상, 종족성이라는 칭호가 가변적이고 정치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현상으로 이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록 부분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으나, 『위서』동이열전에서 전하는 두막루<sup>10</sup>와 부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에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알려진 것처럼 『위서』동이열전에서는 물질의 침략에 노출되었던 두막루라는 집단이 등장하여, 이들은 8세기까지 존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서에서 두막루란 모두 북부여의 후예로 자처했다고 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 두막루의 종족성 내지 부여와의 계승성 문제도 속말말갈과 마찬가지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속말말갈이 그러했던 것처럼 두막루 또한 부여와의 직접적인 종족적 계승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한 편이다. 그런데 부여의 직접적인 이주민이 아니라고 해도, 부여의 후예를 자처했다거나 혹은 그렇게 여겨졌다는 사실 자체는 이들이 길림 일대의 부여와 무관한 집단이 아니었음도 분명하다. 그리고 이

9 『舊唐書』卷39 志2 地理 및 『新唐書』卷43 下 志7 地理 下 靺鞨州.

10 『魏書』卷100 列傳88 豆莫婁.



와 같은 집단이 물길의 침공 과정, 곧 부여가 완전히 소멸했던 사건의 계기로 여겨지는 시기에 등장하며 언급되었다는 점은, 곧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후부여’와 고구려-물길 간의 각축에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두마루나 이후 낙사계 집단의 부여부 표방 문제는 종족성 이전에 정치적인 배경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 배경이 된 문화적·종족적 유사성의 반영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고고학 조사를 포함한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기에, 정치적 배경은 현 단계에서 관련 사료를 통한 논의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은 무리한 추단에 의존하게 되겠으나, 6세기 초까지 이어진 물길의 부여 방면 진출과, 이 과정에서 ‘두마루’라는 집단이 역사 기록상에 두드러진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배경에는 당시 고구려가 전개했던 북방 민족에 대한 통제 및 점진 경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 관계를 확인하며 두마루 등을 포괄한 동류 송화강 남북의 주민집단에서 ‘부여’가 지니고 있었던 의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물길의 위치 비정과 문화에 대한 논쟁

물길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 위치, 좀 더 정확하게는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다. 물길에 대한 가장 상세한 사료는 『위서』 동이열전 물길조의 기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읍루나 숙신과는 달리 공간적 범위 및 주변 집단에 대한 기술이 모호하게 전해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 사료만으로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며, 기존 연구에서도 주로 5세기 사신을 파견한 물길 세력의 중심지 문제를 두고 이루어졌던 것이 특징이다.<sup>11</sup>

A-1) 勿吉國 在高句麗北 舊肅慎國也 邑落各自有長 不相總一 其人勁悍 於東夷最強 言語獨異 常輕豆莫婁等國 諸國亦患之 去洛五千里 自和龍北二百餘里有善玉山 山北行十三日至祁黎山 又北行七日至如洛瓊水 水廣里餘 又北行十五日至太魯水 又東北行十八日到其國 ① 國有大水闊三里餘 名速末水.<sup>12</sup>

A-2) 去延興中 遣使乙力支朝獻 太和初 又貢馬五百匹 乙力支稱 初發其國 乘船泝難河西上 至太瀾河 沉船於水 南出陸行 渡洛孤水 從契丹西界 達和龍 ① 自云其國先破高句麗十落 密共百濟謀從水道并力取高句麗 遣乙力支奉使大國 請其可否 詔敕三國同是藩附 宜共和順 勿相侵擾 乙力支乃還 從其來道 取得本船 汎達其國.<sup>13</sup>

A-3) 國南有徒太山 魏言大白 有虎豹羆 狼害人 人不得山上洩汗 行逕山者 皆以物盛.<sup>14</sup>

먼저 A-1)의 물길조 서두에서는 물길이 “고구려의 북쪽”에 존재했으며 “낙양(洛陽)에서 5,000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고구려의 북쪽’이라는 기록은 이후 연구에서 물길의 동류 송화강 유역 점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북쪽이라는 막연한 표현만으로 그 위치나 범위를 판단하기 힘들다. 또 “낙양으로부터 5,000리”라는 기록도 정확한 거리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 위치 비정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같은 책의 실위조나 두막루조에서도 물길이 이들의 남쪽 1,000리에 위치했다는 대략적인 방위와 거리

11 물길의 위치 비정에 관한 자세한 연구사는 김락기, 2009, 「5~6세기 勿吉의 중심지와 徒太山」, 『한국고대사연구』 53, 205~216쪽 및 여호규, 2018, 앞의 글, 170~182쪽의 정리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하 본문의 내용 또한 이들 연구를 참조하여 정리했음을 밝힌다.

12 『魏書』 卷100 列傳88 勿吉.

13 『魏書』 卷100 列傳88 勿吉.

14 『魏書』 卷100 列傳88 勿吉.

는 알 수 알 수 있지만,<sup>15</sup> 정작 실위나 두막루도 그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sup>16</sup>

한편, 이 기록에서는 조양 일대로 비정되는 화룡(和龍)에서부터 “그 나라(其國)”에 도착하는 길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 경로상의 지명들에서 여락괴수(如洛瓊水)는 낙호수(洛孤水)와 동일하며 곧 시라무렌하, 태로수(太魯水)는 눈강(嫩江) 남쪽의 조아하(洮兒河)라고 보는 데에는 대체로 연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난하의 경우는 눈강으로 한정하거나<sup>17</sup> 혹은 눈강-동류 송화강-흑룡강 하류로 이어지는 수로로 보는 등 의견의 차이가 있다.<sup>18</sup> 그런데 이들 경로는 그 위치, 특히 난하의 경우 수로를 어디까지로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물길의 중심지가 판이해진다. 그렇기에 보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좀 더 위치가 명확한 A-1-① “속말수(速末水)”에 주목하며, 이를 물길의 위치 비정의 단서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신당서(新唐書)』 흑수말갈전에서는 “속말수(粟末水)”라는 강을 설명하는데, 이를 도태산(徒太山) 서쪽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흘러 타루하(它漏河)로 유입된다고 한다.<sup>19</sup> 여기에서 도태산은 백두산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시각이며, 이를 감안하면 속말수(粟末水)는 북류 송화강(제2송화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위서』의 속말수(速末水)도 같은 북류 송화강으로 보며, 자연 물길의 중심지를 이 지역으로 비정해왔다.

15 『魏書』 卷100 列傳88 室韋 및 豆莫婁.

16 송기호, 2008, 「5세기 후반 고구려의 북방 경계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30쪽.

17 津田左右吉, 1915, 「勿吉考」, 『滿洲地理歷史研究報告』 1, 10~13쪽; 1964, 『津田左右吉全集』 12, 岩波書店; 池内宏, 1951, 『滿鮮史研究』 上世1冊, 吉川弘文館, 476쪽.

18 楊保隆, 1985, 「勿吉地域西南部邊至考」, 『北方文物』 1985-4, 68~69쪽; 여호규, 2018, 앞의 글, 159쪽.

19 『新唐書』 卷219 列傳144 北狄 黑水靺鞨, “離爲數十部 酋各自治 其著者曰粟末部 居最南 抵 太白山 亦曰 徒太山 與高麗接 依粟末水以居 水源於山西 北注 它漏河.”

북류 송화강은 잘 알려진 것처럼 4세기 이전 부여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물길은 A-2에서 을력지의 증언처럼 고구려의 10개 부락을 침공하였으며, 같은 책 고구려조에서도 고구려의 사신 예실불이 부여가 물길에게 쫓겨나 부여가 고구려에게 투항했다고 전한다.<sup>20</sup> 즉, 고구려의 영향 아래 있었던 부여를 물길이 몰아내고, 이 지역을 차지했기에 속말수를 물길의 강으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일본 학계의 연구에서는 물길의 중심지를 북류 송화강 일대로 비정하거나, 중심지는 다른 지역이라고 해도 475년에 물길이 북류 송화강 일대까지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예를 들어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는 물길의 중심지를 부여시(扶餘市) 근방의 석두성자(石頭城子) 일대였으나, 이후 북류 송화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고 보았다.<sup>21</sup> 또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초기 중심지가 길림 일대였으나 이후 북류 송화강의 상류에 있는 고구려의 영역까지 진출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sup>22</sup>

그런데 A-1-①의 의미는 물길의 중심지에 속말수가 있었다는 것인지, 단순히 영역 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지 단언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해당 기사만으로 물길의 중심지까지 비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sup>23</sup> 게다가 속말수가 을력지의 최종 도착지였다면 이 강이 경로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되었어야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또 『위서』의 ‘속말수’가 『신당서』의 속말수(粟末水)와 반드시 동일한 강을 묘사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상기 지적처럼 속말수는 당시 물길의 세력 범위 내에 존재했던 것을 묘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물길의 중심지를 흑룡강성 오상(五常) 일대로 비정한 한편, 속말수는 북류 송화강이 아닌 아습하(阿什河) 혹은 남림하(拉林河)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24</sup>

20 『魏書』卷100 列傳88 高句麗

21 津田左右吉, 1915, 앞의 글.

22 池内宏, 1951, 앞의 책, 508~509쪽.

23 日野開三郎, 1946, 「勿吉考」, 『史淵』 35, 499~500쪽; 1988, 『東北アジア民族史(上)』, 三一書房.

그런데 속말수가 언급되었다는 점은 설령 중심지가 아니라고 해도 『위서』 작성 시점에서 물길의 활동 범위에서 속말수가 포함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물길이 장광재령 이서의 북류 송화강 유역에 진출하였다고 해도, 그 이전 시기 중심지이자 물길의 발상지, 그리고 470년대 을력지의 사신 파견 시점의 중심지는 그보다 동북쪽의 동류 송화강(제1송화강) 유역에서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지명 비정만이 아니라, 물길이 읍루와 문화적으로나 종족적으로 계승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곧 읍루가 일반적으로 장광재령 이동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 기원 또한 유사한 지역에서 찾았던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에서는 장광재령 이동의 동류 송화강 중·하류 혹은 흑룡강 중류 일대를 물길의 중심지로 비정해왔다.<sup>25</sup>

이처럼 물길의 위치는 사료상의 중심지와 더불어, 후술할 고고 문화의 비정에 따라 다양한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물길의 진출 문제와 관련하여 유념할 필요가 있는 선학의 지적은 『위서』 물길전의 내용에서 시차가 존재했다는 가능성이다. 이에 따르면 『위서』의 속말수가 북류 송화강이며, A-1-①에서 속말수를 언급했던 시기의 물길은 을력지가 이용한 교통로를 통해 도착한 물길의 영역과 시간적 격차가 있었다고 보았다. 곧 이 기록은 어디까지나 물길이 북류 송화강에 진출한 시점의 기록이며, 을력지가 사신을 파견한 시기에는 동류 송화강 중·하류 일대로 추정하였다.<sup>26</sup>

그런데 이 지적에 따른다면 물길전의 내용은 475년 을력지가 사신을 파견

24 김락기, 2009, 앞의 글, 229~230쪽 참조. 다만 『위서』와 『신당서』의 ‘속말수’가 서로 다른 강이라고 보기에는 ‘徒太山’같이 동일한 지명을 사용하여 묘사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기에 속말수는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북류 송화강으로 전제하고 논의한다.

25 楊保隆, 1985, 앞의 글, 69쪽; 張博泉·魏存成 主編, 1998,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출판사, 98쪽; 송기호, 2008, 앞의 글, 231쪽; 范恩實, 2014, 『靺鞨興殞史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75쪽.

한 시점과 이후의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신 파견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정보 수집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북류 송화강, 즉 속말수에도 ‘물길’이라고 칭해진 집단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상에서 물길은 5세기 말부터 물길이 고구려 북방의 대적으로 나타나며, 부여를 축출하거나, 중원에 조공하는 모습을 보면 일견 통일된 정치집단처럼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위서』에서는 물길을 “읍락마다 장이 있고 서로 통일되지 않았다(邑落各自有長, 不相總一)”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언급은 『위서』에서 전하는 물길이 과연 일관되게 단일한 지역에 ‘중심지’를 두었던 정치집단으로 볼 수 있을지의 의문과 더불어, 송화강 유역에 거주하는 ‘물길’과 원 거주지의 물길 간의 관계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요소이다.

물론 ‘서로 통일되지 않았다’라는 언급만으로 물길인들 내에서 정치적 통합 움직임이나 종족적 동질감이 전무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심지’인 동류 송화강 유역의 물길인들이 북류 송화강 유역을 점거했던 집단과의 정치적 결집 내지 지배-피지배 관계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도 이미 물길이란 명칭이 지역적으로 연결되고,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다수 부락 중 대표적인 부락 하나의 이름으로 부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sup>27</sup> 이는 『삼국지』 동이전 읍루조에서부터 이어진, 이른바 ‘숙신계’ 내지 ‘읍루계’ 주민들이 언어적으로 예맥계 주민들과 구분되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과,<sup>28</sup> 기록상 물길이 통일되지 않은 정치집단임을 고려할 때 설득력

26 여호규, 2018, 앞의 글, 199쪽.

27 孫進己·幹志耿·莊嚴, 1985, 「勿吉與靺鞨的物質文化」, 『博物館研究』 1, 65~69쪽.

28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挹婁, “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 『魏書』 卷100 列傳88 勿吉, “言語獨異.” 『진서』 동이열전 숙신조의 경우 언어에 대해 별도의 명시는 없지만, 『송서』 등의 기록에서 숙신국이 重譯을 통해 입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동행했던 고구려 사신단의 통역으로 대화하고 있었으며, 곧 고구려와도 언어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宋書』 卷6 本紀6 孝武帝 大明 3年, “高麗國遣使獻方物 肅慎國重譯獻楮矢石弩 西域獻舞馬”).

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고 해도 5~6세기에 진행된 물질의 ‘부여 축출’이라거나, 북류 송화강 유역까지 진출했다는 상황도 그 양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후술할 북류 송화강 유역 진출과 속말말갈 형성이, 정치적으로 통합된 물질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 내지 영역화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군사적으로 물질인들의 침투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북류 송화강 유역에 확산된 물질과 그 원류, 그것이 동류 송화강 상류든 그 밖의 다른 지역이든 정치적인 결집은 느슨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위서』 물질전에서 물질의 부여·고구려 방면 침략 자체도 단일 정치집단의 통일된 움직임보다는, 과거 읍루계 주민들 중 독립된 소규모 집단의 개별적 활동으로 인한 결과였을 가능성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부여 방면 침공은 특정 정치집단의 영역 확장이라기보다는, 주민 이주(migration)의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질’로 칭해진 물질의 6세기까지 지속된 사신 파견도 서로 다른 정치집단으로부터의 조공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곧, 물질이라는 종족집단을 구성하는 집단 사이 개별적인 독립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점이 인지되면서 『위서』에서 속말수를 그 활동 범위로 기록하였지만 “각 읍락마다 장이 있고 서로 통일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물질의 원류를 다양하게 상정한다면, 5~6세기 무렵 이 지역의 물질, 좀 더 정확하게는 속말말갈과 부여 관계 논의에서 다루어졌던 고고 자료를 사료와 좀 더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질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고고학 자료 연구의 주안점은 각지의 문화집단 중 어느 집단을 사료상의 ‘물질’로 비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관건이 되었다. 5세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물질의 거주 범위 내에 확인되는 문화로 두드러지는 집단은 봉림문화(鳳林文化)<sup>29</sup>와 동인문화(同仁文化)<sup>30</sup>가 있다. 이들과 사료상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자의 부족한 고고학 지식으로 깊게 논의하기 힘들지만, 북류 송화강 유역에만 한정한다면 이 두 문화집단은 이 지역의 문화 요소에서 유사성이 지적되어



온 집단이다. 예시로 동인문화의 경우 복류 송화강 유역의 양둔 대해맹(大海猛) 유적 및 서단산(西團山) 문화의 상층에서 탄소연대측정 결과 510년 전후로 편년되는<sup>31</sup> 유물에서도 동인문화의 요소가 나타난다고 하여, 앞서 살펴본 복류 송화강 일대에 진출한 물길과 사료상의 정황도 일치한다.<sup>32</sup>

그런데 복류 송화강 유역의 유적지에 대해서는 이와는 다른 시각도 제시되었다. 이 지역에는 무덤 유적으로 유수(榆樹) 노하심(老河深) 유적의 상층 고분군과 양둔 대해맹 상층 고분, 사리파(查里巴) 고분군 등이 확인된다.<sup>33</sup> 여기에

- 
- 29 봉림문화는 동류 송화강 남쪽 삼강평원 七星河 유역에 위치한 문화집단을 지칭한다. 이 지역에는 兩漢~魏晉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 426개소가 확인되며(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9, 『鳳林城: 1998~2000年度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275~276쪽), 이 중 봉림문화는 동쪽으로는 우수리강 유역에서 남쪽으로는 樺南·寶清 일대, 서쪽으로는 장광재령, 북쪽으로는 동류 송화강 이남에 분포하고 있다. 田禾, 2004, 「鳳林文化淺析」, 『北方文物』 1期, 29쪽; 이종수, 2011, 「三江平原地域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挹婁·勿吉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41, 21쪽 참조.
- 30 동인문화는 중국 학계에서 흑룡강 중·하류에 위치한 綏濱縣 復興鄉 同仁村에서 확인되는 문화를 지칭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비록 시기별 편차는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토착 문화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1기는 500년대 전후 남북조 시기에 서 당나라 초기에 해당하는 1기 문화가 통상 물길의 문화였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말갈관’이 전형적으로 나타나 종래 다수의 연구가 黑水靺鞨의 거주지로 여겨왔다. 한편, 러시아 학계의 조사에 따르면 흑룡강 중류 일대의 말갈문화는 블라고슬로벤 노예-나이펠트 유적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기원후 4세기 말~5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홍형우, 2011, 「서(西)아무르 지역 말갈(靺鞨)토기의 특성과 그 전개」, 『한국상고사학보』 74, 48~49, 65~66쪽 참조.
- 31 梁會麗, 2019, 「吉林省渤海遺存調查概論」, 『邊疆考古研究』 25, 395~405쪽. 이와 같이 대해맹 유적을 포함하여 榆樹老河深 유적 3기층에서 발견되는 토기가 동인 1기에 속하는 점을 주목하면서, 여러 연구에서는 속말말갈의 주거지로 보는 근거로 삼는다. 속말말갈의 영역 및 고고학계의 200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사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451~458쪽 참조.
- 32 孫進己·幹志耿·莊嚴, 1985, 앞의 글; 강인옥, 2015, 「三江平原 滾屯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 52.
- 33 복류 송화강 유역의 말갈문화, 해당 연구에서 ‘범말갈문화’로 칭한 유적 및 유물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이종수, 2018a, 「속말말갈의 문화적 특징과 형성과정



더해 방어시설로 구태시(九台市) 상하만진(上河灣鎮) 일대 소형 보루 유적 등이 있다. 무덤 및 보루 유적에서는 다양한 양식의 유물이 확인되는데, 무덤만 해도 154기의 무덤이 속말말갈계의 무덤으로 분류되며, 이 중 124기에서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 수는 2,000점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형식상 이들은 5~7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대해맹 유적의 경우 M33층에서 북주 시기의 화폐인 오행대포(五行大布) 동전이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조성 연대는 577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sup>34</sup>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루들인데, 이들의 축성 형태와 유사한 보루들이 삼강평원 일대에서 다수 확인되어, 이들이 삼강평원 출신 이주민들의 축조물들로 파악되기도 한다는 점이다.<sup>35</sup> 보루 유적의 경우 1959년 문물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며, 1961년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sup>36</sup> 이들의 규모는 대체로 둘레 200~300m에 불과한 소형으로, 대체로 북류 송화강 중류에서 서쪽 구릉성 산지에 조밀하게 분포되는 특징을 지니며, 대부분 상하만진 남쪽 대흑산산맥 최북단 산악지대에 위치했다고 한다. 입지상 이들은 속말말갈의 취락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교통로 주변에 설치한 방어시설로 비정된다고 한다.<sup>37</sup>

이와 같은 보루의 유사성을 삼강평원 봉림문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본다면, 앞서 물길을 동인 1기 문화에 비정한 것과는 상충한다. 실제로 『위서』 물길전에서는 물길인들이 ‘축성(築城)’했다고 하여 『삼국지』 동이전 읍루조에는 없는 묘사를 전하고 있다. 이 기록은 읍루의 문화로 비정되는 폴체-완연하 문화에서 성지 및 환호시설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양상<sup>38</sup>과 부합되는 반면, 물길인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61, 135~148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4 다만 이 측정값 또한 대략적인 사용 시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분군 내의 변화 양상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종수, 2018a, 앞의 글, 150쪽.

35 이종수, 2018a, 위의 글, 143~144쪽.

36 吉林省文化局群衆文化處, 1961, 「吉林九台上河灣考古調查」, 『考古』 3期.

37 이종수, 2018a, 앞의 글, 143쪽.

들은 축성을 명시했던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에 물길을 동인 1기 문화로 보지 않거나 동인 1기 문화와 봉림문화를 동일 집단인 유산으로 보지 않는 이상, 북류 송화강 유역의 보류 유적의 성격은 별도의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동인 1기 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정되는 성지 유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시로 흑룡강성 나북현에서 압단하(鴨蛋河)와 소니하(小泥河)의 합류 지점, 소흥안령 동쪽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확인되는 강안고성 유적이 있다.<sup>39</sup> 이 성의 규모는 약 700m로 토축 성벽이며, 성 내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은 통형관 외에 반구관 등이 발견되는 전형적인 흑수말갈의 유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반구관으로 소개된 토기가 동인 1기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sup>40</sup> 이 지역의 물길 또한 축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북류 송화강 유역의 보류 유적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현 단계에서는 이들을 특정 문화집단으로 명확하게 비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물길의 중심지로부터 북류 송화강 유역에 진출하였던 무렵의 시차와, 두 지역 간에 정치적 연대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정 집단에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만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속말수 방면에 물길 인들이 어느 시기 활동 지역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꼭 동인 1기 문화 내지 봉림문화, 혹은 그 밖의 문화집단과 완전히 동일한 문화 속성을 지닌 집단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시간적 격차 외에도, 실제 이 지역의 ‘말갈문화’ 내지 ‘범말갈문화’는 속

---

38 강인옥, 2015, 앞의 글, 126쪽. 다만 폴체문화의 성지가 삼강평원에 일부 확인되기는 해도, 러시아 경내 흑룡강 중류와 우수리강 동편에는 별다른 환호시설 없이 소수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취락 등으로만 발견된다고 한다.

39 王禹浪·王俊鍾, 2020, 「唐代黑水都督府의 歷史地理學考察」, 『歷史地理研究』 4, 66쪽.

40 정석배, 2023, 「흑수말갈 나이펠드-동인문화 1단계의 유적과 흑수주 치소 문제」, 『고구려발해연구』 76, 212쪽.

말말갈의 출현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있었다. 예시로 대해맹 유적에서 발견된 오행대포 동전은 570년대 북주 시기의 물건이므로 유적의 조성 연대를 최소 이 시기로 앞당겨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570년대는 사료상에서 ‘물길’의 조공이나 활동 자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유적의 조영 주체는 물길과 동일한 문화를 계승하였다고 해도 사료상에서 ‘물길’로 활동한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유입된 물길계 주민이 기존의 원거주지와는 별개의 또 다른 문화를 흡수하여, 나아가 그 정체성까지 새롭게 갖추게 된 집단, 즉 속말말갈 탄생의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물길의 고고 문화와 종족성 해석 문제는 필자의 부족한 소견으로는 이 이상 논의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술한 것처럼 물길의 확산 과정에서 부여계 원주민과의 문화요소 융합까지 상정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에 5세기 말 시점에서 물길을 어떤 문화집단으로 비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기에서는 유보하며, 단지 물길이 ① 흑룡강 유역 내지 삼강평원 일대를 원류로 하고 있었으나, 이후 북류 송화강 유역 하류 일대에 진출하기까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② 이 외에도 다양한 경로와 집단의 혼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만 확인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 중 특히 전자의 문제는 후술할 두막루의 문제와 고구려의 북방 경영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후 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 Ⅲ. 5~6세기 물길의 부여 진출과 고구려의 대응

5세기 말 물길은 A-1)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신 을력지를 파견하여 고구려의 10개 부락을 공취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의 연동까지 모색하고 있었다고 한다.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는 물길의 확산은 고구려의 입장에서 북방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지적해왔다. 과거 고구려는 『진서(晉書)』의 숙신,

곧 봉림문화에 대한 우위를 점하며 중원 정권의 조공에 숙신의 사신을 동행시켜서 동북 방면의 읍루계 주민들에 대한 지배권 내지 우위를 표방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41</sup> 그런데 470년대 물길의 발흥 이후 이들은 중원에 직접 조공하였던 한편, 봉림문화 자체가 소멸에 접어들고 있었다. 비록 봉림문화의 직접적인 소멸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기 어렵지만,<sup>42</sup> 말갈문화의 확산 시점과 일치하는 것을 고려하면 양자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최근 연구에서는 물길의 공세에 따른 결과로 보기도 한다.<sup>43</sup>

물론 상술한 것처럼 봉림문화를 물길로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5세기 이후 물길의 확산-3세기 숙신의 소멸과 확장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5세기 시점에 한정한다면, 물길의 확산은 고구려에게 부여 고지에서부터 읍루계 주민 통제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동북방 방면 경영 전반에 큰 파동을 일으켰을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물길은 직접적으로 북위와 접선을 시도하며 고구려의 대남북조 교섭 축을 위협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으로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것은 479년 고구려와 유연 사이에 이루어졌던 지두우(地豆于) 분할 모의였다.

41 고구려와 『진서』 동이열전에서 보이는 숙신과의 관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이전 논문(이종록, 2024, 「4~5세기 고구려-숙신 관계와 三江平原의 주민집단」, 『고구려발해연구』 80)에서 이미 정리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론을 생략한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그 이전까지 봉림문화-숙신은 주변 읍루계 주민집단에게 중국과의 조공을 매개로 일정 수준의 우위를 성립시켰지만, 고구려와의 군사적 대립 패배 및 고구려의 동류 송화강 유역의 통제로 직접적인 사신 교환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숙신이 고구려에게 종속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남북조 시기까지 이어졌던 고구려의 숙신 사신 동행으로 보았다.

42 봉림문화의 소멸 과정은 이 지역 주민들의 이주로 보는 견해(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0, 「黑龍江友誼縣鳳林城址1998年發掘簡報」, 『考古』 2000-11, 10~11쪽), 고구려의 침공에 의한 결과(范恩實, 2014, 앞의 책, 95~99쪽), 고구려의 압박과 강제적인 遷徙(이종록, 2024, 앞의 글) 등의 설이 제기되었다.

43 홍순범, 2025, 「5~6세기 고구려의 동북방 전략과 勿吉」,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1) 太和三年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豆于以分之 契丹懼其侵軼 其莫  
弗賀勿于率其部落車三千乘衆萬餘口 驅徙雜畜 求入內附 止於白狼水  
東,<sup>44</sup>

『위서』 거란전에서는 고구려가 태화 3년 연연(蠕蠕), 즉 유연과 모의하여 지  
두우를 취해 나누는 것을 모의하였고, 이 여파로 거란이 침략을 두려워해 1만에  
달하는 무리가 북위에 와서 항복했으며, 이들이 백량수 동쪽에 머물렀다고 전  
한다. 지두우의 위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이 제기되었지만, 거란이 그 침공에  
위험을 느꼈다는 것으로 보아 거란과도 인접한 동시에, 고구려-유연 사이에 위  
치했을 것이 분명하다.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제시된 설로는 파림부(巴林部) 일  
대설,<sup>45</sup> 대흥안령 중단의 산간 지역설,<sup>46</sup> 오주목심기(烏珠穆沁旗)의 오랍근(烏  
拉根) 광혁하(郭勒河) 일대설<sup>47</sup> 등이 있다. 곧, 넓게 보면 고구려 서북 방면에서  
대흥안령 동편에 위치했던 것에는 의견이 일치된다.

지두우가 동류 송화강-대흥안령 동록 어딘가에 위치했다고 본다면, 이 지  
역에 대한 고구려의 경영에 대한 관심은 같은 시기에 대립하고 있던 물길과 무  
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을력지의 사행로가 눈강-대흥안령 동록 일  
대를 경유하는 동시에 “거란의 서쪽 경계”를 따라갔다면, 지두우 통제는 곧 물  
길의 사행로와 직접적인 연결을 좌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여  
러 연구에서는 지두우 분할이 470년대 이전 고구려가 시도한 물길-북위 간의  
교섭로 차단 목적에 있었음을 지적해왔다.<sup>48</sup> 이와 같은 시도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그 효과가 을력지의 478년 사행 이후

44 『魏書』 卷100 列傳88 契丹.

45 白鳥庫吉, 1970, 『塞外民族史研究』 上, 岩波書店, 196~197쪽.

46 鄭英德, 1983, 「烏洛侯地理位置再探」, 『黑龍江文物叢刊』 1, 69~72쪽.

47 여호규, 2018, 앞의 글, 193쪽.

48 이재성, 1996, 『고대 동몽고사 연구』, 범인문화사, 165쪽; 김락기, 2013, 앞의 책,  
83쪽; 여호규, 2018, 앞의 글, 195~196쪽; 홍순범, 2025, 앞의 글, 44~46쪽.

485년까지 물길의 조공이 약 7년간의 공백으로 나타났다고 보기도 한다.<sup>49</sup>

그런데 485년 이후 물길은 산발적으로 북위에 조공하고 있었고, 고구려의 지두우 분할 효과와 별개로 북위와의 접선을 지속하고 있었다. 나아가 485년 이후에는 물길이 북류 송화강 방면으로 진출하여 부여가 축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478년 이후 고구려-물길 간의 상쟁 과정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으며, 지두우 분할 모의도 그 실현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료가 없다. 그렇기에 이후의 물길이 이 지역에 진출한 과정은 대체로 6세기 초반까지 진행된 부여 관련 사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C-1) 正始中 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 悉弗進曰 高麗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珂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竝 國王臣雲惟繼絕之義 悉遷于境內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世宗曰 高麗世荷上將 專制海外 九夷黠虜 實得征之 瓶罄甕耻 誰之咎也 昔方貢之愆 責在連率 卿宜宣朕旨於卿主 務盡威懷之略 揃披害羣 輯寧東裔 使二邑還復舊墟 土毛無失常貢也.<sup>50</sup>

C-2) 二月 扶餘王及妻孥 以國來降.<sup>51</sup>

『위서』동이열전 고구려조에서는 고구려 측의 물길에 대한 증언을 전하는데, 이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정시(正始) 연간 사신 예실불(芮悉弗)을 파견해 물길로 인해 부여가 쫓겨났기에 그들을 고구려 “경내(境內)”로 옮겨 살게 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때의 부여, 소위 ‘후부여’로 칭해지기도 하는 이들은 『삼국사기』에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문자명왕 시기인 494년 고구려에 항복한

49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정도의 공백만으로는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50 『魏書』卷100 列傳88 高句麗.

51 『삼국사기』권19 고구려본기7 文咨王 3년

부여의 왕족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설이다. 이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며 부여는 이미 4세기 전연의 침입으로 멸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sup>52</sup> 그러나 이후 부여가 중국 정사류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료상에서 언급된다는 점을 볼 때, 494년 부여의 내투와 『위서』의 예실불의 증언은 같은 부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후부여는 과거 4세기 모용선비 세력에 의해 멸망한 후에 그 위치를 옮긴 후의 부여로, 다수의 연구가 오늘날의 이통하(伊通河) 하류, 곧 북류 송화강 중간에 위치한 농안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sup>53</sup> 『자치통감』에서 부여는 346년 녹산(鹿山)에 있었던 부여가 ‘백제의 침공’을 받아 연(燕) 부근으로 서천했다고 하며,<sup>54</sup> 이는 고구려의 오기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후부여 축출이 고구려 측의 증언대로 물길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 시기 농안 일대에도 물길이 진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5</sup> 또 물길이 493년까지 후부여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마무리한 후 북위와 그해부터 사신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sup>56</sup> 그러나 물

52 이병도, 1985, 『韓國古代史研究』 수정판, 박영사, 222쪽.

53 다만 농안 외에도 昌圖 西面城설(金毓黻, 1940, 『東北通史』, 東北大學研究室叢書; 김옥불 저 동북아역사재단 역, 2007, 『동북통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재인용), 서풍 성자산산성설(王綿厚, 1990, 「東北古代夫餘部の興衰及王城變遷」, 『遼海文物學刊』 1990-02), 遼源市 龍首山山城설(이종수, 2004, 『夫餘文化研究』, 길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3쪽; 張福有, 2015, 「夫餘後期王城在遼源」, 『東北史地』 2015-06) 등이 제기되었다. 송기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지만, 농안 일대의 부여계 유적 및 유물의 출토, 그리고 물길의 영역 안에 들어갔던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송기호, 2003, 앞의 글, 334쪽). 연구사 및 농안설에 대한 논의는 이승호, 2018, 『부여 정치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04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54 『資治通鑑』 권 97, 晉紀 19, 穆帝 永和 2년 정월, “永和二年 初, 夫餘居于鹿山, 爲百濟所侵 部落衰散, 西徙近燕, 而不設備 燕王眭遣世子儒帥慕容容·慕容恪·慕容根三將軍·萬七千騎襲夫餘 僞居中指授, 軍事皆以任恪, 遂拔夫餘, 虜其王玄及部落五萬餘口而還. 眭以玄爲鎮軍將軍, 妻以女.”

55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523쪽; 김락기, 2013, 『高句麗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靺鞨』, 경인문화사; 여호규, 2018, 앞의 글,

56 김락기, 2013, 앞의 책, 102~103쪽.

길이 493년 이전만이 아니라, 493~503년까지 거의 사신을 파견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여 후부여 축출 및 농안 일대 진출은 503년 직전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sup>57</sup>

정확한 시점에 의견은 갈리지만, 물길이 복류 송화강 유역의 최소 일부를 점거하였고 이에 따라 상술한 노하심, 양둔 등에서 발견되는 말갈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오늘날 다수의 설이다. 그리고 물길의 사신 파견이 6세기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길의 확산, 특히 동류 송화강 유역에서부터 북쪽에 이르는 지역을 통한 물길-북위 교섭 차단은 실패했던 것이 된다. 그리고 후부여 내투의 계기는 고구려-물길 사이 각축의 연장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두우 분할 모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집단 전체를 반으로 나눌 정도의 모의라면 고구려는 적어도 이들에 대한 인적·물적 개입이 가능할 정도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두우가 위치했던 대흥안령산맥 인근까지 고구려가 활발하게 교섭했다고 여겨지며, 고구려-지두우 사이에 위치한 집단 또한 상보적 내지 호혜적 입장을 가진 이들도 있어야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지두우 사이에 위치한 집단, 곧 후부여를 포함하여 『위서』에서 전하는 두막루·오락후·실위 등과 고구려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의 부재로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후부여의 경우 5세기 말까지 고구려의 부용국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앞의 『위서』 기록에 따르면 물길이 부여를 축출하는 바람에 고구려는 부여로부터의 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고구려가 후부여로부터 금을 입수하였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급을 허구로 보지 않는다면, 고구려가 물길에게 축출되기 이전의 부여로부터 현지 생산물을 입수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곧, 양자 사이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후부여가 종속적인 입

---

57 여호규, 2018, 앞의 글, 181~182쪽.



장으로, 일종의 공물을 바친 관계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sup>58</sup>

사실 지두우 분할 지배란 당시 고구려가 지리상 농안 지역의 후부여를 장악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시도였을 것이다.<sup>59</sup> 이를 본다면 정황적으로도 후부여가 고구려에게 종속적인 입장이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후부여가 위치한 북류 송화강 유역을 일단 통과한 후, 고구려가 눈강 유역을 통해 실위, 두막루 등의 집단과도 교섭할 수 있었다고 이해된다.<sup>60</sup> 실위와 두막루에 대해서는 고구려와의 관계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실위의 경우 몇 가지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간접적인 사례가 확인된다.

D-1) 其國無鐵 取給於高麗 多貂,<sup>61</sup>

D-2) 異苑曰 貂出句麗國 常有一物共居穴 或見之 身貂類人 長三尺 能制貂  
愛樂刀子 其俗人欲得貂皮 以刀插穴口 此物夜出 皮置刀邊 須人持皮  
去乃取刀.<sup>62</sup>

위 기록은 『수서』의 남실위(南室韋)에 대한 기록으로, 『위서』의 실위는 그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남실위 등 여러 집단으로 분리된 집단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남실위는 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로부터 철을 공급받았다고 한다. 자세한 사정은 알기 힘들지만, 이 철 공급이란 고구려-남실위 사이에서 교역 형태로 교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3</sup> 그렇다면 그 대가로 남

58 이승호, 2018, 앞의 글, 217~219쪽. 해당 연구에서는 황금을 부여가 고구려에 공물로 바쳐 朝貢國의 위치가 되며, 부여 왕실의 안위와 존속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았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59 津田左右吉, 1964, 앞의 글, 24쪽.

60 여호규, 2018, 앞의 글, 194쪽에서는 물길의 북류 송화강 하류 진출 이전 송화강-눈강 수로를 통해 이들과 교섭했으며, 본문에서 후술할 남실위 철 교역도 이 경로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61 『隋書』卷84 列傳49 北狄 南室韋.

62 『太平御覽』卷912 獸部24 貂.

실위에서는 무엇을 제공하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기록에 이어서 남실위에서는 담비(貂)가 많다는 언급이 있어, 고구려의 철 공급의 대가로 담비가죽을 전달한 가죽교역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태평어람』에서 인용한 『이원(異苑)』의 기록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5세기 무렵 남조 유경숙에 의해 작성된 해당 기록에서는 설화의 형태로 담비 가죽을 칼과 교환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종래 해당 기록은 고구려와 과거 읍루-숙신계 주민들 사이의 교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위의 남실위에 대한 기록을 고려한다면 읍루 외에도 남실위 등을 비롯한 북방 초원 주민과의 교역 방식을 의미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sup>64</sup>

그런데 여기에서 전하는 남실위-고구려 간의 철 교역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진행된 사실인지는 단편적인 기록이기에 자세하게 판단하기 힘들다. 또 『수서』에서 전하는 남실위의 상황을 두고 5세기 이전의 실위에서도 같은 교역망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실제로 『위서』에서는 실위에서 담비 가죽이 많이 난다는 기록은 있지만,<sup>65</sup> 고구려와의 철기 교역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물길에 의해 고구려와의 직접적인 접선 경로가 차단된 이후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남실위에서 자체적으로 철기를 생산하지 못했다면, 5세기 말에도 사정이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물길의 부여 방면 진출 이전까지는 고구려와 5세기 이전 실위 사이에서도 교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지만, 고구려와 실위 사이의 일정한 교류가 이루어

63 이용범,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 『백산학보』 1, 86~87쪽. 여기에서도 남실위에 도달하는 철기 교역의 경로를 길림에서부터 북류 송화강을 지나 수로로 서북행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64 다만 5세기 무렵에 편찬된 『이원』에서 『수서』에서 전하는 남실위 교역의 내용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곧, 『이원』의 내용은 남실위보다는 읍루, 혹은 남실위 이전 남북조 시기에 존재한 고구려-북방의 실위 등과의 교역에 대한 내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65 『魏書』 卷100 列傳88 室韋, “亦多貂皮.”

졌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그 위치에 대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위서』에서 실위의 위치는 물길 북쪽의 1,000리에 위치했다고 한 데에 이어, 지두우는 실위의 서쪽 1,000리에 위치했다고 하여 그 위치를 실위를 기준으로 전하고 있다.<sup>66</sup> 『위서』에서는 지두우·실위·두막루·오락후 등의 위치를 모두 고구려를 시발로 연쇄적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이는 당시 북위가 고구려 중심의 위상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sup>67</sup> 물론 물길이 동류 송화강 유역~북류 송화강 하류에 진출하면서 이들과 고구려 사이의 영역을 차단한 결과, 실제로는 실위와 두막루는 고구려가 아닌 물길의 북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곧, 물길이나 고구려 측에서 전달한 것처럼 고구려의 북변 송화강 유역을 차지한 당대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수용할 경우 일단 물길의 진출 이전에는 고구려를 시작으로 하여 주변 집단의 거리 내지 방위를 연쇄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북위의 일반적 인식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실위는 고구려의 북쪽(이후 물길의 북쪽)에 해당하고, 이들을 기준으로 서쪽의 지두우를 표기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1,000리라는 공간적 격차가 있었다고 해도, 실위-지두우 간의 거리가 인식되었다면 양자가 교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구려의 입장에서 지두우가 실위를 거쳐서 도달하였거나, 적어도 양자 사이의 상호 교류는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두우 분할 모의가 가능한 시점에서 실위와 고구려 사이에 교류가 존재했을 것이고, 지두우의 분할 지배까지 가능한 시점에서 실위에 대한 영향력도 단순한 교역 정도로 그쳤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구려-실위, 그리고 그 너머의 지두우 사이에 교섭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상술한 것처럼 일단 후부여가 위치한 농안 일대를 경유한 교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와 실위 혹은 지두우의 관계란, 4세기

66 『魏書』卷100 列傳88 地豆于, “地豆于國 在室韋西千餘里.”

67 여호규, 2017,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인식」, 『한국고대사연구』 88, 197~201쪽.

부터 농안 일대에 거주하던 후부여, 혹은 그 이전 시기의 부여가 구축했던 관계망이 기초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5세기 이전 후부여를 자신들의 조공국 등으로 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관계망까지 흡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확한 시기나 구체적인 과정은 알기 힘들지만, 이를 반영하는 사례는 바로 『위서』 및 『신당서』에서 ‘북부여’의 분파로 전하는 두막루였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두막루는 물길전에서는 부여 방면으로 진출한 물길의 위협에 시달리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어, 물길의 5세기 확산과 관련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 IV. 두막루와 고구려·부여의 관계 및 속말말갈

두막루의 위치에 대해서는 성립 과정을 보는 시각이나 고고학 자료 해석에 따라 연구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두막루의 위치를 하얼빈 일대로 보거나<sup>68</sup> 흑룡강 유역과 동류 송화강 유역의 합수처로 비정하기도 했으며,<sup>69</sup> 최근에는 삼강평원 일대에 비정하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70</sup>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물길의 침략 위협에 노출되었다거나 실위의 동쪽에 위치하였다는 기록과 북부여의 분파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체로 동류 송화강 이북 지역

68 津田左右吉, 1964, 앞의 책, 29쪽.

69 白鳥庫吉, 1970, 앞의 책, 223~224쪽.

70 강인욱, 2015, 앞의 글, 137~138쪽 및 141쪽 참조. 해당 연구에서는 두막루를 삼강평원에 위치한 집단으로 비정하였으나, 거란 등과 언어가 유사하다는 기록 등과 상충되어 두막루를 이 지역의 봉림문화로 그대로 보는 점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 두막루의 출자라고 하는 북부여의 실제 고고학적 문화상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봉림문화와 두막루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한편으로는 삼강평원 일대의 주민집단이 옥저계 문화가 북상하여 삼강평원 일대에서 풀채 문화와 융합하였다는 저자의 견해를 감안하면, 이는 부여와 밀접한 관계가 상정되는 옥저 문화의 요소를 두막루인들이 수용하여, 그 결과가 북부여 출자 의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 또한 상정될 것이다.

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범위를 좁혀 호란하(呼蘭河) 유역~소흥안령산맥 인근이라는 공간으로 상정하기도 한다.<sup>71</sup>

일단 그 위치는 사료를 기준으로 하면 공간적으로 고구려의 북쪽-실위와 물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물길의 동류 송화강 유역 진출에 따라 두막루가 물길의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두막루전의 기록에 대해 기존 연구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이들이 ‘옛 북부여’였다는 언급이다.

E-1) 豆莫婁國 在勿吉國北千里 去洛六千里 舊北扶餘也 在失韋之東 東至於海 方二千里 其人土著 有宮室倉庫 多山陵廣澤 於東夷之域最爲平敞 地宜五穀 不生五果. 其人長大 性強勇 謹厚 不寇抄 其君長皆以六畜名官 邑落有豪帥 飲食亦用俎豆 有麻布 衣制類高麗而幅大 其國大人 以金銀飾之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俗淫 尤惡妬婦 妬者殺之 尸其國南山上至腐 女家欲得 輸牛馬乃與之 或言本穢貊之地也.<sup>72</sup>

E-2) 開元十一年 又有達末婁 達妒二部首領朝貢 達末婁自言北扶餘之裔 高麗滅其國 遣人度那河 因居之 或曰他漏河 東北流入黑水 達妬室韋種也 在那河陰 凍末河之東 西接黃頭室韋 東北距達末婁云.<sup>73</sup>

두막루의 조공 기록은 『위서』를 시작으로 『신당서(新唐書)』 및 『책부원귀(冊府元龜)』 등에서 산견되며, 그 표기는 ‘達末婁’·‘達莫婁’·‘大莫盧’·‘大莫婁’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이 모두 『위서』 동이열전 두막루와 동일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신당서』 동이열전 유귀(流鬼)조의 ‘달말루’

71 孫進己·王綿厚, 1989,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147~148쪽; 여호규, 2018, 앞의 글, 192쪽.

72 『魏書』 卷100 列傳88 豆莫婁.

73 『新唐書』 권220, 열전145 東夷 流鬼.

는 후술할 부여와의 관계로 인해 두막루와 동일한 실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E-2). 이 기록에서는 개원 11년(723) 무렵 달말루라는 집단이 조공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들이 본래 북부여의 후예이며, 고구려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여 그 유민들이 나하(那河)를 건너 나라를 세웠음을 자언(自言)했다고 한다. 북부여의 후예라는 주장의 신빙성 여부는 차치한다고 해도, 이들을 『위서』의 두막루와 무관한 집단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74</sup>

문제는 해당 기록의 달말루(=두막루)가 고구려에 의해 나라를 잃고 북쪽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는 전승이다. 고구려에 의한 부여 분파의 이주가 『자치통감』의 346년 고구려의 공세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후 광개토왕 시기인 5세기 초반 길림 일대에 대한 진출의 결과인지, 혹은 494년 후부여의 내투로 인해 사료상에서 부여가 소멸하는 시점 이후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으며, 이는 두막루와 실제 부여와의 관계 문제와 더불어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사항이다.

만약 두막루의 북부여의 분파라는 주장이 나름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들은 종족적으로 부여와 동일하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위서』 실위전에서는 실위인들의 언어가 고막해(庫莫奚)·거란·두막루와 같다고 하여, 언어만 보면 실위-거란 등과 더 종족적 친연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sup>75</sup> 이를 보아 두막루의 원류는 고막해 등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몽골계 종족으로, 이들은 모용선비의 부여 침공 당시 송화강 유역의 통제력을 상실한 틈을 타서 유입된 집단이라고 보는 추정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곧, 옛 부여의 거주지에 유입된 결과 사회상이 일치했지만, 그 주민 구성원이 몽골계였기에 실제 사용한 언어가 거란 등과 비슷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막루의 실제 형성은 이후 5세기 말 물길의 진출과 고구려의 494년 부여 병합으로 인해 그 강압적인 대응조치에 밀려 하얼빈 일대까지 축출된 집단이라고 보았다.<sup>76</sup>

74 김정배, 1991, 「豆莫婁國 研究」, 『국사관논총』 29, 72~74쪽.

75 『魏書』 卷100 列傳88 室韋, “語與庫莫奚契丹豆莫婁國同.”

반면 부여와의 연결고리를 좀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410년 부여 방면 침공으로 인해 부여 세력 일부가 눈강, 동류 송화강을 건너 송눈평원 일대에 정착한 집단을 두막루로 비정하기도 한다. 해당 기록에서 전하는 북부여란 『위략』에서 전하는 북부여의 원류 “탁리국(橐離國)”이며, 이들이 눈강 하류의 옛 터전으로 이동해 건국했던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부여와의 언어 차이는, 처음에 이들은 고구려-부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인접한 실위 등의 영향으로 인해 동화된 결과로 보았다.<sup>77</sup> 또 최근에도 두막루란 330년대 중반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길림 일대를 점거한 사건의 여파로 형성된 집단이며, 이들은 부여 세력 일부가 고구려의 공세를 피해 나하를 건너 건국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여기에서는 두막루를 동류 송화강 이북 지역으로 보는 한편 그 종족적 계통은 실위, 거란 등과 동일하다고 보았다.<sup>78</sup>

상기 연구가 주로 사료를 통한 비정이었다면, 고고학적인 접근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부여의 생활문화 권역을 5개로 구분한 후, 고구려·물길 등의 부여 방면 진출 과정에서 이 중 하나가 두막루를 형성한 집단으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입지상 최후까지 남아 있던 세력은 유수 노하심 유적을 중심으로 한 북류 송화강 하류의 주민집단이었으며, 이들이 494년 부여 왕실의 고구려 내투를 계기로 북쪽의 눈강과 동류 송화강을 넘어 두막루를 건국했다는 것이다.<sup>79</sup>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고학적인 문화요소와 역사 기록상에 부여와의 상대적인 친연성에 따라, 두막루가 칠성하 유역 삼강평원 일대의 봉림문화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sup>80</sup>

76 박경철, 1992, 「부여사 전개에 관한 재인식 시론」, 『백산학보』 40, 69~72쪽.

77 김정배, 1991, 앞의 글, 71~80쪽.

78 이승호, 2018, 앞의 글, 226~228쪽.

79 이종수, 앞의 글, 48~49쪽.

80 다만 이 부분은 저자가 가설 단계에서의 제시로 명시하고 있으며, 부여 멸망 후에 아무르 강~칠성하 유역 전역에 걸친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병행을 서술하는 과정에서의 분류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두마루 관계 기록에서 부여가 아니라 “북부여의 후예(北扶餘之裔)” 내지 “옛 북부여(舊北扶餘也)”라고 지칭했던 부분은 특히 주목되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여를 ‘북부여’-‘동부여’로 구분해서 부른 인식은 고구려로부터 비롯된 인식이다.<sup>81</sup> 이를 지적하며 선학의 연구에서는 두마루인들이 고구려의 길림 및 동류 송화강 유역 진출에 따라 이들을 어떤 과정으로든 인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구려의 길림 일대 부여=북부여라는 인식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파악하였다.<sup>82</sup> 즉, ‘북부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고구려인들의 인식을 두마루가 받아들인 결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두마루인들이 왜 굳이 고구려의 ‘북부여’ 개념을 수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북부여라는 용어가 단순히 고구려 중심의 방위 관념이 적용된 개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만약 E-2)에서 전하는 것과 같이 두마루가 고구려의 부여 침공으로 인해 형성된 집단이라면, 적대 세력 집단의 개념을 차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며, 본래 부여 출신이었을 경우에는 더욱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마루전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부분은 종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의 내용과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차이라고는 앞부분의 물길에 관한 부분과 ‘옛 북부여’의 후예였다는 그때 시점의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왕(王) 대신 ‘장(長)’을 사용하는 등의 일부 자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불어 두마루의 의복 풍속 등에 대한 언급이 추가된 정도에 불과하다.<sup>83</sup>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은 실제 부여와의 친연성이나, 더 나아가 종족적

81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343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31쪽.

82 노태돈, 1999, 위의 책, 519쪽.

83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의 차이점은 『삼국지』와 중복되는 내용 중에서는 “其民土著 有宮室倉庫牢獄”이라고 하여 『위서』의 “其人土著 有宮室倉庫”에서처럼 “牢獄”이 빠져 있다는 점과, 『삼국지』의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이 『위서』에는 “其君長 皆以六畜名官”이라고 하여 ‘왕(王)’이 ‘장(長)’으로 바뀐 부분이다. 또한 『위서』에만 있는 내용은 물길 등과의 주변 집단과, “有麻布 衣制類高麗而幅大”



유사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적게나마 차이점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여 두막루전은 당대 정보에 기초하여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를 수정한 내용으로 보기도 한다.<sup>84</sup>

두막루와 부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든, 위의 사실은 〈위서〉의 부여-두막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두막루와 직접 접촉해서 수집한 것이 아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직접적인 접선과 정보 입수의 결과였다면 『삼국지』 동이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거나, ‘북부여’라고 칭했다는 것은 역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위서』에서는 두막루라는 명칭을 지닌 집단의 조공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같은 책 물길전에서 물길이 태화 9~10년(455~486)에 조공해 왔고, 이때를 전후해 이윅한 “대막로국(大莫廬國) 등 여러 나라가 조공하였다고 기록한다.<sup>85</sup> 여기에서의 대막로를 두막루로 보기도 하며<sup>86</sup> 또 『북제서』에서 전하는 천통 5년인 569년에 조공한 “대막루(大莫婁)” 또한 두막루의 조공 사례일 수 있다.<sup>87</sup> 그렇지만 정작 두막루라는 명칭으로 조공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이칭이라고 해도 조공 횟수 자체가 극히 드물다. 만약 새로운 정보가 없었다면 별도의 열전을 만들지 않는 쪽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며, 실제로 『위서』에서 조공한 수많은 나라가 모두 열전을 갖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막루’에 대한 정보란 이 시기 사신 조공과 별도의 경로로 ‘북부여’의 분파라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위서』에서는 이 인식을 수용하여 『삼국지』 동이전을 참고한 두막루전을 작성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두막루와 실제 부여 사이에 친연성이 있었다고 해도, 『위서』의 두막루=동이전의 부여와 동일시되었던 인식은 고구려인들을 통해 입수된 정

---

이라고 하여 의복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84 이승호, 2018, 앞의 글, 222~223쪽.

85 『魏書』 권100 열전88 물길

86 日野開三郎, 1988, 앞의 책, 524~526쪽; 조재우, 2022, 「말갈 투항수령 낙사계에 대하여 - 「諾思計墓誌」의 분석을 중심으로 -」, 『목간과 문자』 28, 149쪽.

87 『北齊書』 卷8 補帝紀8 後主 天統 5년 2월, “癸酉 大莫婁國遣使朝貢.”

보를 기초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록의 신빙성 또한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후술하겠지만 고구려가 멸망한 후 『신당서』의 달말루가 두막루라는 전제 하에, 이들은 여전히 북부여의 후예임을 자임하고 있었음을 보면 완전한 허구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때도 ‘북부여’로 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위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8세기에는 두막루로 추정되는 집단의 ‘대수령’이 직접 조공하면서 그 이름까지 전해지고 있었던 점과, 『위서』 두막루전과 차이가 있는 이야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조차 없이 전재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게다가 『신당서』에서는 8세기 두막루(달말루)가 고구려에 의해 부여가 멸망했다는, 『위서』에서는 없는 주장을 자언하고 있었다고 한다. 곧, 이때의 두막루의 기원은 고구려에 의한 부여 멸망-두막루 성립이라는 전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정황상 북부여의 후예로 칭한 부분도 이와 함께 전달된 내용이었을 것이다.<sup>88</sup>

이를 본다면 비록 『위서』의 기록은 고구려인을 통한 간접적인 증언이었다 할지라도, (북)부여와의 연결 인식 자체는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두막루에서는 적어도 지배자집단에게 부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고구려인들도 이를 인지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두막루를 고구려가 ‘북부여의 후예’로 본 시각이 북위에 전달되었고, 곧 두막루를 『삼국지』의 부여와 그대로 이어진 집단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위서』에서는 일부 추가 정보를 제외하면 단순히 기존 자료의 답습으로 그치게 되었던 것이다.

『위서』의 두막루 인식이 고구려의 인식이 투영된 정보를 기초로 했다고 볼

88 이 경우 왜 8세기에도 여전히 ‘북부여’를 칭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상술한 연구에서처럼 고구려의 ‘북부여’ 인식을 두막루가 수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구려의 용어를 두막루 측에서, 특히 고구려와 적대적 입장이 반영된 해당 기록에서 ‘북부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에 아마도 ‘북부여’라는 용어 자체는 『위서』의 내용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위서』-『신당서』 사이 두막루 성립 과정에 대한 내용 차이이다. 『위서』 두막루전에서는 부여가 고구려에 의해 멸망한 결과로 두막루가 성립되었다는 언급이 없다. 만약 두막루인들이 북위 측에 자신들의 기원을 고구려의 부여 침공에 따른 결과임을 표방했다면, 두막루전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수 세기 후 『신당서』에만 전해지는 상황은 어색하다. 그렇지만 고구려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달된 정보였다면 당연히 이를 언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부여에 대해서는 고구려에게 유리한 측면, 곧 예실불의 주장처럼 물길인들의 침략을 받아 이주하여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점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막루의 형성 시점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4세기까지 고구려의 길림 일대 진출 여파로 일부 북부여 집단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그 인과관계는 『위서』에서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유의되는 점은 두막루가 『위서』 물길전에서 물길인들의 침략을 두려워한 집단의 대표격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 이유 또한 두막루에 대한 정보에 고구려인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물길의 활발한 주변 지역 진출을 고려한다면 두막루만 그들과 충돌하는 집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거기에 정작 두막루전에서는 관련 내용은 전무하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아마도 고구려인들이 494년 후부여의 멸망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 여파로 주변에 분열된 북부여 관련 세력들을 언급하는, 즉 물길의 적대 행위에 대한 비방을 겸한 책임 전가 과정에서 전달된 내용이 아닐까 싶다. 그 결과 북위인들은 두막루=물길의 침공에 위협을 받는 집단으로 인지하고, 그것이 『위서』 물길전에서 채록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부여와의 연결고리란 실존했던 종족적 친연성보다는, 이들의 지배자집단이 표방한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상술한 연구 중에서 두막루가 일찍부터 ‘부여 세력권’에 포함되어 부여국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방 이주 후에도 북부여의 후예를 자임하는 동시에 그 지배체제 일부도 계승한 것으로 본 견해<sup>89</sup>나, 부여의 정치구조 자체가 연맹체적 형태를 지니고 있어, 고구려의 길림 일대 정복 후에도 일

부 분파가 남아 494년 이후 동류 송화강을 건너 두막루국을 세웠다는 견해<sup>90</sup>들이 고려된다. 즉, 주민집단의 다수가 설령 5세기 이전의 부여와 이질적이었다고 해도, 그 지배자들이 어떤 이유로 부여와의 친연성을 표방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이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양상을 알기 힘들다. 다만 5세기 이전 부여와 두막루 사이에 정치적 연대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두막루도 사실상 부여의 상위에 군림하던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포함되었던 집단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앞서 살펴본 실위의 예시와, 두막루가 실위 등과 언어가 비슷하다는 점을 본다면 사회상이나 생활상에서 큰 격차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막루와는 과거 부여와 같은 농경사회의 철기를 가족과 교환하는 교역망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부여-두막루 간의 정치적 연대란 바로 이 관계를 기초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여의 상위에 군림하게 된 고구려는 이후 이 부여-두막루의 연결을 통해 실위·지두우 등으로 이어지는 2중의 관계망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고구려 측에서 두막루와 ‘북부여’와의 연관성 및 물길의 두막루 위협 등을 주장했던 이유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위의 기록에서 예실불은 물길로 인해 부여로부터의 황금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물길의 침략이 북위에게도 황금 유입 경로가 막히는 물리적인 손해를 야기했음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두막루와 ‘북부여’의 연관성을 강조했으며, 두막루에 대한 정보도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두막루를 ‘(부여와 마찬가지로) 물길의 침략에 노출된 집단’으로 선전하기 위함이었다. 곧, 부여와 두막루는 이전 시기부터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물길의 침략과 부여 축출은 고구려에게 두막루, 실위 등과의 접선 경로 차단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두막루를 굳이 부여의 분파라고

89 이승호, 2018, 앞의 글, 226~228쪽.

90 이종수, 2018b, 「부여 강역 연구현황과 쟁점」, 『백산학보』 110, 47~49쪽.

알린 것도 고구려의 두막루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고구려 측의 주장이 『위서』에 반영되어 있었다고 해도, 두막루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신당서』의 기록과 같이 고구려가 멸망한 8세기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그 기원이나 실제 부여와의 관계를 떠나서, 이 시점에서는 두막루인 당사자들의 주장이 반영되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연구에서 제기해왔던 것처럼 두막루인들이 실제로 부여계 주민이거나, 혹은 지배자집단이 이주했을 가능성도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두막루에 대한 엇갈리는 비정과 이에 따른 고고 문화상을 여기에서 상론하기 어려운 이상, 현재로서는 양자의 관계를 기록에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느 지역이든 북류 송화강 유역에 거주하던 부여, 6세기 초까지 이 지역에 진출한 물길 집단, 그리고 이후에 이 지역에 거주한 속말말갈과 일정한 교섭이 있던 집단이었다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부여-두막루의 관계가 고구려의 정치적 목적, 특히 북류 송화강-동류 송화강-논강이라는 교통로선상의 교섭 루트 확보를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세기 두막루인들의 주장 또한 같은 이유로 지속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과거 두막루나 그 밖의 여러 집단 또한 부여나 고구려와의 접선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8세기에도 이를 위해 부여와의 친연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8세기 ‘달말루’로 칭해졌던 두막루와, 유사한 시기 당-발해 사이에 역학관계의 축이 된 낙사계 집단에 대한 기록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1) (開元)十二年 … 丙辰 黑水靺鞨大首領屋作箇來朝 達莫婁大首領諾皆  
諸來朝 並授折衝放 還蕃<sup>91</sup>

91 『冊府元龜』卷975 外臣部 褒異3.

F-2) 故投降首領諾思計 □勅賜盧性 名庭賓 望范陽郡 扶餘府大首領 游擊  
將軍守右領軍衛京兆府 文學府果毅.<sup>92</sup>

F-1)의 기록은 『책부원귀』의 흑수말갈의 대수령과 함께 조공한 “달막루대수령(達莫婁大首領)”이라고 칭한 낙개제(諾皆諸)가 개원 12년에 조공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앞의 『신당서』에서 두막루가 조공했던 시기와 불과 1년밖에 차이나지 않아, 달막루 또한 두막루와 동일한 집단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 ‘대수령’의 이름을 낙개제라고 칭하는 것은 F-2)의 「낙사계묘지명」에서 전하는 ‘부여부대수령’ 낙사계(諾思計)와의 유사성이 간취된다.

낙사계라는 인물은 종래 많은 연구에서 그 출신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주목되었던 부분은 그의 투항 당시 부여부대수령(扶餘府大首領)이라는 지위를 자칭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때의 ‘부여’를 백제인으로 보는 설<sup>93</sup>도 있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그를 발해인<sup>94</sup> 혹은 재당 발해인<sup>95</sup>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는 ‘부여부대수령’의 부여부란 『신당서』 북적열전 발해조에서 발해의 15부 중 하나인 부여부<sup>96</sup>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낙사계의 투항은 이 시기 흑수말갈의 문제로 발해-당의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하곤 하였다.<sup>97</sup> 반면 최근에는 이 부여부란 발해 부여부가 아닌, 고구려의 육살급 대성인 부여성에 설치되었던 ‘부여주도독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92 해당 판독문은 가장 최근까지의 판독안까지 함께 정리된 조재우, 2022, 앞의 글, 126쪽의 판독문을 인용하였다.

93 趙振華, 2009, 『洛陽古代銘刻文獻研究』, 陝西古籍出版社.

94 김영관, 2007, 「百濟遺民 禰寔進 墓誌 소개」, 『新羅史學報』 10, 367쪽; 2011, 「渤海人 諾思計 墓誌銘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 7, 164쪽; 권덕영, 2010, 「한국고대사 관련 中國 金石文 조사 연구-唐代 자료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7, 35쪽.

95 한준수, 2020, 「在唐 渤海人の 삶과 시대 인식」, 『한국고대사탐구』 35.

96 『新唐書』 卷219, 渤海傳.

97 김영관, 2011, 앞의 글, 160~161쪽; 한준수, 2020, 앞의 글, 162쪽.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낙사계는 속말말갈 출신으로, 이들은 고구려 멸망 후 말갈 재편 과정에서 새로 출현한 ‘부여말갈(扶餘靺鞨)’이라고 본 것이다.<sup>98</sup>

‘부여부’가 설령 발해의 15부 중 하나라고 해도, 낙사계의 종족적 소속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해의 구성원 중에 말갈인들이 포함된 것은 분명하기에, ‘부여부대수령’을 자칭하고 있던 자가 설령 발해 소속이었다고 해도 속말말갈 내지 그 밖의 종족성을 지니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낙사계와 낙개제 모두 똑같이 자신들의 소속 집단과 ‘부여’와의 연결고리를 표방하고, 동시에 같은 낙씨였다는 점은 주목된다. 더 나아가 『신당서』의 ‘달말루’의 조공 당시 낙개제가 같은 ‘대수령’을 표방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부여부’가 곧 두막루의 일부 집단을 의미하며, 두 사람은 동일인물일 가능성도 떠오른다. 즉, ‘부여부’란 명칭은 달말루의 부여 계승 의식에 따른 칭호로 곧 부여부가 낙개제의 달말루 혹은 그들의 일파를 의미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의 기록을 보면 이 시기 부여와 두막루가 서로 다른 집단으로 기록되고 있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G-1) 既而饒樂歸義王李詩 衙官可支刺史伊覓昏燭祿 並裏水扶餘者遼末盧

東胡雜種君長之郡 左射人右射馬 翼迅霆轉 沙振駢角者 二萬五千餘騎<sup>99</sup>

위 기록은 『문원영화』 및 『전당문』 등에서 전해지는 변형(樊衡)의 「위유주 장사설초옥파거란노포(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98 조재우, 2022, 앞의 글. 최근까지 낙사계의 출신 문제에 관한 연구사는 조재우, 2022, 앞의 글, 122~123쪽; 이민수, 2023, 「부여부대수령 諾思計의 출신과 투항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43, 80~86쪽의 정리를 참고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낙사계 및 그의 출신에 대한 문제가 논의의 주안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생략한다.

99 『文苑英華』 卷647 露布1.

는 733년 4월 절도부사(節度副使) 오지의(烏知義) 등이 거란 가돌우(可突于)를 토벌한 전투에 대한 노포(露布)로, 이때 당군은 여러 이민족의 병사들을 동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집단은 “이수(裏水)”와 “부여(扶餘)”, “위미로(遼末盧)” 및 “동호(東胡)”의 잡종(雜種)이라고 하는데, “위미로”는 달말로(達末盧)의 오기, 곧 두막루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부여’와 별개의 집단으로 언급되고 있었으며,<sup>100</sup> 곧 당시 부여와 두막루는 구분되는 집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시기 두막루(=위미로)가 부여, 흑수말갈(=이수)과 연계해서 당의 거란 공세에 호응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양자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을 다시 상기시킨다. 즉, 두막루가 북부여와의 관계를 8세기에 도 표방했던 것은 이 시기에도 두막루가 실제로 옛 부여의 지역인 북류 송화강 유역의 주민들과 일정한 친연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결과가 아닐까 싶다. 물론 낙씨 성은 다른 말갈 관계 수령들에게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sup>101</sup> 이 자체로 낙사계와 낙개제 간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배자집단에서는 같은 동족 내지 일족, 아무리 멀다고 해도 동일 종족집단의 인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부여부대수령’ 집단과 두막루는 동일한 종족집단 출신의 지배자를 공유하고 있었던 셈이며, ‘부여부’라는 집단과 ‘북부여의 후예’라고 자칭한 두막루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낙사계와 두막루의 낙개제 집단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사료의 부족과 낙사계 집단의 종족성 문제를 결론내리기 전까지 이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종족적 친연성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양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면 적어도 정치적인 연대 정도는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여부’가 발해의 부여부든, 혹은 고구려의 부여성으로부터 비롯된 명칭이든, 그것이 단순한 지명이며 ‘부여’라는 정체성과 무관한 의미라

100 조재우, 2022, 앞의 글, 149쪽.

101 조재우, 2022, 위의 글, 137~138쪽.



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낙사계와 낙개제가 실제로 부여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스스로 그 후예를 표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부여와의 관계를 표방하는 것이 그들에게 속말수-두막루로 이어지는 일대에 정치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부유말갈(浮渝靺鞨)”<sup>102</sup>의 존재까지 감안한다면, ‘부여’란 단순한 옛 지명이 아닌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을 표방하는 명칭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두막루인들 또한 이때까지 잔존하던 정체성을 기초로 이들과의 친연성을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막루는 북류 송화강 유역의 주민집단, 그들이 말갈이었던 부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밀접하게 연대하고, 그 결과 733년 대(對)거란 전선의 참전까지 이어졌던 셈이다.

‘부여’의 명칭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부여’라는 명칭이 8세기 무렵에도 설령 일시적 혹은 일부 집단이 취신한 개념이었다고 해도 그 의의를 축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부여’라는 명칭이 정치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따지고 보면 그 원류를 부여-두막루로 이어지는 집단 간에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 의의를 담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부여라는 인식이 이 지역에서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역시 북류 송화강-동류 송화강-눈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의 교류에서 형성·유지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다종의 주민집단, 곧 두막루의 다수를 차지하는 거란, 실위 등과 같은 유목민 집단까지 포괄하는 ‘부여’의 관념적 영향력이 이 시기까지 잔존했던 것이다. 곧, 낙사계의 세력이든 두막루든 노선상에서 형성된 ‘부여’라는 정체성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나름대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의미는 5세기 말까지 후부여를 통해 고구려가 지두우 분할, 실위와의 교역 등에서 활용한 북방 경로가 기초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2 『舊唐書』卷39 志2 地理 및 『新唐書』卷43 下 志7 地理 下 靺鞨州.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5세기 말 물길의 고구려 침공과 이로 인한 부여의 축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물길의 위치 비정 및 고구려의 대응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속말말갈’ 형성과 말갈문화의 유입 및 물길의 확산이 동인인은 분명하더라도, 속말말갈 형성은 물길이 통합된 정치집단이 아닌 성격을 고려하면, 다양한 집단과 문화의 유입을 상정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물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주목한 ‘지두우 분할 모의’를 감안하여, 이 지역에서 고구려가 실위 등과 교역을 하고 있었던 동시에, 그 중간 지대의 후부여에 대한 종속적 위치 등을 통해 두막루와도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종래 두막루는 부여와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부여와 실제로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위서』 두막루전의 내용은 고구려의 시각에서 물길에 대한 적대 선전을 목적으로 북위에 전달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두막루-부여 사이의 정치적 연관성은 8세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5세기 이전 성립된 고구려의 부여를 통한 두막루·실위·지두우 등과의 접선 경로상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는 주로 사료를, 그것도 정치적인 동인을 중심으로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여인이라는 종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 특히 고고학 자료에 대한 문제는 유보하였다. 이는 필자의 지식 부족이 원인이지만, 5~6세기 부여 고지에 유입된 물길 및 두막루 등의 고고 자료 관련 논의도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 관련 고고 자료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진다면, 사료와의 정합적인 이해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락기, 2013, 『高句麗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靺鞨』, 경인문화사.
- 김육불 저, 동북아역사재단 역, 2007, 『동북통사』, 동북아역사재단.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출판사.
- 이병도, 1985, 『韓國古代史研究』 수정판, 박영사.
- 이용범,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 『백산학보』 1.
- 이재성, 1996, 『고대 동몽고사 연구』, 범인문화사.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范恩實, 2014, 『靺鞨興嬗史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 孫進己·王綿厚, 1989,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 張博泉·魏存成 主編, 1998,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 趙振華, 2009, 『洛陽古代銘刻文獻研究』, 陝西古籍出版社.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9, 『鳳林城：1998~2000年度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白鳥庫吉, 1970, 『塞外民族史研究』上, 岩波書店.
- 日野開三郎, 1988, 『東北アジア民族史(上)』, 三一書房.
- 池内宏, 1951, 『滿鮮史研究』上世1冊, 吉川弘文館.
- 津田左右吉, 1964, 『津田左右吉全集』12, 岩波書店.

### 논문

- 강인옥, 2009, 「靺鞨文化의 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3.

- \_\_\_\_\_, 2015, 「三江平原 滾琕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 52.
- 권덕영, 2010, 「한국고대사 관련 中國 金石文 조사 연구-唐代 자료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7.
- 김락기, 2009, 「5~6세기 勿吉의 중심지와 徒太山」, 『한국고대사연구』 53.
- 김영관, 2007, 「百濟遺民 彌寔進 墓誌 소개」, 『新羅史學報』 10.
- \_\_\_\_\_, 2011, 「渤海人 諾思計 墓誌銘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 7.
- 김정배, 1991, 「豆莫婁國 研究」, 『국사관논총』 29.
- 김현숙, 2010, 「고구려사에서의 말갈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61.
- 박경철, 1992, 「부여사 전개에 관한 재인식 시론」, 『백산학보』 40.
- 송기호, 2008, 「5세기 후반 고구려의 북방 경계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 여호규, 2017,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인식」, 『한국고대사연구』 88.
- \_\_\_\_\_,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중앙사론』 47.
- 이민수, 2023, 「부여부대수령 諾思計의 출신과 투항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43.
- 이승호, 2018, 『부여 정치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록, 2024, 「4~5세기 고구려-속신 관계와 三江平原의 주민집단」, 『고구려발해연구』 80.
- 이종수, 2004, 『夫餘文化研究』, 길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 「三江平原地域 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 -挹婁·勿吉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41.
- \_\_\_\_\_, 2018a, 「속말말갈의 문화적 특징과 형성과정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61.
- \_\_\_\_\_, 2018b, 「부여 강역 연구현황과 쟁점」, 『백산학보』 110.
- 정성배, 2023, 「흑수말갈 나이펠드-동인문화 1단계의 유적과 흑수주 치소 문제」, 『고구려발해연구』 76.
- 조재우, 2022, 「말갈 투항수령 낙사계에 대하여 -「諾思計 墓誌」의 분석을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 28.
- 한준수, 2020, 「在唐 渤海人의 삶과 시대 인식」, 『한국고대사탐구』 35.

홍순범, 2025, 「5~6세기 고구려의 동북방 전략과 勿吉」,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형우, 2011, 「서(西)아무르 지역 말갈(靺鞨)토기의 특성과 그 전개」, 『한국상고사학  
보』 74.

吉林省文化局群衆文化處, 1961, 「吉林九台上河灣考古調查」, 『考古』 3期.  
孫進己·幹志耿·莊嚴, 1985, 「勿吉與靺鞨的物質文化」, 『博物館研究』 1.  
楊保隆, 1985, 「勿吉地域西南部邊至考」, 『北方文物』 1985-4.  
梁會麗, 2019, 「吉林省渤海遺存調查概論」, 『邊疆考古研究』 25.  
王綿厚, 1990, 「東北古代夫餘部的興衰及王城變遷」, 『遼海文物學刊』 1990-02.  
王禹浪·王俊錚, 2020, 「唐代黑水都督府的歷史地理學考察」, 『歷史地理研究』 4.  
張福有, 2015, 「夫餘後期王城在遼源」, 『東北史地』 2015-06.  
田禾, 2004, 「鳳林文化淺析」, 『北方文物』 1期.  
鄭英德, 1983 「烏洛侯地理位置再探」, 『黑龍江文物叢刊』 1.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0, 「黑龍江友誼縣鳳林城址1998年發掘簡報」, 『考  
古』 2000-11.

日野開三郎, 1946, 「勿吉考」, 『史淵』 35.  
津田左右吉, 1915, 「勿吉考」, 『滿洲地理歷史研究報告』 1.

## 5~6세기 물길의 부여 진출과 두막루

이종록

이 글은 5세기 말 물길(勿吉)의 부여 축출 관계 사료를 검토하고, 물길의 위치 비정 및 고구려의 대응 등에 대한 기존 연구 재검토 등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물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주목한 ‘지두우(地豆于) 분할 모의’를 재검토 하며, 이 지역에서 고구려가 실위 등과 교역을 하고 있었던 동시에 그 중간 지대의 후부여에 대한 종속적 위치 등을 통해 두막루와도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두막루와 부여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부여와의 실제 관계보다는 『위서』 두막루전의 성격 문제에 집중하며, 그 내용이 고구려의 시각에서 물길에 대한 적대 선전을 목적으로 북위에 전달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두막루-부여 사이의 정치적 연관성은 8세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는 5세기 이전 성립되었던 고구려의 부여를 통한 두막루(豆莫婁)·실위(室韋)·지두우 등과의 접선 경로상에서 형성된 교섭 및 교역망이 기초가 되었음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물길, 두막루, 고구려, 후부여, 지두우, 실위

## The Wuji's Advance into Buyeo and Dumolu in the Fifth and Sixth Centuries

Lee Jongrok

This paper discusses the historical records concerning the expulsion of Buyeo by the Wuji (勿吉, Mulgil) in the late fifth century, including Goguryeo's response, and reconsiders previous studies on the Wuji's location. It also reexamines the so-called "Plot to Divide Jidouyu (地豆于)," which has received particular attention in previous studies as a countermeasure strategy against the Wuji. It suggests that Goguryeo was engaged in trade with the Shiwei (室韃) and other groups in this region, and that through the subordinated position of Later Buyeo in the intermediary area, it was likely also connected to Dumolu (豆莫婁). While earlier research has proposed various theori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umolu and Buyeo, this study shifts the focus to the nature of the "Account of Dumolu" in the *Weishu*. It argues that the account primarily reflects information transmitted to the Northern Wei from Goguryeo's perspec-

tive utilized hostile propaganda against the Wuji.

The political linkage between Dumolu and Buyeo have persisted even after the eighth century. Fundamentally, this continuity was grounded in the political exchanges and trade networks that had developed prior to the fifth century along the routes through which Goguryeo, via Buyeo, established contact with groups such as Dumolu, Shiwei, and Jidouyu.

**Keywords:** Wuji, Dumolu, Goguryeo, Late Buyeo, Jidouyu, Shiwei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고려·조선 시기 부여와 부여사 인식

이승호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HK교수

- I. 머리말
- II. 고려시대 부여 인식: 기원과 계승
- III. 조선시대 부여사 인식: 망각과 부활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오늘날 한국인에게 부여는 고조선과 함께 한국 역사의 여명을 장식한 국가로 기억되고 있다.<sup>1</sup> 이렇게 한국의 역사 체계상에 부여사의 위상을 지금의 위치로 올려놓은 공로는 단연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에게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채호는 『독사신론(讀史新論)』(1908)과 『조선상고문화사(朝鮮上古文化史)』(1920년대)를 통해 기자-마한-신라로 이어지는 기왕의 한족(韓族) 중심 정통론을 부정하고 ‘부여주족론(夫餘主族論)’을 주창하면서 부여·고구려·발해의 역사를 강조하였다. 그로 인해 부여의 역사는 한국 고대사 체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민족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다. 이어서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의 「부여고(夫餘考)」(1932)는 근대 역사학의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부여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첫 연구라 평할 수 있으며,<sup>2</sup> 이후 부여사 연구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해방 이후 남북 학계는 각자의 방식으로 식민주의 역사학의 그림자를 벗겨내며 한국 고대사를 재구성해왔다. 특히 부여사 분야에서는 남과 북에서 각각 이병도와 리지린이라는 두 명의 걸출한 연구자에 의해 그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이병도의 「부여고(夫餘考)」(1976)가 주로 명칭·기원·정치구조·대외관계 등에 천착하여 부여사를 폭넓은 시야에서 문헌적으로 고찰하였다면,<sup>3</sup> 리지린의 「부여에 대한 고찰」(1963)은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부여의 사회

\* 투고: 2026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6년 2월 10일, 재심사 완료: 2026년 2월 28일, 게재 확정: 2026년 3월 3일

1 박경철, 1992, 「扶餘史展開에 關한 再認識試論」, 『백산학보』 40; 이기동, 2005, 「韓國民族史에서 본 夫餘」, 『한국고대사연구』 37.

2 池内宏, 1932, 「夫餘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3(1951, 『滿鮮史研究』 上世 第一冊, 吉川弘文館에 재수록).

구성과 계급 구조를 정밀하게 복원해내었다.<sup>4</sup> 이 두 연구는 부여사를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 연구로 위치하며, 함께 부여사의 안팎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마련하였다.<sup>5</sup>

이렇듯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는 부여사상(夫餘史象)의 기초는 모두 근대 이후에 와서 형성되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근대 이전, 이른바 전통시대 부여사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전개되어왔을까.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근대 이후 역사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부여 멸망 이후로도 고구려·백제·발해의 지배층을 중심으로 부여에 대한 계승의식을 드러내거나 표방 하였던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곧,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부여인의 역사에 대한 기억은 면면히 계승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지배층·지식인들의 인식 속에 부여인의 역사는 어떻게 기억되었는지 궁금해진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전통시대의 고조선 인식 변천을 주제로 한 연구가 다수 축적되어왔다. 특히 단군과 기자를 중심으로 고려시대<sup>6</sup> 및 조선시대<sup>7</sup> 지배층과

3 李丙燾, 1976, 「夫餘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4 리지린, 1963, 「제5장. 부여에 대한 고찰」,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5 이승호, 2024, 「북한 학계의 부여사 연구 동향과 과제」, 『고조선단군학』 53, 123쪽. 이후 전개된 부여사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승호, 2020, 「부여사 연구의 흐름과 이해」,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문제』, 동북아역사재단을 참조 바람.

6 金光洙, 1988,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歷史教育』 43; 김성환, 2001, 「高麗後期の 檀君認識」, 『고조선단군학』 4; 2003, 「高麗時代の 檀君傳承과 古朝鮮 認識」, 『고조선단군학』 8; 조원진, 2015,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한국사학사학보』 32; 송호정, 2024, 『역사 인식으로 읽는 고조선사』, 경인문화사.

7 김성환, 2006, 「朝鮮時代 檀君墓에 관한 認識」, 『韓國史學史學報』 13; 2008, 「조선 후기의 檀君墓 인식」, 『고조선단군학』 19; 송호정, 2011, 「실학자들의 역사 지리관과 고조선 한사군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2; 조원진, 2023,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 『東北亞歷史論叢』 81; 2024, 「조선시대 지리지에 나타난 기자조선 인식」, 『동양학』 96; 송호정, 2024, 앞의 책.

지식인들이 고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구성해왔는지에 대해 연구자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반면, 같은 시기를 대상으로 한 부여사 인식의 형성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전론으로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sup>8</sup> 그러나 고려와 조선시대에 형성된 부여 및 부여사에 대한 인식은 고대 부여의 역사와 근현대의 역사 인식을 잇는 중요한 연결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시의 기억 방식이 오늘날의 인식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나아가 그것이 현대의 부여사 인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지배층·지식인들에게 부여인의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인식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만, 조선시대의 경우 관련 문헌이 상당히 방대한 관계로 여기서는 부여의 역사를 별기(別紀)나 별전(別傳), 세가(世家) 등으로 별도로 독립시켜 서술하였던 조선시대 주요 역사서를 중심으로 대략의 인식 추이를 개관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지식인들의 부여사에 대한 이해 방식과 인용 문헌의 성격, 여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별고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sup>9</sup>

- 8 현재 학계에 제시된 고려·조선 시기 부여사 인식에 대한 연구로는 송호정, 2015, 「1장. 우리 역사 속 부여의 의미」,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박선미 편, 2024, 「6장. 고조선과 삼국을 잇다」, 『우리 문헌 속 고조선을 읽다』, 동북아역사재단; 김남중, 2025, 「고조선-삼국 중간 시기에 대한 후대의 인식」, 『고조선단군학』 57이 주목된다. 이들 연구 모두 고려·조선 시기 부여사 인식을 전론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고려시대로부터 韓末 혹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여사 인식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또한 韓末·근대의 부여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권창혁, 2018, 「일본 학계의 부여사 인식과 滿鮮史」, 『韓國史學報』 72; 이준성, 2025, 「『부여족』 개념 형성과 민족사 서술」, 『역사와 현실』 136이 참고된다. 전자는 근현대 일본 학계의 부여사 인식을, 후자는 근대 한국의 부여사 인식을 다루고 있다.
- 9 최근 고려시대부터 韓末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고조선·부여 관련 방대한 문헌 자료를 망라한 성과가 학계에 제출되었다(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19~2022b,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부여 편』 I~VI, 동북아역사재단). 이로써 본 주제를 탐구할 만한 용이한 연구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글 역시 Ⅲ장의 서술 과정에서 위 성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 II. 고려시대 부여 인식: 기원과 계승

고려시대 부여사 인식을 검토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면, 역시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와 백제본기(百濟本紀)에 전하는 두 나라의 건국신화를 비롯하여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고구려-부여 관계 기사는 당대 고려 지식인층이 직접 수집·정리한 부여사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도 북부여(北扶餘)와 동부여(東扶餘)에 관한 신화적 기록이 전해 부여에 대한 고려시대 인식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당대 고려 지식인층이 부여인의 역사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기억을 전승하고 있음은 분명히 확인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채록된 부여 관계 기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대체로 고유 전승에 기반하고 있으며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이나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 등에 전하는 부여 관련 기록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채록된 부여 관계 기사가 대체로 고구려·백제 계통의 고유 사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사서에 전하는 부여인의 역사는 주로 고구려·백제 초기 역사와 얽혀 있는데, 『삼국사기』에 정리된 고구려·백제의 초기 역사는 주로 고유 전승에 기반하고 있다 보니 『삼국지』나 『후한서』에 전하는 부여전 기록을 활용할 여지가 적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려 중기에 편찬된 『삼국사기』는 어디까지나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 역사서이다. 따라서 부여의 역사는 이들 삼국의 역사, 특히 고구려 초기 역사 속에서 고구려의 상대국으로 등장할 뿐, 독자적인 정치체로서 주목을 받거나 서술되지는 않았다. 곧, 부여가 삼국과 같이 각각의 별전으로서 서술 체제를 갖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당시 고려인에게 부여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은 그만큼 희미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이렇게 볼 수 있다면 12세기 무렵 고려인들이 자신들 전사(前史)의 범주 속에서 부여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물론 고구려 계승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했던 고려의 지배층들이 고구려 건국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부여를 주목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에서 부여 관계 기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고구려 계승 의식을 지녔던 고려 지배층의 입장에서 그들 역사의 전사를 구성하는 데 부여의 존재를 떼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 (가)가 주목된다.

#### 사료 (가)-1

고려의 선조는 대략 周 武王이 朝鮮에 책봉한 箕子 胥餘이며, … 이에 앞서, 夫餘王이 河神의 딸을 얻었는데, (그녀에게) 해가 비치어 감응하여 임신하고는 알을 낳았다. (아이는)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는데, 풍속에 활 잘 쏘는 것을 朱蒙이라 하였기에 [주몽이라] 이름하였다. … 紇升骨城에 이르러 살면서 스스로 高句驪라 불렀다. 그 때문에 高로 성씨를 삼았으며 高麗를 (나라 이름으로) 삼았다. … 高氏는 이미 끊어졌지만 오랜 뒤에는 점차 회복되어, 唐末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그 나라 왕이 되었다.<sup>10</sup>

#### 사료 (가)-2

東神祠. 宣仁門 안에 있다. 땅은 약간 평평하고 넓는데, 殿宇는 卑陋하다. 廊廡 30칸은 황량하게 수리하지 않은 채로 있다. 正殿에는 ‘東神聖母之堂’이란 방이 붙어 있고, 帟幕으로 가려 사람들이 神像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나무를 깎아 女人狀을 만들었는데, 혹은 이르기를 夫餘妻 河神女라고 한다. (그녀가) 高麗 始

10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 建國 始封, “高麗之先, 蓋周武王封箕子胥餘於朝鮮 … 先是, 夫餘王得河神之女, 爲日所照, 感孕而卵生. 既長善射, 俗稱善射爲朱蒙, 因以名之. … 至紇升骨城而居, 自號曰‘高句驪’, 因以‘高’爲氏, 而以高麗爲國. … 高氏既絕, 久而稍復, 至唐末遂王其國.”

祖가 되는 朱蒙을 낳았으므로 제사를 모시게 된 것이다. 舊例에는 使者가 이르  
면 곧 관원을 보내 奠祭를 마련하는데, 그 牲牢하고 酌獻하는 것은 崧山神에 대  
한 법식과 같다.<sup>11</sup>

사료 (가)-1을 보면, 기자-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계승 관계 속에서 부여  
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이것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1123)을 찬한 서경(徐兢)과 그로 대표되는 송대(宋代) 지식인들의 인식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고려인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어서 사료 (가)-2에서는 당시의 그러한 사정  
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개경 선인문(宣仁門) 인근에 있었던 동  
신사(東神祠)는, 곧 “동신성모지당(東神聖母之堂)”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동신  
(東神)의 성모(聖母)’란 동명성왕 주몽과 그 어머니 하백녀(河伯女) 유화(柳花)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통해 당대 고려인들이 가진 부여에 대한 인식은  
고구려 시조의 연원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고려인들은 위의 기  
록에서처럼 “부여처(夫餘妻) 하신녀(河神女)”라 칭하며 고구려 시조의 모계를  
부여와 연결 지었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여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나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던 고  
려인들에게 ‘고구려 건국의 기원지’로서의 관심일 뿐, 이를 통해 고려의 전사 역  
사 체계 안에 부여가 확실한 위치를 부여받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한다.

#### 사료 (나)

庚子에 渤海 禮部卿 大和鈞과 均老司政 大元均, 工部卿 大福暮, 左右衛將

11 『宣和奉使高麗圖經』卷17, 祠宇 東神祠, “東神祠, 在宣仁門內, 地稍平廣, 殿  
宇卑陋. 廊廡三十間, 荒涼不葺. 正殿榜曰東神聖母之堂, 以帟幕蔽之, 不令人  
見神像. 蓋刻木作女人狀, 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以其生朱蒙, 爲高麗始祖,  
故祀之. 舊例使者至則遣官設奠, 其牲牢酌獻, 如禮崧山神式.”



軍 大審理 등이 백성 100호를 거느리고 來附하였다. 渤海는 본래 粟末靺鞨이다. 唐 武后 때 高句麗人 大祚榮이 달아나 遼東을 지키자 睿宗이 封하여 渤海郡王으로 삼았다. 이로 인하여 스스로 渤海國이라 칭하고 扶餘와 肅慎 등 10여 개의 나라를 아울렀다.<sup>12</sup>

위의 사료 (나)는 고려 태조 8년(925)의 일로서 발해가 멸망하자 그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남하해 들어오던 사정을 보여준다. 특히 여기서는 당시 발해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을 볼 수 있는데, 발해가 부여와 숙신 등 10여 개 나라를 아울렀다고 말한다. 곧 지리적으로 부여의 옛 땅을 발해가 영유했다는 인식이다. 이는 건국 시기 고려인들의 역사 지리적 인식 속에 부여인의 유산이 발해에 속하였다고 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언급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부여에 대한 역사적 계승도 사실 고려가 아닌 발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728년 일본에 전한 발해 무왕(武王) 국서에 보이는 “고려(高麗)의 옛 땅(舊居)과 부여(扶餘)의 옛 풍속(遺俗)을 회복하였다”라는 언급이나,<sup>13</sup> 발해 15부(府) 가운데 부여부(扶餘府)의 존재도 지적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결국 부여에 대한 고려인들의 인식은 ‘고구려 탄생의 요람(搖籃)으로서 부여’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려 후기 자료에서는 부여에 대한 보다 뚜렷한 인식이 나타난다. 먼저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을 통해 일연은 고조선(왕검조선)·위만조선을 시작으로 마한·2부·72국·낙랑국·북대방·남대방·말갈 발해·이서국·5가야에 이어서 북부여·동부여·고구려·변한 백제·진한으로 이어지는 역사에 대한 나열식 서

12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8年 9月 丙子, “庚子, 渤海禮部卿大和鈞·均老司政大元鈞·工部卿大福謨·左右衛將軍大審理等, 率民一百戶來附. 渤海本粟末靺鞨也. 唐武后時, 高句麗人大祚榮走保遼東, 睿宗封爲渤海郡王. 因自稱渤海國, 并有扶餘·肅慎等十餘國.”

13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5年 春正月, “甲寅, 天皇御中宮, 高齊德等上其王書并方物, 其詞曰, 武藝啓 … 武藝忝當列國, 濫摠諸蕃. 復高麗之舊居, 有扶餘之遺俗.”

술을 통해 찬자 나름의 고대사 인식 체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록 끝에 신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안배함으로써 앞서 나열한 여러 고대 정치체의 역사가 선행한 뒤 신라의 역사가 전개되었다는 이해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연은 「단군기(檀君記)」에 주몽해 북부여·동부여·고구려 왕실을 모두 단군의 후손으로 보았고, 고조선-삼한-삼국의 계승 관계를 설정해 단군과 조선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 여러 나라의 계보를 상정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참고가 된다.<sup>14</sup> 곧, 찬자 일연은 앞서 나열한 여러 고대 정치체의 역사를 모두 고려의 전사로서 아울러 이해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북부여·동부여”로 기술된 부여의 역사 또한 자신들의 전사 속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 사료 (다)

이로 인하여 이 땅이 四郡이 되었으니, 각 郡에 長을 두고 백성을 편안하게 모여 살게 하였네. 眞番과 臨屯이 남북에 있고, 樂浪과 玄菟가 동서로 치우쳐 있었네. 서로 다투다가 生理를 스스로 끊어버리니, 풍속은 점점 알파해지고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였다네. 때때로 모이고 흩어지며 浮沈하는 사이에, 자연히 경계가 나뉘어 三韓을 이루었네. 삼한에는 각각 몇 개의 州縣이 있었으나, 어지러이 湖山 간에 흩어져 있었네. 각각 스스로 나라를 칭하고는 서로 侵凌하니, 그 수가 70여 개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라를 칭한 것이, 馬韓은 40개, 辰韓은 20개, 弁韓은 12개였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대국이었던가?

먼저 扶餘와 【『檀君本紀』에 이르기를, “非西岬 河伯의 딸과 혼인하여 사내아이를 낳고 이름을 夫婁라 하였다”고 한다. 『東明本紀』에 이르기를, “扶餘王 夫婁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後嗣를 구하였다. 타고 있던 말이 鯤淵에 이르러 큰 돌이 움직인 흔적을 보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기고 사람을 시켜

14 이정빈, 2021, 「역사교과서의 국수적 한국사 체계와 역사정책 성찰」, 『역사와 교육』 33, 397~398쪽.

돌을 굴러보니,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황금색의 개구리 형상이었다. 왕이 말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주신 후사를 이을 아이인가?”라고 하며, 태자로 세우고 이름을 金蛙라 하였다. 그 나라 相 阿蘭弗이 말하기를, “머칠 전 하늘이 내게 강림해 말하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를 피하라. 東海 바닷가에 땅이 있는데 迦葉原이라 하니, 땅은 오곡에 적합하여 가히 도읍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며 왕에게 移都를 권하니 東扶餘라 불렀다”라고 하였다. 臣이 일찍이 上國에 사신으로 갔을 때, 遼河 강변 도로 옆에 이르렀는데, 墓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이 말하기를, “扶餘 駙馬大王의 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賈耽이 말하기를, “큰 들의 남쪽은 鴨綠河로서 부여의 옛 땅이다”라고 하였으니, 곧 北扶餘는 마땅히 요하 강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開國은 대저 後朝鮮부터 이때까지 얼마겠습니까.】· 沸流【『東明本紀』에 이르기를, “沸流王 松讓이 일러 말하기를, “나는 仙人의 후손으로 누세에 걸쳐 왕을 하였으나, 지금 너희가 나라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附庸함이 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즉 이것 역시 의심컨대 檀君의 후손일 것이다.】를 칭하며, 다음으로는 尸羅와 高禮가 있었으며, 남북 沃沮와 濊貊이 이어졌도다. 이들 여러 君長은 누구의 후손이겠는가? 世系로는 또한 檀君으로부터 이어졌도다. 그 나머지 소국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文籍 중에서도 미루어 알 수가 없네. 지금의 州府의 別號가 그것일 테니, 諺說로 맞는지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漢 皇帝가 먼 곳을 안정시킨 뜻을 생각해보면, 黎蒸을 안정시킬 곳에서 黎蒸을 해치고야 말았으니, 辰韓·馬韓·弁韓 사람이 마침내 솔밭처럼 일어섰고, 新羅와 高句麗, 百濟가 서로 차례로 건국되었다네. 郡으로 나뉘어 이후 新羅가 일어서기까지, 햇수를 헤아려 72년이 되었다네.<sup>15</sup>

- 15 『帝王韻紀』卷下, “因分此地爲四郡, 各置郡長綏民編. 眞番臨屯在南北, 樂浪玄菟東西偏, 胥匡以生理自絶, 風俗漸醜民未安. 隨時合散浮沈際, 自然分界成三韓. 三韓各有幾州縣, 蚩蚩散在湖山間, 各自稱國相侵凌, 數餘七十何足徵, 【稱國者, 馬有四十, 辰有二十, 并有十二】於中何者是太國. 先以扶餘【檀君本紀曰, 與非西岬河伯之女婚而生男, 名夫婁, 東明本紀曰, 扶餘王夫婁, 老無子,

『삼국유사』가 찬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휴가 찬한 『제왕운기(帝王韻紀)』(1287)를 보면 부여에 대한 인식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왕운기』 권 2에서는 단군-후조선(기자자신)-위만조선-4군에 이어 삼한 70여 국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 70여 국 안에 대국으로서 부여는 가장 먼저 거론되는 나라이다. 비록 고구려나 백제·신라처럼 별기로 노래 되진 못했으나, 그 전신으로 인식되는 삼한(三韓)의 대국으로 비류국과 함께 가장 처음 언급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부여와 관련한 세주 분량이 매우 많고 자세함이 눈길을 끈다. “신(臣)이 일찍이 상국(上國)에 사신으로 갔을 때, 요하(遼河) 강변 도로 옆에 이르렀는데, 묘(墓)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이 말하기를, ‘부여(扶餘) 부마대왕(駙馬大王)의 묘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이나 “가탐(賈耽)이 말하기를, ‘큰 들의 남쪽은 압록혈(鴨綠血)로서 부여의 옛 땅이다’라고 하였으니, 곧 북부여는 마땅히 요하 강변에 있었을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주목해보면, 이승휴는 부여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있음을 본다. 곧 1270년대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여러 차례 원(元)을 오갔던 이승휴는 본인의 사행 경험에 근거한 정보를 기록하는 한편, 당대(唐代) 가탐의 기술을 인용하며 그 정보의 자세함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후조선(後朝鮮)으로부터 부여로 계승되는 역사의 유구함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적고 있다.

祭山川，求嗣，所御馬，至鯤淵，見大石流殘。王怪，而使人轉石，有小兒，金色蛙形。王曰，天錫我令胤乎。立爲太子，名曰金蛙。其相阿蘭弗曰，日者，天降我曰，將使吾子孫，立國於此，汝其避之。東海濱有地，號迦葉原，土宜五穀，可都也。勸王移都，號東扶餘云云。臣嘗使於上國，至遼濱路傍，有立墓。其人曰，扶餘駙馬大王墓也。又賈耽曰，大原南，鴨綠血，扶餘舊地。則北扶余者，宜在遼濱。其開國，蓋自後朝鮮，而至此，幾矣。】沸流稱，【東明本紀曰，沸流王松讓謂曰，予以仙人之後，累世爲王，今君造國，日淺，爲我附庸，可乎。則此亦疑檀君之後也。】次有尸羅與高禮，南北沃沮穢貊膺。此諸君長問誰後，世系亦自檀君承。其餘小者名何等，於文籍中推未能。今之州府別號是，諺說那知應不應。想得漢皇綏遠意，定黎蒸處害黎蒸，辰馬弁人終鼎峙，羅與麗濟相次興。自分爲郡至羅起，計年七十二算零。”

또한 부여에 이어 비류국(沸流國)을 적고 세주에 『동명본기(東明本紀)』를 인용하면서 선인(仙人)의 후손을 자칭하는 비류왕(沸流王) 송양(松讓)은 단군의 후손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곧 이승휴는 부여와 비류가 모두 조선을 이어 역사를 전개한 국가들이었다고 인식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에 앞서 단군에 대한 노랫말에 붙은 세주에 “그리하여 시라(尸羅)·고례(高禮)·남북옥저(南北沃沮)·동북부여(東北夫餘)·예(濊)·맥(貊)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었다”<sup>16</sup>는 언급과도 상통하는 인식이다.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집필한 직접적인 동기는 고려의 역사적 계승 관계를 밝히는 데 있었고, 이는 국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던 그의 정치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sup>17</sup> 이러한 의견을 경청하자면, 곧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통해 단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정통적 계보 인식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이는 『삼국유사』 기이편 고구려 조에서 일연이 세주를 통해 “『단군기』에 이르기를 ‘군(君)이 서하(西河)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기록을 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뒤에 주몽을 낳았다고 하였다.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부루이다’라고 하였으니 부루와 주몽은 이모형제(異母兄弟)일 것이다”<sup>18</sup>라고 하였던 대목과도 통한다. 일연 또한 부여왕 해부루의 혈통을 단군으로부터 찾았던

16 『帝王韻紀』 卷下, “初誰開國啓風雲, 釋帝之孫名檀君. 【本紀曰, 上帝桓因, 有庶子, 曰雄云云, … 名檀君. 據朝鮮之域, 爲王. 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 皆檀君之壽也. 理一千三十八年, 入阿斯達山, 爲神, 不死故也.】”

17 박인호, 2009, 「『제왕운기』에 나타난 이승휴의 역사지리인식」, 『조선사연구』 18, 11, 16쪽. 여기서는 이승휴가 『帝王韻紀』를 찬술한 목적에 대해 “고려의 역사적 계통과 정통성을 밝히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상고시대의 여러 국가들은 단군의 후손이고 상고의 모든 시대가 고려로 통합되어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는 역사적인 정통성의 입장이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인호, 2009, 위의 글, 16쪽).

18 『三國遺事』 卷1, 紀異 1, 高句麗 條, “檀君記云,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名曰夫婁, 今拋此記, 則解慕漱私河伯之女而後產朱蒙. 檀君記云, 產子名曰夫婁, 夫婁與朱蒙異母兄弟也.”

것이다. 즉, 고려 후기 일연과 이승휴는 「단군기」·「단군본기(檀君本紀)」 등의 자료에 주목해 건국 신화를 재구성·재해석함으로써 단군으로부터 고려로 이어지는 혈연적 계보를 구축하였고,<sup>19</sup>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여 또한 그 계보 안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13세기 후반, 일연과 이승휴의 역사 인식을 보면 선대(先代)의 역사로서 부여의 역사를 자국의 전사 범주 안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고려의 입장에서 ‘고구려 기원지로서의 부여’를 기억하는 차원으로부터 한 단계 나아간 인식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자신들 역사의 시원을 고구려가 아닌 ‘단군’으로 설정하고 이를 계승한 부여라는 인식 체계는 『삼국사기』에 비친 그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느껴진다. 고려 후기 이른바 ‘원 간섭기’의 길목에 들어선 고려를 마주한 두 지식인의 역사 인식 속에서 부여는 단군조선의 계승국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구삼국사』와 『삼국사기』가 찬술되던 고려 전반기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찬술되는 고려 후반기의 부여에 대한 역사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즉,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입장에서 ‘고구려 기원지로서의 부여’로 기억하던 역사가 이후 ‘단군조선을 계승한 부여’로 바뀌면서 고려 후기에 가서 부여가 고려인의 자국사 역사 체계 내에 수용되었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일연의 『삼국유사』나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나타나는 ‘단군의 후예’라는 혈연적 계승 인식은 그들이 인용한 「단군기」 및 「단군본기」 등에서 먼저 나타난 것이며, 일연과 이승휴는 『구삼국사』 및 고기류(古記類) 사서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계보를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0</sup> 따라서 이러한 상고 시기에 대한 혈연적 계승 인식이 반드시 고려 후기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그와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는 부여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도 고려 후기보다 앞선 시기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

19 이정빈, 2021, 앞의 글, 399~400쪽.

20 박인호, 2009, 앞의 글, 13~15쪽.

가 있다. 바로 이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가 주목된다.

#### 사료 (라)-1

扶餘侯 王燾는 文宗 34년(1080)에 책봉되어 扶餘侯가 되었는데, 그 冊文에 이르기를, “周가 藩屏을 세운 것은 뻔치듯 일어나는 國運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漢이 盤石을 높인 것은 불꽃같이 번성하는 시기에 이르기 위함이었다. 장차 社稷의 안녕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본 가치를 단단히 함에 기대야 하니, 어찌 큰 규범에 의거하여 寵章을 거행하지 않겠는가. 아! 너 王子 燾는 어려서부터 성숙하고 자태가 빼어났으며 성품은 지극히 온화하고 天稟이 순수하였다. 책을 읽으며 한 번에 열 줄의 글을 다 보았고 摘藻는 일곱 걸음에 시를 다 지을 정도였다. 빛나는 명성이 이미 널리 퍼졌으니 褒獎하여 상 주기를 어찌 늦추겠는가. 이로써 五侯의 반열에 높이 올리고 八座의 영예로운 자리에 발탁하고 승진시키며, 또한 봉토(土茅)를 나누어 食邑을 하사한다. 이제 某官某等을 보내어 符節을 받들고 禮를 갖추어 冊命으로 너를 開府儀同三司·檢校司空·守尙書令·上柱國·扶餘侯로 삼고 식읍 1,000戶를 내린다. …” 라고 하였다. 宣宗 3년(1086) 守司徒로 加爵하고 식읍 2,000호를 더하였으며, 11년(1094)에는 守太保로 승진시켰다. 肅宗이 왕위에 오르자 守太傅로 加爵하고 식읍 3,000호와 食實封 300호를 제수하였다.<sup>21</sup>

21 『高麗史』卷90, 列傳 3, 宗室 扶餘侯燾, “扶餘侯燾, 文宗三十四年, 冊爲扶餘侯, 冊曰, 周樹維藩, 所以保縣興之運, 漢崇盤石, 所以臻炎盛之期, 將圖社稷之寧, 必賴本支之固, 盍涓景範, 用舉寵章, 咨, 爾王子燾, 克嶷挺姿, 至蘇稟粹, 讀書俱下於十行, 摘藻敏成於七步, 聲華既洽, 獎賁可稽, 是用, 迺陟五侯之列, 擢陞八座之榮, 疏以土茅, 賜之戶食, 今遣使某官某等, 持節備禮, 冊命汝爲開府儀同三司·檢校司空·守尙書令·上柱國·扶餘侯, 食邑一千戶, … 宣宗三年, 加守司徒, 食邑二千戶, 十一年, 進守太保, 肅宗卽位, 制授守太傅, 食邑三千戶, 食實封三百戶.”

## 사료 (라)-2

王의 別宮과 그 子弟들이 거처하는 곳은 모두 宮이라 하였다. 왕의 母·妃·姉妹 가운데 따로 사는 사람에게는 宮을 지급하고 田을 주며 湯沐(邑)으로 받들게 하였다. 혹 비운 채 거처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 이익을 갖고 租賦를 바치게 하였다. 雞林宮은 王府의 서쪽에, 扶餘宮은 由巖山의 동쪽에 있다. 또 辰韓·朝鮮·常安·樂浪·卞韓·金冠 등 여섯 궁은 성안에 나뉘어 위치하였는데, 모두 왕의 伯叔·昆弟의 거처였다.<sup>22</sup>

위의 사료 (라)-1은 고려 문종(文宗, 재위: 1046~1083)의 왕자 왕수(王燾)에게 ‘부여후(扶餘侯)’의 작위가 내려졌음을 전하는 기사이다. 연구에 따르면 고려 시대의 봉작제(封爵制)는 봉군제(封君制)에서 봉작제로 이행하며, 이러한 봉작제는 문종대(文宗代)에 정립되었다고 한다.<sup>23</sup> 또한 보통 왕자의 경우 후(侯)에서 시작하여 공(公)으로 진봉되었는데,<sup>24</sup> 부여후 왕수 또한 뒤의 기록에서는 부여공(扶餘公)으로 표기한 기사가 확인된다. 어쨌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왕수가 책봉받은 ‘부여후’라는 작위명이다. 고려는 중국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으면서도 독자적인 해동천하를 갖고 있었고 그러한 다원적 천하관에 걸맞은 봉작제를 고민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현종(玄宗)-문종 시대에 이르면 평양(平壤)·낙랑(樂浪)·개성(開城)·계림(鷄林) 등 고려인들이 자국사로 인식한 역대 국가의 수도 또는 별칭이 붙는 지명별호를 작위에 사용하였다.<sup>25</sup>

22 『宣和奉使高麗圖經』 卷6, 宮殿 2, 別宮, “王之別宮, 與其子弟所居, 皆謂之宮. 王母妃姉妹別居者, 給宮受田以奉湯沐, 或空不居, 而許民射其利, 而供租賦. 雞林宮在王府之西, 扶餘宮在由巖山之東. 又有辰韓朝鮮常安樂浪卞韓金冠六宮, 分置城內, 皆王伯叔昆弟之居也.”

23 김기덕, 1998, 『고려시대 봉작제 연구』, 청년사, 47~57쪽.

24 황향주, 2023a, 「고려 전·중기 왕실의 친족구조와 왕실 封爵制 운영원리」, 『중앙사론』 58, 52쪽.

25 황향주, 2023b, 「고려 전·중기 왕실 봉작제의 도입과 변용」, 『역사와 현실』 127, 29쪽.



그렇다면 여기서 왕수가 책봉받은 ‘부여후’의 ‘부여’는 지명인가, 아니면 국가명인가. 고려시대 공주(公州) 부여군(扶餘郡)의 존재를 고려한다면<sup>26</sup> 이것이 지명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종-문종 시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평양·낙랑 등의 별호를 사용했던 것은 국공보다 상위의 왕작을 염두에 두고 군작을 제정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송·노·진과 같은 주대(周代) 제후의 국명이 수당(隋唐)에서도 관념적으로 이어져 왕작과 결합하였던 역사를 상기케 한다는 지적이 주목된다.<sup>27</sup> 나아가 고려 전·중기의 왕실봉작제가 중국, 특히 당의 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고려를 ‘황제국’으로 표상화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의견도 참고할 만하다. 즉, 고려 전기 종실(宗室)에 대한 봉작명(封爵名)에 국명(國名)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중국의 천자가 제후국을 봉하는 것과 같이 고려왕도 제후국을 봉한다는 황제체제하의 분봉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들 국명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제국명(諸國名)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의 국가의식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sup>28</sup>

한편, 위의 사료 (라)-2에서 확인되는 여러 별궁(別宮)의 명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의 궁원(宮院) 제도가 봉작제와 밀접한 연관 속에 운영되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료 (라)-2의 여러 별궁의 명칭이 대부분 계림·부여·진한·조선 등 고대 국가의 이름을 칭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지명별호 작위가 모두 고대 국가 이름과 관계됨을 확신할 수 있게 한다. 곧, 수·당의 사례에서처럼 황제국을 표방했던 당시 고려 왕실에서도 왕족을 대상으로 봉작제가 운영될 때는 고려의 전사가 되는 고대 여러 나라의 국명을 작위와 관념적으로 이어지게 한

26 『高麗史』 권56, 志10, 地理 1, 楊廣道 公州 扶餘郡 條, “扶餘郡本百濟所夫里郡【一云泗沘】。百濟聖王, 自熊川, 來都之, 號南扶餘。至義慈王時, 新羅遣金庾信, 與唐將蘇定方, 夾攻滅之。唐師既去, 新羅盡得百濟舊地。文武王十二年, 置摠官, 景德王, 改今名。顯宗九年, 來屬。明宗二年, 置監務。有天政臺, 釣龍臺, 落花巖。”

27 황향주, 2023b, 앞의 글, 29쪽.

28 김기덕, 1998, 앞의 책, 59쪽.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왕수가 책봉받은 ‘부여후’의 ‘부여’를 고대국가의 이름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점은 이 ‘부여’가 가리키는 국가가 백제인가, 부여인가 하는 점이다. 책봉호나 별궁의 이름에서 백제가 나타나지 않는 점, 이와 달리 신라의 경우 그 별칭 계림이 작위와 별궁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왕수의 책봉호 ‘부여후’의 ‘부여’는 역시 백제를 뜻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앞서 보았듯 당시 고려 지배층에게 부여는 고구려와 고려의 기원이 되는 국가로 기억되었고, 나아가 고구려와 함께 조선(후조선)을 계승한 나라였다는 인식도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백제의 별칭을 굳이 ‘부여’라고 표기한 이유에는 북방의 고대국가 부여에 대한 인식 또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봉작제와 공원제도가 고려를 ‘황제국’으로 표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기서의 ‘부여’라는 지명별호는 고려의 국가적 기원과 맞닿아 있는 북방의 고대국가 부여와 현재 고려가 영유하고 있는 옛 ‘남부여’ 백제를 아우를 수 있는 중의적 칭호로서 선택되었다고 추정된다.

이상의 논의가 크게 틀리지 않다면,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고려인들의 역사 인식 속에 부여는 중요하게 자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부여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기억되고 인식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고려가 그 계승을 표방하였던 고구려 발상지로서 ‘부여’의 역사적 위치에 주목했기 때문이겠지만, 이와 함께 조선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의 계승적 측면에서도 부여가 차지하였던 계보상의 위치를 고려인들이 중요시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 시기 인식이 분명 혈연적·역사적 계승 관계를 전제한 계보 안에서의 ‘부여’에 대한 인식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부여사’에 대한 지식까지 구체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곧,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부여’에 대한 인식은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었지만, 전하는 부여 관련 기록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역사 자체에 대한 인식은 신화적·설화적 기록에 기반한 상당히 피상적인 것이었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

### III. 조선시대 부여사 인식: 망각과 부활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조선시대 부여사 인식 변천에 관한 것이다. 앞서도 보았듯 고려시대 부여에 대한 인식은 고구려 계승의식과 결부되어 비교적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여사 인식의 환경적 조건은 조선시대에 와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임금(始受命之主)’이라 일컬어졌던 단군과 ‘처음으로 이 땅에 교화를 일으킨 임금(始興教化之君)’으로 인식되었던 기자를 역사 계승의 전면에 내세우며 건국된 조선에서<sup>29</sup> 이전처럼 고구려와 부여에 대한 강고한 계승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 통사이자 조선 초 역사 인식의 종합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조차 부여사에 대한 서술은 찾기 어렵다. 『동국통감』은 단군조선을 시작으로 고려에 이르는 역사를 서술한 최초의 통사로 평가된다. 그 고대사 서술 체계를 보면, 먼저 외기(外紀)를 통해 단군조선 → 기자조선 → 위만조선 → 한사군 → 이부(二府, 낙랑·대방) → 삼한으로 이어지는 상고사 체계를 서술하였으며, 그 뒤로 삼국 → 신라 → 고려 순으로 역사가 이어진다. 그러나 외기에서는 부여에 대한 기술을 찾을 수 없으며, 다만 삼국기(三國紀)의 고구려 관련 기록 등에서 부여 관계 기사가 일부 확인될 뿐이다. 『동국통감』은 이전과 달리 편찬 체제에서 신라기(新羅紀)를 독립시킨 점이나, 사론을 통해 기자조선 → 마한 → 신라로 이어지는 정통적 계승론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sup>30</sup> 기자조선-마한-신라로 이어지는 역사 계보를 처음 확립한 사서로 평가된다. 또한 『동국통감』에 이르러 고조선(기자)-삼한(마한)-사군-삼국-신라-고려의 새로운 국사체계가 성립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sup>31</sup> 그렇다

29 『太祖實錄』卷1, 元年 壬申 8月 庚申, “禮曹典書趙璞等上書曰, … 朝鮮檀君, 東方始受命之主, 箕子, 始興教化之君, 令平壤府以時致祭.”

30 전덕재, 1994, 「동국세년가·동국통감」,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비, 163쪽.

면 이와 같은 조선 초 국사체계와 정통적 계보의 정립 과정에서부터 부여의 역사는 한참 밀려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조선 초에 편찬된 『동국사략(東國史略)』(1403)이나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1476)에서도 삼국 이전 시기 역사를 소략하게나마 다루고는 있으나, 그조차도 단군조선 → 기자조선 → 위만 → 한사군 → 이부 → 삼한 → 삼국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sup>32</sup> 역시 부여와 관계된 독립적인 서술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1436년 세종의 명을 받은 권제(權躋)가 찬한 『동국세년가(東國世年歌)』는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삼한 78개국 가운데 부여와 비류의 입국이 가장 앞섰다는 언급이 보인다.<sup>33</sup> 이는 역시 앞서 고려시대 인식을 일정 부분 계승한 것으로, 조선 초 역사서에서 보이는 삼국 이전 부여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라 생각된다.<sup>34</sup> 기자로부터 마한-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전통론적 역사 인식이 강세였던 조선 전기에 부여의 역사는 배제 혹은 망각의 역사로서 공적 기억 바깥에 자리하였다.

한편, 이처럼 조선 초 부여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도중에도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돌출적으로 나타난다.

31 한영우, 1981,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24, 『한국사학사연구』, 민속원, 176~182쪽.

32 南東信, 1994, 「동국사략·삼국사절요」,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비, 141, 148쪽.

33 全德在, 1994, 앞의 글, 153쪽.

34 다만, 부여에 대한 역사 서술 문제를 제외하고 본다면, 『제왕운기』에서 제시되었던 단선적인 상고사 인식 체계와 단군-기자-위만으로 이어지는 삼조선설, 단군 후예론, 발해의 고구려 계승론 등의 역사상은 『東國世年歌』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 새로운 역사 서술 체계를 구상하려 했던 『동국사략』·『동국통감』 등에서도 계승되며, 조선 초 역사 서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박인호, 2009, 앞의 글, 16쪽; 2011,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18, 366쪽).

## 사료 (마)-1

靈異, 『檀君古記』에 이르기를, “上帝桓因은 庶子が 있었으니, 이름은 雄인데, (세상에) 내려가 人間이 되고자 하여 天三印을 받고 太白山 神檀樹 아래에 강림 하였으니, 이가 檀雄天王이 되었다. 孫女로 하여금 藥을 마시고 人身을 이루게 하여, 檀樹神과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檀君이다.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朝鮮이라 이르니, 朝鮮·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濊·貊이 모두 단군의 다스림을 받았다. 단군이 非西岬河伯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아[이를] 夫妻라 하였는데, 이를 東扶餘王이라고 이른다. 단군이 唐堯과 더불어 같은 날에 즉위하고, 禹가 塗山에서 회맹할 때 이르러 太子 夫妻를 보내 조회하게 하였다. 享國 1038년 殷 武丁 8년 乙未에 阿斯達에 들어가 神이 되니, 지금의 文化縣 九月山이다. 夫妻가 아들이 없이 金色 蛙形兒를 얻어 기르니, 이름을 金蛙라 하고, 세워서 太子를 삼았다. 그 재상 阿蘭弗이 이르기를, “일전에 하늘이 나에게 강림하여 말하기를, “장차 내 子孫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피하라. 東海 가에 땅이 있는데, 이름은 迦葉原이며, 토질이 五穀에 적당하여 도모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왕을 권하여 도모를 옮겼다. 天帝가 太子를 보내, 降遊扶餘 古都로 내려가 놀게 하니 이름이 海慕漱였다. ...”<sup>35</sup>

## 사료 (마)-2

【自註】옛날 神人이 檀木 아래 내려오니, 國人이 세워 왕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 35 『世宗實錄地理志』平安道 平壤府, “靈異. 檀君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 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降太白山神檀樹下, 是爲檀雄天王. 令孫女飲藥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立國號曰朝鮮, 朝鮮·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濊與貊, 皆檀君之理. 檀君聘娶非西岬河伯之女生子, 曰夫妻, 是謂東扶餘王. 檀君與唐堯同日而立, 至禹會塗山, 遣太子夫妻朝焉. 享國一千三十八年, 至殷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爲神, 今文化縣 九月山. 夫妻無子, 得金色蛙形兒養之, 名曰金蛙, 立爲太子. 其相阿蘭弗曰, 日者, 天降于我曰, 將使吾子孫立國於此, 汝其避之. 東海之濱有地, 號迦葉原, 土宜五穀, 可都也. 於是勸王移都. 天帝遣太子, 降遊扶餘古都. ...”

檀君이라 부르니 때는 唐堯 元年 戊辰이었다.

【增註】古記에 이르기를, “上帝桓因은 庶子가 있었으니, 雄이라 하였는데, (세상에) 내려가 人間이 되고자 하여, 天三印을 받고 무리 3,000을 거느리고 太白山 神檀樹 아래에 강림하였니, 이를 일러 檀雄天王이라 하였다. 桓은 혹은 檀이라고도 하니, 산은 곧 지금의 平安道 熙川郡 妙香山이다. 風伯·雨師·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을 주관하고, 人間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雄에게 기도하기를, 변하여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雄이 艾 한 줌과 蒜 스무 개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人形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범이 이를 먹었으나, 범은 금기를 견디지 못하였고, 곰은 21일을 견뎌 女身을 얻었다. 함께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매번 檀樹 아래로 가 아이를 갖길 원한다고 빌었다. 雄이 이에 잠시 변하여 사람이 되어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하니 檀君이라 하였다. 唐堯와 같은 날에 나라를 세워 나라 이름을 朝鮮이라 하였으며,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하고, 뒤에는 白岳으로 도읍하였다. 非西岬 河伯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夫婁라 하였으니, 이가 東夫餘王이다. 禹가 제후들과 塗山에서 회합할 때, 檀君은 아들 夫婁를 보내 朝見하게 하였다. 檀君은 虞·夏를 거쳐 商 武丁 8年 乙未에 阿斯達山으로 들어가 변하여 神이 되었다. 지금의 黃海道 文化縣 九月山이다. 廟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다. 享年 1048년이었으며, 그 뒤 164년이 지나 己卯년에 箕子가 와서 봉해졌다.”<sup>36</sup>

- 36 『應製詩註』是月二十二日命題十首, 始古開闢東夷主, “【自註】昔神人降檀木下, 國人立以爲王. 因號檀君, 時唐堯元年戊辰也. 【增註】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 曰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率徒三千降於太白山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 桓或云檀, 山卽, 今平安道熙川郡妙香山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雄, 願化爲人. 雄遺靈艾一炷·蒜二十枚曰, 食之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食之, 虎不能忌, 而熊忌三七日, 得女身. 無與爲婚, 故每於檀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爲人, 孕生子曰檀君. 與唐堯同日而立

위에 제시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와 권람(權攄)의 『응제시주(應製詩註)』(1462)를 보면, 단군의 아들이자 동부여왕 부루(夫婁)가 도산(塗山) 회맹에 참석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 부루의 도산 회맹 참석 이야기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 기록은 고려말 학자 안향(安珦)의 시구에서 확인되는데, 그가 쓴 「충선왕(忠宣王)을 시종(侍從)하여 원(元)에 갈 때 느낀 바를 읊다(侍從忠宣王如元時感吟)」에는 “상국의 풍속을 살피며 계찰을 떠올리니, 도산에서 옥을 바쳤던 부루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다(上國觀風思季札, 塗山贄玉愧扶婁)”라는 구절이 보인다.<sup>37</sup> 『회헌실기(晦軒實記)』는 안향과 관련된 각종 사적을 모은 문집으로서, 이에 근거한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미 13세기 후반에는 고려 지식인들에게 공유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에 위 기록의 ‘부루의 도산 회의 참석 기사’는 ‘단군과 부루 및 동부여왕 해부루의 관계’에 관한 문제와 결부되어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 간에도 수용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sup>38</sup> 다만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부루의 도산 회맹 참여 설화의 등장은 곧 단군조선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담보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연관된 것이지,<sup>39</sup> 이것이 곧바로 부여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國，號朝鮮，初都平壤，後都白岳，娶非西岬河伯之女，生子曰夫婁，是爲東夫餘王。至禹會諸侯塗山，檀君遣子夫婁朝焉。檀君歷虞夏，至商武丁八年乙未，入阿斯達山，化爲神。今黃海道文化縣九月山也。廟至今存焉。享年一千四十八年，厥後一百六十四年己卯，箕子來封。”

37 『晦軒先生實記』卷2, 詩「侍從忠宣王如元時感吟」, “麒麟公子白裘狐, 寶玦珊瑚劔轡。 / 上國觀風思季札, 塗山贄玉愧扶婁。 / 傷心漠漠關河雪, 慣眼依依古塞榆。 / 最是此時無限痛, 百年天下帝單于。【出於竹城君派譜從忠宣王再如元則慣眼依依之句句驗故附錄于此】”(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晦軒先生實記』에서 발췌, <https://jsg.aks.ac.kr/viewer/viewIMok?dataId=K2-875%7C001#node?depth=2&upPath=001&dataId=001>).

38 박선미 편, 2024, 앞의 책, 152~157쪽; 김남중, 2024,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과 부여의 관계」, 『동양학』 96.

39 박선미 편, 2024, 위의 책, 49쪽.

이후 전란에 따른 극심한 혼란기를 거쳤던 17세기 무렵부터 북방에 대한 관심의 환기가 이루어지면서 부여사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주목할 문헌은 조정(趙挺)의 『동사보유(東史補遺)』(17세기 초)이다. 중국에 편증된 지식 경향을 바로잡아 국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고취하겠다는 의지에서 편찬된 『동사보유』에는 기성 통사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다.<sup>40</sup> 이에 따라 『동사보유』 1권에서는 단군조선 → 기자조선 → 위만조선 → 사군 → 이부 → 삼한(마한·변한·진한) → 북부여·동부여 → 삼국(신라·고구려·백제)으로 이어지는 체제 구성을 통해 전대(前代) 역사 서술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데, 특히 여기서는 북부여·동부여를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해 그 역사를 서술한 것이 주목된다. 그 내용을 발췌하면 사료(抄)와 같다.

#### 사료(抄)

北扶餘와 東扶餘【『東史』에 不載하다】

『古記』에 이르기를, 漢 宣帝 神爵 3년 壬戌 4월 8일에 天帝의 아들이 訖骨城에 내려왔는데【지금의 成川府 巫山 主峰】. 五龍車를 타고 와 도읍을 세우고 王을 칭하였으며, 國號를 北扶餘라 하였다. 스스로 이름을 解慕漱라 하였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夫婁라 하였으며, 解를 氏로 삼았다. 뒤에 다시 上帝의 명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 東明王이 北扶餘를 계승하여 일어나니, 卒本州에 도읍을 세우고 이를 卒本扶餘라 하였으니, 곧 高句麗의 시작이다.

北扶餘王 解夫婁의 재상 阿蘭弗 꿈에 天帝가 내려와 일러 말하기를, “장차 내 子孫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는 이를 꾀해 동해 가로 가라. 그 땅은 기름져 왕도를 세우기에 알맞다”라고 하였다. 阿蘭弗이 왕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國號를 東扶餘라 하였다. 夫婁가 늙도록 아들이 없

40 한영우, 1989,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2024, 『한국사학사연구』, 민속원, 323쪽.



자 山川에 제사 지내어 후사를 구하였는데, 타고 가던 말이 鯢淵에 이르러 大石을 보고 서로 마주하여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리게 하니,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금빛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주어 후사를 잇게 함이로다”하고 이에 거두어 그를 길렀으며 이름을 金蛙라 하였으니, 그가 자라자 太子로 삼았다. 夫妻가 죽자 金蛙가 왕위를 이었고, 그 아들 帶素에 전해졌는데, 高麗 無恤 때에 이르러 나라가 망하였다.<sup>41</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그 기록은 『삼국유사』 기이편의 부여 관계 기록을 약간 축약을 가해서 옮긴 정도이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조선 시기 역사서에서 처음으로 부여를 별전으로 담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도 ‘조선왕조에 들어 처음으로 부여를 국사 체계에 정식으로 넣은 것이다’라고 평한 바 있다.<sup>42</sup> 곧 이 무렵부터 조선 지식인들의 역사 인식 체계와 계보상에 부여의 역사가 다시금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로 17세기 조선 지식인 사회의 부여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 확장되었는데, 특히 한백겸(韓百謙)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1615)와 허목(許穆)의 『동사(東事)』(1667)가 주목된다. 한강 이북과 이남의 역사 전개를 구분하여 바라본 것으로 잘 알려진 『동국지리지』에서는 고조선·고구려·동옥저·동예 다음으로 부여사를 서술하였는데, 특히 『후한서』 동이열전 부여 조의 기사를 바탕으로 부

41 『東史補遺』卷1, 北扶餘·東扶餘【東史不載】，“古記云，漢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天帝子降于訖骨城【今成川府 巫山主峰】，乘五龍車，立都稱王，國號北扶餘，自稱名解慕漱，生子名夫妻，以解爲氏，後回上帝之命，移都于東扶餘，東明王繼北扶餘而興，立都于卒本州爲卒本扶餘，即高句麗之始，北扶餘王解夫妻之相阿蘭弗夢，天帝降而謂曰，將使吾子孫立國於此，汝其避之東海之濱，土地膏腴，宜立王都，阿蘭弗勸王，移都於彼，國號東扶餘，夫妻老無子，祭山川求嗣，所乘馬至鯢淵，見大石相對淚流，王怪之，使人轉其石，有小兒，金色蛙形，王喜曰，天賚我令胤乎，乃收而養之，名曰金蛙，及其長爲太子，夫妻薨，金蛙嗣位，傳子帶素，至高麗無恤國除。”

42 한영우, 1989, 앞의 책; 2024, 앞의 책, 326쪽.

여의 역사를 조명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남인 계열 지식인이었던 허목이 찬한 『동사』에서는 부여에 대한 독립 열전이 마련되었다. 『동사』는 서(序)-세가(世家)(단군·기자·위만·신라·고구려·백제)-열전(列傳)[부여·숙신씨·삼한(마·진·변)·가락·대가야·예맥·말갈(발해)·모라(탐라)]-지승(地乘)[지림(誌林)]-외기(外記)[흑치열전(黑齒列傳)]의 체제로 찬술되었는데, 이 중 부여전은 열전으로 수록되어 있다.

#### 사료 (사)-①

扶餘는 본래 解夫婁의 땅이다. 善馬·貂·豹·珠가 난다. 晉에 入貢하였다. (이에) 扶餘列傳을 짓는다.<sup>43</sup>

#### 사료 (사)-②

단군씨가 夫婁를 낳았다. … 夫婁가 즉위하여 北扶餘를 세웠다. 夫婁가 鯢淵에 기도하여 金蛙를 얻었는데, … 夫婁가 죽고 金蛙가 자리를 이었고 迦葉原으로 옮겨 가 東扶餘가 되었다. … 金蛙가 帶素에게 傳位하였다. 帶素가 강대함을 믿고 句麗와 함께 다투며 攻伐하였지만 끝내 격살당하고, 그 아우 曷思가 대신 즉위하였다. 손자 都頭에 이르러 句麗에 항복하니, 東扶餘가 망하였다. 그 연대를 상고해보면, (王)莽의 시대이다. 桓因과 神市の 시대는 고찰할 데가 없고, 檀君의 치세는 陶唐氏 25년부터 虞夏氏를 지나 尙 武丁 8년에 이르기까지 1,048년이고, 解夫婁 이후로 曷思가 망한 (王)莽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또한 1,000년이다. 또한 (이후로도) 餘種이 있어 晉과 통하였다. … 檀君氏 뒤에 해부루가 있으며, 해부루 뒤에 金蛙가 있다. 금와 뒤에 朱蒙과 溫祚가 있어 句麗와 百濟의 시조가 되었으니, 모두 檀君氏로부터 근본이 시작되었다. 부여는 玄菟에서 북쪽으로 1,000여 리 지점에 있었다. 남쪽으로는 鮮卑와 접하며 북쪽으로는 弱水에

43 『記言』 卷32, 外篇 東事 序, “扶餘本解扶婁之地. 出善馬貂豹美珠, 入貢於晉. 作扶餘列傳.”

이르니 땅이 사방 2,000리이고 城邑과 宮室이 있었다. ...<sup>44</sup>

부여열전은 단군세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 ‘단군의 아들 부루가 북부여를 세웠다’는 이해를 전제로 단군으로부터 해부루-금와-대소(帶素)로 이어지는 계보를 서술하고 “단군씨(檀君氏)의 뒤에 해부루가 있으며, 해부루 뒤에 금와(金蛙)가 있다. 금와 뒤에 주몽(朱蒙)과 온조(溫祚)가 있어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가 되었으니, 모두 단군씨로부터 근본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고기(古記)』 계통의 기록을 전거로 그 계보 관계를 정립한 후 그 뒤로 (사)-②의 밑줄 친 부분부터는 『삼국지』 동이전 부여 조와 『진서(晉書)』 사이열전(四夷列傳) 부여 조의 기록을 간추려 부여의 역사와 강역, 풍속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이러한 허목의 서술과 이해 방식으로 보아 그는 고려시기 상고사 계승 인식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부여·고구려·백제를 단군조선의 후예로 보는 시각이 『제왕운기』와 세조대(世祖代) 권람이 찬한 『응제시주』에 보일 뿐 조선조 대부분 사서에서 이러한 계통 인식을 긍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고려하면,<sup>45</sup> 『동사』의 부여 열전이 가지는 사학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동사』에서부터 부여사가 우리나라 고대사로 자리 잡았다”<sup>46</sup>는 선행 연구의 평가는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같은 책 『기언(記言)』 권32, 외편(外篇) 동사 4,

44 『記言』卷32, 外篇 東事 1, 檀君世家·扶餘列傳·肅慎氏列傳, “檀君氏生夫婁, … 夫婁立爲比扶餘. 夫婁禱於鯤淵, 得金蛙, … 夫婁卒, 金蛙嗣, 徙迦葉原, 爲東扶餘, … 金蛙傳帶素. 帶素恃其強大, 與句麗爭攻伐, 卒爲所擊殺, 其弟曷思代立. 至孫都頭降句麗, 東扶餘亡. 考其年代, 在莽之世. 桓因神市之世, 無所攷, 檀君之治, 自陶唐氏二十五年, 歷虞夏氏, 至商武丁八年, 千四十八年, 解夫婁之後, 至曷思亡於莽之世, 亦千年. 亦有餘種, 通於晉, … 檀君氏之後, 有解夫婁, 解夫婁之後, 有金蛙. 金蛙之後, 有朱蒙·溫祚, 爲句麗·百濟之祖, 皆本於檀君氏. 扶餘在玄菟北千餘里. 南與鮮卑接, 北至弱水二地方二千里, 有城邑宮室. …

45 한영우, 1989, 앞의 책; 2024, 앞의 책, 417쪽.

46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20쪽.

지승(地乘) 조에서는 “영변(寧邊)은 우발수(優渤水)가의 가섭원으로 북부여 해 부루의 땅이다. 성천(成川)은 옛 비류국이니, 또한 동부여라고 한다”<sup>47</sup>는 언급도 보이는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이래 부여의 위치를 한반도 안에서 찾고자 하는 인식이 허목에게서도 여전히 확인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이 두 문헌의 부여사 서술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전까지 문헌에 기술된 부여 기록이 대체로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 관계 기사에 의지해 서술된 것에 반해, 17세기 무렵부터 조선의 지식인들은 국내 문헌과 함께 고대 중국 문헌에 대한 분석을 아울러 부여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국지리지』와 『동사』 단계에 오면 오늘날 부여사 연구의 기본 문헌이 되는 사료들이 이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탐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후대 부여사 서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이 시기부터 부여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 서술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고려로부터 조선 전기까지 신화·설화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부여’ 인식이 17세기를 거치며 점차 역사로서의 ‘부여사’ 인식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부여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시기는 소론·근기남인 계열 지식인들의 역사 저술이 두드러지는 때이며,<sup>48</sup> 부여 역사에 대한 각각의 시각과 입장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부여사 저술은 소론 계열 지식인으로서 양명학도 일부 수용하였던 이종휘(李鍾徽)의 『동사(東史)』(18세기 후반)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발해를 중심에 둔 고대사 인식의 출발점이자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기원이라는 평가를 받는<sup>49</sup> 그의 역사

47 『記言』 卷35, 外篇 東事 4, 地乘, “寧邊, 優溲水上迦葉原, 北扶餘解夫妻之地, 成川, 古沸流之國, 亦曰東扶餘.【見檀君世家.】”

48 조성산, 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古代史 연구와 中華主義의 변용」, 『역사학보』 202, 66~67쪽.

49 이종휘 저, 김영심·정재훈 역주, 2004, 『동사』, 소명출판, 13쪽; 한영우, 1989, 앞의 책; 2024, 앞의 책, 623~624쪽. 반대로 이종휘의 저술을 근대 민족주의 역사

인식은 부여사 서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사료 (아)-1

扶餘의 선조는 檀君으로부터 나왔다. 대개 檀君이 支子를 남은 땅에 봉하니 後世에 이로 인하여 스스로 이름을 扶餘라고 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扶餘는 그 처음 봉해진 임금의 이름이라고 한다. 그 나라는 鴨江 북쪽에 있었는데, 땅이 사방 2,000리이다. 檀·箕의 때를 지나면서 혹은 존속하고 혹은 망하였는데, 모두 朝鮮에 臣屬했다고 한다. 傳한 것이 2,000여 년이었다. 王 解夫妻에 이르러 東海가에 있는 迦葉原으로 천도를 하고 이를 일러 東扶餘라 하였다. 國人 解慕漱가 스스로 天帝子의 아들을 自稱하고 扶餘의 옛 故都를 훔쳐 점거하였다. … 外史氏가 말한다. 扶餘는 大國이다. 中原에 매우 가까워 그 풍속이 嚴急하며, 少恩하고 싸움을 좋아하니 그 北鄙의 肅殺의 풍습을 얻은 것인가? 檀君의 후예들이 수천 백 년 나라를 세우고 왕을 칭해 世世로 끊어지지 않은 것은 그것이 처음 봉해질 때 반드시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 있어 仁惠가 物에 미치고, 流澤이 子孫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쉽도다. 그 일의 概가 드러나지 않음이, 帶素가 그 累卵의 위기를 제어할 수 없어서 또 그것을 허물어버렸으며, 赤烏의 상서로움도 마침 麗人의 병사를 불러들이기에 졌구나. 슬프도다.”<sup>50</sup>

학과 구분지어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정재훈, 2015, 「李種微의 『東史』와 사학사적 의의」, 『실학시대의 역사학 연구』, 사람의 무늬).

- 50 『東史』 「扶餘世家」, “扶餘之先, 出自檀君. 盖檀君封支子於餘地, 後世因自號曰扶餘, 或曰, 扶餘其始封君之名. 其國在鴨江之北, 地方二千里. 歷檀箕之除, 或存或亡, 皆臣屬朝鮮云. 傳世二千餘年. 至王解夫妻, 遷都迦葉原在東海濱, 是謂東扶餘. 國人解慕漱自稱天帝子, 竊據扶餘故都. … 外史氏曰, 扶餘大國也. 迫近中原, 其俗嚴急, 少恩而好戰, 其得北鄙肅殺之風乎. 檀君之後數千百年立國稱王, 世世不絕, 此其始封, 必有賢聖之君, 仁惠及于物. 流澤至子孫也. 惜乎. 其事不概見也. 帶素不能安其累卵而又毀之, 赤烏之瑞, 適足速麗人兵. 悲夫. … 外史氏曰, 扶餘大國也. 迫近中原, 其俗嚴急, 少恩而好戰, 其得北鄙肅殺之風乎. 檀君之後數千百年立國稱王, 世世不絕, 此其始封, 必有賢聖之君, 仁惠及于物. 流澤至子孫也. 惜乎. 其事不概見也. 帶素不能安其累卵而又毀之, 赤烏之瑞, 適足速麗人兵. 悲夫.”

## 사료 (아)-2

檀君의 나라는 처음 太白(山)으로부터 唐莊으로 옮겼고, 그 아들 夫妻는 지금의 開原에 도읍을 하였다가 마침내 北扶餘의 나라를 만들었다. 대개 그 경계는 남쪽으로는 臨津江에 이르렀고, 동·서·북쪽으로는 지금의 烏喇·船廠·遼·瀋·三衛를 드나들었다.<sup>51</sup>

단군-기자-마한으로 이어지는 정통과 함께 단군-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계통도 중시하였던 그는 특히 부여와 고구려가 단군을 계승하였다고 보아 역사 서술의 중심을 부여·고구려·발해에 두고 비중 있게 다루었다. 사료 (아)-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여에 대해서는 대국으로 인식하고 특별히 세가로 독립시켜 그 역사의 시말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특히 부여의 영토에 대해 남쪽으로는 임진강에 미치고, 동북·서북으로는 지금의 중국 동북지역, 오라(烏喇)·선창(船廠)·심양(瀋陽)·삼위(三衛)에 걸친 광활한 지역을 아울렀다고 보아 이른바 ‘단군족’의 활동 영역을 부여의 영역과 연결하여 인식하였다.<sup>52</sup> 부여에 대한 이러한 역사 인식은 후대 신채호의 ‘부여주족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근대 대중교의 역사 인식과 민족주의 역사학의 역사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53</sup>

이처럼 이종휘에 의해 광활한 부여의 역사가 상상될 무렵,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정밀한 부여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로 남인 계열 학자 한치운(韓致淵)과 한진서(韓鎭書)의 저술이 그것이다. 이들이 남긴 『해동역사(海東歷史)·지리지(地理考)』에서도 역시 「부여세기(扶餘世紀)」를 별도로 설정하여 부여의 역사를 독립적으로 정리하였는데, 『후한서』와 『삼국지』의 관련 기록을 주

51 『東史』 「古史三國識方考論」, “檀君之國初自太白, 後移唐莊, 其子夫妻, 都於今開原, 遂爲北夫餘之國. 盖其界南暨臨津, 東西北出入於今烏喇·船廠·遼·瀋·三衛之除.”

52 송호정, 2025, 앞의 책, 22쪽.

53 한영우, 1989, 앞의 책; 2024, 앞의 책, 624쪽.

요 뼈대로 하고 여기에 『상서(尙書)』·『산해경(山海經)』·『풍속통(風俗通)』·『진서』·『통전(通典)』·『통지(通志)』·『자치통감(資治通鑑)』 등 다양한 문헌으로부터 부여 관련 기록을 뽑아 그 역사 전개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sup>54</sup> 한치윤은 이렇게 부여의 역사를 별도의 세기(世紀)로 정리한 이유와 그 기원에 대해 사료(자)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사료(자)

살펴보건대, 夫餘國은 지금의 奉天府의 開原縣이니, 곧 본디 我邦의 구역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러나 夫餘는 句麗와 百濟가 일어난 곳이므로 특별히 같은 예로 紀에 세운다.

鎮書가 삼가 살펴보건대, 『尙書』에 전하기를 “武王이 商을 이기자 海東의 諸夷와 夫餘의 족속이 모두 길이 통하였다”고 한다. 『山海經』에서 이르기를, “大荒 북쪽에 胡가 있는데, 不與의 나라는 烈이 姓이고 기장을 먹는다”고 하였다. 華音에 응을 夫라 하니, 不與國은 곧 夫餘國이다. 또 『風俗通』 九夷의 조목에는 鳧夷가 있는데 鳧夷 역시 夫餘이다. 『通志』 氏族略에서 이르는 鳧夷氏는 百濟의 夫餘인데, 音이 변화하여 鳧夷가 된 것이다. 또 箕子의 이름은 胥餘인데 혹은 須夷라고 쓰니, 대개 鳧와 夫의 音이 서로 비슷하고 夷와 餘는 옛날에 서로 통하였으니, 夫餘라는 이름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sup>55</sup>

즉, 한치윤은 옛 부여의 땅은 봉천부(奉天府)의 개원현(開原縣) 일대로 아방(我邦)의 지역 안에 있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고구려와 백제가 모두 부여로부터

54 韓致禧, 『海東釋史』 卷4, 世紀 4, 扶餘 條.

55 『海東釋史』 卷4, 世紀 4, 扶餘, “按夫餘國 今奉天府之開原縣, 則本非我邦域內之國. 然夫餘者, 句麗百濟之所自起, 故特爲一例立紀. 鎮書謹按, 尙書傳, 武王克商, 海東諸夷夫餘之屬, 皆通道焉. 山海經云, 大荒北有胡, 不與之國, 烈姓黍食. 華音呼不爲夫, 不與國卽夫餘國也. 且風俗通九夷之目, 有鳧夷, 鳧夷亦夫餘也. 通志氏族略云, 鳧夷氏百濟之夫餘, 音轉爲鳧夷. 又箕子名胥餘, 或作須夷, 盖鳧夫音相近, 而夷餘古相通也. 夫餘之稱, 其來尙矣.”

일어났기에 세기로 정리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는 후술하는 같은 남인 계열의 안정복(安鼎福)이나 정약용(丁若鏞)의 시각과 대비하여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어지는 한진서의 서술을 보면 『산해경』에 나오는 “불여(不與)”나 이순(李巡)의 『이아(爾雅)』 석지(釋地) 및 형병(邢昺)의 『논어주소(論語注疏)』, 응소(應邵)의 『풍속통』 등에서 구이(九夷) 중 하나로 등장하는 “부유(甌夷)”가 모두 옛 부여를 가리키는 이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도 부여 역사의 시작을 선진(先秦) 시기로 앞당겨 보는 시각에서 자주 거론되는 기록들로서 이와 같은 견해가 일찍이 한진서로부터 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 등 당시 남인 계열 학자들의 주요 역사 저술을 보면, 18세기 무렵 역사지리 연구와 고증 성과가 집대성되는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여전히 『동국통감』에서부터 확고히 정립된 단군 → 기자 → 마한 → 통일신라 → 고려로 이어지는 단선적·정통론적 역사 인식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자료 (차)

무릇 統系는 史家가 책 첫머리의 第一義로 삼는 것인데, 『(東國)通鑑』은 檀君과 箕子의 사적을 별도로 外紀로 삼았으니, 그 의의가 옳지 못하므로 이제 정통을 기자로 시작하고, 단군을 기자가 동방으로 온 사적 다음에 붙이되, 『通鑑綱目』篇首의 三晉의 예를 본땀다. … 一 正統은 단군-기자-마한-신라 文武王 [9년 이후]-고려 태조[19년 이후]를 말한다. … 一 扶餘는 북방의 絕域에 있어서, 비록 단군의 후손이라 말하여지더라도 諸國의 列에 해당하지 않는데, 하물며 inghamal 데도 없음이라. 그러나 麗濟의 宗國이 되므로 麗·濟에 이를 갖춰 기록하여 건국한 예에 따랐다.<sup>56</sup>

56 『東史綱目』「凡例」統系, “凡統系, 爲史家開卷第一義, 而通鑑, 以檀箕事蹟, 別爲外紀, 其義不是, 今正統始于箕子而檀君, 附見于箕子東來之下, 倣通鑑綱目篇首三晉之例, … 一正統, 謂檀·箕·馬韓·新羅文武王[九年以後]·高麗太祖[十九年以後], … 一扶餘, 在北方絕域, 雖云檀君之後, 不當列於諸國, 況無



사료(차)에서 보듯 그가 세운 역사의 정통(正統)은 단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 고령을 말한다. 부여의 경우는 ‘북방의 절역(絶域)’이라 표현하면서 때문에 비록 단군의 후손이라 말하여지더라도 제국(諸國)의 반열(列)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으며, 다만 고구려와 백제 관련 기록에 그 사적을 적었다고 한다. 살펴보면, 『동사강목』에서 부여의 사적을 가장 자세히 기술한 대목은 『동사강목』 권1상, 임술(壬戌) 마한 조인데, 여기서는 기원전 60년 시점에 부여왕 해부루가 도읍을 동쪽으로 옮긴 사실을 적은 다음 주를 달아 『후한서』와 『삼국지』에 처음으로 부여전이 수록되었음을 간단히 언급하고 『통전』의 부여 기사를 전재하고 있다.<sup>57</sup> 즉, 『동사강목』에서는 부여에 대한 독립적인 서술 분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오히려 『동사강목』 부(附)권상, 상 「고이(考異)」 편에 보이는 「부루는 마땅히 두 사람이 있다(夫妻當有二人)」는 주장이나, 「『후한서』의 부여에 대

可徵乎. 然爲麗濟之宗國, 故備書之麗·濟, 依建國例.”

- 57 『東史綱目』卷1上, 壬戌 馬韓, “[壬戌]馬韓扶餘君解夫妻, 東遷其都, 扶餘國, 在玄菟北千里. 莫知其先, 或曰檀君之後, 北徙爲扶餘國, 以解爲姓. 初, 其王解慕漱, 自稱天帝子, 又號檀君, 生子夫妻. 夫妻老而無子, 【按百濟溫祚, 爲夫妻庶孫優台之子, 則此云無子者可疑. 東史之錯亂無徵, 盖如是矣.】祭山川求嗣, 其所御馬至鯢淵, 【在今胡地未可詳】有小兒金色蛙形, 喜曰, 此天賚我令胤乎. 乃收養之名曰金蛙, 立爲太子. 其國相謂夫妻曰, 東海之濱有地, 土壤腴膏宜五穀, 可都也. 遂勸王移都, 又稱東扶餘, 【按後漢書及三國志, 始立夫餘傳, 杜氏通典曰, 晉時夫餘庫有印文, 言濊王之印, 國有故城名濊城, 盖本濊貊之地. 其國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南與高句麗, 東與邑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地可方二千里. 有戶八萬, 東夷之域, 最爲平敞, 土宜五穀, 不生五果, 有宮室倉庫牢獄, 多山陵廣澤. 其人性強勇謹厚, 不冠鈔, 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豬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 邑落有豪民, 名下戶皆爲奴僕, 諸加別主, 大者數千家, 小者數百家, 會同拜爵揖讓升降, 有似中國, 以臘月祭天, 譯人傳辭, 皆跪手據地窃語.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窃盜一責十二, 男女淫, 婦人妬, 皆殺之. 兄死妻嫂, 與北狄同俗, 出名馬赤玉美珠, 大者如酸棗, 以弓矢刀矛爲兵, 家家自有鎧仗 作城柵, 皆圓有似牢獄, 行人無晝夜好歌吟, 一聲不絕. 有軍事, 亦祭天, 殺牛觀蹄, 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有敵諸加自戰, 下戶但擔糧食之. 其死, 夏月皆用水, 殺人殉葬, 多者百數, 厚者有棺無槨. 其君喪, 男女皆從白, 婦人着布面衣, 去環珮, 大體與中國彷彿.】”

한 오류(後漢書扶餘之誤)」에서 “『후한서』에서 말하는 부여왕 동명(東明)은 곧 고구려 시조 주몽이다”라고 주장하는 대목, 「우태(優台)와 구태(仇台)의 구별(優台仇台之別)」에서의 중국 문헌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이 눈에 띈다. 해당 시기 다른 사가(史家)의 부여 서술과 비교할 때 상당히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사강목』 부권상, 중 「괴설변증(怪說辨證)」 편에서 상당히 긴 분량으로 국내 문헌의 부여 관계 기사를 언급하며 그 ‘괴설’의 허황됨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된다.<sup>58</sup>

이처럼 『동사강목』에는 부여의 역사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시각과 견해가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복은 부여의 역사를 그 서술 체계상에 독립적인 위치를 할애하지 않았으며 정통론적 계보에서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조선 전기의 『동국통감』과 조선 후기의 『동사강목』에서 정립한 정통론적 계보 인식은 1985~1905년 시기 국가의 역사 서술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sup>59</sup> 그리고 이러한 역사 체계에 바탕한 저술에서는 부여가 여전히 독립적으로 서술되지 못했으며, 이처럼 관계 기사를 통해 언급될 뿐이었다.

부여사에 대한 이러한 서술 태도는 같은 남인 계열 실학자 정약용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정약용은 부여를 자신이 설정하였던 아방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 사료 (카)-1

薺貊이란 본래 北狄의 種이다. 我邦의 疆域 안에는 본래 이 이름이 없었다.【…

薺貊이란 天下의 賤名이다. 中國 사람들이 그 실상을 엄격히 따져보지도 않고 그릇되게 이러한 이름을 붙였고, 我邦 사람들은 고개를 굽힌 채 그대로 받아들여

58 이상의 『東史綱目』 원문은 지면 관계상 부득이 제시하지 않는다.

59 도면희, 2008, 「한국 근대 역사학의 창출과 통사 체계의 확립」, 『역사와 현실』 70, 187~193쪽.

벗어날 줄을 알지 못하니, 또한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葦狍의 사람들은 본래 土著하지 않고, 水草를 쫓아 鹿豕를 따라 옮겨 다니며 (거처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마침내 我邦에 이르러 몇몇 郡에 雜居하게 됨을 면치 못하였다. …】 濊는 지명이고 狍은 種類이다. 동북쪽을 일러 狍이라 하였지, 正東은 狍이 아니다. 【註文 생략】 前史를 두루 고찰하건대, 葦狍이란 北夫餘의 땅이다. 後世에 이를 일러 豆莫婁라 하였다. 【註文 생략】 前漢 때에 北夫餘王 解夫婁가 동쪽으로 江陵에 옮겨갔다. 이 때문에 江陵이 濊가 되었다. 解夫婁가 이미 옮긴 뒤 北夫餘의 땅은 계속 濊狍이라 칭하였다. 【註文 생략】 句麗의 선조 또한 夫餘에서 나왔으므로 中國의 諸史가 모두 句麗를 狍이라 불렀다. 【註文 생략】 狍의 別種으로 또 이른바 梁狍이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王莽 때에 句麗에 의해 멸망당하였다.<sup>60</sup>

## 사료 (카)-2

漢·魏 이래로 北沃沮의 땅은 어떤 때에는 高句麗가 차지하고, 어떤 때에는 夫餘가 점거하였으니, 일정한 주인이 없었다.<sup>61</sup>

정약용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서 제시된 한강 이북과 이남의 역사 전개를 구분하여 바라보는 시각을 계승하여 북쪽에서는 기자조선 → 사군 → 고구려 →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가, 남쪽에서는 삼한 → 백제·가야·신라로 고대 역사가 전개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처럼 한백겸의 시각을 계승하면서도 『동

60 『我邦疆域考』 권2, 葦狍考, “葦狍者, 本北狄之種. 我邦疆域之內, 本無此名. 【… 葦狍者, 天下之賤名也. 中國之人, 不覈其實, 謬加是名, 我邦之人, 俛首順受, 不知解脫, 不亦惑歟. 葦狍之人, 本不土著, 逐水草, 隨鹿豕轉徙無常, 遂至我邦, 不免有雜居數郡. …】 濊者, 地名也, 狍者, 種類也. 東北曰狍, 正東非狍也. 【註文 생략】 歷考前史, 葦狍者, 北夫餘之地也. 後世謂之豆莫婁. 【註文 생략】 前漢之時, 北夫餘王解夫婁東徙江陵. 此江陵所以爲濊也. 解夫婁既徙, 而北夫餘之地, 仍稱濊狍. 【註文 생략】 句麗之先, 亦出夫餘, 故中國諸史並以句麗爲狍. 【註文 생략】 狍之別種, 又有所謂梁狍者. 至王莽時, 爲句麗所滅.”

61 『我邦疆域考』 권2, 「沃沮考」, “漢·魏以來, 北沃沮之地, 或爲高句麗所得, 或爲夫餘所據, 無定主也.”

국지리지』와는 다르게 『아방강역고』에서는 부여를 철저하게 아방의 바깥에 두고, 그 역사에 대해 독립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이는 정약용 자신이 가졌던 종족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는 아방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종족을 기자의 유민으로부터 비롯한 북방의 조선족과 남방의 토착민 한족으로 파악하였다.<sup>62</sup> 반면, 사료 (카)-1에서 보듯이 예맥(濊貊)에 대해서는 본래 북적(北狄)의 종족으로 북부여와 고구려 유민의 남하 과정에서 그 일부가 아방에 이르러 섞여 살게 되었다고 하여, 역사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사에 대한 나름의 고찰을 통해 예맥과 북부여·두막루(豆莫婁)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부여의 역사가 『아방강역고』에서 어떤 특별한 주목도 받지 못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안정복이나 정약용 등 남인 학자들의 부여 인식이 이처럼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역사 인식이 북방지역보다는 한반도 내의 역사에 상대적으론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이종회를 비롯한 소론 계열 학자들은 부여·고구려·발해 역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남인과 일정한 차이를 드러냈는데, 이는 소론계 역사 연구가 가지는 독자성을 보여주는 지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63</sup>

다만, 그럼에도 부여와 관련해 짚어볼 서술은 사료 (카)-2의 내용이다. 여기서는 북옥저의 땅을 고구려가 차지하기도 하였고 부여가 근거지로 삼기도 하였다는 언급이 보인다. 후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서』동이열전 부여 조에 285년 모용선비(慕容鮮卑)의 공격을 받은 부여왕의 자제(子弟)가 옥저 땅에 피신한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sup>64</sup> 이에 대해 정약용은 주몽 초년(初年)에 고구려가 북옥저를 차지하고 성읍으로 삼았으나 그 땅이 멀고 험해 방기하였고, 285년 무렵에 이르러 부여객(夫餘客)이 근거지로 삼았다고 적고 있다. 이는 마

62 한영우, 1989, 앞의 책; 2024, 앞의 책, 716~717쪽.

63 조성산, 2009, 앞의 글, 75~79쪽.

64 『晉書』卷97, 列傳 67, 四夷 東夷 夫餘國, “至太康六年,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치 이케우치 히로시가 같은 기사를 동부여의 역사와 연결한 서술과 닮아 있어 흥미를 끈다.<sup>65</sup> 이로 보아 정약용 또한 안정복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설정한 정통론적 역사 체계 안에 부여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그 역사에 주목하며 관련한 여러 문헌을 탐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고려 후기~조선 전기에 걸쳐 형성된 단군과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는 한국사 계보<sup>66</sup> 속에서 부여가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였다. 사실 마한 정통론이 주류를 점하였던 조선시대에 북방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고, 이에 따라 고려 시대 요동으로 상상되었던 부여에 대한 공간적 인식도 조선 전기에는 『동국여지승람』 이래 영변이나 성천 등 한반도 안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인식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결국 부여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흐름이 조선 전기 부여사의 배제로까지 나아가게 만든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처럼 기자로부터 마한-신라-조선으로 이어지는 전통론적 역사관에 밀려 한때는 잊혀진 부여인의 역사가 조선 후기에 와서 북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몇몇 지식인의 노력과 더불어 다시 관심이 환기되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계기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와 허목의 『동사』를 통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8세기 후반~19세기 초 무렵이 되면 이종휘의 『동사』, 한치윤·한진서의 『해동역사·지리고』를 통해 부여사는 역사 체계와 전통의 계보 속에서 확고히 자리하게 되었다. 곧,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부여인의 역사는 근대 ‘민족 역사’의 전면에서 서술될 준비를 시작했다고 평할 수 있다.<sup>67</sup>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부여에 대한 기억은 이후 한말의 국가적 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엄혹한 시절에 접어들면서 신채호라는 걸출한 민족주의 역사가를 만났

65 池内宏, 1932, 앞의 글(1951, 앞의 책에 재수록).

66 이정빈, 2021, 앞의 글, 402쪽.

67 이후 ‘부여족’ 개념의 형성 및 민족사 담론으로의 수용 과정은 이준성, 2025, 앞의 글의 논의를 참고 바람.

고, 고조선과 함께 민족사의 출발점에 자리하게 되었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지배층·지식인들의 역사 인식 속에서 부여의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재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 고대 부여인의 역사 또한 각 시대의 정치적·이념적 조건 속에서 선택적으로 호출되고 배제되었던 기억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고려·조선 시기 부여사 인식의 변천을 관찰해보면, 부여의 역사는 한 사회가 스스로의 기원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과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하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통시대 역사 인식에서 부여는 때로는 고구려의 기원으로, 때로는 고조선 계승의 주체로, 또 때로는 역사 서술에서 배제된 이름으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부여사 인식의 부침은 역사 인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이념에 따라 끊임없이 변용되고 재구성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살펴본 바, 고려시대 부여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고구려 계승 의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 후기의 부여사 인식을 관찰하면, 부여의 역사는 단군조선과 연결되며 고려인의 전사 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나아가 고려 전·중기에 운용된 봉작제와 공원제에서 ‘부여’라는 명칭이 활용되었다는 점은 부여가 단순한 신화적 기원이 아니라 고려 왕조의 국가적 연원과 결부된 역사적 상징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시대 부여사 인식은 ‘고구려 기원지’라는 제한된 이해를 넘어 고려의 역사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부여에 대한 역사 인식은 뚜렷한 단절을 맞이한다. 부여는 기자-마한-신라로 이어지는 정통 계보에서 배제되며 공적 역사 서술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 조선 전기 관찬 사서에서 부여에 대한 언급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인식 구조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17세

기 이후 국난을 거치며 조선 지식인 사회 내부에서 북방사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부여사 역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조정의 『동사보유』를 시작으로 북부여·동부여가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되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와 허목의 『동사(東事)』에 이르면 부여는 독립된 역사 주체로서 체계적으로 서술된다. 또한 이 시점에 이르러 고려 후기 역사 인식의 일부가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계승·변용되었던 사정도 관찰된다.

18세기 후반 이후 이종휘의 『동사(東史)』와 한치윤·한진서의 『해동역사·지리고』에 이르러 부여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이 시기의 부여사 서술은 단군 정통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 정사와 각종 문헌에 대한 치밀한 고증을 통해 부여의 역사와 강역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곧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성립을 준비하는 지적 토양이 되었으며, 신채호의 ‘부여주족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근대 이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부여사의 위상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문제의식과 학문적 축적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19,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부여 편 I -17세기 이전 사료]』,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0a,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부여 편 II -18세기 사료]』,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0b,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부여 편 III -19세기 이후 사료]』,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1a,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부여 편 IV -문집(상)]』,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1b,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부여 편 IV -문집(하)]』,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2a,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부여 편 V -관찬사서]』,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2b, 『한국고대사 자료집 [고조선·부여 편 VI -지리지·교과서류]』, 동북아역사재단.

### 단행본

- 김기덕, 1998, 『고려시대 봉작제 연구』, 청년사.
- 박선미 편, 2024, 『우리 문헌 속 고조선을 읽다』, 동북아역사재단.
- 송호정, 2015,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 \_\_\_\_\_, 2024, 『역사 인식으로 읽는 고조선사』, 경인문화사.
- 이종휘 저, 김영심·정재훈 역주, 2004, 『동사』, 소명출판.
- 한영우, 1981,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1989, 『조선 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 \_\_\_\_\_, 2024, 『한국사학사연구』, 민속원.



## 논문

- 권창혁, 2018, 「일본 학계의 부여사 인식과 滿鮮史」, 『韓國史學報』 72.
- 金光洙, 1988,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歷史教育』 43.
- 김남중, 2024, 「문헌에 나타난 고조선과 부여의 관계」, 『동양학』 96.
- \_\_\_\_\_, 2025, 「고조선-삼국 중간 시기에 대한 후대의 인식」, 『고조선단군학』 57.
- 김성환, 2001, 「高麗後期の 檀君認識」, 『고조선단군학』 4.
- \_\_\_\_\_, 2003,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古朝鮮 認識」, 『고조선단군학』 8.
- \_\_\_\_\_, 2006, 「朝鮮時代 檀君墓에 관한 認識」, 『韓國史學史學報』 13.
- \_\_\_\_\_, 2008, 「조선 후기의 檀君墓 인식」, 『고조선단군학』 19.
- 南東信, 1994, 「동국사략·삼국사절요」,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비.
- 도면희, 2008, 「한국 근대 역사학의 창출과 통사 체계의 확립」, 『역사와 현실』 70.
- 리지린, 1963, 「제5장. 부여에 대한 고찰」,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 박경철, 1992, 「扶餘史展開에 關한 再認識試論」, 『백산학보』 40.
- 박인호, 2009, 「『제왕운기』에 나타난 이승휴의 역사지리인식」, 『조선사연구』 18.
- \_\_\_\_\_, 2011,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18.
- 배우성, 2011, 「조선후기 역사학과 신채호, 그리고 21세기」, 『한국학논집』 43.
- 송호정, 2011, 「실학자들의 역사지리관과 고조선 한사군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2.
- 오영찬, 2012, 「조선 후기 고대사 연구와 漢四郡」, 『역사와 담론』 64.
- 이기동, 2005, 「韓國民族史에서 본 夫餘」, 『한국고대사연구』 37.
- 李丙燾, 1976, 「夫餘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이승호, 2020, 「부여사 연구의 흐름과 이해」, 『동북공정 이후 현황과 동북아 역사문 제』,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4, 「북한 학계의 부여사 연구 동향과 과제」, 『고조선단군학』 53.
- 이정빈, 2021, 「역사교과서의 국수적 한국사 체계와 역사정책 성찰」, 『역사와 교육』 33.
- 이준성, 2025, 「'부여족' 개념 형성과 민족사 서술」, 『역사와 현실』 136.
- 全德在, 1994, 「동국세년가·동국통감」,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비.
- \_\_\_\_\_, 2023, 「『帝王韻紀』를 통해 본 李承休의 고대사 인식」, 『동양학』 91.
- \_\_\_\_\_, 2024, 「權擘의 『應製詩註』 撰述과 古代史 認識」, 『한국문화』 106.
- \_\_\_\_\_, 2024, 「권제의 『동국세년가』 편찬과 고대사 인식」, 『전북사학』 71.

- 정재훈, 2015, 「李種徽의 『東史』와 사학사적 의의」, 『실학시대의 역사학 연구』, 사람의 무늬.
- 조경철, 2023, 「국호와 건국별망연대로 살펴본 『제왕운기』의 역사계승의식」, 『민족문화』 64.
- 조성산, 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古代史 연구와 中華主義의 변용」, 『역사학보』 202.
- 조원진, 2015,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한국사학사학보』 32.
- \_\_\_\_\_, 2023, 「조선시대 기자조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 『東北亞歷史論叢』 813.
- \_\_\_\_\_, 2024, 「조선시대 지리지에 나타난 기자조선 인식」 『동양학』 96.
- 황향주, 2023a, 「고려 전·중기 왕실 봉작제의 도입과 변용」, 『역사와 현실』 127.
- \_\_\_\_\_, 2023b, 「고려 전·중기 왕실의 친족구조와 왕실 封爵制 운영원리」, 『중앙사론』 58.
- 池內宏, 1932, 「夫餘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3(1951, 『滿鮮史研究』 上世 第一冊, 吉川弘文館).

## 고려·조선 시기 부여와 부여사 인식

이승호

이 글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지배층·지식인들의 역사 인식 속에서 부여의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재구성되었는지 검토한 것이다.

먼저, 고려시대 부여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고구려 계승 의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형성되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오면, 부여의 역사는 단군조선과 연결되며 고려인의 전사(前史) 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편입된다. 나아가 고려 전·중기에 운용된 봉작제와 공원제에서 ‘부여(扶餘)’라는 명칭이 활용되었다는 점은, 부여가 단순한 신화적 기원이 아니라 고려 왕조의 국가적 연원과 결부된 역사적 상징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부여에 대한 역사 인식은 뚜렷한 단절을 맞이한다. 부여는 기자-마한-신라로 이어지는 정통 계보에서 배제되며 공적 역사 서술의 바깥으로 밀려났다. 조선 전기 관찬 사서에서 부여에 대한 언급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인식 구조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국난을 거치며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북방사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부여의 역사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조정(趙挺)의 『동사보유(東史補遺)』를 시작으로 북부여·동부여가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되고, 한백겸(韓百謙)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와 허목(許穆)의 『동사(東事)』에 이르면 부여는 독립된 역사 주체로서 체계적으로 서술되었다. 이후 18세기에는 이종휘(李鍾徽)의 『동사(東史)』와 한치윤(韓致淵)·한진서(韓鎭書)의 『해동역사(海東繹史)·지리고(地理考)』를 중심으로 중국 정사와 각종 문헌에 대한 치밀한 고증을 통해 부여의 역사와 강역이 적극적으로 탐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곧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성립을 준비하는 지적 토양이 되었으며, 신채호의 ‘부여주족론’으로 이어진다.

**주제어:** 부여, 부여사, 부여 인식, 제왕운기, 삼국유사, 동사보유(東史補遺),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동사(東事)

## ABSTRACT

# Perceptions of Buyeo and Its History in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Lee Seungho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history of Buyeo was remembered and reconstituted within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ruling elites and intellectuals of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In the Goryeo period, perceptions of Buyeo were generally formed in close conjunction with an awareness of succession from Goguryeo. By the late Goryeo period, however, the history of Buyeo came to be linked with Dangun Joseon and was a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Goryeo people's framework of prehistory. Moreover, the use of the name "Buyeo" within the systems of investiture titles (bongjakje 封爵制) and palace institutions (gungwonje 宮院制) operated during the early and middle Goryeo periods indicates that Buyeo functioned not merely as a mythological origin, but as a historical symbol closely associated with the dynastic and state origins of the Goryeo kingdom.

In contrast, the Joseon period witnessed a clear rupture in historical perceptions of Buyeo. Buyeo was excluded from the orthodox genealogical lineage that traced legitimacy from Gija through Mahan to Silla, and was consequently pushed outside the sphere of official historical narratives. The extremely limited references to Buyeo in state-compiled histories of the early Joseon period clearly reflect this structure of perception.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onward, however, following successive national crises, Joseon intellectual circles began to reassess northern history, and the history of Buyeo once again attracted scholarly attention. Beginning with Jo Jeong's *Dongsa Boyu*, North Buyeo and East Buyeo were established as separate entries, and by the time of Han Baek-gyeom's *Dongguk Jiriji* and Heo Mok's *Dongsa*, Buyeo was systematically described as an independent historical subject. In the eighteenth century, works such as Yi Jong-hwi's *Dongsa* and Han Chi-yun and Han Jin-seo's *Haedong Yeoksa · Jirigo* further advanced this trend by actively exploring Buyeo's history and territorial extent through meticulous textual criticism of Chinese dynastic histories and a wide range of other sources. These scholarly endeavors provided the intellectual groundwork for the emergence of modern nationalist historiography, culminating in Shin Chae-ho's theory of the "Buyeo-centered ethnic lineage."

**Keywords:** Buyeo, History of Buyeo, Perceptions of Buyeo, Jewang Ungi, Samguk Yusa, Dongsa Boyu, Dongguk Jiriji, Dongs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길림 서남부와 요동 북부 접경권 초기 철기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그 의미

오대양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전담 조교수

- I. 머리말
- II. 길림 서남부권의 지역성과 단계성
- III. 요동 북부권의 지역성과 단계성
- IV. 초기 철기시대로의 전환기적 양상 재고(再考)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길림 서남부와 요동 북부 접경권(이하 길남-요북지역)의 고고학 조사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이 지역 일대에서는 착점문(戳點文)과 누공문(鏤孔文) 등이 장식된 두(豆)와 관(罐), 호(壺) 등의 재지계 토기류와 함께 중원계 철기류가 공반되는 초기 철기시대로의 전환기적 요소가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관련 유적은 주로 동요하(東遼河)와 휘발하(輝發河) 상류의 접경지역 및 요하(遼河) 중류역의 지류하천인 청하(淸河)와 구하(寇河), 시하(柴河) 유역권 등에 분포한다.

이 중 동요하와 휘발하 유역 등 길림 서남부와와 접경지대는 지역색이 뚜렷한 보산문화의 강한 영향 속에서 중원계 물질문화가 복합되는 사가가유형 및 서황산둔유형 등 초기 철기시대문화가 연속된다.<sup>1</sup> 또한 동요하 중류역에 속하는 요동 북부의 동부 산간지대는 재지의 이도하자문화 속에 정가와자유형과 보산문화 등 주변지역의 문화소가 공존하는 양천유형이 특징적이다.<sup>2</sup>

최근 중국 현지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보산문화(길남형)와 양천유

---

\* 투고: 2026년 1월 14일, 심사 완료: 2026년 2월 9일, 게재 확정: 2026년 2월 13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5-기획연구-13)로 수행된 연구임.

1 金旭東, 1992, 「東遼河流域의若干種古文化遺存」, 『考古』 4, 347~356쪽; 金旭東·王國範·周傳波, 1988, 「1985年吉林東豐縣考古調查」, 『考古』 7, 584~591쪽; 이종수, 2013, 「송화강유역 초기철기문화의 변천과 부여문화 성립과정 고찰」, 『동양학』 53.

2 鐵嶺市博物館, 1992, 「遼北東部地區幾處青銅時代遺址調查」, 『遼寧省博物館館刊』 1, 31~43쪽; 辛岩, 1995,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初探」, 『遼海文物學刊』 1, 49~53쪽; 徐志國, 2009,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再探」, 『遼寧省博物館館刊』, 遼海出版社, 26~34쪽; 김미경, 2009,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토기문화권 설정에 관한 재검토」, 『호서고고학』 21; 배현준, 2024, 「서차구 유적의 토기문화와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85.

형(요북형)을 동일한 문화현상으로 간주하며, 길남-요북지역 일대 초기 철기시대로의 전환기적 양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sup>3</sup> 하지만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문화는 단일한 문화 집단으로 환원되기보다는, 공통된 물질문화 요소를 공유하면서도 각 하천 유역과 생활권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변이를 보이는 복합 문화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 바 있다.<sup>4</sup> 논지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문화는 착인(戳印)계 점열문 토기, 나팔형 고권족 두형토기, 장경고복호(鼓腹壺) 및 이중구연 토기류 등 공통된 물질문화 요소를 공유하면서도, 주요 하천과 생활권에 따라 상이한 지역 전통을 보이는 복합문화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보산문화는 휘발하 상류와 동요하 상류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된 유물 조합과 묘제 양상을 보이며, 석립자유형과 사가가유형, 나아가 요동 북부의 양천유형과 일정한 연속성과 친연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형성 배경과 전개 과정, 주변 문화와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단일한 문화 집단이나 동일한 문화명으로 일괄 통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길남-요북지역 청동기시대 후기문화의 전개상은 동요하·휘발하·요하 수계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 요소가 선택·수용·재구성된 결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길남-요북지역 초기 철기시대문화로의 전환기적 양상과 지역사적 의미를 순차적으로 점검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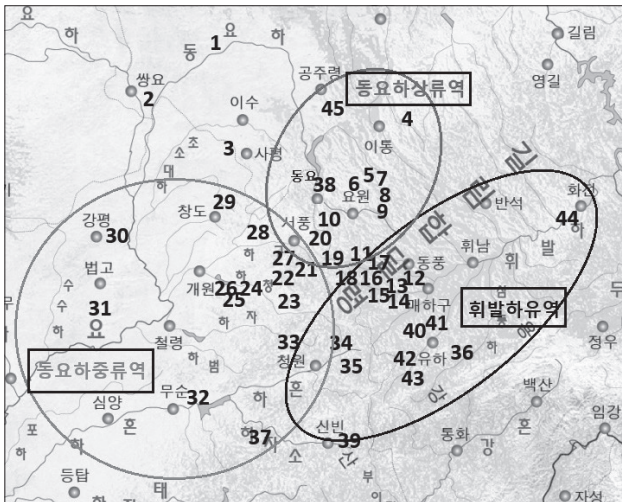
3 圖旭剛, 2014, 「遼北地區青銅時代考古遺存初步分析」,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李萌·方啟, 2022, 「寶山文化與涼泉類型再探」, 『沈陽考古文集』 8, 科學出版社 등 참조.

4 오대양, 2026, 「길림 서남부와 요동 북부 접경권 청동기시대 후기문화의 지역성-소위 보산문화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84.

## II. 길림 서남부권의 지역성과 단계성

최근까지 길림성의 서남지역에서 보산문화와 관련된 문화요소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의 길림성 동풍현과 매하구시 및 유하현 일대(이상 휘발하 상류권) 그리고 요원시와 동요현 일대(동요하 상류권)가 해당되지만, 최근의 조사 성과에 의하면 요동 북부권과의 접경지역(철령시·사평시·쌍요시 일대)을 넘어 길림성 공주령시와 구대시 및 반석현과 화전현 및 요령성의 무순시 신빈현 일대까지 문화의 영향범위가 확대되고 있다.<sup>5</sup>

주요 유적에는 동풍현 일대의 보산(寶山)유적과 태양(太陽), 용두산(龍頭山), 대가산(大架山), 석대망(石大望), 해룡현(海龍縣, 현 매하구시) 대만발수(大灣梓樹)유적 및 동료현(東遼縣) 남산모(南山帽), 후대파(候大坡), 유가가복산(劉



1. 大金山 2. 仕家東蛇 3. 機場·山門水庫
4. 吉興屯 5. 石砬子 6. 龍首山·南山墓
7. 永康 8. 南大望 9. 射家街 10. 庄家·候大坡
11. 劉家街 12. 石大望·狼東山
13. 寶山·太陽·趙秋溝 14. 瓦房頂·邱家溝
15. 大砬子溝·龍頭山 16. 五台山·三里
17. 十大望·大架山·長樂·烈士 18. 小四平鄉
19. 南崗 20. 永淳·西大崗 21. 肇興·成福·三門
22. 月芽山 23. 姜家溝 24. 八杖溝
25. 團山子 26. 李家台 27. 東溝 28. 福壽村
29. 西台山 30. 老山頭 31. 大孤家
32. 祝家溝 33. 楊木林 34. 大林子
35. 下堡 36. 大良屯 37. 趙家 38. 黎明
39. 龍頭山 40. 野豬溝 41. 太平溝
42. 大沙灘 43. 通溝 44. 西荒山 45. 後石

그림 1 길림-요북지역 보산문화 관련 유적 분포도(李萌·方啟, 2022, 도1 수정 후 가필)

5 李萌·方啟, 2022, 앞의 글 참조.

家街北山), 요원시(遼源市) 용수산(龍首山)과 포대산(砲臺山) 등 생활유적이 대표적이다. 이 중 동풍 대가산과 석대망유적 및 요원 용수산유적 등 소수의 유적에 대해서만 시굴조사가 이뤄졌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지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sup>6</sup>

이상의 생활유적 주변에서는 동풍 보산 동산과 동요 여명 및 요원 용수산 남대묘 등으로 대표되는 대개석묘 및 석관묘유적이 보고된 바 있는데, 현재 이러한 분묘와 생활유적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약보고된 내용과 출토 유물의 상관성 등에서 추론해볼 때 양자 간의 문화적 상관성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1. 보산문화의 성격과 단계성 검토

보산문화는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 철기시대문화로의 전환기 길남-요북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고학 문화로 평가받는다.<sup>7</sup> 이 시기 요하 평원지역에서는 정가와자유형이 주변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시점이며, 요하 중류역(요동 북부)에서는 이도하자문화와 신성자유형이, 길림 중서부지역에서는 서단산문화가 점차 쇠락기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보산문화의 성격은 요서지역에서 확장된 정가와자유형의 파급 속에 재지적 속성을 보다 강화하면서, 토착 전통과 외래 요소가 융합된 독자적 문화상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관련 유적은 소수의 생활유적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인돌(석봉/대개석묘)과 석관묘제에 속한다. 특히 기원전 6세기 이전 관련 문화의 이른 시기 유적들은 대부분 무덤유구에 속하는데, 주요 유적으로는 휘발하 상류권의 동풍 랑동산(狼東山)과 조추구(趙秋溝), 용두산(龍頭山) 등의 대개

6 唐洪源·周傳波, 1994, 「東豐縣石大望遺址考古調查」, 『遼海文物學刊』 1; 遼源市文物管理所, 1997, 「吉林遼源市龍首山遺址的調查」, 『考古』 2; 遼源市文物管理所, 2005, 「遼源龍山區發現一批古代器物」, 『文物』 2.

7 金旭東, 1992, 앞의 글; 이종수, 2013, 앞의 글 참조.

석묘가 주요하게 거론된다. 이 외에 동요하 상류권의 동요현 여명과 요원시 남대묘, 고고촌 복산 및 공주령 후석 등 기존 진쉬동(金東, 1992)이 사가가 유형 전기(기원전 8~5세기)의 석관묘제로 설정하였던 유적들은 무덤의 기본적인 구조와 장속 및 부장품 구성 등이 동풍지역 내 대개석묘와 거의 유사한 점에서 범보산 문화계에 속하는 동일한 문화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까지 보산문화의 권역에서 조사된 묘제상은 크게 석관묘와 고인돌로 대분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고인돌의 형식은 개석식(대개석묘)과 탁자식(석봉)으로 구분되며, 각 형식별로 유행한 지역에 차이가 있다. 먼저 휘발하 상류권의 길림성 매하구시와 유하현 등에는 탁자식을 중심으로 소량의 개석식이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또한 동요하의 최상류 권역인 길림성 요원시와 동요현 일대에는 개석식 고인돌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구조의 석관묘가 소량 확인되는 반면 동요하와 접경하는 휘발하 상류권역의 동풍현 경내에는 개석식을 중심으로 소량의 탁자식과 석관묘가 공존한다.<sup>8</sup> 이처럼 보산문화의 권역 내에는 주요 묘제 형식의 분포상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동요하 상류권역에는 개석식과 소량의 석관묘가, 휘발하 권역에는 탁자식을 중심으로 소량의 개석식과 석관묘가 공존하는 양상에 주목된다.

한편, 지역 내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휘발하 최상류권에 속하는 매하구시와 유하현 일대에 집중되며 개석식이 중심을 이루는 동요하 상류권의 동풍현 일대에서는 개석식과 탁자식의 공존상이 주목된다. 아쉬운 점은 지역 내 고인돌의 부장품이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양자의 상관성과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탁자식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는 유하 대사탄과 야저구 등에서 후술할 사가가(보산)유형기의 토기군과 철촉 등이 부장된 석관묘제의 잔해가 보고된 바 있어,<sup>9</sup> 이러한 묘제상이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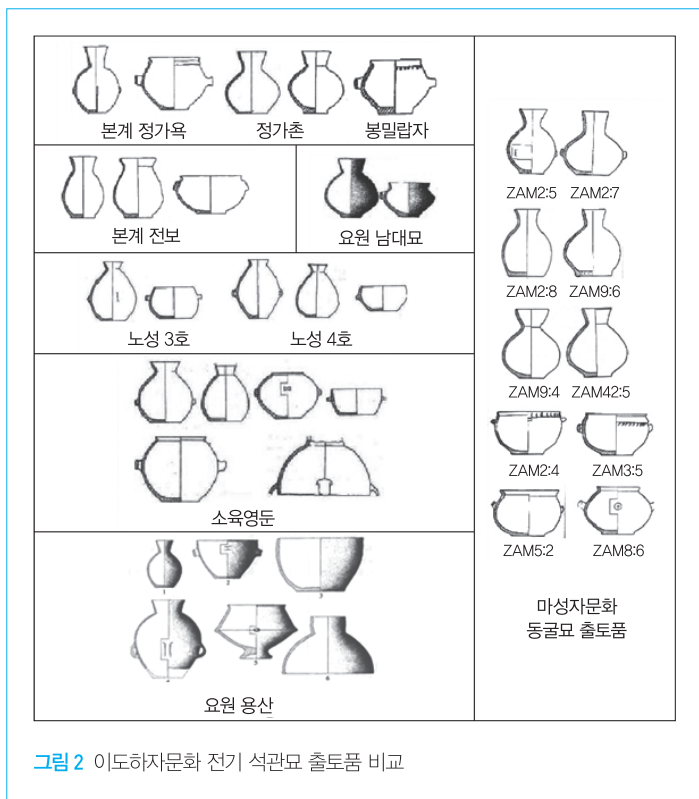
8 오대양, 2019, 「요동과 길림, 서북한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전개양상 검토」, 『백산학보』 115 참조.

9 하문식, 1999, 『고조선지역의 고인돌 연구』, 백산, 90~94쪽 참조.

존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보산문화의 중심 권역 내에서 확인되는 개석식은 동시기 요하 중류역이나 한반도지역에 분포한 것들과 구조 및 장속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특히 고인돌의 상징성을 가지는 묘실 상부의 대형 덮개돌이 다소 축약되거나 혹은 여러 개의 판석재로 구성된 점, 그리고 다인 다차장의 화장습속 등은 당지의 지역성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지는데 이는 결국 지역 내 고인돌문화가 유입될 당시 재지성 강한 석관묘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가장 빠른 시간성을 보이는 석관묘제는 요원 용수산의 남대묘유적이다. 무덤의 구조는 할석재를 2~3층가량 쌓고, 그 위에 소형 판석재 4장을 덮





은 구조이다. 부장품은 속령(束嶺)의 장경호와 쌍이관(雙耳罐)의 조합이 특징적인데, 이중 쌍이관은 동시기성을 보이는 이도하자문화와 서단산문화의 석관묘 출토품과 동류이다. 그런데 공반된 장경호의 시간성은 마성자문화 후기까지 확장되어 부연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토기류는 마성자문화 후기의 동굴무덤인 장가보유적의 2호묘와 8·9호묘 등에서 역시 유사한 속성의 쌍이관과 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요하 중류역의 본계 정가옥과 봉밀랍자 및 신빈 노성, 서풍 소옥영둔 등의 이른 시기 석관묘에서도 동일한 토기 조합이 확인된다. 아울러 이들의 묘실 구조 또한 모두 할석식 석관 상부에 소석판 여러 개를 덮어놓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화적 친밀도가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이도하자문화계 석관묘로 인정되는 요하 중류역의 석관묘제는 당지의 선행문화인 마성자문화에 연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서단산문화 역시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요하 상류역을 거쳐 제2송화강 유역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그런데 남대묘가 위치한 요원 용수산은 동요하의 최상류역에 입지하여, 이도하자문화와 서단산문화의 중간 거점지가 된다. 또한 이곳은 이도하자문화기 요하 중류역의 최북단에 입지한 서풍 소옥영둔 석관묘<sup>11</sup> 및 휘발하 상류역에서 가장 빠른 시간성의 석관묘제인 동풍 랑동산유적과도 상호 인접하여, 이도하자문화와 서단산문화가 연결되는 석관묘문화의 중간 거점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동풍 랑동산에서 발굴된 석관묘제의 구조와

10 오강원, 2008, 『서단산문화와 길림 지역의 청동기문화』, 학연문화사; 이종수, 2008, 「서단산문화 석관묘의 특징과 기원에 대하여」, 『선사와 고대』 28; 백종오·오대양, 2015, 「마성자문화 동굴묘의 형식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학』 40; 오대양, 2017, 「요동지역 석관묘문화의 특징과 전개양상 검토」, 『한국사학보』 66 등 참조.

11 『文物』 2005년-2기(遼源市文物管理所, 2005, 앞의 글)에 수록된 요원 용수산 유적의 1992년도 조사내용 중에는 용산구의 안보촌 곡가구 후산 아래의 파괴된 무덤구역에서 확보된 일련의 유물군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문화내용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하는 제3문화층의 유물 구성이 서풍 소옥영둔 석관묘의 조합과 매우 유사하다.

장속 특징이다. 랑동산에서 발굴된 4기의 석관묘는 모두 깊고 넓게 판 기암상의 토광 내부에 다량의 할석재와 잘 다듬어진 판석재를 혼용하여 석관을 둔, 소위 석광형의 구조여서,<sup>12</sup> 할석식 석관묘의 전형적 구조인 남대묘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내 가장 빠른 시간성의 대개석묘로 평가되는 여명3호의 구조와 동일하다. 여명3호에 비해 한 단계 늦은 시간성을 보이는 여명 1·2호(기원전 8~7세기)의 경우 묘실 상부의 개석부가 잔존하지 않아 명확한 구조를 알 수 없지만, 랑동산의 1~4호와 유사하게 소석판 몇 개를 덮어놓은 구조로 추정되는 점에서 사실상 이러한 구조(석광형)의 무덤들은 이 지역의 특징적인 개석식 고인돌의 변이형으로 이해한다.

한편, 전형적인 할석식 석관인 남대묘의 장식(葬式)은 1인 1차장(양신굴지장)에 속하며, 묘실 상부에 1장의 대판석을 덮개돌로 둔 여명3호(개석식)는 2인 이상이 2차 합장된 화장묘에 속하는데, 랑동산에서 확인된 4기의 묘실은 단인 1차장(3호묘), 2차 화장(1호묘), 2인과 3인 이상이 합장된 화장묘(2·4호)로 밝혀져, 남대묘와 여명3호묘의 장속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휘발하와 동요하 상류권역을 포괄하는 길림 서남부지역에서 특징적인 소위 대개석묘는 묘실의 구조와 부장품 구성에서, 동시기 인접한 요하 중류역의 개석식 고인돌, 특히 신성자유형단계의 양상과도 닮아 있어 상호 연관성이 인정된다.<sup>13</sup>

이러한 개석식 고인돌의 출현기적 현상은 당지의 석관묘문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데, 요하 중류역의 경우 가장 빠른 시간성을 보이는 본계 신성자유형의 양상이 이도하자문화기 석관묘의 구조나 부장품 구성과 닮아 있는 점, 나아가 이도하자문화와 신성자유형 모두 당지의 마성자문화에서 연속된 토착

12 華玉冰은 이러한 종류의 무덤들이 전형적인 할석식 석관묘의 구조에서 벗어난 개석 석관묘로 분류하면서, 이 역시 이 지역 개석묘(개석식 고인돌)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석관묘제와 구분하였다. 이에 랑동산과 남대묘 및 여명3호묘 등을 대상하여 요북지역 개석식 고인돌에서 파생된 지역형으로써 남대묘유형을 제안한다(華玉冰, 2011, 앞의 글, 220~228쪽). 하지만 남대묘유형은 이도하자문화기 전형적인 석관묘의 구조와 장속 및 부장성을 보이기 때문에 개석식 고인돌의 범주에 넣기 어렵다.

13 華玉冰, 2011, 앞의 책, 200~220쪽.

계 묘제라는 점 등이 그러하다. 길림 서남부지역 역시 가장 이른 시간성의 남대묘와 여명3호묘의 구조 및 부장성이 닮아 있으며 이 또한 마성자문화의 후기요소가 농후한 점에서 양자의 문화적 친밀도가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양자는 묘실 내 피장자의 장식이 차이가 있는데, 이도하자나 남대묘유적과 같이 이른 시기의 석관묘에서는 주로 단인 양신장계열의 장속이 보편적인 점에서, 여명3호에서 보이는 2인 이상의 다차 합장되는 화장묘는 휘발하 상류 지역에서 지역화된 특성으로 이해된다. 인접한 랑동산에서 확인되는 단인장과 다인 다차 합장 및 화장 풍속의 공존상은 이러한 지역성(단인·다차 화장 등)이 발현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보산문화는 기원전 10~9세기 무렵 요하 중류역에서 확장된 마성자문화의 후기요소에 당지의 지역성이 가미되어 파생된 개석식 고인돌문화의 한 부분(지역형)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보산문화의 형성과 발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초기는 보산문화가 형성되기 직전의 과도적 양상을 보여준다. 요하 중류역에서 확장된 전형적인 할석형 석관 및 단인 1차장 및 내부 부장성 등에서 이도하자문화 초기의 석관묘와 동시기성을 보인다.<sup>14</sup> 하요하 유역의 고대산문

〈표 1〉 보산문화의 시·공성과 단계성 비교

| 편년/단계성   |          | 동요하 상류                     |             | 휘발하 상류                                               |             | 휘발하 중하류   |
|----------|----------|----------------------------|-------------|------------------------------------------------------|-------------|-----------|
|          |          | 무덤류                        | 생활류         | 무덤류                                                  | 생활류         |           |
| 기원전 10c  | 조기 (1단계) | 요원 남대묘(석관묘)                | 요원 용수산, 포대산 | —                                                    | 동풍 보산       | 서단산문화     |
| 기원전 9~7c | 전기 (2단계) | 동요 여명3호(개석Ⅲ), 1~2호(석관+개석Ⅲ) |             | 동풍 랑동산 (석관+개석Ⅲ)                                      |             |           |
| 기원전 6~5c | 중기 (3단계) | 요원 고고촌, 공주령 후석(개석Ⅲ)        |             | 동풍 조추구(개석Ⅱ), 용두산(개석Ⅲ)                                |             |           |
| 기원전 4~2c | 후기 (4단계) | 사가가유형                      |             | 사가가(보산)유형                                            |             | 서향산둔식 유적군 |
|          |          | 요원 고려영, 고려분(개석Ⅲ)           | 동요 완보산      | 삼리(개석Ⅱ), 동산·대양(개석Ⅱ) 매하구 함수(탁), 유하 대사탄(탁), 야저구(탁/개석Ⅱ) | 동풍 석대망, 대가산 |           |

14 오대양, 2017, 앞의 글 참조.

화에 영향을 받은 포대산<sup>1)</sup>기문화(金旭東, 1992)의 쇠락과 맞물려 요하 중류역의 석관묘문화가 서풍 등지를 거쳐 동요하 상류역에 확산된 것으로 이해된다.

2단계 전기는 보산문화의 형성기로 볼 수 있다. 여명과 랑동산유적 등에서 개석식의 특성을 가진 한 장의 거석재(뿔개돌)와 넓고 깊은 석광형의 묘실구조 그리고 다인·다차 화장이라는 재지계 매장풍습이 결합된다. 이후 중기의 시작점인 기원전 6세기부터는 보산문화의 발전기로 볼 수 있다. 중기부터 후기까지 보산문화의 중심묘제가 되는 개석식의 구조는 크게 토광형(개석Ⅱ식)과 할석형(개석Ⅲ식)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15)</sup> 이들 중 발굴을 통해 부장성과 장속 특징이 알려진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체로 다인·다차·화장 등이 보편적이며, 실내 화장이 이뤄진 것과 외부에서 화장한 후 옮겨진 사례가 모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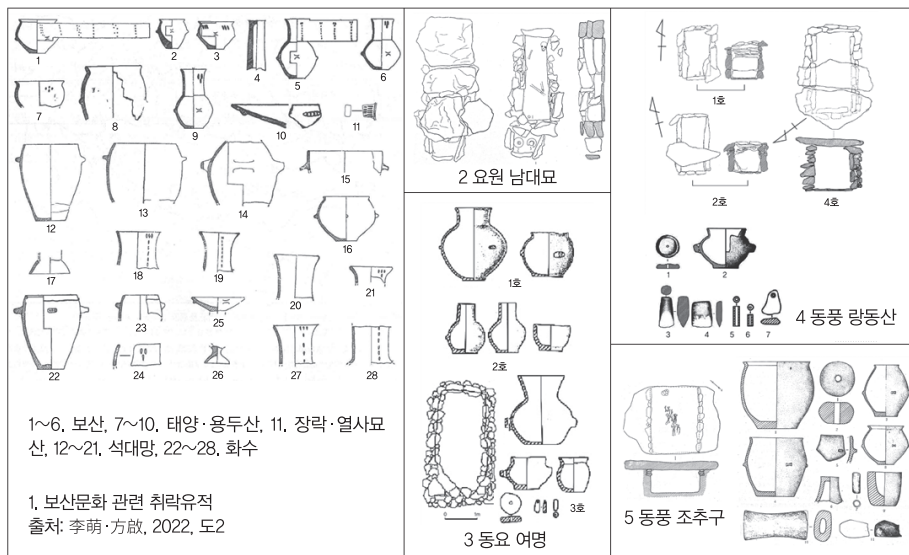


그림3 보산문화 관련 유적 출토유물

15 오대양, 2023,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성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82 참조.

된다.<sup>16</sup>

또한 부장품의 구성은 대부분 토기류 중심에 소량의 석기나 청동기가 포함 되는데, 토기류는 소형의 명기(明器)류에 속하는 것들과 파손품의 형태로 잔존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완형의 것으로서 호와 관, 발 등과 함께 대각이 짧게 달린 관식두(罐式豆)나 나팔형으로 짧게 뻗어 나가는 짧은 대각부 잔편도 확인되어 당시 주변지역에서 보편적인 두형토기 역시 부장품의 주요 구성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묘실 내 부장된 이러한 두형토기의 기형과 대각부의 형태 변화는 중기와 후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산문화 후기 양상, 즉 사가가유형기의 문화상과 지역성을 살피는 부분에서 함께 검토하겠다.

## 2. 사가가유형기의 특징과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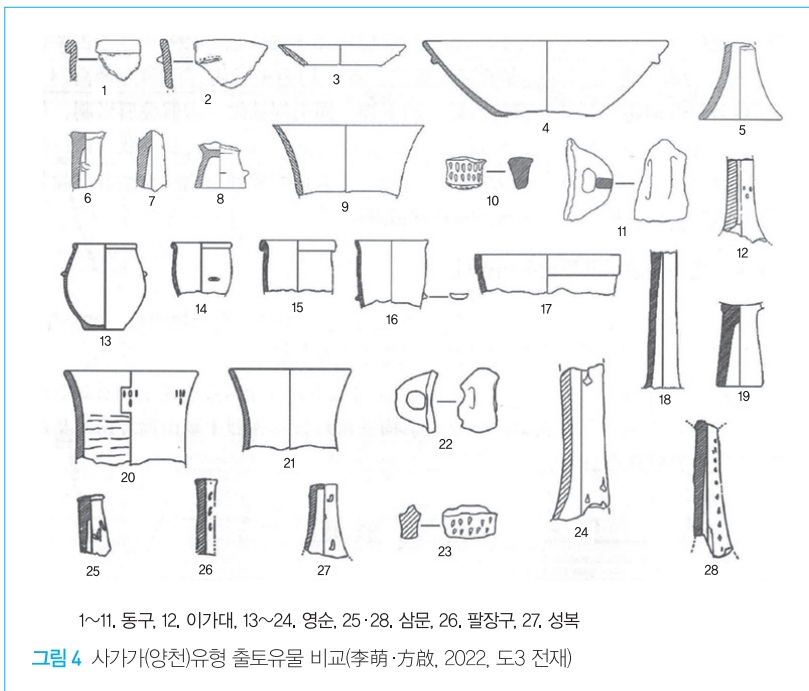
사가가유형은 석립자유형과 함께 1992년 처음 확인된 동요하 상류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이다.<sup>17</sup> 진쉬동의 최초 보고 당시 이 문화는 서주 말에서 서한 초까지의 시간성을 가지면서, 정(鼎)과 실족근력(實足根鬲), 착인문의 나팔형 고병두(高丙豆), 장경 고복호, 이중구연의 통형관(筒形罐) 등을 표지로 하여, 인접한 석립자유형이나 대개석묘 중심의 보산문화와 구분되는, 석관묘제 중심의 동요하 최상류역의 물질문화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의 흐름은 이들이 서로 교착 분포하면서 문화상이 대체로 유사한 점 등에서, 기원전 4~3세기 무렵 전국 연문화의 영향 속에 파생된 보산문화의 후기 형식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sup>18</sup>

16 하문식, 1998, 「中國 吉林地域 고인돌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27호, 41~45쪽 참조.

17 金旭東, 1992, 앞의 글, 347~356쪽 참조.

18 비록 이 시기의 문화상이 동요하 중상류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서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오강원, 2011·2019, 앞의 글), 이 글에서는 기 연구에서의 논

최근 현지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sup>19</sup> 이 시기 토기의 주요 특징은 대체로 관과 호류가 중심이지만, 여기에 중원지역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는 두형토기와 발, 완 등이 공반된다. 이 중 기고가 비교적 높은 대형관에는 동체의 어깨 부분에 횡방향의 반이(鑿耳)가 달려 있는 홀순 혹은 이중구연의 통형관류가 많은 편이다. 또한 중소형의 관과 발류는 동체 중부에 삼각형태의 소형 손잡이(小鑿耳·盲耳)가 특징적이며, 구연부가 살짝 꺾인 형태가 다수이다.



점들과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동요하 상류권의 관련 유적만 대상으로 하여 사가가 유형으로 재설정했으며, 요하 중류권은 사가가(양천)유형으로, 휘발하 상류권은 사가가(보산)유형으로 구분하였음을 밝혀둔다(오대양, 2026, 앞의 글 참조).

19 圖旭剛, 2014, 앞의 글; 李萌·方啟, 2022, 앞의 글 등.

경부에 착인계열의 점열문이 장식된 장경호와 관류는 보산문화의 중후기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이해된다. 기고가 높은 대형호의 경우 고복한 동체부에 횡교이가 부착되지만 중소형의 것은 발이나 완류와 마찬가지로 소형 손잡이가 조합된다. 이러한 장경호류는 주로 갈색과 홍갈색 계통이 많은 점에서 재지계 토기의 연속성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중에는 회색이나 회흑색의 마연토기계열도 확인되는 점에서 이 시기 주변지역에서 부장토기로 유행되는 흑색 마연토기(장경호류)에 영향을 받아 장경화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동시기 요하 중하류역에서는 정가와자유형의 확장 속에 점토대토기와 흑색 마연장경호의 공반상이 증가한다.<sup>20</sup> 서북한지역 역시 유사한 문화상이 기원전 5~4세기 무렵부터 확인되는 점<sup>21</sup>에서, 길림 서남부지역의 상황 역시 유사한 시간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변지역과의 차이점은 이러한 장경호류의 구연부에 착인되는 점열문과 동체 중부에 부착되는 소형 파수부 등 장식적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장경호류의 경부 외측에 열을 지어 장식되는 이러한 점열문은 동일 문화권 내 전형토기인 중소형의 치구관(동산유적)과 직구 단경호(이수상둔유적)의 동체부 상단에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문양 특징은 아래에서 다룰 요하 중상류역의 사가가(양천)유형계 토기에서도 자주 확인되는데, 사가가(보산)유형과의 차별점은 문양이 시문되는 주요 기종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보산문화계 토기에서는 이러한 점열문이 장경호나 중소형 관의 경부 외측에 주로 시문되지만, 사가가(양천)유형에서는 주로 장각화된 두형토기의 대각부에 삼각형 혹은 ‘工’자형과 ‘L’자형 등으로 열을 지어 착인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장각부에 점열문이 시문된 두형토기는 사가가유형기를 대표하는 주요 기종 중 하나이지만 보산문화와 관련된 이른 시기의 유적군에서는 사실상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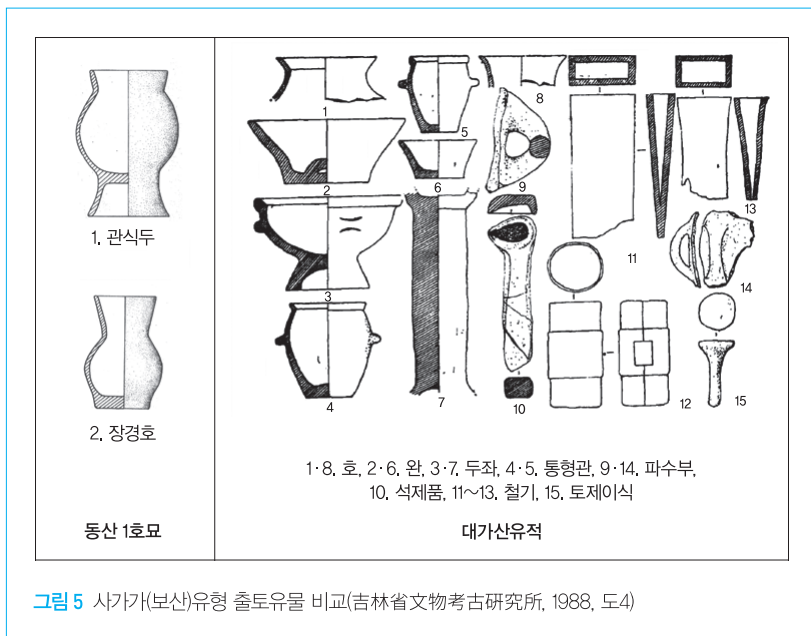
20 오강원, 2020, 「중국 동북 지역 점토대토기의 연대와 전개」, 『영남고고학』 87 참조.

21 오대양, 2015, 「북한지역 석관묘유적의 특징과 성격」, 『한국사학보』 61, 370~380쪽 참조.



토 사례가 없다. 다만 보산문화의 중·후기 유적군인 동풍 보산촌과 대양유적의 생활문화층에서 수습된 파손품의 사례를 보면, 사가가유형기의 특징적인 천복반상(淺腹盤狀)에 직통형 고병두의 형태를 보이며 몸체에 삼각형 맹이(盲耳)가 부착되어 있으나 대각부의 착인 점열문은 누락된 두형토기가 있어 관련 유적의 대략적인 시간범위를 알 수 있다.

아울러 동일유적군에 속하는 보산 동산1호묘에서는 나팔형의 대각부가 짧게 부속된 관식두가 출토된 바 있지만 이 역시 대각부에 시문된 문양적 요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관식두 역시 요하 중류역의 이른 시기 유적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기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각부의 형태와 시문방식의 차이는 길남-요북지역에서 지역화된 두형토기의 시간성을 반영할 것으로 본다. 진취동(金旭東, 1991; 1992)은 동풍지역 일대 개석식 고인돌(대개석묘)의 성격을 춘추~전국시기의 무덤(제1종)과 전국 말~서한 전기의 무덤(제2종) 등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정리한 바 있다.





특히 보산 동산1호(제2종)에서 출토된 관식두의 시간성을 대가산 상층문화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여 서한 전기 무렵의 문화현상으로 파악한 점에 주목된다. 하지만 진취동이 제시한 대가산 상층문화의 관련 토기 중 두형토기로 보고된 것은 대각이 짧게 달린 완(碗)식두 1점과 장각화된 대각부편 1점에 불과하다. 보고자들이 이러한 완식두의 단각형태에 주목하여 동산1호 출토품과 동일계통으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미보고된 자료 중에 관련 유물이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동산 1호에서 출토된 관식두는 단각의 나팔형 대각부가 특징적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 인접한 조추구 2호와 유하 통구 및 야저구유적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휘발하 상류지역 보산문화의 지역성이 반영된 재지계 토기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아래에서 상술할 사가가(양천)유형 단계의 서풍 영순유적의 2호 판석묘에서도 유사한 기종이 확인되어, 이들의 대략적인 시간성과 함께 당시 두 지역 간의 문화적 친밀도가 한층 강화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동기시대 후기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던 단각의 나팔형 두형토기가 기원전 4~3세기 무렵 중원계 고병두의 영향을 받아 병부가 장각화되면서 점차 광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기원전 3세기 무렵 두형토기와 공반되는 재지계 물질문화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이긴 하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각종 두형토기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공통성을 보이며, 특히 동요하 중상류역에서는 직병형, 사직병형, 나팔상대각형 등 당시 주변지역에서 사용된 거의 모든 형식이 확인되어 두형토기 제작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sup>22</sup>

이러한 현상은 전국 연과 서한계 철제 농구류가 점차 보급되던 기원전 4~3세기의 사회적 배경과 밀접히 관련된다. 동요하 최상류지역은 지리적으로

22 관련 내용은 오강원, 2000, 「중만지역의 초기철기문화-포자연문화의 성립과 전개 양상」, 『전환기의 고고학Ⅲ』, 한국상고사학회 24회 학술대회 자료집과 오강원, 2019, 「초기 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장각두형토기의 출현과 확산 배경」, 『철기시대 토기와 토기문화, 변동』,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67~69쪽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전국 연의 동방 진출 거점에 해당되어 철기의 수용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지역이었고, 그 결과 중원계 고병두의 영향을 받은 두형토기가 사가가유형을 거점으로 그 주변 지역에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이해된다.<sup>23</sup> 그럼에도 사가가유형의 양대 거점지역 중 하나인 휘발하 유역에서는 여전히 보산문화의 지역성, 즉 묘제와 장속 및 주요 부장품 구성에서의 전통적인 방식이 강하게 유지된 점을 주목한다. 관련하여 사가가(보산)유형의 서황산둔식 유적군과 사가가(양천)유형의 서풍 영순식유적군 등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먼저 휘발하 중하류역의 서황산둔식 유적군은 동북아 초기 철기시대의 문화변동을 규명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평가된다. 관련하여 중국 학계에서는 보산문화 세력의 확산과 융합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황어런 주산M1·구대 관마산·장백 간구자 등과 함께 주산M1식 유적군에 포함시키고 있다.<sup>24</sup> 소위 주산M1식 유적군이란 두만강 유역의 유정동문화 후기 요소가 제2송화강·압록강 중류로 확산되는 과정 중 생성되는데, 서황산둔 유적은 이러한 주산M1식 계통의 가장 후행 단계로, 보산문화와 서단산문화를 매개로 동북아 초기 철기시대 문화 교류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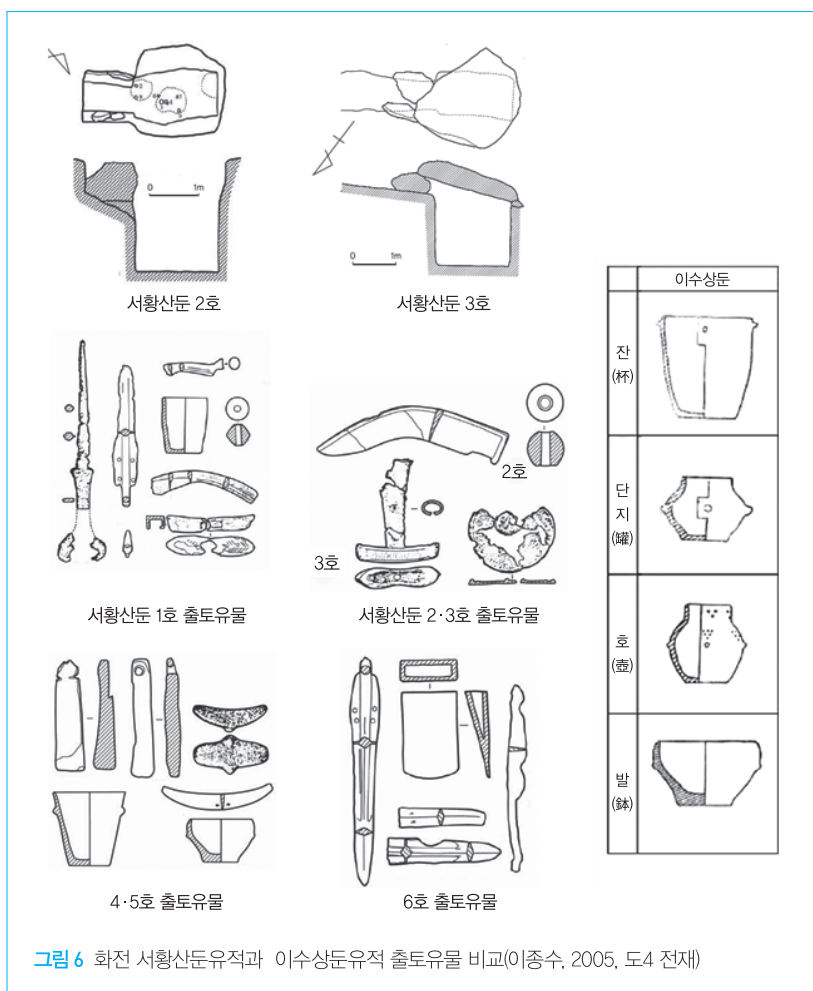
반면 국내에서는 서황산둔유적이 서단산문화의 후기유적에 속하는 핵심 유적 중 하나이거나,<sup>25</sup> 길림지역에 분포한 개석식 고인돌<sup>26</sup> 및 다뉴경 부장묘의

23 오강원, 2007, 「서단산문화와 길림 중부 지역 초기 철기문화 제 요형 간의 문화적 상관 관계」, 『진단학보』 104; 2011, 「기원전 3세기 요녕 지역의 연나라 유물 공반 유적의 제 유형과 연문화와의 관계」, 『한국상고사학보』 71; 2018a, 「기원전 3~1세기 중국 동북과 서북한 지역의 물질문화와 연·진·한」, 『원사시대의 사회문화변동』; 2018b, 「청동기~철기시대 동북아시아 제 지역의 물질문화와 상호작용권의 형성과 변형」, 『역사 여명기의 종족 정체성, 진인진 등 참조.

24 金旭東·趙俊傑·呂斌, 2011, 「黃魚圈珠山M1類型遺存再辨析」, 『邊疆考古研究』 10; 趙俊傑·馬健·金旭東, 2016, 「吉林長白縣幹溝子墓地的文化性質與相關問題」, 『考古』 5 등 참조.

25 정상석, 1997, 「서단산문화와 초기부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하문식, 1998, 앞의 글.



성격<sup>27</sup>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소략하게 다뤄져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이종수(2005)와 오강원(2007), 조진선(2014),<sup>28</sup> 박선미(2025)<sup>29</sup> 등의 연구가 추

27 이청규, 1999, 「동북아시아의 다뉴경과 그 부장묘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40.

28 조진선, 2014,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의 위치 변동」, 『동양학』 56,

가되면서 관련 문화의 특수성과 형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알려진 관련 유적은 화진 서황산둔유적을 전형으로 한총지와 반석 상둔과 하도산둔 및 고려항산유적 등 총 5곳이 알려져 있다. 모두 휘발하 중하류역의 나지막한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특징을 보이며, 동시기 휘발하 상류권의 개석식과 마찬가지로 깊고 넓은 토광 내에 묘실과 묘도를 조성하고 상부에 1장의 덮개돌 혹은 2~3장의 거석재를 덮어 높은 기암 굴착(토광)형의 개석식 고인돌에 속한다.<sup>30</sup> 이 유적들의 연대는 서황산둔유적에서 출토된 세형동검과 철기 등을 토대로, 대략 기원전 4~3세기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31</sup>

가장 큰 특징은 재지계 묘제인 개석식에 기반하지만, 후기 고조선의 상징적 위세품인 세형동검과 다뉴조문경, 그리고 전국계 철제도구와 같은 중원계 물질문화가 공반되는 점, 동시에 초원계 요소로 분류되는 쌍조형 검병이 함께 부장되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 집단이 복합적인 문화적 교섭 속에 놓여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서황산둔식 유적군은 단순히 토착 전통의 연속만이 아니라, 중원·초원·재지 요소가 융합된 다층적 성격을 지닌 묘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내 철기문화의 수용 및 그 관리 주체의 성격, 나아가 주변 집단에 대한 통제방식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묘제의 유지방식은 전통적인 개석식의 틀을 고수하면서도, 부장품 구성에서는 철기와 청동기 및 장신구를 통해 권력과 위계가 표상되었다. 이는 새로운 물질문화의 수용 주체가 기존 재지 세력의 연속선상에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들이 외래 요소를 적극적으로 변용하여 정치적·사회적 권위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했음을

109쪽.

29 박선미, 2025, 「복합사회의 경계 엘리트와 헤테라키(Heterarchy) 탐색-길림 서황산둔 유적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고학』 24-2.

30 이종수, 2005, 「松花江流域 初期鐵器時代 文化 研究 II」, 『선사와 고대』 22.

31 吉林省文物工作隊 等, 1982,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創刊號; 오강원, 2007, 앞의 글 참조.

보여준다. 따라서 서황산둔식 유적군은 단순히 보산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파생된 지역유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기문화의 초기 수용을 둘러싼 지배층의 통제력과 사회 조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된다.

또한 편년적으로 보면, 서황산둔식 유적군이 속한 휘발하 중하류지역은 기원전 6~4세기까지는 서단산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나,<sup>32</sup> 기원전 4~3세기 무렵부터는 사가가(보산)유형의 지역 거점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국 연의 동방 진출과 철기 보급이 맞물리며, 동요하 중상류역에 기반한 사가가유형은 중원계 고병두 양식을 적극 수용하고, 다양한 두형토기를 제작·확산시키는 중심지로 자리 잡은 반면, 휘발하 중하류의 서황산둔식 집단은 보산문화의 후기 거점으로서, 전통적 묘제 양식 위에 철기문화와 외래 청동기를 결합하면서 지역성이 한층 강화된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해나간다.

이는 곧 철기문화의 보급과 함께 이루어진 지역 세력의 재편, 즉 문헌상에 표현된 후기 고조선과 진번 등 이 지역 예맥계 정치체들의 거점지 이동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초기 부여문화의 형성 과정과도 직결될 수 있다. 서황산둔식 유적군은 부여 출현 이전, 예맥과 진번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 내 소규모 정치체들이 외래 문물을 수용하고 이를 권력화하는 과정을 실증하는 사례로서, 한국사 초기 국가들의 발생 과정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결국 서황산둔식 유적군은 재지적 전통과 외래적 요소가 교차·융합된 다층적 문화현상으로서, 동북아 초기 국가의 형성 과정 속에서 길림 서남부지역의 초기 정치체가 담당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위치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고고학적 문화현상을 넘어 당시 지역 사회의 정치적 역학, 지배층의 권위 구축 방식, 그리고 광역 문화권 내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동시기 요하 중하류역의 상황과 비교해가면서,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보겠다.

32 董學增, 1983, 「試論吉林地區西團山文化」, 『考古學報』 4.

### Ⅲ. 요동 북부권의 지역성과 단계성

요동 북부권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은 인접한 요하 중류권과 유사하게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형토기류가 공반되는 각종 다양한 형식의 석관묘제와 고인돌 등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비파형동검문화의 후반부 이 지역은 재지의 이도하자문화(석관묘제)와 신성자유형(개석식)의 후퇴 속에 요하 하류권의 정가와자유형(토광/목곽묘)계 문화소인 점토대토기와 흑색 마연 장경호류의 점진적인 확장세가 특징적이다.

이후 기원전 4~3세기 무렵부터는 전국계 주조철기 및 두형토기에 영향을 받아 장각화된 고병두와 토착계의 두형토기(단각두)의 공존 그리고 각종 다양한 형태의 파수부 조합이 특징적인 사가가(양천)유형으로 전환된다. 최근 현지 연구자들이 이 지역 초기 철기시대로의 전환기적 양상으로 제시하는 소위 양천유형 혹은 보산문화 2기<sup>33</sup>에 상당하며, 기존 국내 관련 연구자들이 분석한 양천문화나 정가와자문화<sup>34</sup> 및 사가가유형<sup>35</sup> 등과 유사한 속성을 보인다.

#### 1. 동요하 중하류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단계성과 특수성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 지역 초기 철기시대 문화로의 전환기적 양상은 전국계 주조철기의 수용 과정에서 함께 도입된 실심형의 장각두형 토기와 타날문 장경호, 그리고 재지적 속성이 강한 나팔형 단각두의 연속성과 심발형의 이중구연(혹은 점토대)토기 및 흑색마연된 장경호류의 공존상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문화소가 확인되는 주요 유적으로는 서풍현의 동구(東溝)와

33 圖旭剛, 2014, 앞의 글; 李萌·方啟, 2022, 앞의 글 참조.

34 박순발, 2004, 「요녕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과정」, 『금강고고』 창간호; 김미경, 2009,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토기문화권 설정에 관한 재검토」, 『호서고고학』 21.

35 오강원, 2011, 앞의 글.

영순(永淳)유적 및 조흥촌(肇興村), 성복(成福), 삼문전자(三門錢子), 양천진(涼泉鎭) 강가구(薑家溝), 개원시 이가태촌(李家台村), 팔장구(八杖溝), 단산자(團山子) 및 창도현(昌圖縣) 서태산(西台山)유적 등이 대표적이다.<sup>36</sup>

그런데 최근의 조사 성과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양상이 철령시 일대를 넘어 요령성의 동부권역인 무순시 일대와 서북부의 법고현과 강평현 일대 그리고 길림성 사평시와 쌍요시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문화의 분포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앞서 검토한 보산문화의 연구동향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결국 요동 동북부의 양천유형과 길림 서남지역 중심의 보산문화를 동일한 문화현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에서는 문화의 분포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앞선 논의에 연속하여 기원전 4~3세기 무렵 길남-요북지역의 물질문화를 전국계 문화소가 특징적인 사가가유형기로 파악하면서, 요하의 상류권에 속하는 동요하의 중하류지역은 사가가(양천)유형권으로, 동요하의 상류지역은 사가가유형권, 휘발하 상류지역은 사가가(보산)유형에, 휘발하 중하류지역은 사가가(보산)유형에서 확장된 서황산둔식 유적군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연속한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고병두의 장각두형 토기는 전국 연문화의 영향성이 인정되므로, 비록 철기제품과 조합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문화소가 확인되는 유적의 상한 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4세기 전반을 넘을 수 없다. 또한 동요하유역권에서 이러한 전국계 고병두의 제작 풍습이 기원전 2세기 무렵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쇠퇴상을 보이는 점, 동시에 지역 내 서풍 서차구유형의 출현과 함께 전한식 철제 도구 및 무기류가 조합되는 양상 등에서 그 하한연대는 기원전 2세기 후반으로 한다.<sup>37</sup> 따라서 기존에 양천유형으로 인식되어온 이 글의 사

36 周向永·許超, 2010, 『鐵嶺的考古與歷史』, 遼海出版社, 1~3쪽; 周向永, 2022, 『鐵嶺地區青銅時代考古遺址調查』, 遼寧人民出版社, 3~5쪽 참조.

37 오강원, 2011, 앞의 글, 15~16쪽 참조.

가가(양천)유형의 시간성 역시 기원전 4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로 조정한다.

사가가(양천)유형의 시·공간성을 이와 같이 재규정한다면, 앞서 검토한 길림 서남부지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4세기 이전, 이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상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사가가(양천)유형의 형성 배경으로는 토착계 문화(석관묘, 고인돌)의 영향력이 우세하였던 공간역에 요하 하류권의 정가와자유형이 파급되면서 각종 토광묘제와 발달된 청동유물군 및 점토대토기류의 확산이 1차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연속하여 전국 연문화의 영향 속에 두형토기의 장각화 및 철제 유물군이 2차적으로 복합되면서 재지계 토기들의 지역성 또한 한층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요동동북지역의 청동기~초기 철기시대문화의 전개와 문화상 역시 전체 4단계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먼저 1단계 초기에는 구하 상류인 서풍 소옥영둔에서 이도하자문화기의 석관묘제가 확인된다. 묘실의 구조 및 출토유물 상에서 마성자문화 후기의 요소가 농후하여 지역 내 이도하자문화의 출현기적 현상으로 이해된다.<sup>38</sup> 다음 2단계 전기에는 서풍 성신촌과 동구유적 등에서 비파형동검과 선형동부, 동모, 미승리형토기, 쌍이관 등이 공반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조합되는 석관묘유적이 조사된다.

또한 이 시기의 개원 건재촌에서는 소량의 탁자식과 함께 30여 기 이상의 개석식이 조사되었다. 이 중 발굴된 3기의 개석식 주변에서는 후기 양식의 미승리형토기 1점과 청동도자가 수습되어 유적이 조성된 중심연대가 기원전 7세기 무렵으로 편년된다.<sup>39</sup> 하지만 인접한 동요하 최상류역의 여명유적에서는 전기에 속하는 개석식이 보고된 바 있어 건재촌유적의 형성 시점 역시 조금 상향될

38 백종오·오대양, 2015, 「마성자문화 동굴묘의 형식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학』 40.

39 오대양, 2019, 「요동과 길림, 서북한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전개양상 검토」, 『백산학보』 115.



〈표 2〉 요동 북부지역의 청동기 ~ 초기 철기시대 문화의 단계성

| 편년/단계성   |          | 요동 중부지역        |                                                |                                   | 요동 북부지역                                                  | 길림 서남부지역 |           |                   |                  |  |        |  |  |
|----------|----------|----------------|------------------------------------------------|-----------------------------------|----------------------------------------------------------|----------|-----------|-------------------|------------------|--|--------|--|--|
|          |          | 요하 하류          | 요하 중류                                          |                                   | 동요하 중상류                                                  | 동요하 상류   | 휘발하 상류    | 중하류               |                  |  |        |  |  |
|          |          |                | 태자하 중하류                                        | 태자하 상류~ 혼하                        |                                                          |          |           |                   | 청하, 자하, 구하       |  |        |  |  |
| 기원전 10c  | 조기 (1단계) | -              | 이도하자문화<br>신성자유형(개석식)<br>하협심유형<br>(하협심/관문: 탁자식) |                                   | 이도하자문화<br>(소육영둔: 석관묘)<br>건재촌유형<br>(건재촌: 탁+개석Ⅲ, 조피문: 탁자식) |          |           |                   | 보산문화             |  | 서단산 문화 |  |  |
| 기원전 9~7c | 전기 (2단계) |                |                                                |                                   |                                                          |          |           |                   |                  |  |        |  |  |
| 기원전 6~5c | 중기 (3단계) |                |                                                |                                   |                                                          |          |           |                   |                  |  |        |  |  |
| 기원전 4~2c | 후기 (4단계) | 정가<br>와자<br>유형 | 상보촌<br>유형<br>(석관묘)                             | 산용유형<br>(탁+개석Ⅲ)<br>용두산유형<br>(개석Ⅱ) | 사가가(양천)유형<br>서풍 동구·영순(개석Ⅰ)<br>서차구유형                      |          | 사가가<br>유형 | 사가가<br>(보산)<br>유형 | 서향산<br>둔식<br>유적군 |  |        |  |  |

가능성도 존재한다. 건재촌이 자리한 구하유역은 기원전 10세기 무렵 마성자문화의 후기요소가 태자하유역에서 동요하 상류를 거쳐 제2송화강유역으로 확장되는 길목에 해당되는 점, 나아가 건재촌 내에 30여 기 이상의 개석식이 산줄기를 따라 분포 구역을 달리하여 조성된 점 등에서 보다 이른 시기의 무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3단계(중기)의 상황은 요하 중류역 일대로 정가와자유형계 문화소가 파급되는 일대 변혁기로 볼 수 있다. 전기 후반까지 이도하자문화기의 전형적인 석관묘제들이 철령과 서풍, 개원 및 청원 등지에서 폭넓게 조성되던 상황과 대비되어, 중기 전반부터는 석관묘의 조성례가 현격하게 줄어든다. 이 시기 발굴 조사가 이뤄진 석관묘는 철령 수아둔이 유일한데 출토 유물 상에서 보산문화 중기의 양상과 유사해진다.

이 시기 탁자식은 개원 조피둔과 위당구 및 청원 랑두구와 대변구 등에서 확인된다. 이 중 건재촌 인근에 자리한 조피둔과 위당구에서는 역시 탁자식과 개석식의 공존상이 확인되는데, 이들 역시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못하여 정확한 편

년은 어렵다. 다만 약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석식의 구조는 건재촌과 유사하며, 탁자식은 요하 중류역의 무순 관문과 하협심, 산용유적 등과 유사하여 대체로 기원전 6~3세기 무렵의 시간성을 부여할 수 있다.<sup>40</sup>

이상 전기 후반에서 중기의 가장 큰 변화상은 아마도 정가와자유형의 파급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 재지계의 주력 묘제였던 석관묘와 개석식의 조성례가 점차 감소하면서, 요동 남부지역의 특징적인 탁자식이 증가하는 한편, 당시 요하 중하류역에 거점하였던 정가와자유형계 문화소가 점진적인 확장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인접한 동요하와 휘발하 상류지역의 상황과도 매우 유사한데, 이는 결국, 비파형동검문화 전반기까지 요동지역에서 유사한 문화상(석관묘와 고인돌, 미송리형토기문화 등)을 공유하였던 토착집단들이 요서지역에서 점차 확장되어오던 정가와자유형계 청동기문화의 파급(기원전 6~5세기)에 대응하여, 탁자식 고인돌로 대표되는 제례의식(조상묘 숭배 → 제단화 → 시조신앙<sup>41</sup>)의 공유를 통해 상호 간의 유대감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전통(정체성)을 강화시킨 흔적으로 해석된다.

마지막 후기(기원전 4~2세기)의 문화상은 초기 철기시대로의 전환기적 양상을 보이는 사가가(양천)유형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견무(1994)<sup>42</sup>에 의해 한국학계에 처음 소개된 이래, 요령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시·공성과 문화성격 속에서 함께 다뤄지거나<sup>43</sup> 재지의 미송리형토기와 점토대토기문화의

40 이상 훈하 유역 고인돌유적의 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오대양의 2020년 저서(『북한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조선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300~330쪽)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41 오대양, 2022, 「금강하류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제사·의례적 성격 고찰」, 『한국고고학보』 125, 750~760쪽; 2023,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성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82, 90~100쪽; 2024, 「先 부여문화의 성격과 정체성 검토」, 『동양학』 96, 60~75쪽 참조.

42 이견무, 1994, 「한국식 동검문화의 성격: 성립배경에 대하여」, 『동아시아의 청동기문화』, 문화재연구소.

43 박순발, 2004, 앞의 글; 박진일, 2007, 앞의 글 참조.

차이 및 성격문제<sup>44</sup> 혹은 전국 연문화의 확장 속에서 파생된 재지계 중심의 철기문묘써 사가가유형을 강조하는 시각 등으로 확장된다.<sup>45</sup> 이 글에서는 앞선 논의에 연속하여 이 시기의 물질문화를 사가가(양천)유형으로 재규정하여 논의를 연속하고자 한다.

## 2. 사가가(양천)유형의 특징과 성격 재고(再考)

사가가(양천)유형기는 중원계 철기문화의 파급에서 비롯된 재지문화의 2차 변형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요하 상류권의 문화상은 전계서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다뤄진 만큼, 이 글에서는 최근 현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서풍 동구와 영순 유적의 발굴 자료를 통해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동구유적에서는 저장시설 25개와 회구(고랑) 4줄(G1-4) 및 17기의 석관묘, 1기 토광묘, 3기의 개석묘가 조사되었다. 이 중 취락 관련 유구에서는 점토대토기 및 흑색마연 장경호, 장각과 단각의 두형토기 공존 및 석제 검파두식과 환수철도, 철착, 철확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두형토기의 기형 및 대각부 형태, 문양 구성과 손잡이 형태 등은 동요하 상류역 사가가유형기의 특징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철제 도구의 제작방식 등은 전국 중기에서 서한 초의 시간성이 부여되었다.<sup>46</sup>

이 외에 개석묘로 보고된 3기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1기의 구조를 보면 길이 316cm, 너비 219cm, 두께 12.3cm 정도의 대형 판석재를 덮개돌로 삼고, 토광내 동, 남, 서벽은 각 1장씩의 대석판을 세우고, 북벽은 석재 쌓기를 하였다. 내부에서는 인골이나 부장품이 확인되지 않아 장식과 문화성격을 추론하

44 송호정, 2007, 앞의 글; 김미경, 2006·2009, 앞의 글 참조.

45 오강원, 2011, 앞의 글 참조.

46 李龍彬·趙少軍, 2011, 「遼寧西豐縣東溝遺址及墓葬發掘簡報」, 『考古』 5, 31~50쪽.

기 어렵다. 이러한 개석묘 3기는 유적 서남쪽 1km 지점에 위치한 저평한 구릉의 서로 연결한 3개의 봉우리 정상부에 각각 1기씩 배치되는데, 이러한 유구 배치와 입지상은 앞서 검토한 사가가(보산)유형기 서향산둔식 유적군의 입지상과 동일하여 이 시기 재지문화의 연속성과 상호 관계를 짐작케 한다.

다음 영순유적 남구릉의 생활구역에서 주거지 1기와 저장시설 4개, 북구릉의 무덤구역에서는 토광묘 8기와 석판묘 3기가 발굴되었다. 먼저 주거지에서는 점토대토기와 장경호, 재지적 속성이 뚜렷한 치구관과 단경호, 발 및 장각과 단각의 나팔상 두형토기 등 동구유적의 생활유구와 동일하다.<sup>47</sup> 이 외에 석판묘 3기의 구조 역시 동구유적 3기의 개석묘와 동일하다. 특이한 점은 묘실 바닥부에 고르게 깔아놓은 토기편 위로 여러 개체의 유골군집이 대략 8~12cm 두께로 확인된 것이다. 모두 화장된 유골로서 묘실 내 화장 흔적이 없어 외부에서 화장한 후 인골만 추려서 합장된 다인·다차 화장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석제 침상기가 확보된 점에서 청동단검이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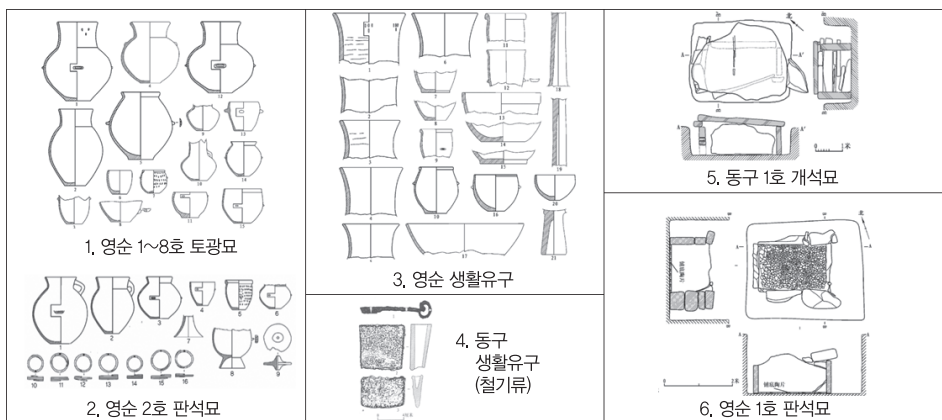


그림 7 서풍 영순식 유적군 무덤 구조 및 출토유물

47 李龍彬·徐政·梁振品, 2011, 「遼寧西豐縣永淳遺址及墓地的發掘」, 『考古』 3.

높는데 그와 공반된 유물로 토제 동물조형과 금이환 및 소형의 청동장식류 등 유물 구성에서 볼 때 역시 서황산둔유적과 유사한 시간성을 가진다. 이 외에 토광묘 8기는 모두 평면 장방형이며, 대부분 장구의 흔적은 없고 인골편 일부가 잔존할 뿐이다. 출토된 유물은 대체로 판석묘 출토품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상의 동구와 영순유적에서 확인된 개석묘와 판석묘 및 토광묘 등의 묘제상은 동시기 주변지역에서 보편적이던 개석식과 탁자식 고인돌의 구조 및 휘발하 유역의 특징적인 장속과 부장성, 특히 토광형 묘실과 다인·다차 화장이라는 재지적 속성에 중원계 철제도구와 초원계적 요소의 공반상 등이 다층적으로 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사가가(보산)유형기 개석식 고인돌문화의 지역형인 서황산둔식 유적군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동요하 중상류역의 서풍 영순식 유적군을 새로이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순식 유적군의 주요 특징은 개석식 고인돌과 토광묘제가 공존하며, 부장품 구성은 재지계인 치구관과 사직 단경호 및 단각의 나팔상 두(豆) 그리고 정가와자계 요소로서 점토대토기류와 흑색마연호의 공반상, 나아가 구대 관마산식 유적군의 수이호와 서란 황어권주산식 유적군의 꼭지형 파수부 발(鉢, 유정동문화 후기요소) 등이 특징적이다. 이 중 영순식 유적군만의 전형적 특징으로는 장경호와 치구관 및 두형토기의 장각부에 시문되는 착인계열의 점열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착인 점열문의 방식은 당시까지 주변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보산문화만의 고유한 수법인데, 이러한 장식 요소가 사가가유형기에 접어들어 외래계인 장경호(흑색마연)류나 고병두의 장각부에 시문되는 현상은 단순한 문화교류 이상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상황에서, 이 시기 점열문이 상징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추론하긴 어렵다. 하지만 주변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하고 패턴화된 문양 구성이 특정 기물에 집중적으로 장식되는 현상은 해당 집단의 자기표현 방식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이나 혹은 주술적 의미가 내포되었을 수 있다. 보산문화권 내 재지계 전형 토기는 치구관과 흘구연의 통형관 및 직구와 사직경의 단경호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토기류의 경부 외측으로 동일한 패턴의 점열문을 착인하는 방식은 중기 후반

부터 확인되는데,<sup>48</sup> 동시기 주변지역에서 선호되었던 점토대토기문화나 미송리  
형토기, 서단산형호와 같이 토기문화에 구현된 지역 정체성이 확립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착인 패턴이 확인되는 장경호류의 기형 변화와 마연방식은 정  
가와자유형의 부장용 토기로 선호되어온 흑색마연토기의 장경화 과정과 상당  
히 유사한데, 이러한 토기류가 토착계 모체에는 잘 부장되지 않는 점에서 관련  
요소의 외래적 속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외래적 속성이 부가된 제의용 토  
기에 집단 고유의 패턴을 장식하여 사용자의 개성(지역 전통)을 강조하는 방식은  
역시 의례용으로 특별 제작되었을, 외래적 속성이 부가된 고병두에 동일한 패턴  
의 문양을 장식하는 현상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는 결국 그것을 사용  
하였던 사람들 간에 통용·의식화되었던 사회·정치적 함의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층적 문화현상은 단순한 물질문화의 교류가 아니라, 해당  
지역 사회가 정치적 권위와 사회적 질서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선택·재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점열문이 시문된 장경호와 장각  
화된 두형토기의 공반, 그리고 다인 합장의 개석식과 제의적 성격이 강한 탁자  
식 고인돌의 복합적 매장은 재지적 전통과 외래적 요소가 동시에 작동한 상징체  
계로서, 당시 지역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편하고 상호 관계망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정된 지역 내의 문화적 적응  
을 넘어 당시 동북아시아의 광역적인 정치·문화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중심  
지로서의 자의식’을 선언하고 이를 지켜내고자 노력한 흔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은 곧 후기 고조선에서 초기 부여로 이어지는 사회적·정치적 전  
환 및 예맥 문화권 내에서의 주도권 경쟁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한다. 즉, 당시

---

48 이러한 편년안은 보산유적에서 측정된 절대 연대 측정치(기원전 6~5세기)에 근거  
하지만, 보산유적의 문화상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동풍 석대망유적 2호 주  
거지의 측정연대가 기원전 4~3세기의 보정연대를 보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편년안은 기원전 5~4세기(보산문화 중후반)를 중심연대로 볼 수 있다.

길남-요북지역에서 확인되는 서황산둔식과 영순식 유적군의 문화적 융합상은 기존 후기 고조선 사회의 정치와 문화적 네트워크에 포함되었던 예맥계 정치체의 사회적 기반과 직결되며, 이후 송화강 유역을 거점으로 전개되는 초기 부여 사회의 정치·문화적 정체성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물질문화와 의례적 전통은 기원전 1세기 전후 혼강 유역에서 나타나는 고구려 성립기의 묘제와 토기 양식, 제의 체계 속에서도 일정하게 계승·변용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결로서, 보산문화 후기의 전통 위에서 전개된 사가가유형기의 양대 거점지, 곧 휘발하의 서황산둔식 유적군과 동요하의 영순식 유적군은 단순한 지역적 변이양식을 넘어 집단적 제례와 다인 합장의 장송의례를 통해 토착세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전국계 철기문화의 확산을 통제 혹은 중계하며 광역적 교류망의 허브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이며 교차지대적인 성격은 이 지역 초기 정치체의 성장을 가능케 한 사회적·정치적 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초기 부여의 사회적 기반과 성립기 고구려 문화의 종족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 IV. 초기 철기시대로의 전환기적 양상 재고(再考)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길남-요북지역은 문헌에 기록된 후기 고조선과 진번 및 초기 부여 등 예맥계 초기 국가들의 접경지이면서, 각각의 중심권역에서 다소 벗어난 관계로 연구성과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 일대에는 한국사 여명기 초기 정치체들의 생동하는 역사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연속되는 문화 정체성의 확장 과정, 즉 소위 예맥문화권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는 데 좋은 대상이 된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이 지역 초기 철기시대로의 전환기적 양상, 즉 후기 고조선과 초기 부여 및 고구려 성립기의 문화 속에서 관찰되는 유사한 형태의 묘제

와 부장성을 검토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시론적이거나 고찰해보겠다. 먼저 이 글에서의 길남-요북지역은 요하와 휘발하 및 제2송화강 그리고 혼강과 압록강 중류역의 일부 구간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간역을 포함하며, 후기 고조선 사회와 중원계(연·진·한) 세력 및 초원계 문화 집단이 중첩적으로 교류한 공간이었음을 밝혀둔다. 물질문화상으로는 보산문화와 서단산문화, 정가와자유형 등이 교차·융합하며, 보산문화의 후기 양식인 사가가유형기 여러 지역 집단(서항산둔식·영순식·황어권주산식 유적군 등)의 다채로운 묘제상과 토기 체계가 공존하는 교차지대로 규정한다.

아울러 동시기 혼강과 압록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구조의 고인돌과 석관묘, 토광묘제 및 무기단식 적석묘의 공존상은 초기 철기시대 전환기 묘제의 복합성과 연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양상은 단순한 물질문화의 변천을 넘어, 이후 초기 부여와 고구려 성립기의 문화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다음 휘발하 상류역의 보산문화는 후기 청동기시대에서 초기 철기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핵심 문화로, 각종 석관묘제와 개석식·탁자식의 병존체계가 특징적이다. 이 지역에서 특징적인 점열문 장경호와 나팔형 단각두 및 다인·다차 화장 등의 재지적 속성은 중원계 철기문화가 도입되는 사가가유형기의 묘제상에 그대로 연속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당시의 광역적인 철기문화의 네트워크를 중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정치세력의 존재를 방증한다.

동요하 상류역의 사가가유형은 보산문화의 연속선상에서 전국계 철기 요소가 도입되며 성립하였다. 점토대토기, 나팔형 단각두, 치구관 등은 보산문화와 공통되지만, 실심형 장각두와 철제 도구의 출현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다. 이는 재지적 요소와 외래적 기술이 결합한 문화적 혼용지대의 역사상을 반영하며, 후기 고조선 사회의 혼란 속에서 표출된 예맥계 정치체 간의 주도권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의 시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면, 기원전 4~3세기 무렵, 휘발하에서 동요하 상류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재지적 성격의 보산문화가 전국



계 철기문화 요소를 수용하면서 사가가유형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물질문화적 전환을 넘어 철기 교역을 중계하는 지역 거점세력의 성장과 밀접히 관련된다. 즉, 사가가유형 집단은 단순 군장사회 이상의 정치적 권위와 조직력을 지닌 세력 집단으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후기 고조선 사회의 중심지가 서북한 지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길남-요북지역에서 광역적인 철기문화의 네트워크를 중계할 수 있는 재지(예맥)계 정치체로는 진번(眞番) 외에는 고려할 대상이 없다. 실제로 사료에 전하는 진번 관련 기록은 이러한 정치세력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sup>49</sup>

기원전 3세기 무렵, 후기 고조선의 정치적 동맹세력이었던 진번은 연나라의 압박을 받으며 거점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사가가유형의 성립 및 보산문화의 확산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데, 특히 이 시기 휘발하의 서황산둔식 유적군과 동요하의 영순식 유적군이 사가가유형기의 양대 거점세력으로 성장하는 점에 주목된다. 이 중 동요하 중상류에 거점한 영순식 유적군은 판석계 묘제(석판묘·고인돌)와 토광묘가 공존하며, 부장품은 장각화된 두형토기, 흑색마연 장경호, 착인 점열문 장식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토착 전통과 외래 요소가 결합된 결과이다.

사가가(양천)유형기의 다인 합장 및 화장 의례는 단순한 장송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집단적 위계질서와 권위의 표출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지배세력의 정통성을 제도화하는 기제로 기능하였다. 이들은 추후 중원 및 동호(오환)계 물질문화가 복합된 이주 무장세력과 연대하여 서풍 서차구유형(기원전 2세기)으로 전환되는데,<sup>50</sup> 이 시기 제2송화강 유역의 포자연유형(초기 부여)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면서 휘발하 유역의 거점세력(서황산둔식)과

49 박대재, 2017,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5; 조원진, 2021, 「고대 진번의 변천 연구」, 『선사와 고대』 66; 김기민, 2023,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영역변천과 진번의 이동」, 『한국사연구』 200.

50 이승호, 2024, 「부여 서차구 고분군 조영 집단과 부여」, 『사람』 91.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

한편, 사가가(보산)유형의 전개상에서 파생된 서황산둔식 유적군은 문화적 기반이 유사한 제2송화강 유역의 대해맹유형(기원전 3세기)<sup>51</sup>과 교류하며 휘발하 중상류역의 거점세력으로 성장해나간다. 이러한 서황산둔식 유적군의 주요 특징은 재지계인 다인·다차 합장의 화장묘(개석식)와 더불어 고조선계 청동기(세형동검/다뉴경), 중원계 철제도구와 초원계 장식 요소(쌍조형 검병/화수피)가 복합된 부장품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집단 내 위계와 권위가 제의적으로 제도화되었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지역 문화가 아니라 철기문화 확산의 거점 중계지이자 지역집단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구심점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향후 이들은 서차구-포자연유형의 연대화에 밀려 혼강 유역으로 거점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메커니즘은 전국 연의 동방경락에서 촉발된 후기 고조선 사회의 쇠퇴 및 부여와 초기 고구려로 대표되는 예맥계 신흥세력의 사회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본다.

특히 혼하 중상류역의 무순 산용과 신빈 용두산 및 혼강 유역의 환인 풍가보자와 망강루, 통화 만발발자, 압록강 중류역의 집안 오도령구문과 장백 간구자 유적 등은 이 시기(기원전 3~2세기)의 집단 이동과 권력의 재편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된다. 이러한 고고학 자료와 일부의 전승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후기 고조선 사회에서 부여와 초기 고구려에 이르는 정치적 계보가 묘제의 구조와 제사의 양식 속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혼하 중상류역에 속하는 산용과 용두산의 개석식은 적석이 부가된 석광형 묘제로의 변화상과 함께 철기문화의 초기 수용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석식의 소멸기적 현상은 동요하~휘발하 유역의 광범위한 지역군에 걸친 복합 묘제상과 병행되어 선고구려기(대개석 적석묘)에서 고구려 초기 묘제(무기단식 적석묘)로 연속되는 문화적 연속성의 일면을 보여준다.<sup>52</sup>

51 오강원, 2000, 앞의 글; 오강원, 2012,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출현과 형성 과정」, 『고구려발해연구』 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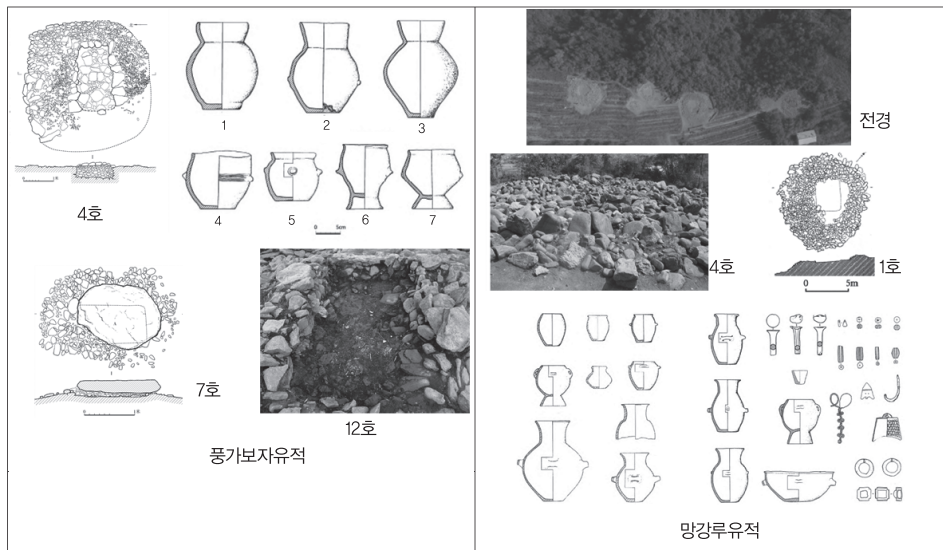


그림 8 환인 풍가보자유적 및 망강루유적 비교(하문식, 2024, 그림 3~6 수정 후 전재)

이와 관련하여 환인 대전자 광복촌, 풍가보자, 망강루유적 및 통화 만발발자 유적 등은 기원전 3~2세기 무렵 요동 북부와 길림 일대 예맥계 정치세력 간 교류를 반영하는 거점 유적으로 평가된다.<sup>53</sup> 이들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다인·다차 화장 및 석광형의 개석식 고인돌-대개석 적석묘-무기단식 적석묘

- 52 하문식, 2019,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①: 소자하와 부이강 유역의 유적」, 『백산학보』 115; 2024,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④: 桓仁 지역 돌무덤」, 『백산학보』 129.
- 53 오강원, 2012, 「高句麗 初期 積石墓의 出現과 形成 過程」, 『고구려발해연구』 43; 하문식, 2020,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③: 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 『동양학』 81; 박선미 외 지음, 2021,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 길림성 통화 만발발자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130; 백종오, 2022,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축자해석(逐字解釋), 그 새로운 시도」, 『동북아역사논총』 77; 하문식, 2024, 앞의 글 참조.

로의 연속성, 그리고 재지계 토기와 외래적 장식 기법의 결합은 후기 고조선 문화권이 부여 및 고구려 정치체의 형성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서항산돈식 유적군과 유사한 문화상을 보이는 집안 오도령구문의 청동단검묘는 세형동검과 다뉴경을 부장한 원형의 적석구조물 하단으로 3층의 계단식 적석 구조물이 확인된다. 비록 공사 과정에서 파괴되었으나 최상단의 원형 적석부 상부에 석개가 존재하였다는 전언을 신뢰한다면,<sup>54</sup> 이는 서항산돈 및 신빈 용두산의 개석식 구조와 유사하면서도, 3층의 계단식 적석구조를 가진 점에서 계단적 성격 또한 고려된다. 만약 내부에 화장된 인골을 반복적으로 안치한 것(다인·다차)으로 가정한다면, 제사와 매장이 결합된 복합적 성격의 제의시설로 추정된다. 여기에 후기 고조선문화의 특징적인 위세품류와 함께 재지화된 산형 철축이 공반된 점에서 최소 2차례의 매장과 제의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55</sup>

혹은 매장 주체부를 조성할 당시 유력자의 시신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사회의 주요 위세품인 청동기류(전세품)와 재지화된 철축(산형) 등의 부장품만 안치하여 의례를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이 경우 집안지역의 초기 고구려 세력이 이를 계단식 구조로 변형하여 제의적 건축물로 전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도령구문유적은 토착세력이 고구려 성립기의 제사 권위를 통해 재지계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표방한 물질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 장백 간구자 적석묘군은 이 지역에서 처음 확인되는 연접식묘역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두만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후기양식에서 보편적인 연접식 매장방식과 매우 유사하다.<sup>56</sup> 무덤군의 조성시점이 대략 기원전 1세기 무렵으로

54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集安發現青銅短劍墓」, 『考古』 5.

55 오강원, 2015a, 「선고구려·고구려 초기의 기술 혁신과 고분 구조와 장제의 전환-환인 일대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1』,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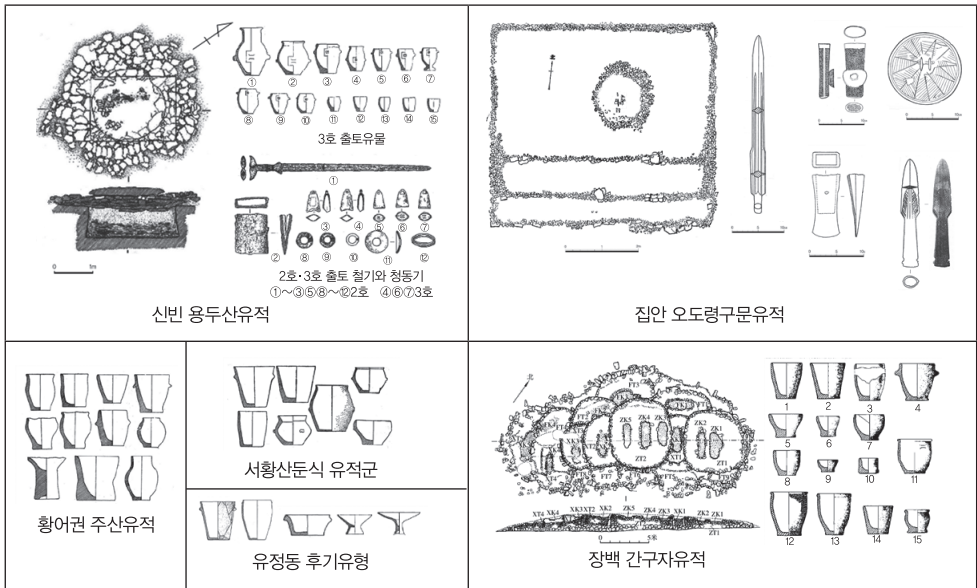


그림 9 신빈 옹두산 개석식 고인돌과 주변유적 출토유물 비교

편년되어, 초기 부여와 선고려기의 문화상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평가된다.<sup>57</sup> 전성기 부여 사회의 권력기반이 사출도로 대표되듯이 초기 부여 사회의 성격 역시 여러 지역사회의 연합체적 정치체제를 예상할 수 있다.

56 두만강 유역 후기 청동기시대 묘제 중 여러 개의 묘실(토광식 혹은 봉석식)이 연결하여 조성되며, 묘실 상부와 묘광 사이에 적석퇴(할석재 채움)가 조성되어, 하나의 적석묘역군을 구성하는 석관묘제가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중국학계에서는 봉석퇴묘 혹은 적석석광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오대양, 2019, 「두만강유역 청동기시대 석관묘유적의 특징과 성격」, 『한국사학보』 74; 2021, 「두만강 하류지역 고고학 문화·유적의 최근 연구 동향과 쟁점」, 『백산학보』 121 참조).

57 오강원, 2012, 앞의 글; 2015, 「선고구려·고구려 초기의 물질문화와 주변 세계-고분 부장품의 비교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2』,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당시 간구자유적의 문화상은 황어권 주산식 유적군류인 두만강계 세력의 북상경로 중간지점에 입지하는데,<sup>58</sup> 무덤의 조성 시점인 기원전 1세기 무렵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와 전설과 연계된 동부여계 세력의 출자와 연관될 수 있다. 전승 속에서 금와가 해부루의 양자로 표현된 점, 그리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의 건국연대가 기원전 1세기 중반임을 고려할 때, 해부루와 금와의 정권교체는 기원전 1세기 전반의 상황이 반영된 전승으로 이해된다.

이는 곧 초기 부여의 집권 세력 중 두만강계 세력의 정치적 부상과도 연계된다. 해부루의 전승 속에서 당시 부여 사회의 권력 구도는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시대적 정황을 묘사한다. 아란불이 천제의 명을 꿈속에서 받아 전하는 제사장으로 기능한 반면, 해부루는 이러한 신탁을 수행하는 정치적 수장의 역할로 한정되었다. 이는 초기 부여의 권력 구도가 제사장의 권위와 군장 권력이 분리되는 과도적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부여 사회에서는 흉년과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제가회의를 통해 왕을 교체할 수 있었다. 아란불이 가섭원으로 동천할 것을 신탁하고, 친자가 아닌 금와에게 왕권이 계승된 사실은, 당시 해부루 세력이 가뭄이나 재해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실각하게 되면서 제사장과 권력을 분점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당시의 시대상을 규명할 수 있는 문헌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 동만주지역 일대, 특히 요하의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그 동서권역에 드넓게 펼쳐진 요하 평원 지역 일대 환경 변화의 추세가 주목된다.

먼저 서단산문화의 후반부인 기원전 5~4세기 무렵 요하의 서쪽지구는 한랭건조화가 점차 심해지면서 초원계의 식생과 유사한 기후환경으로 전환되는데, 그와 동시에 유목적 생계방식이 부각되는 정구자유형이 확장세를 보인다.<sup>59</sup>

58 金旭東·趙俊傑·呂斌, 2011, 「黃魚圈珠山M1類型遺存再辨析」, 『邊疆考古研究』 10 참조.

59 王立新, 2004, 「探東胡遺存的一介新線索」, 『邊疆考古研究』 3, 84~95쪽; 朱永剛·王立新, 2006, 「西拉木倫河流域先秦時期文化遺存的編年與譜系研究」, 『邊疆考古研究』 4, 52, 69쪽 참조.

당시 요하 상류에서 송화강 유역까지 연결되는 드넓은 평야지역 역시 점차 한랭 기후대에 포함되어 대략 기원전 3~2세기까지 이러한 초원지역의 환경이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sup>60</sup> 어쩌면 금와로 상징화된 세력은 가뭄과 흉작이 지속되는 시기에 비와 풍요를 상징하는 신성적 존재로 부상<sup>61</sup>하여, 부여의 최고 권위자로 추앙되었고, 동부여라는 명칭 또한 금와·아란불 세력이 기반한 두만강 유역의 지리적 중심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해부루로 대표되는 원부여 세력이 영향력을 상실하자, 기원전 2~1세기 사이 환인과 통화 등지의 혼강 유역에서는 연타발로 대표되는 졸본부여계 집단이 새롭게 부상한다. 아마도 이들은 기원전 75년 현도군을 공격하여 요동지역으로 밀어낸 예맥계 재지세력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 성립한 졸본부여는 곧 고구려 건국 전승과 직결된다. 주몽은 천자 해모수의 계보를 잇는 존재이자 원부여의 동명 신화를 계승한 영웅으로 형상화되었다. 주몽이 천제의 아들이자 동명과 동급의 존재로 설정된 것은, 고구려 전성기 부여계 잔여 세력과의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종교적 장치였을 것이다. 따라서 동명 신화가 우리의 기록에서 독립적으로 전승되지 못하고 주몽 신화로 흡수·재구성된 것은, 부여와 고구려 건국 과정에서 각 세력의 전통을 아우르는 정치적·종교적 통합 서사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

60 夏正楷·鄧輝等, 2000, 「內蒙西拉木倫河流域考古文化演變的地貌背景分析」, 『地理學報』 3, 329~336쪽; 劉祥·孫文麗, 2001, 「西遼河水系變遷」, 『內蒙古水利』 4, 69~71쪽; 오대양, 2025, 「비파형동검문화기 만주지역의 기후 변동과 생태전략 그리고 사람들」, 『고조선단군학보』 56 참조.

61 금와의 이미지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고귀한 개구리를 표상화한 것으로, 개구리가 울면 비가오는 상징성과 함께 이러한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부활하는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부활의 상징성 또한 내포한다.



## V. 맺음말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길남-요북지역 초기 철기시대의 문화상은 단순히 묘제와 토기 형식의 변천을 넘어, 토착 전통과 외래 요소의 복합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인 합장과 집단 제례는 공동체 기반의 정치적 권위를 제도화하였고, 철기문화의 수용은 경제적 생산력과 군사적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전환은 고조선 후기 사회의 분화와 초기 부여의 국가 형성으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고구려 성립기의 묘제·토기·의례 체계로 계승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서황산둔유적의 개석식에서 고조선의 상징물인 세형동검과 다뉴조문경이 공반되었다는 사실이다. 지표상에 거석 덮개돌이 노출된 고인돌류 무덤 중 청동거울과 세형동검류가 함께 출토된 사례는 현재까지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서황산둔유적이 유일하다. 필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요서지역에서 발원한 십이대영자문화와 정가와자유형의 종족 정체성을 반영하는 핵심 위세품으로 다뉴경을 주목해왔다. 다뉴경의 부장방식에 투영된 초원계 신앙체계는 문헌상에 나타나는 북방계 이민족인 ‘맥(貊)’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음을 논증하였다.

반면, 요하 이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고인돌은 재지 농경민들이 조상신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대형화·제단화된 결과물이다. 이는 지역에 따라 요동반도와 서북한의 탁자식 고인돌, 혹은 길남-요북지역의 거석 숭배(개석식) 형태로 발현되었다. 이러한 거석문화의 공유는 재지세력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공통의 이데올로기로 확장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요하 이동 지역 토착세력인 ‘예(濊)’계 족군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논지에서 볼 때, 맥계의 샤먼적 신앙체계를 상징하는 다뉴경과 예계의 조상 숭배를 상징하는 고인돌은 본래 서로 상충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황산둔유적에서 이 두 요소가 융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증원세력의 동방 진출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두 세계관의 통합(예맥 정체



성 형성)이 절실했던 시대적 요구가 읽혀진다.

나아가 서왕산둔유적의 세형동검과 결합된 ‘쌍조형’ 검병이라는 새로운 상징 체계에 주목한다. 기원전 2~1세기경의 신빈 용두산 개석식 묘와 고구려 성립기 환인 망강루의 무기단식 적석묘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동병철검(銅柄鐵劍)이 확인된다. 또 망강루유적에서는 금제 이식과 사이 장경호 등 부여계 유물이 다수 확인되어, 이들 간의 밀접한 문화적 기층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위세품의 변화는 사회 상층부의 관계망과 그들이 추구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후기 고조선의 상징 체계가 세형동검과 다뉴경의 조합이었다면, 부여와 초기 고구려 사회는 초원계 요소가 반영된 금제 이식, 쌍조형 장식성, 그리고 신소재인 철기(동병철검)가 결합된 새로운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따라서 이는 시대적 전환기에 고조선과 차별화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천하관)을 선포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분화된 진번과 초기 부여, 고구려 세력 간의 역동적인 경쟁 구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예맥 사회의 주도권 변화와 부여 중심의 새로운 역사관 정립은 한국 고대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周向永, 2022, 『鐵嶺地區青銅時代考古遺址調查』, 遼寧人民出版社.

周向永·許超, 2010, 『鐵嶺的考古與歷史』, 遼海出版社.

### 논문

김미경, 2009,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토기문화권 설정에 관한 재검토」, 『호서고고학』 21,

박선미, 2025, 「복합사회의 경제 엘리트와 헤테라키(Heterarchy) 탐색-길림 서향산둔 유적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고학』 24-2,

박순발, 2004, 「요녕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과정」, 『금강고고』 창간호,

박진일, 2007, 「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한국청동기학보』 1,

배현준, 2024, 「서차구 유적의 토기문화와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85,

백종오, 2022,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축자해석(逐字解釋), 그 새로운 시도」, 『동북아 역사논총』 77,

백종오·오대양, 2015, 「마성자문화 동굴묘의 형식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학』 40,

오강원, 2007, 「서단산문화와 길림 중부 지역 초기 철기문화 제 요형 간의 문화적 상관 관계」, 『진단학보』 104,

\_\_\_\_\_, 2011, 「기원전 3세기 요녕 지역의 연나라 유물 공반유적의 제 유형과 연문화와의 관계」, 『한국상고사학보』 71,

\_\_\_\_\_, 2012,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출현과 형성 과정」, 『고구려발해연구』 43,

\_\_\_\_\_, 2015, 「선고구려·고구려 초기의 기술 혁신과 고분 구조와 장제의 전환-환인 일대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1』,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_\_\_\_\_, 2018a, 「기원전 3~1세기 중국 동북과 서북한 지역의 물질문화와 연·진·한」, 『원사시대의 사회문화변동』, 진인진,

\_\_\_\_\_, 2018b, 「청동기~철기시대 동북아시아 제 지역의 물질문화와 상호작용권의 형

- 성과 변형」, 『역사 여명기의 종족 정체성』, 진인진.
- \_\_\_\_\_, 2019, 「초기 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장각두형토기의 출현과 확산 배경」, 『철기시대 토기와 토기문화의 변동』,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_\_\_\_\_, 2000, 「중만지역의 초기철기문화-포자연문화의 성립과 전개양상」, 『전환기의 고고학Ⅲ』, 한국상고사학회 24회 학술대회 자료집.
- 오대양, 2015, 「북한지역 석관묘유적의 특징과 성격」, 『한국사학보』 61.
- \_\_\_\_\_, 2017, 「요동지역 석관묘문화의 특징과 전개양상 검토」, 『한국사학보』 66.
- \_\_\_\_\_, 2019a, 「요동과 길림, 서북한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전개양상 검토」, 『백산학보』 115.
- \_\_\_\_\_, 2019b, 「두만강유역 청동기시대 석관묘유적의 특징과 성격」, 『한국사학보』 74.
- \_\_\_\_\_, 2022, 「금강하류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제사·의례적 성격 고찰」, 『한국고고학보』 125.
- \_\_\_\_\_, 2023,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성과 그 의미-고인돌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82.
- \_\_\_\_\_, 2024, 「先 부여문화의 성격과 정체성 검토-고조선문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양학』 96.
- \_\_\_\_\_, 2025, 「비파형동검문화기 만주지역의 기후 변동과 생계전략 그리고 사람들」, 『고조선단군학보』 57.
- 이종수, 2005, 「松花江流域 初期鐵器時代 文化研究Ⅱ-西荒山屯 古墳群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22.
- \_\_\_\_\_, 2008, 「서단산문화 석관묘의 특징과 기원에 대하여」, 『선사와 고대』 28.
- \_\_\_\_\_, 2013, 「송화강유역 초기철기문화의 변천과 부여문화 성립과정 고찰」, 『동양학』 53.
- 이청규, 1999, 「동북아지역의 다뉴경과 그 부장묘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40.
- 정상석, 1997, 「서단산문화와 초기부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진선, 2014,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의 위치 변동」, 『동양학』 56.
- 하문식, 1998, 「中國 吉林地域 고인돌 연구」, 『韓國上古史學報』 27호.
- \_\_\_\_\_, 2019,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①: 소자하와 부이강 유역의 유적」, 『백산학보』 115.
- \_\_\_\_\_, 2020,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③: 通化 萬發撥子 유적의 무덤」, 『동양

학』81.

\_\_\_\_\_, 2024,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 연구 ④ -桓仁 지역 돌무덤」, 『백산학보』 129.

金旭東, 1991, 「1987年吉林東豐南部蓋石墓調查與清理」, 『遼海文物學刊』2.

\_\_\_\_\_, 1992, 「東遼河流域의 若干種古文化遺存」, 『考古』4.

\_\_\_\_\_, 1993, 「試論邢家店類型及其相關問題」, 『博物館研究』2.

\_\_\_\_\_, 2012, 「再論邢家店類型遺存及相關問題」, 『邊疆考古研究』11.

金旭東·王國範·周傳波, 1988, 「1985年吉林東豐縣考古調查」, 『考古』7.

金旭東·趙俊傑·呂斌, 2011, 「黃魚圈珠山M1類型遺存再辨析」, 『邊疆考古研究』10.

吉林省文物工作隊 等, 1982,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 『東北考古與歷史』創刊號.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8, 「1985年吉林東豐縣考古調查」, 『考古』7.

\_\_\_\_\_, 1989, 「吉林農安縣邢家店北山墓地發掘」, 『考古』4.

\_\_\_\_\_, 2003, 「吉林省文物考古的世紀回顧與展望」, 『考古』8.

唐洪源, 1999, 「吉林省東豐縣狼東山石棺墓調查與清理」, 『北方文物』1.

\_\_\_\_\_, 2000, 「遼源龍首山再次考古調查與清理」, 『博物館研究』2.

唐洪源·周傳波, 1994, 「東豐縣石大望遺址考古調查」, 『遼海文物學刊』1.

圖旭剛, 2014, 「遼北地區青銅時代考古學遺存初步分析」,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董學增, 1983, 「試論吉林地區西團山文化」, 『考古學報』4.

宋玉彬·王青, 1994, 「吉林東豐,海龍縣考古調查與試掘簡報」, 『考古』3.

辛岩, 1995,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初探」, 『遼海文物學刊』1.

王立新, 2004, 「探東胡遺存的一介新線索」, 『邊疆考古研究』3.

遼源市文物管理所, 1997, 「吉林遼源市龍首山遺址的調查」, 『考古』2.

\_\_\_\_\_, 2005, 「遼源龍山區發現一批古代器物」, 『文物』2.

于海民, 1989, 「東遼黎明石棺墓清理」, 『博物館研究』2.

李萌·方啟, 2022, 「寶山文化與涼泉類型再探」, 『沈陽考古文集』8, 科學出版社.

李龍彬·徐政·梁振晶, 2011, 「遼寧西豐縣永淳遺址及墓地的發掘」, 『考古』3.

李龍彬·趙少軍, 2011, 「遼寧西豐縣東溝遺址及墓葬發掘簡報」, 『考古』5.

趙俊傑·馬健·金旭東, 2016, 「吉林長白縣幹溝子墓地的文化性質與相關問題」,

『考古』 5.

朱永剛·王立新, 2006, 「西拉木倫河流域先秦時期文化遺存的編年與譜系研究」,  
『邊疆考古研究』 4.

鐵嶺市博物館, 1992, 「遼北東部地區幾處青銅時代遺址調查」, 『遼寧省博物館館  
刊』 1.

夏正楷·鄧輝等, 2000, 「內夢西拉木倫河流域考古文化演變的地貌背景分析」, 『地  
理學報』 3.

許志國, 2009,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再探」, 『遼寧省博物館館刊』, 遼海出版社.

## 길림 서남부와 요동 북부 접경권 초기 철기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그 의미

오대양

이 글은 길림 서남부와 요동 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철기시대 문화의 성격과 지역적 전개 양상을 검토하였다. 해당 지역에서는 보산문화와 양천유형을 주축으로 하는 토착문화 전통 위에 중원계 철기 요소가 단계적으로 수용되며 복합적인 문화상(사가가유형)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길림 서남부의 보산문화와 요동 북부의 양천유형이 공통된 토기 조합과 매장 양식을 공유하면 서도, 생활권과 지형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된 점에 주목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단순한 지역적 편차가 아닌, 재지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외래문화 수용방식의 차이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사가가유형기 서황산 둔식 유적군에서 확인되는 다뉴경, 쌍조형 검병, 세형동검의 결합 양상은 예맥계 재지사회의 권력 구조와 상징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분석하였다. 이는 시대적 전환기, 기존 사회(고조선)와 차별화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자, 확장된 세계관 속에서 분화된 진번과 초기 부여 세력 간의 경쟁 구도가 투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주제어:** 길남-요북지역, 초기 철기시대, 보산문화, 사가가유형, 서황산둔식 유적군

## ABSTRACT

# Regional Patterns and Its Implications in the Early Iron Age of the Southwestern Jilin-Northern Liaodong Borderland

Oh Daeyang

This study examine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developmental patterns of the Early Iron Age in the borderland between southwestern Jilin and northern Liaodong. Archaeolog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 complex cultural formation emerged in this region as iron technology and related material elements from the Central Plains were gradually adopted upon indigenous cultural traditions centered on the Baoshan Culture and the Yangquan-type assemblages. This process resulted in a composite cultural horizon commonly identified as the Xiejia cultural complex.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oshan Culture of southwestern Jilin and the Yangquan-type cultural assemblages of northern Liaodong. Although these groups shared common ceramic combinations and burial practices, they developed differently

according to settlement territories and geomorphological conditions. This study interprets such divergence not as simple regional variation but as reflecting structural transformations within local societies and differing strategies in the adoption of external cultural elements. Furthermore, the combination of multi-knobbed bronze mirrors, double-bird-shaped dagger pommels, and slender bronze daggers identified at Seohwangsantun-type sites of the Xiejia cultural horizon is analyzed as a key indicator of the reorganization of power structures and symbolic systems within Yemaek-related local societies. These developments are understood as part of a broader transitional process in which a new cultural identity emerged distinct from earlier Gojoseon traditions. At the same time, they reflect an expanded worldview and the competitive dynamics between the differentiated Jinbeon polity and emerging early Buyeo groups.

**Keywords:** Southwestern Jilin-Northern Liaodong Region, Early Iron Age, Baoshan Culture, Xiejia Cultural Complex, Seohwangsantun-type Sit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조약과 제국주의

—19세기 말 국제법 체계의 이론적 한계와

모순을 중심으로

오시진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I. 머리말
- II. 국제법 체계 발전과 제국주의
- III. 근대 법실증주의적 조약 체계의 법리적 난제
- IV. 자연법적 사고 통용과 공존
- V. 문명론적 접근에 따른 조약 체결의 문제
- V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일본은 왜 1905년 을사조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할까? 을사조약은 분명 절차적, 형식적 하자가 있고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인데도 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제국주의 시대 국제법 체계 자체의 이론적 모순과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법실증주의와 문명론적 사고에 기초한 당시 국제법 체계의 모순을 제시하여 과도기 시대의 제국주의 국제법 체계를 비판하고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20년이 지났음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을사조약이 유무효성에 관해서는 아직도 견해 차이가 있다.<sup>1</sup> 한국은 을사조약 체결 당시 ‘조약 체결 대표’에게 강박행위가 있었으며, 그 체결 과정에 절차적, 형식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을사조약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법적으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강박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허용되던 국가에 대한 강박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19세기에 권위 있던 국제법 저술가 헨리 휘튼(Henry Wheaton)에 따르면, 당시 국제법 체계상 ‘조약 체결 대표’에 대한 강박은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구분되어야 한다.<sup>2</sup> 당시 전쟁은 합법이었기 때문에 무력 행

\* 투고: 2026년 1월 2일, 심사 완료: 2026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26년 2월 13일

\*\* 이 논문은 2025년 9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학술회의 「동북아시아 조약 질서 형성과 인식의 변화」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1 한국병합조약에 형식과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박배근, 2009,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2호, 91~118쪽.

2 Henry Wheaton, 1866,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James Brown Scott(ed.), *The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Washington: Carnegie

사로 상대를 강박하여 체결한 조약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국가들이 이미 다수의 유사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도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면 을사조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을사조약 체결 시 실제로 ‘조약 체결 대표’에 대한 강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강박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접근 방식을 따르다 해도 조약의 절차적, 형식적 하자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 즉, 조약의 절차적, 형식적 하자가 있음에도 조약이 유효하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기는 어렵다. 물론, 일본 측에서는 이러한 하자도 한국이 용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주장하는 이에겐 증명책임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쟁은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정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칙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을사조약의 유무효 논쟁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인 부분이 있다. 즉, 제국주의 국제법 체계 자체에 문제는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제국주의 시대 국제법 체계는 국제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다. 즉, 문명국 간에만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비문명국에게는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고 간주했다. 제국주의 시대의 문명론은 단순히 서구 국가가 무력적으로 우월하여 비문명국을 지배한다는 차원을 넘어 피지배 민족을 교화하고 문명화한다는 지배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문제가 있다. 비문명국에게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국주의자들은 비문명국과의 조약은 양국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pacta sunt servanda*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법실증주의는 국가의 동의(*consent*)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 간에

---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p. 284~285.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국제법상 법실증주의는 인간이 만든 조약과 관습법만 실정법이자 유효한 법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조약은 당사국이 합의한 것이니 명시적 동의에 기초하고, 관습법은 묵시적 동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문명론과 결합된 법실증주의적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일까? 제국주의 시대 문명론과 법실증주의라는 이론적 사안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9세기는 매우 복잡하고 변화가 극심한 시기였다.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유 무역과 시장 경제 체제가 정착되어가고 있었으며, 이는 유럽의 경제 발전과 세계화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sup>3</sup> 또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식민지 확장이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유럽 열강의 식민지 경쟁은 이전보다 더욱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띠었다.<sup>4</sup> 국제법 발전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국제법 체계는 일반적으로 법실증주의와 문명론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설명된다. 19세기 국제법학의 주류는 과학적 방법론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실증적 접근을 강조했으며, 유럽 외 국가들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문명화 여부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고 문명국 중심의 법 질서를 정당화하려는 성향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19세기 국제법 체계는 당시의 이념과 이론을 배제하고 논의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론적, 논리적 모순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후술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당시 자연법론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자연법론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닌 상위법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이 법은 불변성, 보편성, 도덕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3 Paul Bairoch, 1972, "Free trade and Europea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th century",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 issue 3, pp. 211~245; Robert O. Keohane and Joseph Nye, 2000, "Globalization: What's New? What's Not? (And So What?)", *Foreign Policy*, no. 118, p. 107.

4 William J. Duiker and Jackson J. Spielvogel, 2012, *World History*,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pp. 542~636.

발전해온 법철학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법리로 접근한다. 따라서 자연 이성에 따라 누구나 이 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인간이 만든 실정법에 기반한 법실증주의가 강세였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도덕성에 기초한 자연법적 사고도 유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당시 국제법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당시 한일 관계에 문명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한일 관계를 서양과 비서양의 관계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문명론을 핵심 정책으로 삼았는지 여부를 증명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한국에 문명개념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청일 전쟁 시기에 일본이 스스로를 문명으로 규정하고 청과 조선(한국)을 미개 또는 야만으로 대비한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sup>5</sup> 그러나 일본은 무력의 우월만으로는 한국인을 장기적으로 복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 침략 과정에서 문명화라는 정당화 논리를 사용했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sup>6</sup> 즉, 한국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문명국이 비문명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sup>7</sup> 일본은 1905년 전후에는 ‘문명화’라는 표현보다는 ‘시정개선’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하였다.<sup>8</sup>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한일의정서 제1조에는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sup>9</sup>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에서도 본 조약 전문에서 “한국

5 박영준, 2014, 「청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외전략과 군사정책: ‘근대화우선론’과 ‘대륙팽창론’의 상호대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6집 제1호, 108쪽.

6 권태억, 2014,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명화: 1904-1919』,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7쪽.

7 이태진, 2009.6.22, 「1905년 보호조약의 불법성-그 은폐의 늪」,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 60쪽.

8 권태억, 2014, 앞의 책, 46쪽.

9 「한·일 의정서」[광무 8년(1904) 2월 23일], 외부대신 이지용·특명전권공사 하야

의 실질적인 부강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고 하였다.<sup>10</sup> 여기서 한국 외교권 박탈이 한국을 부강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을 통해 문명론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더 나아가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제6조에서는 “일본국 정부는 …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 한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한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정당화 논리는 상대를 위하여 지배를 한다는 문명론적 사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한일 관계 속에는 문명론적 사고가 일정 부분 내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세기 말 문명론과 법실증주의에 방점을 둔 국제법 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국제법의 지배적인 해석틀이자 이념이었던 문명론(Standard of Civilization)과 법실증주의 법리의 이론적 한계를 검토하고, 당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을사조약과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조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재검토한다. 19세기 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문명론은 국제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법인격 인정을 위계화하여 국제법 체계를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법실증주의적 방법론은 법의 정당성을 형식적 요건, 즉 적법한 주체 간의 합의와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이 글은 문명론 및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당시 국제법 체계에 내재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비문명국과의 조약이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약의 성립 및 유효성을 논할 수 있는 법 체계와 틀이 필요하다. 이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법실증주의적 사고만으로는 조약법의 기초를 설명하기

시 곤스케.

10 「을사늑약(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광무 9년(1905)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11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조약」[융희(隆熙) 4년(1910)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어렵다. 문명론과 결합된 법실증주의는 왜 비문명국과 체결된 조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어렵다.

언급하였듯이, 당시에 자연법적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사실 당시의 주요 국제법 저서를 검토해보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도 자연법적 사고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선행 연구의 일반적인 시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국제법 저서 등 1차 자료 분석을 통해 자연법론이 유효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자연법적 사고는 20세기 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당시의 국제법적 논의에서 자연법적 법리 주장이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특정 조약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자연이성에 기초한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비법적 표현으로 서술하면 이론적으로 정의와 도덕 원칙이 논의될 수 있다고 이해될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자연법론자가 법적 엄밀성을 배제하고 정의만 주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념의 차이를 두고 논의된다. 따라서 자연법이 주장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도덕과 정의를 논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단순히 을사조약과 같은 조약이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당시 국제법 체계상 을사조약과 같은 조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려면 다음의 법리적 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법실증주의적 관점을 유지한다면, 해당 조약에 당시 국제법 체계가 실제로 적용되어 그 유무효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문명론에 기하여 비문명국이라고 차별적 대우를 한다면 해당 조약은 국제법 체계 밖의 사안이 되어 조약의 유무효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그럼에도 문명론에 기하여 비문명국에 당시 국제법 체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당시의 관행을 강조하는 논리를 고수한다면, 해당 조약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즉,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진다. 셋째, 그럼에도 조약의 유효성을 계속 주장하려면 자연법에 기초하여 자연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제법 체계를 공유하지 않는 이와외의 국제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적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자연법적 접근이 유효했기 때문에 이 또한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 경우 조약의 유효성 여부뿐 아니라 하자 문제 또한 자연이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II. 국제법 체계 발전과 제국주의

### 1. 조약의 지위 변화

국제법 체계가 형성되던 16~17세기 시점과 비교해보면 19세기 근대 시기의 “조약” 자체가 가지는 지위는 상당히 달라졌다. 조약은 처음부터 국제법 체계의 일부였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국제법 체계의 핵심 구조이자 연원(source)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조약법 체계의 발전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 조약 이후 주권 국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설명된다. 이 근대 질서는 중세의 인적 질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7세기 당시 조약 체결의 주체로 주권 국가가 본격적으로 부상하였다.<sup>12</sup> 이는 조약법이 개인 간의 사적 계약법 체제에서 벗어나 국제법으로 독립하는 과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구체제(Ancien Régime)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조약 문서에서 여전히 군주가 당사자로 언급되고 “국가” 자체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sup>13</sup> 따라서 19세기 중후반까지도 주권 국가 외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제 사회에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

12 Randal Lesaffer, 2018, “Treaties with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n Michael J. Bowman and Dino Kritsiotis(eds.), *Conceptu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on the Modern Law of Trea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5~56.

13 Randal Lesaffer, 2018, 위의 글.

한편, 종교개혁은 중세 국제 질서의 구조적 기둥이었던 교회법과 교회의 관할권을 무너뜨렸다.<sup>14</sup> 이는 당시 보편적인 권위를 가졌던 로마법과 봉건법을 점진적으로 쇠퇴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유럽의 주권 국가들은 국제법 규범을 스스로 발전시키고 체계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관습과 조약은 교회의 교리를 대체하며 국제법 규범의 주요한 원천으로 부상하였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에 형성된 유럽의 새로운 정치 및 법적 질서는 주로 평화조약, 동맹조약, 상업조약 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반면 중세의 서약 제도 등은 점차 사라져 그 권위를 상실하였다.<sup>15</sup>

17세기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린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법을 크게 자연법과 의사법(실정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의사법을 신의 명령에 기초한 법과 인간이 만든 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6</sup> 국제 사회에서 인간이 만든 법 가운데 *ius gentium*(만민법)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이는 개별 국가의 일방적 입법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법은 아니었다.<sup>17</sup>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의사법은 조약과 관습법으로 구분되었다.<sup>18</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약은 자연법의 하위 영역에 속하는 인간이 만든 법에 불과하다. 또한 17세기에는 다자 협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조약은 양자 형태로 체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 국가들의 행위를 실제로 규율한 것은 주로 자연법과 관습법이었으며, 조약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합의로서 제한적인 의미만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이르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아래에서 더 논의하겠지만, 이 시기의 국제법은 자연법 대신 법실증주의를 기본 법이념이자

14 Randal Lesaffer, 2018, 위의 글, p. 56.

15 Randal Lesaffer, 2018, 위의 글.

16 Hugo Grotius, 2012, *On the Law of War and Peace*, Stephen C. Neff(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8~29.

17 Hugo Grotius, 2012, 위의 책, p. xxxii.

18 Hugo Grotius, 2012, 위의 책, p. xxxiii.

방법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 국제법학의 대표적 인물인 라사 오펜하임(Lassa Oppenheim)은 저서 『국제법(International Law)』에서 국제법을 “문명국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관습적 및 조약적 규칙 집합체(body)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의하였다.<sup>19</sup>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국제법은 문명국 간에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라는 점이다. 문명론과 국제법의 비보편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둘째,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법에서 자연법은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다. 이는 법실증주의가 이념적, 방법론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국제법의 적용 범위는 문명국 간으로 제한되었으며, 국제법원은 조약과 관습법에 한정되었다.

그렇다면 자연법적 요소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기존 통설과 달리 20세기 초에도 자연법적 시각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다만 오펜하임과 같은 학자들은 자연법적 시각을 배제했고, 이러한 견해가 점차 주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법 사상의 주류가 법실증주의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19세기와 20세기 초 국제 사회는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19세기 말은 국제법 체계가 강화된 시기로, 1815년 빈 협약 체계가 구성되며 다자주의적 접근이 본격화되었고, 19세기 중반부터는 조약 체결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sup>20</sup> 구한말 조선이 가입한 최초의 인도주의적 다자 협약으로 알려진 1864년 제네바 협약과 1874년 만국 우편 연합이 이 시기에 체결되었으며, 그 밖에도 다수의 주요 조약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1885년 베를린 협약을 통해 아프리카 식민지 분할이 진행되는 등 조약이 제국주의 실현의 도구로 활용

19 Lassa Oppenheim, 1912, *International Law*, Vol. I, 2nd ed.,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p. 4.

20 Edward Keene, 2012, “The Treaty-Making Revolution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34, No. 3, pp. 475~500.

되기도 하였다. 또한 1899년과 1907년에 열린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서는 전쟁법이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약의 지위는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17세기에는 조약의 수가 많지 않고 주로 양자적 합의의 성격을 가졌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면 국제법이 자연법을 배제하고 실증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조약 질서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다자 조약의 증가로 국제 사회의 구조와 규범이 조약을 통해 확립되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조약의 지위가 뚜렷하게 상승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 2. 제국주의 시대 조약의 역할

앞에서는 국제법 발전 과정에서 조약의 지위가 점차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조약은 제국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 이 절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주요 조약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의는 조약이 제국주의 정책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러한 유형의 조약이 모두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로 존재한 조약과 그 조약의 합법성은 구분해야 한다.

### 1) 불평등 조약

불평등 조약(Unequal Treaty)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서구 국가와 비서구 국가가 체결한 조약으로, 평등한 주권 국가 간의 조약이라기보다는 문명국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비서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문명론적 담론에 기반한 조약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당시 국제법적 사고를 지배했던 ‘문명국’과 ‘비문명국’ 간의 간극을 상징한다.<sup>21</sup> 주된 내용은 치외법권의 설

---

21 Brett Bowden, 2005, “The Colonial Origins of International Law.

정,<sup>22</sup> 조차지의 설치, 관세 자주권의 침해, 상호주의적이지 않은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약이 체결된 대표적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시암 등이었다. 불평등 조약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상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로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조약의 외양을 취했지만, 그 실질적 내용 면에서는 불평등한 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sup>23</sup>

불평등 조약은 개정이 쉽지 않았으며, 대부분 그 기간이 무기한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서구 열강은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른바 “문명 기준(Standard of Civilization)”에 대한 부합을 요구하였다. 그 기준에는 국제법 준수, 외교 관계 수립, 국내법 개혁, 사법 및 행정 제도의 정비, 헌법에 기초한 정부 수립, 노예제와 같은 전통적 비인도적 제도의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sup>24</sup> 즉, 서구의 기준에 따라 문명화되지 않으면 불평등한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1894년 체결된 아오키-김벌리 조약(Aoki-Kimberley Treaty, 영일 통상항해 조약)을 통해 영국의 치외법권을 철폐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계기로 서구 열강과 맺은 다수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1894년 이 조약은 일본이 문명 국가들의 가족(Family of Nations)에 완전히 편입된 시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25</sup> 일본이 서구 열강을 모델로 삼아 자국의 제도 전반을 재

---

European Expansion and the Classical Standard of Civiliz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7, No. 1, p. 20.

22 Extraterritoriality를 역외관할권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치외법권으로 번역되어왔기에 여기서는 치외법권이라 칭하도록 하겠다.

23 Anne Peters, 2018, “Treaties, Unequal”, *Max Planck Encyclopedia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Article last updated: Feb. 2018), para. 5.

24 Anne Peters, 2018, 위의 글, para. 19.

25 Robert E. Bedeski, 1990, “Japan: Diplomacy of a Developmental State”,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vol. XXV, no. 1~2, p. 61.

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 개정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도 한다.<sup>26</sup> 즉,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개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구의 기준에 따라 문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불평등 조약의 개정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20년대부터 사정 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을 근거로 불평등 조약의 철폐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sup>27</sup> 불평등 조약과 관련된 핵심 법적 쟁점은 그 불평등한 성격 자체가 독립적으로 조약의 무효, 정지 또는 집행 불가능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sup>28</sup> 이와 관련하여 제국주의적 국제법이 적용되던 시기였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일반적으로 당시 국제법은 오늘날과 같은 체계나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한다.<sup>29</sup>

## 2) 분할 조약

분할(partition) 조약이란 특정 지역을 서구 열강이 분할하여 지배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을 말하며, 대표적 사례로는 1885년 체결된 베를린 회의의 일반 의정서(General Act of the Berlin Conference on West Africa)가 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1884년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Leopold II)는 ‘상부 콩고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콩고강 주변 부족장들과 여러 조약을 체결하였다.<sup>30</sup>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추진했고, 프랑스는 서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횡단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열강 간 식민지 개척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3개 유럽 국가와 미국이 참가한 가운데 4개월에

26 Robert E. Bedeski, 1990, 위의 글.

27 Anne Peters, 2018, 앞의 글, para. 4, 57.

28 Anne Peters, 2018, 위의 글, para. 2.

29 Anne Peters, 2018, 위의 글, para. 27.

30 Martti Koskenniemi, 2002,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2, 137.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1885년 2월 26일 13개국이 베를린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베를린 회의의 일반 의정서(General Act)는 제1조 이하에서 자유 무역과 항해의 자유를 규정했으며, 제34조와 제35조에서는 아프리카 해안에서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 원칙을 규정하였다. 이 원칙은 15세기 이후 유럽 국가들이 채택해온 발견 원칙을 대체한 원칙으로 간주되기도 한다.<sup>31</sup> 제13조 이하에서는 콩고강을 지정하고, 제26조 이하에서는 니제르강을 국제하천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제6조에서는 노예 무역의 폐지를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노예 무역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서명국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금지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상이나 육로를 통한 모든 형태의 노예 공급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 분할 조약의 실질적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예 참여하지 못하였다. 아프리카 국가의 주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그 정치적 결집력이 부족(tribe) 국가 수준의 경우 그 영토가 아예 무주지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 3) 보호 조약

보호국(protectorate)의 개념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대외관계를 대신 행사하고 외부로부터 보호국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32</sup> 물론 보호국이라는 개념 자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종속국(client state) 차원에서 존재하였으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19세기 이전 보호국 제도는 보호를 받는 국가의 주권 침해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외교

31 Robert J. Miller and Olivia Stitz, 2021, “The International Law of Colonialism in East Africa: Germany, England, and the Doctrine of Discovery”,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Vol. 32, No. 2, pp. 1~59.

32 Antony Anghie, 1999, “Finding the Peripheries: Sovereignty and Colonialism in Nineteenth-Century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0, p. 54.

관계를 유지하고 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sup>33</sup> 과거 제도에는 보호국의 영토를 병합할 의사도 없었다.<sup>34</sup>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보호조약은 이른바 식민 보호국(colonial protectorate)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문명국이 비문명국을 실질적으로 병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20세기 초반 국제법 저술가 스미스(Smith)는 보호국 제도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분석한다. 첫째, 강대국들이 직접적인 점령 없이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둘째, 타국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이다.<sup>35</sup> 오펜하임은 보호를 받는 국가가 스스로 보호 관계를 탈피할 수 없다면 결국 합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sup>36</sup> 한편, 예외적으로 1896년 에티오피아(Abyssinia)가 이탈리아군을 격퇴한 사례가 보호 관계를 스스로 벗어난 사례로 언급된다.

식민 보호국이라는 개념의 전제에는 피보호국을 후진국(backward) 혹은 비문명국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다.<sup>37</sup> 19세기에 저명한 국제법학자였던 윌리엄 E. 홀(William E. Hall)은 보호국 제도가 문명화 사명과 연결된 이유를 보호 대상이 미개한(barbarous) 국가 또는 불완전하게 문명화된(imperfectly civilised) 국가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up>38</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국제법 체계에서 문명국 간에는 식민 보호국 또는 식민지 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보호 조약은 일반적으로 피보호국 주민의 외교권, 즉 대외 주권을 강대국이

33 Thomas Baty, 1921~1922, "Protectorates and Mandates",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 pp. 109ff.

34 Anthony Anghie, 2007, *Imperialism, Sovereignty and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81~182.

35 F. E. Smith, 1911,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J. M. Dent & Sons, Ltd., p. 31.

36 Lassa Oppenheim, 1912, 앞의 책, pp. 146~147.

37 Anthony Anghie, 2007, 앞의 책, p. 182.

38 William Edward Hall, 1904,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5th edn., Oxford: Clarendon Press, p. 125.



행사하는 구조를 취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내부 통치권까지 이전되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1886년 영국과 소말리아 부족(하브르 톨자알라, Habr Toljaala) 간의 조약에서는 외교 독점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sup>39</sup>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독립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보호 관계가 설정되는 사례도 있었다.<sup>40</sup>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약이 보호 조약으로 기능했으며, 일관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웠다. 관행적으로 보았을 때, 그 핵심은 외교권을 통제하여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종속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sup>41</sup>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보호 조약은 본질적으로 피보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장치였으며, ‘보호’라는 명분 아래 외교적 자율성을 박탈하는 구조였다.

#### 4) 세력권 조약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은 주로 정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므로 법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개념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자주 활용되었다.<sup>42</sup> 이는 특정 강대국이 지정한 지역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시도로서 대체로 식민 보호국 체제 성립 전 단계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보호 관계와 달리 세력권은 법적으로 제3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으며 보다 비공식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sup>43</sup> 세력권의 형성 방식에 일률적인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린들리(Lindley)는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sup>44</sup>

39 Anthony Anghie, 2007, 앞의 책, pp. 183~184.

40 Thomas Baty, 1921~1922, 앞의 글, pp. 111~112.

41 Anthony Anghie, 2007, 앞의 책, p. 186.

42 Geddes W. Rutherford, 1926, “Spheres of Influence: An Aspect of Semi-suzerainty”,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p. 300.

43 Geddes W. Rutherford, 1926, 위의 글.

44 M. F. Lindley, 1926, *The Acquisition and Government of Backward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Longmans, Green and Co. Ltd, pp. 211~227.

제1유형은 무주지에 관한 강대국 간의 조약 체결 유형이다. 이 유형은 해당 영토에 정부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1885년 베를린 회의 이후 아프리카에서 흔히 나타난다. 강대국들은 해당 지역의 원주민 정부를 배제하고 상호 간에 세력권을 분할하였다. 이 경우 원주민의 주권은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불간섭 원칙이 무시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무주지로 간주되어 국제법상 법인격이 부정되었다.

제2유형은 해당 지역에 정부 조직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배제하는 방식이다. 비문명국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부가 조약 당사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유형이다. 이는 주로 아시아에서 나타났으며 린들리는 근대 한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청일 전쟁 이후 1895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에서 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러시아와 일본 간의 조약(1898)과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 조약(1902) 등 강대국 간의 조약에서는 한국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한국 영토에 대한 특수한 이익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지배국의 독립성을 명시하면서도 실제 조약 체결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강대국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제3유형은 해당 영토의 정부와 직접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럽의 강대국이 해당 영토의 정부와 직접 세력권 조약을 체결한 사례이다. 콩고 자유국, 시암(태국), 중국, 티베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피지배국이 법적 의무의 당사자가 되었으나, 해당 조약이 영토 취득권을 직접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권리 확보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 차원에서 해석되었다.

요컨대, 세력권 제도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피지배국의 주권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거나 우회적으로 무력화하는 정치적 장치로 기능했으며 식민지화의 사전 단계로 자주 활용되었다.

## 5) 할양 조약

할양(cession)은 한 국가가 자국의 영토 주권 전체나 일부를 조약을 통해 다른 국가에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up>45</sup> 이는 철저히 양국 간의 합의에 기초하며

평화적 협상의 결과이든 전쟁 종결 후의 조약이든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sup>46</sup> 할양의 동거나 경위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가 1866년 베니스를 프랑스에 넘긴 후 프랑스가 베니스를 이탈리아에 재할양한 사례, 콩고 자유국이 1908년 벨기에에 할양된 사례,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사건(1910)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오펜하임이 할양의 범주로 분류한 것이다.<sup>47</sup> 다만, 오펜하임이 대한제국의 할양 시점을 1911년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린들리는 후진국의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할양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진국 간의 할양 조약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한 할양도 가능하였다.<sup>48</sup> 때로는 우선매수권(the right of pre-emption)이 인정되어 특정 국가만 할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sup>49</sup> 또한 토착민이나 부족 국가가 자신들의 주권을 조약을 통해 양도하는 사례도 많았으며, 이 경우 대외 주권만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대내 주권까지 함께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sup>50</sup>

그러나 이에는 근본적인 법적 문제가 존재하였다. 1885년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어떻게 정당하게 영토를 취득할 수 있는지 논의한 바 있다.<sup>51</sup> 그러나 당시 유럽 국가들은 상대방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해당 국가와 조약 체결을 시도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결국 회의는 영토를 취득할 때 다른 열강에 이를 통보할 의무만 규정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그쳤다.<sup>52</sup>

45 Lasa Oppenheim, 1912, 앞의 책, p. 285.

46 Lasa Oppenheim, 1912, 위의 책, p. 287.

47 Lasa Oppenheim, 1912, 위의 책.

48 M. F. Lindley, 1926, 앞의 책, p. 166.

49 M. F. Lindley, 1926, 위의 책, p. 168.

50 M. F. Lindley, 1926, 위의 책, p. 169.

51 Anthony Anghie, 1999, 앞의 글, p. 58.

52 Anthony Anghie, 1999, 위의 글.

따라서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존재와 체결한 조약이 어떻게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제국주의적 실천만 관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Ⅲ. 근대 법실증주의적 조약 체계의 법리적 난제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조약이 제국주의에 기여했다면, 당시 조약 체계 자체에는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 이 장에서는 조약법 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법실증주의 체계가 19세기 말의 맥락에서 이론적 난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1.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의 특징과 방법론

법실증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단 하나의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제법상 법실증주의는 국가 간의 동의에 기초하여 인간이 만든 조약과 관습법만 법이라고 보는 관념이라 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가 등장한 배경에는 당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사고의 틀이 과학주의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기초하여 과거의 자연법적 사고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법실증주의가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53</sup>

---

53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 1798~1857)는 실증주의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과학철학을 정립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신학적, 형이상학적, 그리고 실증주의적 단계로 발전한다고 보았다(Anthony Giddens, 1974, *Positivism and Sociology*, London: Heinemann, p. 1). 또한 모든 사실은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이성과 논리에 따라 검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orge Larraín, 1979, *The Concept of Ideology*, London: Hutchinson, p. 197). 따라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관찰되고 증명될 수

법실증주의는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과 존 오스틴(John Austin)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며, 직접적으로 콩트의 계보에 놓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역시 존재하는 법과 법의 가치(merit)를 구분해야 하며, 사회 속에서 관찰 가능한 인간이 만든 법만 법으로 인정한 점에서 콩트의 영향이 일정 부분 확인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법에서도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sup>54</sup>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법실증주의적 사고가 단순한 이론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실무에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sup>55</sup> 따라서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법실증주의는 법철학적 정합성과 이론적 완성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법적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실증주의는 방법론적인 문제로 작동한다. 즉,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법의 연원, 형식적 개념 정의, 그리고 법 분석 방법 등이 방법론 차원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다뤄진다.<sup>56</sup> 또한 이러한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자연 이성에 기초한 법의 연원성을 부정한다.

---

있는 것만 지식이 될 수 있으며,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 역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Robert C. Scharff, 2002, *Comte after Positiv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4 Hans J. Morgenthau, 1940, "Positivism,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4, p. 283.
- 55 Jörg Kammerhofer, 2021, "International Legal Positivist Research Methods", *Research Methods in International Law*, Edward Elgar Publishing, pp. 95~110.
- 56 국내법에서 법실증주의 논의는 흔히 법과 도덕이 분리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국제법적 맥락에서는 현실의 법(*lex lata*)과 있어야 할 법(*lex ferenda*)을 구분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된다. 그러나 엄밀한 법리적 분석에 따르면 법과 도덕의 분리가 곧바로 *lex lata*와 *lex ferenda*의 구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법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와 미래에 존재해야 할 법을 논의하는 문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tephen C. Neff, 2014, *Justice Among Nations: A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 226). 그럼에도 이러한 구분은 과학적 방법론을 채택한 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법학의 학문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방법론적 차원에서 볼 때, 법실증주의는 국제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체계는 크게 자연법과 의사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무엇이 법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연법과 의사법을 함께 확인하고 검토 및 분석해야 하였다. 그러나 19세기의 법실증주의적 사고는 자연법이나 신법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인간이 만든 법으로만 국제법을 이해하였다.<sup>57</sup> 따라서 무엇이 법이라는 질문에 의사법, 그중에서도 인간이 만든 조약과 관습법만 남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이라는 보편적 법 질서 위에 국가 간 의사법 합치로 성립한 조약과 관습법을 인간이 만든 법으로 간주하였다. 다시 말해, 불변의 자연 이성에 기초한 법칙이 전제된 후 그 틀 안에서 의사법이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 법실증주의가 지배적인 흐름이 되면서 의사법 외에는 어떠한 법적 기준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법실증주의 방법론은 국가의 의사 또는 동의를 국제법의 핵심적인 법 연원으로 설정했던 것이다.<sup>58</sup>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은 상위 체계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더 나아가 이 수평적 의사 합치는 국제법의 구속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하게 되었다.

## 2. 오스틴의 국제법 부정으로 인한 도전과 난제

그러나 19세기의 법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완성도 높은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제법적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당대의 국제법학자들은 법실증주의, 특히 존 오스틴(John Austin)의 법 이론에서 제기된 이론적 난제를 극

57 A. Claire Cutler, 2001, “Critical reflections on the Westphalian assump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 a crisis of legitimac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7, issue 2, p. 135.

58 Alexander Orakhelashvili, 2006, “The Idea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p. 317.

복해야 하였다. 오스틴이 국제법을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학자들은 이에 대응하여 유럽 국제 사회에 한정된 관습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sup>59</sup> 이는 관습법의 역사적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약법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아래에서는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존 오스틴은 영미 법학에 큰 영향을 미친 법실증주의 법철학자로, 자연법 이론을 부정했던 제레미 벤담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오스틴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법을 ‘제재가 수반되는 주권자의 명령’으로 정의하였다.<sup>60</sup>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은 결국 최상위 권력의 의지이다. 따라서 공리주의 이념에 따르면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 규범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될 수 없다. 그의 명령 이론(Command Theory)이 법의 본질을 권력 의지로 환원하는 이론으로 평가되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벤담이 이러한 사고의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오스틴은 법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법철학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제 법은 인간이 구성하는 산물이며, 자연법과 같이 초월적 연원(source)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고는 국제법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의 의사를 국제법 연원의 핵심 근거로 여기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그로티우스가 의사법으로 규정한 조약과 관습법만 국제법의 연원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오스틴은 법을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제재가 수반되는 명령”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제재를 강제할 상위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 사회에서는 국제법을 ‘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국제 사회에는 최상위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명령도 없고 제재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국제법은 단순히 “실정 국제 도덕(positive international

59 Anthony Anghie, 1999, 앞의 글, pp. 14~17.

60 John Austin, 1998(원저: 1832), *The Province of Jurisprudence Determined*, David Campbell and Phillip Thomas, eds., Dartmouth: Ashgate, p. 101.

morality)”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sup>61</sup>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당시 국제법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앵기(Anghie)는 오스틴(Austin)의 이러한 주장과 이에 대한 국제법학자들의 이론적 대응이 국제법 적용 범위를 유럽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한다.<sup>62</sup> 국제법이 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적용 범위가 확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스틴의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중심의 국제법 질서가 정당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즉, 국제법도 법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국제법학자들은 실증적으로 ‘유럽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법의 개념을 설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논리만으로 당시 국제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된 체계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유럽 사회 전반의 사상적, 문화적 인식 변화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국제법 학자들이 오스틴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논리를 전개한 것도 사실이다. 웨스트레이크(Westlake), 로렌스(Lawrence), 오펜하임(Oppenheim), 워커(Walker) 등 저명한 학자들은 오스틴의 국제법 부정론에 직접 반박하였다.<sup>63</sup> 이들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오스틴의 법 개념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형태의 법 개념에 따르면 국제법 역시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로렌스는 법이 사회 행위를 규율한다는 측면에 주목했고, 오펜하임은 오스틴이 관습법과 불문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즉, 모든 법이 주권자의 명령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적 관행에 의해 발전한 관습법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오스틴의 법 개념이 역사적 현실의 법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헨리 메인(Henry Maine)은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도 오스틴식 법 개념에 따라 운영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sup>64</sup>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법

61 John Austin, 1998, 위의 책, p. 152.

62 Anthony Anghie, 1999, 앞의 글, pp. 14~17.

63 Anthony Anghie, 1999, 위의 글, pp. 15ff.



은 주권자의 명령으로만 성립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단순히 오스틴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국제법이 ‘법’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오스틴의 법 개념이 아닌 대안적인 국제법 개념을 새롭게 제시해야 하였다. 다시 말해, 국제법학자들은 ‘무엇이 대안적인 법 개념인가’, 그리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접근 방식의 한계는 국제법이 국내법과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 불문법인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국제법은 관습법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조약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국내법과 비교하면 조약은 그 자체로 법이라기보다는 계약에 가깝다. 따라서 자연법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조약이 자연법에 의해 조율될 수 있었으나, 19세기의 실증주의적 맥락에서는 조약 자체가 법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조율하거나 통제할 상위 원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당시에 논의된 법의 일반 원칙 역시 ‘국제 사회의 일반 원칙’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문명국 내부의 일반 원칙을 반영한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국제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접근 방법에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법이 반드시 주권자의 명령으로만 존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늘날의 국제법을 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법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

64 Anthony Anghie, 1999, 위의 글.

이 글의 주제인 조약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오스틴의 관점에 따르면 조약은 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합의일 뿐이며, 그 구속력은 상대방이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도덕적 기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시 국제법학자들이 취한 방법론을 적용하더라도 조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부족하였다. 오펜하임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 사회에는 관습법이 존재하여 그 특수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조약이 왜 법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조약을 관습법을 배경으로 성립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조약 그 자체가 법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법실증주의적 논리는 조약의 법적 성격을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데 상당히 취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국제법의 비보편성의 문제: 조약과 관습법의 구분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9세기에 이루어진 법실증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국제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즉, 관습법을 공유하는 문명국 사이에서만 국제법이 유효하다고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조약은 어떠한가? 조약은 왜 이러한 제한을 넘어 체결될 수 있었을까? 즉, 문명국과 비문명국 간에 체결된 조약은 어떤 근거로 성립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이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관습법과 달리 조약은 다른 문화권과도 체결될 수 있는 일종의 보편적 제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관습을 공유하지 않은 국가 간에도 조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비문명국과 체결된 조약은 법실증주의적 논리에 기초하기가 어렵고, 당시의 법리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약 자체는 계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할 상위 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약의 성립과 효력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법적 사고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절에서는 이러한 법리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하자가 있는 비문명국과의 조약을 유효

하다고 보던 당시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세기 주류 국제법학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비보편주의적 관점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국제법은 역사적으로 18세기까지 자연법을 배경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보편성을 전제하고 있었다. 19세기 이전의 국제법 사상가인 비토리아(Vitoria), 그로티우스(Grotius), 볼프(Wolff), 바텔(Vattel), 모저(Moser)는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나 문명 수준에 상관없이 국제법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65</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로티우스에게 국제법은 자연법과 실정법인 의사법이 결합된 형태의 법체계였다. 자연법의 핵심 전제 중 하나는 그 규범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었다.<sup>66</sup>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비유럽권 국가를 존중했다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이전에도 국제법이 제국주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다.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는 스페인 사람들이 신대륙에 도달하기 이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의 미개인들이 공적·사적 영역 모두에서 진정한 지배권(dominium)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67</sup> 그러나 그는 자연법에 따른 관계 속에서 상대가 부당하게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전쟁법 등을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고, 스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영토를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논리를 제시하였다.<sup>68</sup> 이 전제에는 자연법이 신세계 원주민에게도 적용된다는 논리가

65 Alexander Orakhelashvili, 2006, 앞의 글, pp. 316~317.

66 Stephen Hall, 2001, "The Persistent Spectre: Natural Law, International Order and the Limits of Legal Positivism",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No. 2, pp. 269ff.

67 Francisco de Vitoria, 1991, "On the American Indians", in *Vitoria: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51. "For the moment, the clear conclusion to the first question is therefore that before arrival of the Spaniards these barbarians possessed true dominion, both in public and private affairs."

68 Francisco de Vitoria, 1991, 위의 책, p. 290. "... than the law of war, whose chief occasions were the defence and vengeance of their allies. ... This, then, is the seventh and last title by which the barbarians and their lands

있었다. 또한 그로티우스도 자연법을 세속화하여 모든 국가에 자연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sup>69</sup> 크리스천 볼프도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보편적 인류사회를 상정했고, 바텔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sup>70</sup> 그러나 이들 또한 식민주의의 전개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토리아,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Pufendorf), 볼프, 바텔도 유럽 식민주의의 공범이었다는 주장도 있다.<sup>71</sup> 단지 이들의 법적 세계관은 자연 이성에 기초하여 모든 이에게 자연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실제 국가 실행의 차원에서 본다면 국제법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19세기 이전의 국제법은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대외 공법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연법의 보편적 효용을 전 세계에 적용한다고 전제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반면, 19세기에 전개된 법실증주의로의 전환은 오히려 역설적인 양상을 보인다. 국제법이 이론적으로는 보편성을 상실하고 적용 범위가 유럽의 기독교 전통에 속한 국가들로 축소되었으나,<sup>72</sup> 실제로 국가 관행은 비유럽권 국가와의 관계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초중반 국제법 저술가인 휘튼은 1866년판 『만국공법』에서 국제법을 ‘문명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라고 명시하였다.<sup>73</sup> 그는 보편적 국제

---

may or might have come into the possession and dominion (dominium) of the Spaniards.”

69 Alexander Orakhelashvili, 2006, 앞의 글, p. 316.

70 Alexander Orakhelashvili, 2006, 위의 글.

71 Georg Cavallar, 2008, “Vitoria, Grotius, Pufendorf, Wolff and Vattel: Accomplices of European Colonialism and Exploitation or True Cosmopolitans”,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10, pp. 181ff.

72 Charles Henry Alexandrowicz, 1967,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 in the East Indies: 16th, 17th and 18th centuries*, Oxford: Clarendon Press, pp. 9~10, 235.

73 Henry Wheaton, 1866, 앞의 책, p. 14.

법의 존재를 부정하며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변의 국제법은 없다고 주장하였다.<sup>74</sup> 휘튼이 왜 자연법의 보편성을 부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휘튼이 후에 사비니(Savigny)의 역사학과 이론을 채택했다는 점도 이에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수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당시 법실증주의의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었던 점에 주목한다. 이는 실증주의 국제법에서 관습법이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한 것과도 연결된다. 당시에 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된다고 여겨졌다. 휘튼은 그의 저서 『만국공법』에서 국제법의 개념을 문명국 간의 법으로 제시하며, “보편 국제법은 없다”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편적인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제법도 없다. 공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유럽의 기독교 국가 혹은 그 유산을 공유하는 국가에 국한되어 적용되며, 오늘날에도 그 적용 범위는 유사하게 제한되어 있다.<sup>75</sup>

이와 같은 사고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국제법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다. 토머스 조세프 로렌스(Thomas Joseph Lawrence), 윌리엄 에드워드 홀(William Edward Hall) 등이 작성한 주요 국제법 저서에서 국제법 개념을 문명국 간의 법으로 단정하였다.<sup>76</sup> 앞에서 언급한 오픈하임을 포함하여 당시 주요 국제법 저서에서 국제법은 문명국 간의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의 주요 국제법학자들이 비보편주의를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 국

74 Henry Wheaton, 1866, 위의 책, pp. 17~18.

75 Henry Wheaton, 1866, 위의 책, p. 15.

76 Thomas Joseph Lawrence, 1895, 1910,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Boston, New York, Chicago: D. C. Heath & Co., Publishers, p. 1; William Edward Hall, 1904,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5th edn., Oxford: Clarendon Press, p. 40.

제법 체계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보편적 국제법 체계는 여러 문제를 내포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5세기 신대륙 발견 이후 비토리아는 자연법을 적용하여 신대륙 원주민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하게 하였다. 자연법 위반 등을 근거로 전쟁을 정당화한 부분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영토 취득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19세기의 비보편주의 체계에서 소위 비문명국과의 국제법적 관계는 어떠한 근거로 설정할 수 있었을까?

주지하다시피, 19세기는 기존 유럽 국가 간의 대외 공법이 전 세계로 확장되며 국제법 질서가 재편된 시기였다.<sup>77</sup> 그레브(Grewe)는 “유럽 국가 간의 법에서 보편 국제법으로의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당시 국제 사회에서 아이티, 라이베리아, 튀르키예(구 터키), 일본, 중국, 페르시아 등 비유럽권, 비기독교, 비백인 국가들이 국제 사회에 점진적으로 편입되거나 제한적인 승인을 받는 과정을 설명한다.<sup>78</sup> 이러한 흐름은 국제법 체계의 외연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의 국제법학자 F. 폰 홀첸도르프(F. von Holtzendorff)는 1885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이전에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던 국제법이 점차 문명국 전체의 공통 법질서로 확장되었음을 기술하였다.<sup>79</sup>

결국 법실증주의의 주장은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국제법은 비보편적인 체계로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당시 국제법학자들은 이 법리적 문제를 문명론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비보편적인 국제법 체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문명 기준’(Standard of Civilization)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국가만 문명국으로 인정받아 완전한 법인격을 갖춘 주권 국가로 대우받았다.

77 David Kennedy 1997, “International Law and the Nineteenth Century: History of an Illusion”, *Quinnipiac Law Review*, Vol. 17, pp. 119ff.

78 Wilhelm G. Grewe, 2000, *The Epochs of International Law*, Michael Byers(trans.), New York: Walter de Gruyter, p. 462.

79 Wilhelm G. Grewe, 2000, 위의 책, pp. 464~465.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도 법 이론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문명국과 체결된 조약의 법적 유효성은 여전히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조약이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문명국 간의 실정법적 국제법 체계 또는 자연법 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법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문명국 간의 국제법이 비문명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조약의 법적 유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

## IV. 자연법적 사고 통용과 공존

이 장에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도 자연법적 사고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했음을 지적한다. 즉, 비보편주의적 경향과 양립하지 않는 보편적 자연 이성 에 기반한 법 이론이 20세기 초반까지 국제법 학계에 남아 있었다. 이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가 법실증주의의 시대라는 통설과 다소 상충하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법실증주의가 지배적이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국제법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제국주의적 접근이 정당화된 배경에는 이러한 법실증주의적 전환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적 시각은 당시 국제법 체계의 복잡성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1차 사료를 검토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자연법적 사고는 법실증주의 사고와 공존했다고 볼 수 있다.

### 1. 20세기 초반 바텔의 권위

당시 주요 국제법 저서들을 분석해보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자연법적 사고가 국제 사회에서 여전히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반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법 저서로 오펜하임의 저서가 꼽힌다. 오펜하임은 대표적인 법실증주의자로서 그의 접근 방식이 법실증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05년과 1912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가 당대의 과도기적 국제법적 사고를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펜하임의 저서에서 이러한 과도기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912년 출간된 오펜하임의 저서에서는 바텔의 저서가 19세기에 걸쳐 권위를 유지했으며, 자신의 저서가 출간되던 시점에도 그 권위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바텔(Vattel)의 책은 수많은 판본이 출간되었으며, 1863년 파리에서 프라디에-포데레(Pradier-Fodéré)가 재편집하여 출판되었다. 치티(Chitty)의 영어 번역본은 1834년에 출간되었으며 여러 판을 거쳤다.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외교계에서는 그의 책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누리고 있다.<sup>80</sup>

요컨대, 1912년 오펜하임의 저서가 출판될 때에도 외교 실무자들, 즉 국가관행을 실현하는 외교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바텔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 권위(unshaken authority)”였다. 즉, 바텔은 단순히 과거 국제법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가 아니라 현실 외교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관행을 강조하는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시 실제 국가관행은 오히려 자연법적 관념에 부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12년판 오펜하임의 저서에서도 바텔은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법적 주제에 대한 법리를 검토할 때 항상 바텔의 저서를 포함하여 검토하였다.<sup>81</sup> 오펜하임은 60회 이상 바텔을 인용하며 여타 19세기 국제법학자의 저서와 함께 이를 검토하였다. 이는 오펜하임이 바텔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외교관들이 국가관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바텔의 자연법적 사고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교관들이 보수적으로 전통과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론할 수 있

80 Lassa Oppenheim, 1912, 앞의 책, pp. 93~94.

81 Lassa Oppenheim, 1912, 위의 책, p. 107.



는 부분이다.

실제로 바텔의 논리는 매우 영향력이 컸다. 19세기 후반의 한 저자는 바텔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고 국가 간의 관계를 바텔의 ‘거인과 난쟁이’에 비유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sup>82</sup> 바텔은 그의 국제법 저서에서 “난쟁이는 거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다. 작은 공화국은 가장 강력한 왕국과 마찬가지로 주권 국가이다”라고 규정한 바 있고, 이 주권평등 원칙은 19세기 후반에도 널리 받아들여진 기본 원칙이었다는 것이다.<sup>83</sup> 이 외에도 다양한 사건에서 바텔이 인용된다. 1898년 미국 대법원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사건에서는 출생지 시민권을 다루었는데, 이때 바텔의 저작이 참조되었으며 국적과 시민권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해석하는 데 인용되었다.<sup>84</sup> 20세기 초반에도 바텔의 저서는 계속 인용되었다. 1917년 미국의 *Selective Draft Law Cases* 사건, 즉 징병법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쟁을 수행할 권한에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바텔의 법리를 인용하였다.<sup>85</sup>

그렇다고 해서 20세기 초에 바텔의 위상이 과거와 동일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시기에는 바텔의 자연법론 인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sup>86</sup> 오히려 20세기 초에도 바텔의 흔적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시기는 오펜하임은 비롯하여 법실증주의자의 시각이 주류가 되던 시대였다. 그럼에도 오펜하임이 지적했듯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는 여전히 바텔의 권위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바텔이 계속 인용된다는 것은

---

82 Peter M. R. Stirk, 2012, “The Westphalian model and sovereign equal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8, p. 652.

83 Emer de Vattel, 2008, *The Law of Nations*, Indianapolis: Liberty Fund, p. 75.

84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169 U.S. 649, 708(1898).

85 *Selective Draft Law Cases*, 245 U.S. 366, 368(1918).

86 Brian Richardson, 2012, “The Use of Vattel in the American Law of Na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6, No. 3, p. 566.

바텔의 자연법적 사고가 계속 참조되고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의를 간과할 수 없다.

## 2. 휘튼, 블룬칠리, 울지 등의 자연법적 사고

19세기 당시 동양에 『만국공법』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휘튼은 어떠한 법철학에 기초하였을까? 휘튼의 『만국공법』은 당시 동양에 처음 번역되어 상당한 권위를 가졌다는 점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휘튼의 시각을 심도 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휘튼은 국제법이 보편적이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다. 선행연구 중에 이를 법실증주의의 영향이라 설명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휘튼도 국제법이 정의(justice)에 부합하는 이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았다. 휘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된 완성본으로 알려진 1866년 판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서는 국제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제법이란, 문명국들 사이에서 이해되는 바에 따르면, 독립된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의 본성으로부터 이성이 정의(justice)와 부합한다고 추론하는 행위 규범들로 구성되며, 여기에 일반적인 합의에 의해 확립되는 일정한 규정과 수정이 더해진 것이다.<sup>87</sup>

여기서 휘튼 역시 자연법적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이 정의(justice)와 부합한다고 추론하는 행위 규범”은 전통적으로 자연법을 지칭하거나 자연법적 법리와 관련성을 갖는다. 사실 이러한 자연법적 국제법 개념은 1836년 초판에서부터 등장한 다음 계속 고수되어왔고, 이후 판본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1916년에 콜먼 필립슨(Coleman Phillipson)이 편저한

---

87 Henry Wheaton, 1866, 앞의 책, Sec. 14, p. 23.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서도 그의 국제법 개념은 변화하지 않는다.<sup>88</sup> 1916년에도 휘튼의 저서가 개정되어 다시 출간된다는 점은 그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 판본과 마찬가지로 1916년 판에서도 “이 법의 기원은 해당 관계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sup>89</sup> 1916년 판은 콜먼 필립슨이 편저자로서 시대 발전에 따라 휘튼의 본 저작물을 수정 및 보완한 판본이다. 즉, 법의 기원과 “정의의 원칙”을 연결하는 자연법적 사고가 당시에 적절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수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1916년에도 정의에 기초한 전통적인 자연법적 국제법 개념이 통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19세기 말 당시 동양에 『공법회통』으로 알려진 독일 블룬칠리(Bluntschli)의 1872년판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zerten St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에서도 자연법적 사고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블룬칠리는 전통 자연법론자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에서 법이 도출된다는 사고에서 자신의 법이론을 시작하였다. 그는 “공통된 인간 본성은 모든 민족을 하나의 인류로 연결한다”고 하며, 서로 이 본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법적 평등의 기원이라고 설명하였다.<sup>90</sup> 나아가 국제법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필연성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법을 존중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의사에 달려 있지 않다. 어떤 국

88 Coleman Phillipson, 1916,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Fifth English Edition, London: Stevens and Sons, Limited, 119 & 120, Chancery Lane, pp. 22.

89 Coleman Phillipson, 1916, 위의 책, p. 1. “The origin of this law must be sought in the principles of justice, applicable to those relations.”

90 J. C. Bluntschli, 1872,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zerten St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 Nördlingen: Druck und Verlag der C. H. Beck'schen Buchhandlung, p. 58.

가도 자신의 인간 본성을 벗어던질 수 없듯이, 인간적 의무 또한 회피할 수 없다.

1. 만약 국제법이 오직 개별 국가들의 자유로운 의지의 산물이라면, 모든 국제법은 본질적으로 조약법일 것이다. 즉, 국제법 규범이 국가 간 조약으로써 제재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 그것을 준수할 의무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조약이, 체결 당사국의 의지가 변하더라도 여전히 국가들을 구속하는지, 왜 모든 의사의 변화가 곧 법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국제법의 구속력은 그것이 의사가 아니라 필연성(Nothwendigkeit)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sup>91</sup>

여기서 제시되는 필연성(Nothwendigkeit) 또한 자연법적 사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의사로 국제법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 속에서 이성의 요구에 따라 필요적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텔이 자연법을 ‘necessary law’로 본 것과 계보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휘튼과의 차이점 중 하나는 불문칠리가 보편주의를 취한 것이다. 즉, 국제법은 모든 문화권에 적용되는 보편적 질서이다.

오늘날의 국제법이 우선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독교 종교가 다양한 자극을 제공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은 결코 기독교 신앙에만 묶여 있지 않으며, 또한 기독교 세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국제법의 근본적인 토대는 인간 본성이고, 그 목표는 인간 세계의 질서이며, 그 수단은 국가적 법적 장치이고, 그 발전은 인간의 학문과 실천의 결과이다.

국제법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브라만교도와 불교도, 공자(孔子)의 추종자들과 천체(별)를 숭배하는 자들, 신자와 비신자를 모두 아우른다.<sup>92</sup>

91 J. C. Bluntschli, 1872, 위의 책.

92 J. C. Bluntschli, 1872, 위의 책, p. 59.

한편, 당시 『공법편람』으로 번역되어 알려진 울지의 1891년 판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도 자연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저서를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인류 사회의 각 개인을 서로로부터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간의 창조주는 그의 본성 속에 우리가 ‘권리’라고 부르는 개념들을 심어놓았으며, 이는 언제나 ‘의무’와 대응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정의 체계의 근본이자, 법이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 각기 다른 조건의 불평등 속에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은 법과 정의의 법정 앞에서 본질적인 평등을 가진다. 이는 모든 인간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이 동일한 능력과 목적지를 암시하기 때문이고, 인간의 능력과 목적에 따라 그 자유 행동의 권리나 권능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sup>93</sup>

울지(T. D. Woolsey)는 국가와 개인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국가들 역시 단일 사회 구성원을 지배하는 도덕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국가로서 이들은 공통된 본성과 목적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권리의 평등이 생겨난다. 따라서 ‘국가 간의 법(a law between nations)’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표현함으로써 정의로 올 수 있고, 또는 모두가 인정한 권리의 자유로운 포기를 표현함으로써 정의로 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sup>94</sup>

당시 동양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저명한 국제법 저술가로 평가받던 할렉(Halleck) 역시 자연법론자였다. 그의 이전 저서뿐 아니라 1885년 출간된 그의 저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nd Laws of War*에서도 이를

93 Theodore Salisbury Woolsey, 1891,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 1.

94 Theodore Salisbury Woolsey, 1891, 위의 책, p. 2.

확인할 수 있다.<sup>95</sup> 1888년에 *International Law*라는 저서를 출판한 레오네 레비(Leone Levi) 또한 자연법적 사고에 입각하였다. Levi는 국제법은 자연법적 요소와 관습법적 요소가 있다고 하며, 자연법을 전제하였다.<sup>96</sup> 인종주의와 문명론을 국제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제임스 로리머(James Lorimer) 역시 자연법론자였다. 그는 1888년 저서 *The Institutes of the Law of Nations*에서 국제법을 자연법이 독립된 국가들 간의 관계에 실현되는 법이라고 논리를 전개하였다.<sup>97</sup> 따라서 19세기 말 국제법학자 중에 자연법론을 취하였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3. 국제법 저서의 권위와 자연법론 존속의 함의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법 저서들은 당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었을까? 1900년 미 연방대법원 *Paquete Habana* 사건에서는, 관련 조약이 없고 상황을 규율할 국내법(입법, 사법, 행정)이 없는 경우 국제관습법에 의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관습법의 증거(evidence)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법률가와 저술가(jurists and commentators)들의 저서(works)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sup>98</sup> 이러한 시각은 법실증주의자로 알려진 오펜하임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펜하임은 당시 국제법은 성문화된 규칙이 아니라 관습에 근거한다고 설명하였다.<sup>99</sup> 그리고 국제법 저술가(writers of international law)가 판

95 H. W. Halleck, 1885,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nd Laws of War*,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pp. 30~34.

96 Leone Levi, 1888, *International Law*,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pp. 1~2.

97 James Lorimer, 1888, *The Institutes of the Law of Nations*, Vol. I, Edinburgh and London: William Blackwood and Sons, p. 1.

98 *The Paquete Habana*, 175 U.S. 677, 700(1900).

99 Lassa Oppenheim, 1908, "The Science of International Law: Its Task and Method",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 p. 315.

사의 자리를 대신하여, 과연 해당 사안에서 확립된 관습법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sup>100</sup> 한편, 성문화되어 있는 규칙이 있을 경우 국제법학자들은 판사의 지위를 대신하여 해당 규칙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야 한다고 오픈하임은 주장하였다.<sup>101</sup> 결론적으로 오픈하임은 국제법학 분과에서 권위 있는 저술(teachings)은 국내법 영역에서 “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judge-made law)”의 지위를 취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02</sup>

따라서 당시 주요 저술의 권위를 고려해보았을 때, 자연법적인 관점은 법실증주의적 시각과 함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계속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해주는 국제 사건도 있다. 1928년 국제연맹 당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Chorzow Factory* 사건에서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의무는 해당 불법행위의 필수적 보완(indispensable complement)이고, 그러한 의무는 해당 불법행위를 규정한 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점에 관하여, 재판부는 국제법 원칙이자 법의 일반적 개념인 바, 어떤 약속의 위반은 배상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8호 판결에서, 제네바협약 제23조로부터 파생된 관할권을 결정할 때, 재판부는 이미 배상이 협약의 적용 실패에 대한 필수적인 보완 조치이며, 이 점이 협약 자체에 명시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sup>103</sup>

즉, 법의 “일반적 개념”으로 약속 위반이 발생하면 배상 의무가 당연히 수반된다고 본 것이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당연하다는 것이고, 명시적 규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

100 Lassa Oppenheim, 1908, 앞의 글.

101 Lassa Oppenheim, 1908, 위의 글.

102 Lassa Oppenheim, 1908, 위의 글, p. 345.

103 *Factory at Chorzów*, Judgment No. 13, 1928, P.C.I.J., Series A, No. 17, 29.

이라 할 수도 있지만, 자연법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유의미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년 전 1927년 같은 상설국제 사법재판소(PCIJ)가 그 유명한 *Lotus*호 사건을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법실증주의적 시각에서 판시하였다.

국제법은 독립된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국가에 적용되는 법규는 따라서 그들의 자유 의지(free will)에서 비롯된다. ... 국가의 독립성에 대한 제한은 따라서 추정될 수 없다.<sup>104</sup>

이 *Lotus*호 사건은 국제법학자들에게 법실증주의를 천명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에 *Chorzow Factory* 사건에서 자연법적 사고에 기초하였다고 해석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동시에 법실증주의적 사고와 더불어 자연법적 사고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법리만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여러 법리가 동시에 공존하던 시기였으며, 법실증주의만으로 당시 국제 사회의 법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과도한 일반화라 할 수 있다.<sup>105</sup>

자연법적 법리가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자연법론을 취한다고 하여 바로 모든 법적 논의를 도덕론으로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법론을 취하였을 때에는 적어도 실정법의 공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사안에서와 같이 비문명국과의 조약 체결에서 규율하는 법이 없고 법실증주의만 고수한다면 답을 찾기 어렵다. 법실증주의는 조약과 관습

104 S. S. *Lotus (France v Turkey)*, PCIJ Series A, No. 10, 4.

105 Peter M. R. Stirk, 2012, 앞의 글, p. 652.



법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먼저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와 배경이 되는 법체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법실증주의만 고수하면, 어떻게 조약이 성립하고 유효할 수 있을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법체계 또는 법적 틀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상위 규범이나 전제가 되는 규범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안의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요컨대, 법의 공백 사안에서 자연법적 법리가 법실증주의보다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 V. 문명론적 접근에 따른 조약 체결의 문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조약은 법실증주의에만 따라 그 이론적 기초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제국주의자들은 문명론적 사고에 근거하여 조약 체결에 절차적, 형식적 하자가 있거나 강박에 의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소위 비문명국과의 조약이 법적으로 성립하고 유효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법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앞 장에서 당시 자연법적 사고가 계속 유효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아래에서는 문명론적 조약 체결의 문제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19세기에는 완전한 법적 주체성을 향유하던 문명국 간의 법률 관계와 그렇지 않은 비문명국과의 법률 관계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 1.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

#### 1) 문명국 간의 조약 관계

문명국(civilized nation) 간에 체결된 조약의 경우, 각 주권국가는 조약법 체계 하에서 대등한 지위와 조건을 향유하며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휘트 역시 모든 주권국가는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sup>106</sup> 그러나 타국에 실

질적으로 의존하는 국가, 즉 대외 주권이 없는 반(半)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는 조약 체결 시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sup>107</sup> 조약 체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각국의 헌법적 구조에 따라 결정되지만, 입헌군주제를 포함한 군주제 국가의 경우 그러한 권한은 주권자(sovvereign)에게 귀속된다.<sup>108</sup> 따라서 이 주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문명국으로 대우받는지에 따라 국제법상 행위능력을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문명국 간의 조약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tacit)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근대 국제법에서는 서면 형식을 따르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sup>109</sup> 만약 조약이 권한에 결함이 있는 자(imperfect authority)에 의해 체결된 경우, 이후 묵시적 승인(tacit ratification)을 통해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sup>110</sup> 또한 공사(public minister)나 기타 외교관이 조약을 체결하고 서명할 경우, 그는 전권 위임장(full powers)과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sup>111</sup>

## 2) 비문명국과의 조약 관계

문명국이 비문명국과 체결한 조약 관계는 어떠할까? 특히, 이들 간에 체결한 조약에 형식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약에 대해 해당 조약법 체계상 무효 사유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전권위임장(full powers)이나 신임장(letter of credence) 등 필수적 요건이 결여된 경우, 그 조약의 효력은 문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문명국과의 조약 체결 사안에서 실제 문제 제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06 Henry Wheaton, 1866, 앞의 책, pp. 274ff.

107 Henry Wheaton, 1866, 위의 책, p. 45.

108 Henry Wheaton, 1866, 위의 책, p. 275.

109 Henry Wheaton, 1866, 위의 책.

110 Henry Wheaton, 1866, 위의 책.

111 Henry Wheaton, 1866, 위의 책, p. 276.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Leopold II)의 위임을 받은 스탠리(Stanley)가 아프리카 현지에서 체결한 조약들은 그 불평등한 내용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형식적,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sup>112</sup> 상대 부족국가의 수장이 조약 체결 대표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더 근본적으로는 해당 부족국가들이 조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조차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이와 같은 합의를 국제법적 의미의 “조약(treaty)”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1909년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주권이 이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며, 아프리카 추장들과 맺은 조약이 실제로 주권(Imperium) 이전을 증명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sup>113</sup> 물론, 이 논문의 저자 리브스(Reeves)는 레오폴드 2세의 위임을 받은 스탠리가 아프리카 현지에서 체결한 300여 개의 조약은 추후 베를린회의(1884~1885)에서 콩고 자유국의 성립이 추후 승인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14</sup> 즉, 콩고 자유국의 성립은 베를린회의에서 추후 승인된 하자가 있는 조약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식민 지배와 관련된 조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레오폴드 2세는 당시 국제 사회 및 국제 법학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법이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문명론에 기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근대 국제법 체계가 비문명국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조약 체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조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간주되었다. 당시 문명론에 기반한 학자와 국가들은 국제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를 비문명국이 동일하게 주장

112 Martti Koskenniemi, 2002, 앞의 책, pp. 72, 137.

113 Jesse S. Reeves, 1909, “The Origin of the Congo Free State, Considered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 No. 1, p. 106.

114 Jesse S. Reeves, 1909, 위의 글, p. 108.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입장은 일관성을 가진다. 결국 이분법적 문명론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문명국과 비문명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 절차적 또는 실질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유효성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 3) 검토

이러한 논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후 문명국이 해당 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비문명국들은 자신들만의 지역적 규범 체계에 따라 부족 간의 관계를 규율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럽 중심의 국제법 체계와는 별개의 규범 질서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휘튼 또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국제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명국 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체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법체계가 병존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비문명국과 체결된 조약이 유럽 근대 국제법 체계상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국가에 국제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논리이다. 법리적으로 볼 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해당 조약이 유럽 국제법 체계 내에서 유효한 법적 행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조약의 형성 및 효력에 관해 적용되는 모든 법적 요건 또한 동일한 체계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즉,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무효 사유 역시 동일한 법체계 내 법리로 판단되어야 한다. 소위 비문명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조약이 유럽 조약법 체계 내 조약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다고 볼 수도 있다. 과거 전근대적 관계에서의 합의 문서가 아니라, 서구 국제법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때 소위 비문명국이 절차적 하자 등 문제가 있는 조약을 체결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합의했다고 할 수 있는가? 특정 조약이 그 법체계 내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법체계 내의 모든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반대로 그 조약이 유럽 국제법 체계 외부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

는 해당 법체계의 관할권 밖에 놓이는 것으로 국제법적 유효성을 논할 수 없는 사안이 된다. 이 경우 해당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자가 있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국제법 체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소위 비문명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해당 조약이 국제법 체계상 조약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만약 이 합의가 유럽 국제법 체계 외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라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관습법을 공유하지 않지만 보편 질서가 되는 자연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자연법에 따라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법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조약은 자연 이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효하다고 하기 어렵다.

당시 국제법학계는 이러한 문제를 문명론적 이분법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비문명국에게는 국제법을 완전히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러한 태도는 당시의 국제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법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관행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결합되면 국제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으나 법리에 반하는 관행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명론적 정당화로는 이를 해소할 수 없다.

## 2. 강박에 의한 조약 체결

### 1) 문명국 간의 조약 관계

휘튼은 1866년 판 『만국공법』에서 조약상 강박의 문제를 국내 사법 질서상 강박을 구분하였다. 휘튼은 문명국가 내 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private law) 법리에 따르면 폭력(violence)이나 강박(duress)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제법 영역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휘튼에 따르면,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

가 강박 상태에서 체결한 조약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조약은 구속력을 가진다.<sup>115</sup> 그 이유는 만일 이러한 조약이 무효로 간주된다면, 전쟁은 오직 피패국의 완전한 예속(subjugation)과 파괴를 통해서만 종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안녕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16</sup> 이는 국제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에 대한 강박이 유효한 것은 오히려 약소국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보이드(A. C. Boyd)가 편집한 1878년 판 『만국공법』에서,<sup>117</sup> 그리고 필립슨(Phillipson)이 편집한 1916년 판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sup>118</sup>

오펜하임 역시 이와 유사한 견해를 취하였다. 그는 조약이 체결당사국의 실질적인 동의, 즉 절대적 자유에 기반한 동의가 결여된 경우에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강대국의 협박(menace) 아래 체결된 조약이라 하여 곧바로 동의의 자유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즉, 국제법상 동의의 자유가 결여된 상황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19</sup> 그러나 오펜하임에 따르면 조약에 대한 동의의 자유는 오직 조약 체결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그 대표자가 협박(intimidation)을 당했거나 심신미약(예: 음주 상태 또는 정신 이상) 상태에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조약은 무효로 간주된다.<sup>120</sup>

한편, 울지는 1891년 판 『공법편람』에서 강제(force)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115 Henry Wheaton, 1866, 앞의 책, pp. 284~285.

116 Henry Wheaton, 1866, 위의 책.

117 Henry Wheaton, 1878,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 C. Boyd, ed., London: Stevens & Sons, p. 321.

118 Coleman Phillipson, 1916, 앞의 책, p. 367.

119 Lassa Oppenheim, 1912, 앞의 책, p. 547.

120 Lassa Oppenheim, 1905,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1, 1st ed.,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p. 524; Lassa Oppenheim, 1912, 위의 책, p. 547.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sup>121</sup> 옳지는 조약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표현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결여된 경우 조약은 무효가 된다고 본다.<sup>122</sup> 다만, 그는 부당한 강박(duress)이 국가의 주권자(sovvereign) 또는 조약 체결 권한을 가진 대표자(treaty-making agent)에게 직접 행사된 경우에 한하여 조약의 무효가 인정된다고 보았다.<sup>123</sup>

## 2) 비문명국과의 조약 관계

그렇다면 비문명국과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강박 행위는 어떠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가? 식민지배 과정에서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무력 충돌 직후 혹은 외교적 강박 상황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sup>124</sup> 이에 대해 린들리는 상대 국가 전체에 대해 무력이나 위협을 가하여 체결된 할양조약(cession treaties)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sup>125</sup>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다가스카르가 프랑스와의 전쟁 이후 1885년에 체결한 강화조약을 들 수 있다. 이 조약은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의 대외관계를 대리하는 보호 조약의 형식을 취하였다.<sup>126</sup> 그러나 조약 체결 이후에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계속해서 반란이 이어졌고 프랑스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1895년 재차 군대를 파병하였다. 같은 해 10월 1일 프랑스는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지배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듬

121 Theodore Salisbury Woolsey, 1891, 앞의 책, p. 161.

122 Theodore Salisbury Woolsey, 1891, 위의 책, p. 162.

123 Theodore Salisbury Woolsey, 1891, 위의 책.

124 Arnulf Becker Lorca, 2010, "Universal International Law: Nineteenth-century Histories of Imposition and Appropriation",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51, p. 480.

125 Anthony Anghie, 2007, 앞의 책, p. 166.

126 Anthony Anghie, 2007, 위의 책, p. 190.

해인 1896년 8월 6일에는 국내 입법을 통해 마다가스카르를 공식적으로 프랑스의 식민지로 선언하였다.<sup>127</sup> 린들리는 이처럼 무력 행사에 의해 체결된 일련의 조약들도 유효한 국제법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조약이 국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비문명국의 조약 체결 대표자에게 가해진 강박 행위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당시 문명론에 근거하면, 비문명국은 국제법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조약의 무효 사유로서 강박을 원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문명론적 관점에서는, 조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표자에게 강박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조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곧 비문명국이 주권국가로서 향유하는 권리를 국제법상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검토

이와 같은 논리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후 문명국이 해당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 유효하려면 강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상대가 행위능력이 없는 존재이고 이 행위능력이 없는 존재를 강박하여 체결한 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법학자들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에도 *pacta sunt servand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sup>128</sup> 비록 비문명국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향유하지 못하여 조약을 체결할 때 일부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pacta sunt servanda* 법리에 구속된다는 것이다.<sup>129</sup> 휘튼은 비문명국이면서 외부주권이

---

127 Anthony Anghie, 2007, 위의 책, pp. 190~191.

128 Jiang Zhifeng, 2022, "Pacta Sunt Servanda and Empir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volution, Invocation, and Application of an International Law Axiom",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3, pp. 749~750.

129 Jiang Zhifeng, 2022, 위의 책, pp. 751~752.



없는 반주권 국가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한된 행위능력(a limited faculty)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이에도 *pacta sunt servanda*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sup>130</sup>

여기에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전제가 공존한다. 첫째, 국제법이 비문명국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해당 조약은 근대 국제법 체계에 따라 유효한 법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두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 만약 국제법이 애초에 상대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약 역시 국제법상 조약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 합의는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법이 적용되는 당시 현실에서는 이를 조약이라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제대로 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행위능력이 일부만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강박까지 당했는데 이 조약이 완전무결한 조약이 될 수 있는가? 만약 해당 비문명국을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하며 권리를 향유할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면 이는 조약이 될 수 없다. 조약은 주권국가 간에만 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권리능력을 전제로 미성년자와 같이 행위능력을 일부만 인정한 경우라면, 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가 된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는 미성년자와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를 제대로 된 국가로 보지 않아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강박까지 한 조약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해당 조약이 국제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하려면 국제법 체계 전반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상대국 역시 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강박을 근거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조약의 구속력은 인정하면서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만 배제하려는 접근은 선택적 해석에 불과하며 법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결국 비문명국에게 국제법의 적용 자체를 부정하려면, 해당 조약의 성립 정

---

130 Jiang Zhifeng, 2022, 위의 책, p. 752.

당성이 자연 이성(natural reason)에 근거한 합의였다는 방식으로 주장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실제로 당시에는 자연법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이 경우에도 조약의 유효성 및 조약 체결 대표에 대한 강박의 존재 여부는 자연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즉, 단순히 문명론에 기대어 국제법의 일방적 적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론적, 법리적 타당성을 모두 결여한 주장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즉 자연법이 적용되었을 때, 해당 조약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 VI. 맺음말

한국은 오랫동안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인 근거를 제시해왔다. 이때 조약의 형식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부분과 강박에 의해 체결된 부분이 함께 제시되었다. 일본은 이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대응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이런 조약은 부당할지언정 합법이고 당시에는 이런 조약이 많았다는 식으로 답한다. 이런 주장은 문명론적으로 보았을 때 비문명국과의 조약 체결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합법이었다는 논리라고 평가될 부분이 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식민지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조약에 무효일 수 없다는 논리이다.

물론, 한국은 당시 조약 체결 대표에게 강박행위가 있었기에 관련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해당 강박은 국가에 대한 강박이지 대표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당시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당시 제국주의 국제법 체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더 근본적인 법체계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기 때문에 을사조약과 같은 사안에도 함의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명론적 접근 방법에 법리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왔던 제국주의 국제법 체계의 법체계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문명론은 국제법의 적용 범위를 서구 문명국들로 제한하였다. 당시에는 국제법의 개념에서 그 범위를 설정하여, 국제법은 문명국 간의 법이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범위 밖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때 어떤 법체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과 조약을 체결하면 어떤 법이 본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까? 이는 조약의 효력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의 성립 요건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특정 법의 적용 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어떤 법체계에 따라 성립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관할권도 문제가 되며, 조약의 유효성을 아예 따지기도 어렵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상호주의적으로 제한해서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상호주의적의 기준도 애매하고 자의적일뿐 아니라, 상호주의적이라 판단할 기준도 불분명하다. 실제 관행은 상호주의적이라 할 수 없었고 차별적이고 불평등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20세기 초에도 자연법론적 사고가 유효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오펜하임(Oppenheim)은 1912년 당시에도 자연법론자인 바텔(Vattel)의 저서가 외교실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뿐 아니라 휘튼(Wheaton), 블룬칠리(Bluntschli), 울지(Woolsey) 등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주요 저서에서도 자연법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판례에도 자연법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당시 국제법 법리의 절대적 기준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자연법과 법실증주의가 공존하던 시대였고 당시에 자연법 법리가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연법적 접근이라고 하여 모든 사안을 도덕적 판단으로 환원할 수도 없다. 20세기 중반 대표적인 자연법론 국제법학자였던 라우터페흐트(Lauterpacht)도 법리적 사안을 도덕적 판단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자연법론자라고 했을 때에도 법리적 세밀성과 정합성을 무시하지 않

있다. 따라서 자연법론에 따른다고 하면서 정의롭지 않은 조약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자연법적 시각에서도 이미 실정법으로 구체화된 조약과 그 해석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론이 유효하고 통용되었다는 것은 함의하는 바가 있다. 법실증주의보다 자연법이 법의 공백 또는 법의 불비 사안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당시 소위 비문명국과 체결한 조약의 유효성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진다. 당시 확장하는 국제 사회 현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법리 공존 속에서 당시 국제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먼저, 법체계 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pacta sunt servanda* 공리만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이 공리는 자연법적 기초와 무관하지 않다. 특정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조약법 체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 특정 체계 내에서 유효인지 무효인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유추(Private Law Analogy)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정 법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는 아예 권리능력이 없는 상황이 된다.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아예 조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비문명국을 미성년자와 같이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여 행위능력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그 법체계 내에서 강박에 의한 조약 및 행위능력 결함자와의 취소 사유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물론, 당시 제국주의자들은 이 사안이 권리능력인지 행위능력인지 명확하게 하지도 않았다.

만일, 법실증주의적 시각에 따라 비보편주의를 취하여, 조약법 체계 밖에 체결된 조약이라고 한다면, 이는 조약법에 따라 해당 조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질 수 없는 ‘정치적 합의’가 된다. 즉, 이론적으로 법적 합의가 아니고 비법적 합의 사안이 된다. 이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조약법 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문명론적 사고에 기초한 법실증주의적 접근을 취했을 때, 이 사안은 유럽 국가 간의 국제법 체계 밖에서 발생한 사안이 된다. 물론, 당시 국제 사회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리적 문제를 심도 있게 구분하

여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조약이 법적으로 유효라고 주장하려면, 이때는 자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연법이라는 법적 토대에서 조약이 성립한 것이다. 나아가 자연법에 따라 유효인지 무효인지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자연법적 보편주의를 전제로 해야, 다른 문명권 국가와 체결되었을 때 조약의 성립 및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 하자가 많았던 비문명국과의 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한다. 해당 국제법 체계를 비문명국에게도 다 적용하여 그 안에서 법리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법리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조약이 그 법체계상 유효라면 그 법체계 안에서 하자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해당 조약이 그 법체계 밖이라도 유효하다면, 자연법에 따라 자연이성으로 그 조약의 하자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이 둘 다 아니라면, 아예 관할권 밖의 사안으로 법적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즉,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 조약은 법적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절차적, 형식적 하자가 있고 강박에 의해 체결된 정치적 합의라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조약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 무엇으로 취급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을사조약을 논할 때에는 이러한 난제를 선행해서 해소해야 한다. 당시 제국주의적 국제법 체계의 모순과 한계를 간과한 채 마치 정상적인 법체계하에서 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참고문헌

### 자료

- Factory at Chorzów*, Judgment No. 13, 1928, P.C.I.J., Series A, No. 17, 29.  
*Selective Draft Law Cases*, 245 U.S. 366, 368(1918).  
*S. S. Lotus (France v Turkey)*, PCIJ Series A, No. 10, 4(1927).  
*The Paquete Habana*, 175 U.S. 677, 700(1900).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169 U.S. 649, 708(1898).

### 단행본

- 권태억, 2014,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명화: 1904-1919』,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Alexandrowicz, Charles Henry, 1967,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 in the East Indies: 16th, 17th and 18th centuries*, Oxford: Clarendon Press.
- Anghie, Anthony, 2007, *Imperialism, Sovereignty and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untschli, J. C., 1872,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 Nördlingen: Druck und Verlag der C. H. Beck'schen Buchhandlung.
- Duiker, William J., and Jackson J. Spielvogel, 2012, *World History*,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 Giddens, Anthony, 1974, *Positivism and Sociology*, London: Heinemann.
- Grewe, Wilhelm G., 2000, *The Epochs of International Law*, Michael Byers(trans.), New York: Walter de Gruyter.
- Grotius, Hugo, 2012, *On the Law of War and Peace*, Stephen C. Neff(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 William Edward, 1904,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5th edn., Oxford:

- Clarendon Press.
- Halleck, H. W., 1885,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nd Laws of War*,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 Koskenniemi, Martti, 2002,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rrain, Jorge, 1979, *The Concept of Ideology*, London: Hutchinson.
- Lawrence, Thomas Joseph, 1895, 1910,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Boston, New York, Chicago: D. C. Heath & Co., Publishers.
- Levi, Leone, 1888, *International Law*,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 Lindley, M. F., 1926, *The Acquisition and Government of Backward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Ltd.
- Lorimer, James, 1888, *The Institutes of the Law of Nations*, Vol. I, Edinburgh and London: William Blackwood and Sons.
- Neff, Stephen C., 2014, *Justice Among Nations: A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ppenheim, Lassa, 1905,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1, 1st ed.,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 \_\_\_\_\_, Lassa, 1912, *International Law*, Vol. I, 2nd ed.,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 Phillipson, Coleman, 1916,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Fifth English Edition, London: Stevens and Sons, Limited, 119 & 120, Chancery Lane.
- Smith, F. E., 1911,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J. M. Dent & Sons, Ltd.
- Vattel, Emer de, 2008, *The Law of Nations*, Indianapolis: Liberty Fund.
- Wheaton, Henry, 1866,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James Brown Scott (ed.), The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Washingt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_\_\_\_\_, 1878,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 C. Boyd, ed., London: Stevens & Sons.
- Woolsey, 1891, Theodore Salisbur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논문

박배근, 2009,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2호, 91~118쪽.

박영준, 2014, 「청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외전략과 군사정책: ‘근대화우선론’과 ‘대륙팽창론’의 상호대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6집 제1호, 99~137쪽.

이태진, 2009.6.22, 「1905년 보호조약의 불법성-그 은폐의 늪」,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

Anghie, Antony, 1999, “Finding the Peripheries: Sovereignty and Colonialism in Nineteenth-Century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0, pp. 1~80.

Bairoch, Paul, 1972, “Free trade and Europea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th century”,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 issue 3, pp. 211~245.

Baty, Thomas, 1921~1922, “Protectorates and Mandates”,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 pp. 109~121.

Bedeski, Robert E., 1990, “Japan: Diplomacy of a Developmental State”,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Vol. XXV, no. 1-2, pp. 60~70.

Bowden, Brett, 2005, “The Colonial Origins of International Law. European Expansion and the Classical Standard of Civiliz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7, No. 1, pp. 1~23.

Cavallar, Georg, 2008, “Vitoria, Grotius, Pufendorf, Wolff and Vattel: Accomplices of European Colonialism and Exploitation or True Cosmopolitans”,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10, pp. 181~209.

Cutler, A. Claire, 2001, “Critical reflections on the Westphalian assump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 a crisis of legitimac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7, issue 2, pp. 133~150.

Hall, Stephen, 2001, “The Persistent Spectre: Natural Law, International Order



- and the Limits of Legal Positivism”,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No. 2, pp. 269~307.
- Kammerhofer, Jörg, 2021, “International Legal Positivist Research Methods”, *Research Methods in International Law*, Edward Elgar Publishing, pp. 95~110.
- Keene, Edward, 2012, “The Treaty-Making Revolution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34, No. 3, pp. 475~500.
- Kennedy, David, 1997, “International Law and the Nineteenth Century: History of an Illusion”, *Quinnipiac Law Review*, Vol. 17, pp. 99~136.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Nye, 2000, “Globalization: What’s New? What’s Not? (And So What?)”, *Foreign Policy*, no. 118, pp. 104~119.
- Lesaffer, Randal, 2002, “The Grotian Tradition Revisited: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73, pp. 103~139.
- \_\_\_\_\_, 2018, “Treaties with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n Michael J. Bowman and Dino Kritsiotis(eds.), *Conceptu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on the Modern Law of Trea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3~76.
- Lorca, Arnulf Becker, 2010, “Universal International Law: Nineteenth-century Histories of Imposition and Appropriation”,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51, pp. 475~552.
- Miller, Robert J., and Olivia Stitz, 2021, “The International Law of Colonialism in East Africa: Germany, England, and the Doctrine of Discovery”,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Vol. 32, No. 2, pp. 1~59.
- Morgenthau, Hans J., 1940, “Positivism,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4, pp. 260~284.
- Oppenheim, Lassa, 1908, “The Science of International Law: Its Task and Method”,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 pp. 313~356.
- Orakhelashvili, Alexander, 2006, “The Idea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pp. 315~347.

- Peters, Anne, 2018, "Treaties, Unequal", *Max Planck Encyclopedia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Article last updated: Feb. 2018).
- Reeves, Jesse S., 1909, "The Origin of the Congo Free State, Considered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 No. 1, pp. 99~118.
- Richardson, Brian, 2012, "The Use of Vattel in the American Law of Na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6, No. 3, pp. 547~571.
- Scharff, Robert C., *Comte after Positiv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Stirk, Peter M. R., 2012, "The Westphalian model and sovereign equal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8, pp. 641~660.
- Vitoria, Francisco de, 1991, "On the American Indians", in *Vitoria: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1~292.
- Zhifeng, Jiang, 2022, "Pacta Sunt Servanda and Empir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volution, Invocation, and Application of an International Law Axiom",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3, pp. 651~706.

## 조약과 제국주의

— 19세기 말 국제법 체계의 이론적 한계와 모순을 중심으로 —

오시진

이 글은 을사조약 등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체계의 기초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해석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이 조약 체결 과정의 절차적·형식적 하자에 주목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당시 국제법 체계 자체의 이론적 한계와 모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이 글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법실증주의와 문명론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비문명국에 대한 국제법 적용은 배제하면서도 그들과의 조약은 국가 간 합의(동의)라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 자주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사실 당시 국제법 체계는 법실증주의 및 문명론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국제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한다면, ‘비문명국’과의 조약이 유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인지, 아니면 단지 정치적 합의인지라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제법 체계에서 배제된 비문명국과의 조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일 수 있다. 사실 당시 법실증주의 사조는 법리적인 한계를 직면하고 있었다. 오스틴

(Austin)이 국제법이 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한 법리적 대응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당시에 자연법적 사고가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외교 실무에서는 바텔(Vattel)의 자연법적 사고가 더 우세했다는 언급도 있다. 당시 주요 저서를 확인해보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도 자연법은 통용되는 법적 사고였다. 즉, 당시에도 자연법적 사고가 여전히 유효하게 공존하고 있었음을 다양한 국제법 저서와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제법이 법실증주의에 따라 국가의 의사(동의)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이성에 기초한 정의의 원칙에도 의존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19세기 말 국제법 체계를 단순히 법실증주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시의 복잡한 법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므로 불평등 조약의 법적 유효성을 재고할 새로운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비문명국과 체결된 조약의 법적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국제법 체계의 보편적 적용, 또는 ② 자연법적 보편주의 수용, 또는 ③ 법적 판단 유보 후 정치적 합의로 간주하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을사조약을 논할 때에는 이러한 난제를 선행해서 해소해야 한다. 당시 제국주의적 국제법 체계의 모순과 한계를 간과한 채 마치 정상적인 법체계하에서 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제어:** 조약, 무효, 제국주의, 법실증주의 문명론

## ABSTRACT

# Treaties and Imperialism: Focusing on the Theoretical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of the Late Nineteenth-Century International Legal System

Oh Sijin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legal framework that recognized the validity of unequal treaties concluded during the imperialist era of the late 19th century, such as the Eulsa Treaty, presenting a perspective distinct from existing interpreta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procedural and formal defects in the treaty-making process, this research centers on the theoretical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inherent 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tself at that time. This study points out the logical flaws in the then-dominant legal positivism and civilizational theory, demonstrating that the argument claiming treaties with non-civilized nations are valid solely because they represent inter-state agreement (consent), while simultaneously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those nations, cannot hold. Although not frequently mentioned,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of the time contained aspects that could not be explained solely by legal positivism and the theory of civilization. Limiting the scope of international law's application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are treaties with 'uncivilized nations' legally binding agreements, or merely political agreements? Arguing that treaties with uncivilized nations excluded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are valid could be a legal contradiction. In truth, the legal positivist trend of the time faced legal limitations. It could not be said that the legal response to Austin's claim that international law was not law was sufficient. That said, natural law thinking did not entirely disappear at that time. Rather, there are mentions that Vattel's natural law thinking was more dominant in diplomatic practice. Reviewing major works of the period confirms that natural law remained a prevalent legal concept throughout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Various international law texts and cases demonstrate that natural law thinking coexisted effectively during this time. This indicates international law relied not solely on state consent (consensus) as posited by legal positivism, but also on principles of justice grounded in natural reason. In conclusion, explaining the late 19th-century international legal system solely through legal positivism oversimplifies the complex legal principles of the time. This paper aims to present new theoretical arguments for reconsidering the legal validity of unequal treaties. Ultimately, to argue for the legal validity of treaties concluded with uncivilized nations, one must choose one of three options: ① the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② the acceptance of

natural law universalism, or ③ considering them as political agreements after reserving legal judgment.

**Keywords:** Treaty, Invalidity, Imperialism, Legal Positivism, Standard of Civilization

# 민국 초, 강항호와 중국사회당 연구

조대호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강항호의 사상 형성
- III. 중국사회당의 성립과 운영
- IV. 활동과 해산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머리말

20세기 초, 중국은 제국주의의 침탈과 내적 위기로 인해 정치·사상적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1911년 신해혁명 이후 공화정이 수립되었지만, 곧 이어 군벌의 할거와 사회 혼란이 지속되면서,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사상, 특히 자유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등이 지식인과 청년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각종 사상적 실험과 조직적 시도가 뒤따랐고, 그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중국사회당(中國社會黨)이다. 이 정당은 스스로를 사회주의를 창도하는 정치 조직이라 자임하면서 등장했으며, 중국에서 최초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단체이자, ‘당(黨)’이라는 명칭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사용한 정당 형태 조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1</sup> 특히 1921년 진독수(陳獨秀) 주도로 상해에서 결성된 중국공산당(中國共產黨)과 비교할 때, 중국사회당의 출현은 약 10여 년 앞선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선도성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중국사회당이라는 명칭 속에 포함된 ‘사회’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사회주의(Socialism)’를 연상하게 하며, 본 단체가 일정한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당시 중국사회당이 규정한 ‘사회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혹은 레닌주의적 프롤레타리아 독재론과는 명확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사회당이 실현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이상과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창당 강령과 이념적 기초, 그리고 실제 활동 과정에서 남긴 다양한 문헌 자료를 면밀히 검토

---

\* 투고: 2025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6일, 재심사 완료: 2025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8일

1 懷霜:「中國果有黨爭乎?」,『天鐸報』, 1912.3.13.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사회당을 창립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글의 주인공이자 중국 사회당을 조직한 ‘강항호’는 일찍이 일본 유학을 통해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가타야마 센(片山潛) 등과 같은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접촉하면서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를 신봉하였다. 당시 다른 혁명가나 사상가들에 비한다면 대단히 진보적인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10월 혁명 이후 세워지는 소비에트 러시아로 부터 관심을 받았을 뿐더러 레닌과 트로츠키 등의 소비에트 러시아 주요 인사와도 접견한 바 있다. 새로운 사상에 남들보다 앞선 그의 움직임은 초기 중국의 공산주의 주요 지도자들에게 사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모택동(毛澤東)은 제2국제(第二國際)의 산하 단체 성격을 지닌 강항호의 중국사회당을 회고하였으며<sup>2</sup> 이대조(李大釗)는 실제로 중국사회당 내 지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sup>3</sup> 이는 단순히 그가 사상적으로 사회주의에 가까워서가 아니라 중국사회당을 조직 및 운영한 경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여러 정치 지도자와도 실질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강항호는民国 초 중국의 혁명가 및 사상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사상은 당시 중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기에 일정한 파급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도했던 중국사회당은 오늘날 중국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연구 주제로 남아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강항호의 사회주의적 진정성 여부나 후일의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천착하여, 주로 중국사회당의 몰락 원인이나 초기 사상 전파자로서의 공과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다.<sup>4</sup> 이러한 이유로 양안(兩岸) 학계 내에서 그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평가

2 毛澤東：「同音樂工作者的談話」(1956年8月)，『人民日報』，1979.9.9.

3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董寶瑞，2004，「李大釗參加中國社會黨揭祕」，『黨史博探』11.

4 曾業英，1980，「民元前後的江亢虎和中國社會黨」，『歷史研究』6；周海樂，1989，「江亢虎和中國社會黨」，『江西社會科學』1；沈駿，1989，「江亢虎의社會主義與中國社會黨」，『華中師範大學學報』2；夏四清，1993，「1911-1913年中

가 장기간 회피되거나 제한되어왔었다. 더불어 중국공산당의 창당과 역사적 정당성을 부각하는 공식 역사 서술 속에서, 중국사회당과 같은 보다 이른 시기의 진보적 단체들은 의도적으로 축소된 측면이 있다. 이 밖에도 중국사회당과 관련된 당안(黨案) 자료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발굴·정리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학술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sup>5</sup>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강항호 개인과 중국사회당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사상적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사료 발굴과 분석이 요구된다. 한국 학계의 경우 조세현의 선행 연구가 존재하나<sup>6</sup> 주로 강항호의 사상적 모순과 당의 정치적 몰락과정, 당내 사상적 파벌 투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당이 전개했던 여성·교육·노동 등 구체적인 사회 운동의 양상과 그 실천적 의미를 조명하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존의 이념적 잣대를 거두고, 강항호 개인과 중국사회당의 구체적인 활동 현장, 그리고 실제 전개된 사회적 실천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 II. 강항호의 사상 형성

중국사회당을 조직한 강항호(江亢虎, 이명: 紹銓)는 1883년 강서성 익양현(弋陽縣)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전형적인 사대부 출신 관료 가문에서 성장하였으며,

---

國社會黨述論』, 『深圳大學學報』 4; 張勝, 2001, 「“嘔鳴學舍”和中國社會黨」, 『益陽師專學報』 5.

5 최근汪佩偉에 의해 강항호와 관련한 여러 문서를 묶어 엮은 『江亢虎卷』이 발간되었다. 汪佩偉, 2015, 『江亢虎卷』,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6 조세현, 2001, 「중국사회당 연구(1911-1913)이념-조직 및 활동의 복합성과 몰락 원인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15; 조세현, 2003, 「民國初 中國社會黨의 정치사상 -世界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無政府主義 파벌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49.

조부는 일찍이 향시에 급제하여 진사(進士)가 되었고, 한림원에서 편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친 또한 진사로, 문학과 회화(繪畫)에 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유교적 집안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강항호는 전통적 봉건 질서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였으며, 부친으로부터 총명하고 탐구적인 기질을 물려받았다. 그는 유년기에 이미 고문(古文)을 떼고, 네 살 무렵 부친을 따라 북경으로 이주하였다. 서방 제국주의의 침략 속에 민족적 위기를 절감한 그는 애국심을 품게 되었고, 그 마음은 학문과 실천으로 이어졌다. 동문서원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국제 정세에 눈을 뜬 그는 이후 세 차례 일본 유학을 통해 사상과 지식의 지평을 넓혀갔다.

초기 강항호의 사상 형성의 출발점은 애국심에 기초하였다. 평소 그가 지니고 있던 국가관은 북경에서 발간된 『애국보(愛國報)』에 게재된 그의 글 「애국보서목(愛國報敘目)」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7</sup> 이 글에서 그는 당시 중국인들이 국가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중국인은 국가라는 관념에 대해 사유가 박약하고, 오로지 자신의 일신만 따지려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사랑의 범위를 자기 자신(自己)-가정(家)-족속(族)-고향(鄉)-읍락(邑)에 한정할 뿐, 그 이상으로는 확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국가가 존립해야만 비로소 지역도, 가정도, 개인도 존재할 수 있다”고 토로하며, 국가의 존재가 모든 사회적 단위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전제임을 강조하였다. 강항호는 중국인들이 전통적인 유교 윤리 체계 속에서 충효(忠孝)의 도리를 중시하면서도 정작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충성심이나 존재 이유에 대한 자각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단순히 유교적 가족 윤리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자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였다. 「애국보서목」은 단순한 시론(時論)을 넘어, 강항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

7 江亢虎, 「愛國報敘目」, 『愛國報』(1901年), 汪佩偉, 2015, 위의 책, 9쪽.

한 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글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근대 국가론에 입각하여 새롭게 설정해 중국 사회 및 지식계에 경종을 울린 셈이며, 이후 그가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실천적 행동에 나서게 되는 사상적 출발점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강항호는 서구의 충격에 여느 중국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국가관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여기에 대응하였다. 또한 다른 지식인들에 비해 유학하는 기간 동안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일본 유학은 강항호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학 당시 명치유신(明治維新)으로 일본이 변혁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면서 청 말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무정부주의 및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이때 강항호는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삼무주의(三無主義)’ 사상의 체계가 망아로서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는 자신의 호를 따 만든 『홍수집(洪水集)』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sup>8</sup>

인간 삶의 본질을 관찰하고 사유한 결과, 인간 존재는 궁극적으로 이익 추구의 심리,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락(安樂)에 대한 열망에서 출발한다. 즐거움(樂)은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과 수단 그리고 목적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락의 추구는 단순한 욕망 충족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의 기원을 규명하고 제거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수반한다.

여기서 강항호는 인간 존재가 안락을 지향하는 본성을 지녔음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은 안락함을 얻기 위해 우선적으로 불안의 근원을 찾아 제거하려는 경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인간을 불안과 고통 속에 놓이게 만드는 근본적 제도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는 종교, 국가, 가정이라는 세 가지 제도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억압적 체계를 이루고

8 江亢虎, 1911.7, 「三無主義縣論(上篇)」, 汪佩偉, 2015, 위의 책, 93~98쪽.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고통을 야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 요인은 종교와 국가 그리고 가정이 인간을 괴롭힌다며 첫째, 종교가 존재하기에 국가가 생기고, 둘째, 국가가 존재하기에 고통이 발생하며, 셋째, 가정이 존재하기에 또 다른 억압과 고통이 파생된다고 주장하였다.

강항호에 따르면, 인간이 안락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작동하는 억압적 구조에 기인한다. 그는 종교가 다수 대중의 심리에 미신적 신앙과 비합리적 사고를 이식함으로써, 민중의 비판적 사유를 마비시키며, 나아가 부패한 지식인 집단이 이러한 종교 권위를 악용하여 대중을 기만하고 착취한다고 주장한다. 종교는 결국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과 사유를 억압하고, 맹목적 복종과 위계 질서를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 제도로 강항호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는 군주제를 비롯한 모든 정치 체제가 절대 권력의 정당화를 추구하며, 통치자의 사적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략했다고 보았다. 특히 국가 간의 전쟁은 민중에게 막대한 고통을 전가하는 비인도적 행위이며, 그것은 결국 국가라는 허구적 구조가 정당화한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하였다. 가정 역시 자유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비판 대상이 된다. 강항호는 가정이 단지 국가의 축소판에 불과하며,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전통적 윤리 규범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층을 종속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강항호는 진정한 안락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교, 국가, 가정이라는 세 제도적 억압 구조의 해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종교가 사라져야 국가가 해체되고, 국가가 해체되어야 가정이 무너진다. 따라서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으며, 가정도 없는 상태가 바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은 강항호가 단순한 사상을 넘어, 무정부주의적 사유를 기반으로 당시 중국 사회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전개했던 선구적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학 시기 강항호는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일본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고토쿠 슈스이, 가타야마 센 등과 교류하였고, 이들

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사상적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해나갔다. 때마침 두 인물이 각기 평민사(1903)와 사회민주당(1901)을 조직했는데 향후 강항호가 중국 사회당을 건립할 때 두 단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당시 고토쿠 슈스이를 통해 독일사회민주당과 제2국제주의 지도자의 저서인 『부녀화사회주의(婦女和社會主義)』를 읽게 되면서 부녀와 가정 문제를 연구할 것을 결심하기도 하였다.<sup>9</sup> 일본 체류 기간 동안 강항호는 일본어 외에도 영어와 프랑스어를 습득하며, 유럽 사회사상 및 계몽주의 이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축하였다. 이는 강항호로 하여금 스스로를 계몽함과 동시에, 중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시기 그의 언행을 비추어보면, 그를 무정부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로 선불리 단정짓기란 매우 어려웠다. 그는 스스로를 “나는 사회주의를 믿고 있으나 대단히 무정부주의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정부주의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를 소개한 장본인 중 한 명인데, 그 주장은 무종교, 무국가, 무가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sup>10</sup>는 발언한 것으로 보아 두 이념을 모두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한 주의를 완전히 신봉하거나 그렇다고 부정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다만 구주(歐洲)순행 유학을 끝마친 이후, 자신은 “극력으로 사회주의를 제창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유일한 신앙으로 삼고 사회주의를 창도(倡道)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한다”고 선언하였다.<sup>11</sup> 이 기점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입장은 더욱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훗날 중국사회당 조직에 강항호의 삼무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는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다.

9 江亢虎, 1913, 『洪水集』, 上海: 上海印行, 15~17쪽.

10 江亢虎, 「愛國報敘目」, 『愛國報』(1901年), 汪佩偉, 2015, 앞의 책, 223쪽.

11 江亢虎, 1913, 앞의 책, 21, 37쪽.

### III. 중국사회당의 성립과 운영

구주유학에서 돌아온 강항호가 고국으로 돌아와 착수한 가장 첫 번째 사업은 중국사회당의 초기 형태인 ‘개인회(個人會)’를 조직한 것이다. 당시 신해혁명으로 중국 전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각지 군벌들은 조직이나 단체의 정치활동에 제한을 두었다. 그래서 무리나 집단 등을 의미할 수 있는 ‘당’이라는 단어를 가진 단체를 출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맥락 아래 강항호는 선불리 정치 단체를 조직할 수 없었다. 다만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단체이고 개인은 사회의 분자와 같으며 이름이 단순히 다르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개인회’를 창건하였다.<sup>12</sup> 개인회의 강령은 “생계는 독립적으로 꾸려야 한다”는 것을 내세워, “부자(父子)가 재산이 달라도 서로 의지하지 않고, 형제나 부부도 각자 생계를 꾸려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삼무주의의 하나 가운데 ‘무가정(無家庭)’을 기초로 한 것으로 혈연은 천륜이지만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지어 놓으며 가정보다는 구성원 개인을 중시하였다. 즉, 어떠한 혈연이든 친분이든 집단과 개인을 철저히 분리하였던 것이다. 또한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추진해 출신에 관계없이 함께 공부하고 평가받으며, 유산 상속을 폐지하고 공공재산으로 인재를 양성해,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경쟁하는 대동 사회를 지향하였다.<sup>13</sup> 이 밖에도 강항호는 『묵자』의 「經上」에서 ‘稱名異而取義同也’ 구절을 인용하여 묵가 사상과 사회주의를 연결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항호가 개인회를 운영하고 남경에 체류하는 동안 주력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은 사회주의를 실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교육의 필요성과 부녀해방문제를 내세워 많은 이들로부터 찬동을 이끌어냈다. 그는 ‘강연’의 방식을 통해 먼저 교육의 중요성과 부녀해방문제를 가지고

12 江亢虎, 1913, 위의 책, 6쪽.

13 江亢虎, 1911, 「擬發起個人會意見書(1911年4月)」, 汪佩偉, 2015, 앞의 책, 58쪽.



자연스레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연결하였다. 대표적으로 항저우여학연합회(杭州女學聯合會)가 개최한 대회에서 「사회주의여학자관계(社會主義與女學之關係)」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설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sup>14</sup> 이 연설은 중국 국내에서 최초로 사회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용의 핵심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강항호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사회주의와 여자 교육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여성 교육의 평등과 가정 제도의 개혁을 강조하며 교육 평등이 사회주의의 기초라고 보고 있다. 특히 여성이 독립적 개인으로 서야만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교육을 받고 무지함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독립해야만 진정한 해방에 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가부장적 가정 제도는 여성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므로, 남녀가 동일하게 교육받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강항호의 연설은 당국의 검열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당국으로부터 항저우에서 추방당해 상해로 건너와 상해 장원(張園)에서 1911년 7월 ‘사회주의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사회주의 연구회는 일본에서 1898년 창립된 단체와 이름도 완전히 같은데 이는 그가 일본 유학 중 이 연구회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똑같이 상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조직한 의도를 알 수 있다.<sup>15</sup> 또한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를 공부한다는 것을 종지로 삼아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은 서방의 학설을 소개하고, 옛 사람(古人)들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근대의 담론과 교류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아 이치에 맞는 논리적인 방법을 창안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sup>16</sup>

강항호는 「사회주의연구회선언(社會主義研究會宣言)」에서 자신이 이해한

14 江亢虎, 1911, 「社會主義與女學之關係(1911年6月)」, 汪佩偉, 2015, 위의 책, 70쪽.

15 사회주의연구회보다 한 달 일찍 창간되었지만 후에 연구회가 조직된 이후 기관지로 편입되었다.

16 江亢虎, 1911, 「《社會星》發刊詞(1911年7月)」, 汪佩偉, 2015, 앞의 책, 79~82쪽.

사회주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밝고 정당한 이념이며, 은밀하고 어두운 이념이 아니고, 평화롭고 행복을 지향하는 이념이다. 또한 사회주의는 격렬하고 위험한 이념이 아니며, 건설적인 이념이지 파괴적인 이념이 아니다. 만약 당파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피를 흘리며 다투고, 민족 간에 혁명을 일으키며, 국가 간 전쟁을 벌이고, 종교 집단 간에 원한으로 살육을 일삼는다면, 이는 모두 사회주의가 지향하거나 받아들이는 바가 아니다.”<sup>17</sup>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항호가 무정부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견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일부 무정부주의자들이 택했던 폭력, 암살, 혁명과 같은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수단을 통한 사회 전복이나 전체 체제의 부정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그는 무정부주의의 핵심 이념인 개인의 자유와 자율, 권위의 거부를 지지하면서도, 그것이 파괴와 혼란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항호의 사상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이상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파괴적 혁명이나 계급 간 투쟁을 통한 강제적 변화가 아닌, 정의롭고 평화로운 방식의 점진적인 사회 개혁과 건설을 지향하였다. 이런 점에서 강항호는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그 극단성과 폭력성을 배제한, 보다 윤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윽고 1911년 11월 5일,<sup>18</sup> 사회주의 연구회 발기인들이 공동의 이름으로 특별회를 소집하여 사회주의 연구회를 ‘사회당’으로 개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당의 개조 취지는 사회주의가 구미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던 시기에, 중국사회당이 중국에서 최초의 당 조직이자 유일한 사회주의 단체로서의 위상을 자임하는 데 있었다. 또한 당원은 남녀나 국경, 종족, 종교 등을 막론하며 임시적으로 상해에 본부를 두고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여 규장을 검열하고 공동의

17 「社會主義研究會開會宣言」, 『社會星』第2號.

18 개조일은 자료에 따라 ±1개월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뜻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사회당은 400여 개의 지부(支部)를 가지고 있었는데<sup>19</sup> 예를 들면 상해, 북경, 천진, 소주(蘇州), 성택(盛澤), 남창(南昌), 소흥(紹興), 중경(重慶), 장가구(張家口), 광주(廣州) 등지에 설치되어 있었다. 지부의 역할은 지방에 사회주의를 전파함과 동시에 중국사회당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보편 교육을 위해 학교나 야학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탁아소를 건립하여 영유아들을 키워주고 노동자들을 불러 모아 지방에서도 노조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러한 초동의 움직임은 오늘날 정당의 지역위원회 등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 단지 지방에서 당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계몽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으로는 중국사회당이 손중산에 대한 지지가 있었던 것인데 이는 당수(黨首) 강항호와 손중산 둘 사이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강항호만큼이나 손중산도 스스로를 완전한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바 있고 그의 삼민주의에서의 ‘지권 평등(地權平等)’은 사회주의와도 일부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손중산의 명망은 이미 중국 국내나 국외에서 중국혁명의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아마도 강항호는 손중산의 명망을 등에 업어 중국사회당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을 것이다. 물론 강항호도 그동안 여러 활동을 통해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손중산도 구미에서 새로 출판한 사회주의 명작 『사회주의개론(社會主義概論)』, 『사회주의지이론여실행(社會主義之理論與實行)』, 『사회주의발달사(社會主義發達史)』, 『지세원론(地稅原論)』을 강항호에게 준 것으로 보아<sup>20</sup> 두 사람 사이 일정 수준의 공감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사회당의 활동은 ① 잡지, 신문, 홍보물 등을 발행하며(發行雜誌, 新聞, 傳單, 小冊), ② 평상시 혹은 임시적 성격의 강연회를 개최하고(平時或臨時開講

19 江亢虎, 1911, 「中國社會黨宣告(1911年11月)」, 汪佩偉, 2015, 앞의 책, 115~116쪽.

20 孫中山, 1911, 「與江亢虎的談話」(1911年12月30日), 孫中山, 1981, 『孫中山全集(第一卷)』(1911), 北京: 中華書局, 579~580쪽.

演會), ③ 사회주의 연구회와 전습소를 조직하며(開社會主義研究會及傳習所), ④ 사회주의를 대중에게 고취시키고(流動鼓吹社會主義), ⑤ 각국 사회당과 연락하여 세계사회당 대회에 가입하는 것(交通各國社會黨加入世界社會黨大會)(즉, 제2국제)이었다. 이 밖에도 일반 대중들을 향한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자신 사업을 매우 중시하였다.<sup>21</sup> 입당 직후에는 정해진 당비는 없지만 수입의 절반을 내야 하며 매년 기금을 받고 있는데 당원은 여기에 자유롭게 일정 금액을 낼 수 있다. 당의 조직 체계로는 각부 사무(事務)는 간사 1인이 담당하는데 본부(本部) 주임 간사는 연합회 각부(部) 대표에 의해 선출되며 대표는 전(全)당 각부의 책임을 지며 임기는 1년이다. 각 지부 주임간사는 각부 당원에 의한 보통선거로 이루어지며 각부 주임간사는 서기, 회계 및 서무 담당 간사들, 그리고 편집과 강연을 담당하는 전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각부 간사의 숫자나 권한, 임기, 월급과 공비(公費)는 해당하는 부가 결정한다.<sup>22</sup>

당원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나 논문에서 밝힌 숫자가 각기 달라 특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보(申報)』에 따르면, “성립 직후 20일 만에 당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으며 40일이 되었을 때 당원은 이미 200여 명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다.<sup>23</sup> 이 밖에 원세개로부터 해산 명령이 떨어지기 불과 2년 만에 당원 40만 가운데 20~30명만 남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24</sup> 중국 전(全) 지역을 대상으로 계산했을 때 상당한 숫자의 당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레닌주의 정당과 같이 철의 규율이라든지 반드시 복종해야 할 성격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매우 자유로웠다. 당원의 성분은 절대 다수가 교학(敎學)과 관련한 업종이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상업에 종사하는

21 「中國社會黨規章(1911年11月1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1981, 『中國無政府主義和中國社會黨』, 南京: 江蘇出版社, 173쪽.

22 「中國社會黨規章(1911年11月1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1981, 위의 책, 174쪽.

23 『申報』, 1911.12.16.

24 周海樂, 1989, 「江亢虎和中國社會黨」, 『江西社會科學』 1, 143쪽; 「大總統結算中國社會黨令(1913年8月7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1981, 앞의 책, 205쪽.

이들이 많았다.<sup>25</sup>

당의 당강(黨綱)은 총 8조로 50여 명의 동의를 통해 명문화할 수 있었다. 당강은 아래와 같다.

- ① 연방공화(聯邦共和)
- ② 융합종계(融合種界)
- ③ 법률개혁과 개인 존중(改良法律, 尊重個人)
- ④ 생산제도 타파(破除產生制度)
- ⑦ 공공기관 조직과 보편교육의 장려(組織公共機關, 普及平民教育)
- ⑧ 직접적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의 진흥과 노동자 장려(振興直接生利之事業, 獎勵勞動家)
- ⑨ 모든 잡세 폐지, 모든 세금은 토지세로 통일(專征地稅)
- ⑩ 군비 제한 및 군대를 국가 방위 외의 경쟁에 불허(限制軍備, 並力軍備以外之競爭)

당강의 핵심 조항들을 중심으로 중국사회당의 이념과 지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조에서는 공화정을 찬동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봉건 왕조를 전복시킨 혁명을 지지함으로써, 중국사회당이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거부하고 개혁적 성격을 지닌 세력임을 드러낸다. 제2조는 중국사회당의 기본 이념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이 조항에서는 국가와 민족 간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류는 구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보편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세계 시민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제3조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봉건왕조 시기, 국가, 사회, 가정 등의 전통적 관념과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왔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치를 통한 자유의 보장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법적

---

25 『社會世界』第4期, 1912年7月15日.

질서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4조에서는 토지 문제 및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당의 입장이 나타난다. 계급 간 경제적 격차는 세습 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며, 잔여 재산은 공공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생산과 경영의 자율성 보장은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이는 재산의 공동 소유와 자율적 경제 운영이라는 두 가치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제5조는 교육의 기회 평등에 중점을 둔다. 모든 이가 보편교육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교육의 평등은 사회 전반의 평등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이 조항은 교육을 통한 계몽과 사회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내포한다. 제6조에서는 중국사회당은 노동에 대한 사회당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 자체를 신성한 가치로 규정하며, 노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은 개인의 사적 이득을 넘어 사회 전체에 환원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노동의 집단적 성격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반영이다. 끝으로, 제8조는 군비 축소와 전쟁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중국사회당은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폭력, 암살, 전쟁 등 인류에게 재난이 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이는 무정부주의 내부에서도 비폭력주의적 성향을 표방함으로써 이상주의적 평화관을 드러내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당강을 비롯한 중국사회당의 조직 형태나 규율 등은 각국 사회당의 규장(規章)을 참고하여 중국의 현 풍토에 맞게 수정하였다.

#### IV. 활동과 해산

중국사회당은 강항호의 의중에 따라 교육과 계몽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에 주력하였다. 그는 무지와 억압 속에 살아가는 대중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하며 특히 봉건적 관습의 잔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비판했으며, 여성 해방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또한 각 지역의 당 지부에서는 강연회를 열고, 계몽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대중 교육 활

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중국사회당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첫째, ‘여성해방’이다. 강항호는 남녀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여성 또한 반드시 참정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자와 남자는 동일한 존재이며, 세상 속의 하나의 완전한 개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세상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여성 역시 마땅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찍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며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여학 전습소(女學傳習所)’를 설립하여 여성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충고녀 동포(忠告女同胞)」를 발표하여,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여전히 가정의 울타리에 묶여 ‘자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 또한 지식을 갖추고 학문을 논할 수 있으며, 여성의 권리를 확립해야 비로소 인류 문명이 완전(完全)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sup>26</sup> 이와 같은 강항호의 인식은 중국사회당 내부 여자 당원에 대한 규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당 자체가 여성 당원의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장려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사회당의 이름으로 손중산과 원세개에게 여성의 참정권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여성의 권리 신장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sup>27</sup>

둘째, ‘평민 교육’의 보급이다. 여기서 평민 교육이란 오늘날 보편 교육 혹은 의무 교육과 같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는 취지를 의미한다. 강항호는 일찍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원세개로부터 신임을 받아 교육개혁을 직접 지휘한 바 있다.<sup>28</sup> 이때 단지 학제의 개편이나 봉건교육 관리체계 등에 대한 혁신뿐만 아니라 과거를 폐지하고 교육을 보급

26 江亢虎, 1911, 「忠告女同胞文(1911年4月)」, 汪佩偉, 2015, 앞의 책, 59~60쪽.

27 曾業英, 1980, 「民元前後的江亢虎和中國社會黨」, 『歷史研究』 6, 51쪽.

28 江亢虎, 1901, 「與袁慰廷書」(1901年), 「請各省設視學官議」(1904年), 汪佩偉, 2015, 앞의 책, 12, 18쪽.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다. 이러한 강항호의 생각은 중국사회당의 평민교육에 대한 입장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중국사회당은 ‘평민학교’를 건립하여 보편 교육을 확대하는데 이때 주로 겨냥한 계층은 빈곤한 가정 내 고통받고 있는 남녀 어린아이였다. 또한 각지에 평민학교를 세워 가난한 학생들을 교육하며 교육비를 따로 받지 않고 옷이나 서적 그리고 문구 등과 같이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당시 설치된 평민학교의 숫자는 100여 소에 달했고 북경, 남경, 양주(揚州), 소주 등에 설치되었으며 학생의 숫자도 200~300여 명에 달하였다. 세간에 가장 알려진 평민학교로는 평민학교 북경지부였는데 이곳은 동맹회 여회원인 장성화(張星華) 여자 교장이 학교를 맡고 있었다.<sup>29</sup> 학교는 1~4학년으로 나누어지고 4개의 반으로 구성되었는데, 수강과목에는 수신(修身), 수공(手工), 한문(漢文) 등 이외에도 ‘세계어(世界語)’가 개설되어 있었다.

셋째, 민국 초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조직하였다. 중국사회당의 「중국사회당선고(中國社會黨宣告)」에서 살펴보면 “노동은 신성하다”라며 노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 강항호의 의중을 알 수 있다. 강항호는 중국 초기 노동운동의 지지자이자 조직자 중의 하나<sup>30</sup>로 노동자는 ‘보통 노동자(즉, 수공업 노동자)’와 ‘공장 노동자’, ‘행상(行商)’과 ‘전호(佃戶)’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sup>31</sup> 중국사회당 당원이었던 서기문(徐企文)은 상해에서 중화민국공당(中華民國工黨)을 조직하여 중국사회당과 함께 연합을 약속해<sup>32</sup> 노동자 운동과 파업 등을 주도하였으며 익년 5·1 노동절 기념 대회를 개최하여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 기념 대회에서 강항호는 노동절의 유래와 중국사회당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는지에 대해 강연하였다.<sup>33</sup>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국사회당과 중화민국공당

29 王春紅, 1993, 「偉大的女性, 革命的母親-記鄧穎超之母楊振德」, 『中國婦女管理幹部學院學報』 4, 38쪽. 張星華는 鄧穎超의 모친인 楊振德을 교원으로 임명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30 沈俊, 1989, 「江亢虎의社會主義與中國社會黨」, 『華中師範大學學報』 2, 125쪽.

31 江亢虎, 1913, 앞의 책, 44쪽.

32 江亢虎, 「罷工記念大會志」, 『中華民報』, 1913.5.2.



은 두 단체는 다른 조직이지만 서기문이 중국사회당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중화민국공당이 중국사회당과 함께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사회당은 ‘산업 지식을 보급하고 생산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중지를 가지고 ‘중국사회당 실업단(實業團, 이하 ‘실업단’)을 조직하였다. 실업단은 ① 『실업월보(實業月報)』 발행(發行實業月報), ② 개량 종자의 재배 및 제조(改良種植妓製造), ③ 실업학교 및 농공전습소 설치(組織實業學堂及農工傳習所), ④ 국내 물산과 공공 토지를 조사하여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調查國內物產土地及公共之土地以為擴張實業之準備), ⑤ 단원들의 실제 연습을 위한 농공실험장 건설(設立農工試驗場備團員之實地練習)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해나갔다.<sup>34</sup> 「중국사회당실업단선언(中國社會黨實業團宣言)」에 따르면 “오늘날의 상황에서 국가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공공자산으로부터 사회의 공공 이익을 개척해야 하며, 재력이 충족되고 효력이 커지면 그 자본을 옮겨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그것을 공공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얻은 재부를 통해 학교를 설립해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렇게 되면 빈부의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산대동(共產大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며 “이것이 본 당이 실행하는 방법이며, 그러므로 산업을 그 전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라고 밝혔다.<sup>35</sup>

넷째, ‘지세귀공(地稅歸公)’의 실현이다. 일찍이 강향호는 손중산의 ‘평균지권’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손중산의 평균지권 역시 미국의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토지 단일세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강향호는 「개소지세귀공지학설(介紹地稅歸公之學說)」을 발표하면서 토지를 공유재로 설정하여 토지로부터 얻는 불로소득의 지세를 폐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sup>36</sup> 그는 남경 용담산(龍潭山)에 선교사들과 함

33 楊濤, 2007, 「中華民國工黨與民初的工人運動」, 『殷都學刊』 1, 76~77쪽.

34 『時報』, 1912.7.17.

35 文典, 1912, 「中國社會當實業團宣言」, 『社會世界』 5, 28~29쪽.

게 지세귀공을 실현하기 위해 농진회(農振會)를 조직해 운영을 시도하였다. 또한 오늘날 상해 송명구(崇明區)에 속한 송명도(崇明島)로 건너가 ‘지세연구회’를 건립하는데 지세연구회의 「간장(簡章)」에 따르면 헨리 조지의 단일세 이론과 이에 필요한 여러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중지로 삼는데, 중국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세 단계로 나누었다.<sup>37</sup>

- ① 학리(學理)를 강연하고 주의를(주의·사상) 보급한다.
- ② 측량과 토지 조사(청장, 淸丈), 등록 및 예산 수립을 실시한다.
- ③ 현지에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한다.

이상과 같이 중국사회당은 ‘지세귀공’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시도 그 자체 그리고 실제로도 운영의 흔적이 있었던 것은 실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중국사회당은 사회주의의 이념을 전파함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의 개량을 실천적으로 추진하였다. 비록 그 존속 기간은 약 2년 남짓으로 짧았으나, 이 시기 동안 50여 종이 넘는 간행물을 발행하며 활발한 사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사회세계(社會世界)』, 『신세계(新世界)』 등의 간행물에서는 마르크스(Marx)와 엥겔스(Engels)의 이론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 계급 문제, 노동운동, 여성해방 등 당대 중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의제를 폭넓게 다루었다. 이와 같은 출판 활동은 중국 지식계와 민간 사회에 신사상(新思想)의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사회 변혁 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보편교육의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 전습소는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계층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였고

36 江亢虎, 1911, 「介紹地稅歸公之學說(1911年7月)」, 汪佩偉, 2015, 앞의 책, 91쪽.

37 曾業英, 1980, 앞의 글, 49쪽.

국민의 전반적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사회당은 빈민 구제 및 공익사업을 병행하여 사회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단순한 사회주의 이념의 선전에 그치지 않고, 사회 개혁을 구체적 제도와 실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시도로 평가된다.

중국사회당의 사회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해석은 지부마다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주의를 단순히 빈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보다 급진적인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부 간 사상적 편차와 노선상의 혼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당세가 점점 확대되고 당원 수가 증가하면서, 향후 당의 노선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내부 논의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강항호는, 당의 이념적 일관성과 조직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회’를 소집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 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당의 기초를 재확인하며, 나아가 조직적 통합과 전략적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물론 그의 개인적 바람은 중국사회당이 정부 권력에 크게 대항하지 않는 선에서 당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당 내의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시에 지부와 당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중국사회당의 ‘제1차 연합회’는 1912년 1월 상해에서 열렸다. 이는 당해년도 1월에 이르기까지 늘어난 당원과 지부의 숫자에 따른 발빠른 움직임이었다. 불과 수십 명에 불과했던 당원이 1년도 되지 않아 5,000여 명에 이르렀고 지부는 30여 개의 지부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대회에는 각 지부의 30여 명에 해당하는 대표와 상해 본부의 당원 300여 명이 대회에 참여하였다. 강항호는 대회 서두에 대회 개최의 주요 목적을 밝히며 당의 규장을 수정할 것을 제의하였고 회의를 통해 당원의 입당 자격 문제와 간행물 출판 문제, 각부 책임자의 명칭, 당비 납부 등에 대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에 이른다.<sup>38</sup>

38 江亢虎, 1912, 「中國社會黨第一次聯合會後宣言(1912年1月)」, 汪佩偉, 2015, 앞의 책, 119쪽.

먼저, 본부와 지부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 지부는 지역이나 구역의 확정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단지 50명 이상의 당원만 확보되면 지부를 설립할 수 있었다. 지부는 각자의 사무, 권한, 경제 활동에 대해 완전한 평등과 자율성을 보장받았으며, 본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다. 다만,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의결한 규약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본부와 지부의 관계를 수직적이거나 위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본 것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이나 권위주의적 통제를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의 핵심 특성이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해, 당 전체가 하나의 상명하복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부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상호 연대하는 구조를 지향한 것이다. 다음으로, 당원 가입 절차를 살펴보면, 입당을 희망하는 개인은 반드시 지부에 방문하여 이력서와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였다. 이렇게 지부에서 접수된 문서는 기록으로 보관되고, 당의 이념과 종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입당할 때 다른 사람의 추천을 요구하거나, 연좌제와 같은 책임 전가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허용되었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그 외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방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레닌주의 정당 구조, 즉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직 운영 방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며, 강항호가 지향한 사상적 방향과 실천적 원칙이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sup>39</sup>

당내에는 무정부주의를 신봉하는 당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자는 부류들도 있었고 여전히 봉건 색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개량주의자들도 혼재하였다. 본래 강항호는 중국사회당의 성립 목적을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고취시키는 것에 두고, 오늘날의 정당과 같은 정치권력에 참여하는 단체와는 확연하게 구분지었다. 강항호는 『사회당월간(社

39 중국사회당 규장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中國社會黨規章(1911年11月1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1981, 앞의 책, 173쪽.

會黨月刊』을 제1기(第一期)를 통해 「중국사회당중대문제(中國社會黨重大問題)」를 발표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 따르면 당내에는 세 가지 파벌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완전한 정당을 지향하는 파와 순수 사회당파 그리고 현상유지파로 분류하였다. 그러면서 당은 국가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재해야 하고 세계의 사회주의를 주장해야 한다면 그는 당명, 당규, 당원 그리고 당수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제시하였다. 그리고 당명은 중국사회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당내 중국사회당의 무치당(中國社會黨之無治黨, 즉 순수사회당파)과 중국사회당지민주당(中國社會黨之民主黨)(완전한 정당파)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또한 당강은 쉽게 수정이 불가하고 당원은 당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이전보다 당이 당원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 밖에 당원과 당규 등의 여타 다른 사항들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고스란히 2차 연합대회의 중요 의제로 수용되어 반영되었다.

중국사회당의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내부에서는 당의 현실 정치 참여로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본부와 지부에서 끊임없이 정당(政黨)의 성격을 지닌 당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청원도 지속되었다. 물론 강항호 자신은 일찍이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본 당의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당내 의견 개진 요구를 반영하여 1912년 10월 중국사회당은 상해에서 제2차 연합대회를 개최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전(全) 당원의 동의를 통해 규장을 통과시키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익월 강항호는 「중국사회당규장(中國社會黨規章)」을 반포하면서 그의 본래 바람대로 8조 당강과 규장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는 중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당내 파열음을 하나의 목소리로 바꾸려 시도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강항호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었고 여전히 중국사회당이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활동하는 정당으로 운영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여기에 가장 불만을 품었던 것은 당시 의과대학생의 대표로 있었던 당내 무정부주의자인 사감(沙淦)이었다. 그는 당강 8조에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

며 강항호가 추진했던 여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2차 연합대회가 종료된 후 중국사회당에서 분리하여 ‘순수사회당(純粹社會黨)’을 조직하였다. 순수사회당의 입장은 중국사회당보다 더욱 진보적이었는데 본 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산 제도 실시(實行共產), ② 개인 존중(尊重個人), ③ 교육 평등(教育平等)을 통해 계급을 소멸(消滅階級)하고, ① 국무원 근(國無遠近), ② 가무친소(家無親疎), ③ 교무미신(教無迷信)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인위적인 경계를 타파하는 ‘파제계한(破除界限)’을 핵심 강령으로 삼았다. 계급 소멸은 중국사회당과 분명하게 다른 점 중 하나이며, 사감의 바람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산이 뜻하는 바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알 수 없으나 초보적인 마르크스 경제론을 이해한 일부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원 규제에는, ‘7불(不)’을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① 불작관리(不作官吏), ② 불작의원(不作議員), ③ 불입정당(不入政黨), ④ 불충군경(不充軍警), ⑤ 불봉종교(不奉宗教), ⑥ 불칭족성(不稱族姓), ⑦ 불혼인(不婚姻)을 내세웠다.<sup>40</sup> 이와 같은 순수사회당의 급진적인 색채는 중앙정부로부터 시선을 주목받게 되면서 사회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활동이 금지되었다.<sup>41</sup>

순수사회당의 활동은 금지되었지만 중국사회당은 한동안 여전히 존속하였다. 강항호는 1913년 5월 1일 노동절 행사도 보란 듯이 거행하며 군중집회를 계속 진행했고 여러 강연회를 개최하여 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자칫하면 정치적인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보가 마치 외출타기와도 같았지만 중국사회당이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항호와 원세개의 관계 덕분이었다. 강항호는 신해혁명 이전부터 원세개를 “중국의 위인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위인”이라 칭송한 적이 있으며<sup>42</sup> 사회당이 성립된 후 원세개에게 서신을 보내 사

40 「社會黨緣起及約章(1912年11月14日)」,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1981, 위의 책, 186~187쪽.

41 「劉師復爲政府解散社會黨及槍殺陳翼龍發表《政府與社會黨文》(1913年8月27日)」, 汪佩偉, 2015, 앞의 책, 12쪽.

회당은 결코 정치 정당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한다며 그에게 동정을 구하였다.<sup>43</sup> 그는 1913년 3월 중국사회당의 이름으로 국회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먼저 서두에는 국가의 존립을 방해할 목적과 헌법정신을 멸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히며 시작한다.

첫째, 그는 의회제도와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선거 및 정치 제도가 겉으로는 보통선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산, 학력, 성별 등 다양한 자격 제한을 통해 대다수 인민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한 평등과 실질적 대표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제한을 철폐하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대중 정치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국민’이라는 표현이 많은 이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인민’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정치 주체의 확장과 정치 참여의 보편화를 도모하였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수정이 아니라, 정치적 존재로서 누구를 인정하고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둘째, 형벌 제도, 특히 사형과 육형(신체형)의 비인도성과 비문명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 형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의 입장은 명확하다. 범죄 자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인간이며, 범죄 행위는 개인의 타고난 악성이라기보다는 사회 제도와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제거하거나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복수나 보복의 정서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교육과 계도를 통한 교화와 재사회화가 문명사회에 걸맞은 대응이라고 보았다. 특히 사형이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인 만큼, 오판의 가능성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42 「與袁慰廷書(1901年)」,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1981, 앞의 책, 12쪽.

43 강항호는 신해혁명 이전부터 원세개와 인연이 있었는데, 원세개는 일본 유학 후 중국으로 돌아온 강항호를 파격적으로 北洋編譯局의 『北洋官報』總纂(관 5품에 해당)직을 부여하였다. 李希文, 1997, 「方誌敏質問江亢虎」, 『黨史文苑』 1, 31쪽.



셋째, 군비 증강에 대한 경계와 반전을 강조하였다. 본래 군사력은 국가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간 군비 경쟁이 심화되며,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강대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삶을 지속적으로 피폐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군사력의 증강이 아닌, 정치적 타협, 경제 개혁,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군사력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진정한 국가의 힘은 평화와 민중의 안녕에 있으며, 전쟁과 무장으로 유지되는 권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sup>44</sup>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세 가지 주장은, 기존 중국사회당의 담론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당시의 청원서에 나타난 사상은 일정 부분 무정부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표성에 대한 회의, 기득권 구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직접적인 민중 참여의 강조는 전통적인 무정부주의가 제기해온 핵심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형벌 제도에 대한 구조적 비판, 비폭력주의, 인간의 자율성과 교육 가능성에 대한 신뢰 역시 무정부주의적 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서는 국가 자체의 폐지나 해체를 주장하는 급진적 무정부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기능과 제도를 보다 평등하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시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즉, 이는 무정부주의의 급진적 전복보다는 개혁주의적 인도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는 진보적 정치 이상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한편으로 급진적인 혁명, 암살 등과 같은 것을 수단으로 삼지 않은 것은 정부에게 도전하지 않는 ‘보신’주의적 성격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송교인의 암살 사건의 주모자가 원세개라고 세간에서 모두가 말하고 있을 때 강항호만 원세개를 비호한 바가 있다.<sup>45</sup> 또한 손중산이 2차 혁명

44 「中國社會黨請願國會書(1913年3月)」, 汪佩偉, 2015, 앞의 책, 176~181쪽.



당시 토원복벌을 주장할 때 복벌 성공 가능성이 희미하다며 손중산의 이러한 시도는 대단히 무모하다고 비판하였다. 앞서 강항호와 손중산은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강항호는 북양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원세개의 편에서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3년에 접어들기 전까지 중국사회당의 지부 활동은 사실상 커다란 제약 없이 활발하게 북양정부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다. 물론 정부가 이들의 활동을 완전히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정부 권력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원 주장 세력이 남방에서 득세하고 중국사회당 지방 지부들이 폭력과 암살 등과 같은 반정부시위를 도모하고 있다는 첩보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동년 8월 원세개는 정식으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해산문은 중국사회당 지부가 반정부적 활동을 전개한 것을 하나씩 지적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6</sup>

무리들(즉, 중국사회당 당원들)이 정당의 명의를 빌려 관리를 협박하고, 지방에서 횡포를 부리며, 정사를 방해하고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 폐단은 이미 쌓이고 쌓여, 사회 전반의 혼란을 조장하고 음모를 꾸미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국의 인사들 중 이와 같은 악행을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그 해악이 깊음은 이미 만인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

해산문에 따르면 특히 북경과 천진에서의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례를 부각시켰는데, 이 두 도시는 다름 아닌 원세개 본인이 주둔하고 있는 주요 핵심 도시였다. 원세개는 중국사회당 지부가 두 도시에서 외국 정당과 은밀히 내통하고, 국제적 평화와 질서를 교란하려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하

45 「中國社會黨對於宋教仁暗殺案宣言(1913年4月)」, 汪佩偉, 2015, 위의 책, 183~184쪽.

46 「呈袁總統論集散社會黨事(1913年8月)」(附-臨時大總統命令原文), 汪佩偉, 2015, 위의 책, 195쪽.

였다. 이는 중국사회당이 단순한 내정 혼란의 수준을 넘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서사로 읽힌다. 이에 원세개는 중앙 권위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국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각 성의 총독 및 민정장관, 그리고 군 지휘관들에게 모든 사회당 본부 및 지부를 해산하고,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나아가 사회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속 및 처벌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이념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켰다. 이러한 명령은 단순한 정당 해산 조치를 넘어, 당시 신생 정치 운동 세력에 대한 정권의 조직적 탄압이자, 사회 변동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통제 욕구를 드러낸 정치적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항호는 원세개에게 해산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재청하였다. 원세개는 이를 거절하면서 강항호는 본래 10월 1일에 개최하려던 제3차 연합회를 8월 31일로 날짜를 당겨 ‘특별연합대회’라고 개칭한 뒤 행사를 거행하기에 이른다. 본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국회에 중국사회당 해산 명령 취소를 요구하였고 중국사회당의 당명을 다시 ‘사회주의연구회’로 개명하는 것을 의결한다. 또한 강항호를 총대표의 신분에서 취소하며 그를 각국 사회당과의 연락책으로 지명하고 제2국제 제10차대표대회 참석을 위해 파견을 결정하였다.<sup>47</sup> 그러나 강항호는 의결 내용을 돌연히 무시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중국문화 과목의 강사로 근무하게 된다. 이로써 중국사회당은 자연스레 해산되고 한동안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졌다.

47 「中國社會黨特別聯合大會去職宣言(1913年8月)」, 汪佩偉, 2015, 위의 책, 197~198쪽.

## V. 맺음말

중국사회당과 그 창립자 강항호의 활동은, 민국 초기의 격동 속에서 사상적 이상과 정치적 실천이 현실과 조우하며 어떻게 변형되고 소멸해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들은 자유, 평등, 비폭력, 교육과 계몽을 통한 사회 변화 등 여러 진보적 이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의식적 긴장을 품은 채, 전통적 권위와 국가 제도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였다. 특히 지부 설치, 보편 교육, 여성 해방, 노동자 조직 등 당의 다양한 조직 실천은, 이들의 사상이 단지 추상적 주장에 머문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구체적 시도였음을 보여준다.

강항호는 폭력에 의한 전복보다 도덕과 교육을 통한 사회의 점진적 탈권위화를 중시했으며, 권력 자체를 도덕적으로 경계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는 단순한 이상주의라기보다는, 국가 권력이 새로운 지배계급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바쿠닌의 근본적 회의와 정확히 일치한다.<sup>48</sup> 중국사회당은 국가 권력을 통한 사회 개조보다는, 국가 자체의 해체와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합과 도덕적 유대에 기초한 수평적 사회를 꿈꾸었다는 점에서, 동시기 중국 사회주의 담론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사상적 방향은 미하일 바쿠닌의 무정부주의 전통, 즉 국가 권력을 본질적으로 억압적이고 타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혁명의 목적은 국가의 장악이 아닌 폐지에 있다고 보는 관점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사회당은 동시대의 여타 좌파 세력들과 구분되는 반국가적·자율주의적 흐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중국 현대 정치사상사 속에서 드물게 등장한 비권위주의적 사유의 한 축을 형성한다.

48 바쿠닌주의의 핵심은 국가를 폐지하고 권위를 부정하며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데 있다. 중국사회당이 바쿠닌주의에 보인 관심은 기관지 『社會世界』 창간호에 바쿠닌의 생평과 사상이 게재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다음을 참고하라. 張遠航·路軍 主編, 2023, 『馬克思主義在中國早期傳播(第八卷)』, 重慶: 重慶出版社.

그러나 그 이상(理想)이 현실로 구현되는 과정은 여러 제약에 직면하였다. 당 내부의 노선 차이와 지방 지부 간의 이념적 불일치, 중앙정부의 탄압, 그리고 창립자의 이후 이력 등은 중국사회당에 대한 사료 발굴과 평가를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사회주의’라는 명칭 아래 추구된 바는 오늘날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보다 윤리적·이상주의적·비폭력적인 접근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사상적 지향은 동시에 조직적 취약성과도 직결되었다. 중국사회당은 레닌주의 정당처럼 ‘철의 규율’에 기반한 중앙집권적 조직이 아니라, 느슨하고 비권위적인 구조를 유지했고, 이는 내부 결속력의 약화와 외부 탄압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조직 해체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향했던 이상주의적 철학이 실천의 한계로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중국사회당은 중국 현대 정치사상사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비록 그 영향력과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강항호와 그 동료들의 실천은 이후 보다 조직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사회주의 운동, 특히 중국공산당의 창당에 앞서 일종의 지적·정서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중국사회당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단순히 잊힌 사상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근대사 및 정치사상사 전반을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民立報』.  
『社會星』.  
『社會世界』.  
『申報』.  
『人民日報』.  
『中華民國報』.  
『天鐸報』.

### 단행본

江亢虎, 1913, 『洪水集』, 上海: 上海印行.  
孫中山, 1981, 『孫中山全集(第一卷)』(1911), 北京: 中華書局.  
汪佩偉, 2015, 『江亢虎卷』,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張遠航·路軍 主編, 2023, 『馬克思主義在中國早期傳播(第八卷)』, 重慶: 重慶出版社.  
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1981, 『中國無政府主義和中國社會黨』, 南京: 江蘇出版社.

### 논문

沈俊, 1989, 「江亢虎의 사회주의와 중국 사회당」, 『華中師範大學學報』 2.  
楊濤, 2007, 「中華民國工黨與民初의 工人運動」, 『殷都學刊』 1.  
王春紅, 1993, 「偉大的女性, 革命的母親—記鄧穎超之母楊振德」, 『中國婦女管理幹部學院學報』 4.  
李希文, 1997, 「方誌敏質問江亢虎」, 『黨史文苑』 1.  
張勝, 2001, 「“晦鳴學舍”和中國社會黨」, 『益陽師專學報』 5.  
周海樂, 1989, 「江亢虎和中國社會黨」, 『江西社會科學』 1.  
曾業英, 1980, 「民元前後的江亢虎和中國社會黨」, 『歷史研究』 6.  
夏四清, 1993, 「1911-1913年中國社會黨述論」, 『深圳大學學報』 4.

## 민국 초, 강항호와 중국사회당 연구

조대호

이 글은 20세기 초 중국의 정치·사상적 격변기 속에서 등장한 중국사회당(中國社會黨)과 그 창립자 강항호(江亢虎)의 사상 및 활동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국사회당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 공화정의 수립과 군벌 혼전, 서구 사상의 급속한 유입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으로, ‘사회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당(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에서 선구적 의미를 지닌다. 창립자 강항호는 일본 유학 시절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자유·평등·비폭력·계몽을 통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였다.

중국사회당은 삼무주의를 기반으로 강항호가 이해한 사회주의 이념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다. 또한 개인의 자발적 연대에 의한 사회 재구성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와 뚜렷이 구분된다. 이들의 사상은 미하일 바쿠닌의 무정부주의 전통과 맞닿아 있으며, 권력 자체를 비판하고 도덕과 교육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상주의적·비권위주의적 지향은 여성 해방, 보편 교육, 노조 규합, 지세귀공 등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졌으나, 동시에 느슨한 조직 구조와 내부 노선 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운동으

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강항호의 친일 행적과 중국공산당 중심의 공식 역사 서술로 인해 중국 사회당은 학계의 조명을 받지 못했으나, 그 존재는 중국 근대 정치사상사 속 비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사유의 중요한 기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글은 강항호의 사상적 궤적, 중국사회당의 형성과 해체를 통해, 중국 근대 사회주의 운동의 다양성과 사상적 스펙트럼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국 근현대 정치사상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초기 중국 사회주의 운동에서 무정부주의와 삼무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깊은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강항호, 중국사회당, 삼무주의, 중국무정부주의, 중국사회주의

## ABSTRACT

# A Study on Jiang Kanghu(江亢虎) and the Chinese Socialist Party(中國社會黨) in Early Republican China(中華民國)

Cho Daeho

The activities of the Chinese Socialist Party(中國社會黨) and its founder, Jiang Kang-hu(江亢虎), serve as an important example of how ideological ideals and political practices were transformed and eventually faded amid the turmoil of early Republican China. The party embraced progressive ideals such as liberty, equality, non-violence, and social transformation through education and enlightenment, while maintaining a conscious tension between anarchism and socialism. Through initiativ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local branches, the promotion of universal education, women's emancip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workers, the party sought to translate its ideas into practical efforts within social reality.

The Chinese Socialist Party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Three No's Principle(三無主義) and was organized according to the socialist ideals as understood by its founder, Jiang Kang-hu. Distinct fr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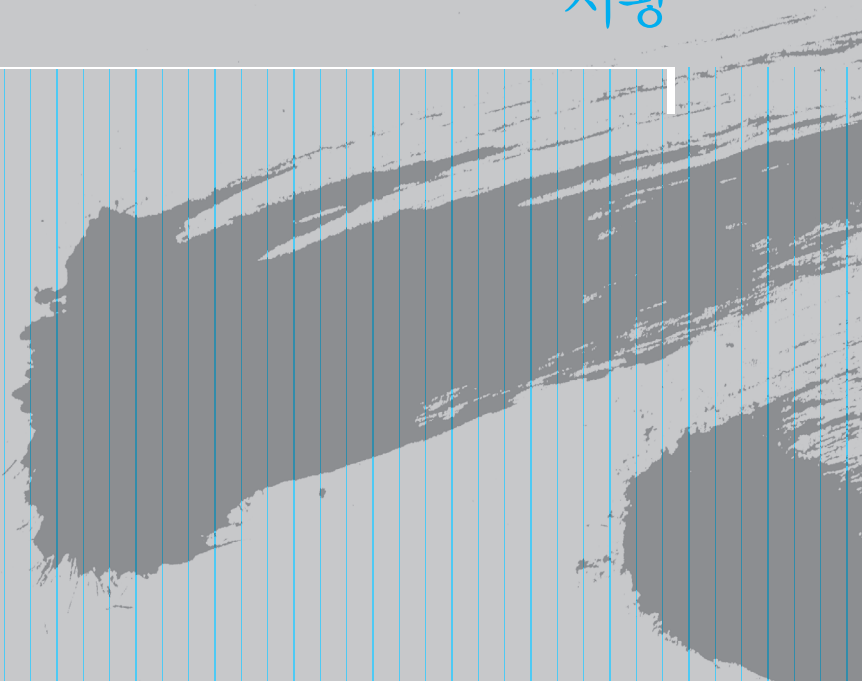


Marxist-Leninist socialism, the party aimed at reconstructing society through voluntary association and mutual cooperation rather than through state power. Its ideology was closely aligned with the anarchist tradition of Mikhail Bakunin, emphasizing moral reform and gradual change through education while maintaining a critical stance toward political authority itself. This idealistic and anti-authoritarian orientation was manifested in concrete practices such as women's emancipation(女性解放), universal education(普遍教育), labor union organization(勞組糾合), and the principle of "returning land tax to the public"(地稅歸公), yet the party's loose structure and internal ideological divisions prevented it from developing into a sustained social movement.

Although the Chinese Socialist Party was largely neglected in academic research due to Jiang Kang-hu's later collaboration with Japan and the dominance of Chinese Communist Party-centered official historiography, its existence can be regarded as an important origin of anti-authoritarian socialist thought in modern Chinese political philosophy. This study reexamines the ideological trajectory of Jiang Kang-hu and the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the Chinese Socialist Party in order to illuminate the diversity and intellectual spectrum of early socialist movements in modern China. By doing so, it seeks to fill a significant gap in the study of modern Chinese political thought and to shed light on the intellectual influence of anarchism and the Three No's Principle in the formative stage of Chinese socialism.

**Keywords:** Jiang Kang-hu; Chinese Socialist Party; Three No's Principle(三無主義); Chinese Anarchism; Chinese Socialism

#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5~16세기, 동전이 약동하는 동중국해

—大田由紀夫, 『錢躍る東シナ海: 貨幣と贅沢の一五〜一  
六世紀』(講談社, 2021)

박찬근 |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 I. 본서의 문제의식과 목표
- II. 본서의 내용
- III. 본서의 의의
- IV. 쟁점과 제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I. 본서의 문제의식과 목표

역사적 인과율에서 우연과 필연의 문제는 역사가들에게 끊임없는 화두를 던져 온 주제이다. 저자는 서두에서 “역사는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가, 아니면 필연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지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천하통일과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 발전이라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역사적 인과율의 본질을 논한다. 이에야스의 천하통일은 그가 73세까지 장수했다는 ‘우연’ 덕분인 듯 보이지만, 동시에 그가 태어난 오와리(尾張), 미카와(三河) 지역이 동서 문화와 통치 시스템의 경계 지역이라는 ‘필연적’ 지리 조건이 작용한 결과였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고도로 발달한 제문명이 형성되고 중국에 서구 문명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된 궤적 역시, 기후와 식생이 유사한 동위도 지대가 횡축으로 길게 뻗어 있어 식물·기술·지식·문화의 이전과 동서 교통 및 교류가 크게 촉진되었다는 환경적 ‘필연’에 기인한 불가역적 성장 과정으로 포착되지만, 그 근원적 전제 조건인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로 긴 형상 자체는 어떠한 예정된 필연성이나 신의 섭리가 개입된 것이 아닌 복잡한 지각 변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성된 온전한 ‘우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례와 동일한 우연과 필연의 교착 구도라고 볼 수 있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위의 사례들을 논하며, 역사를 우연이나 필연 어느 하나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우연적 사건이 누적되어 하나의 거대한 필연적 추세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 또 다른 우연들이 개입하는 상호 교착 작용의 산물로 파악한다. 이러한 다층적 인과 관계를 중시하는 인식은 본서의 핵심 주제인 15~16세기 동아시아 화폐사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16세기 중엽 일본 은(倭銀)의 등장이나 동전 유통의 동요 역시 특정한 구조적 압박에 의한 단선적이고 목적론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지에서 발생한 다종다양한 사건이 복잡하게 얹혀 파생된 역사적 귀결로 규명된다. 이러한 인식

토대 위에서 본서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에 이르는 동아시아 화폐 및 경제사의 역동성을 조명한다.

저자는 기존의 지배적인 인식이었던, 16세기 중엽 일본 은의 등장과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동시대 명나라의 은 수요 급증이라는 단일한 외부 요인에서 구하는 중국 중심의 설명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역사적 실증을 통해 일본 은이 등장한 직후 은 부족이 심각했던 중국 대륙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조선 반도로 먼저 쇄도했으며, 154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국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요컨대, 중국의 은 수요라는 단일한 배경 사건이나 중일 양자 관계의 틀만으로는 일본 은의 등장과 유통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상(事象)을 결코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본서의 핵심적인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서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일본 은의 등장이라는 사건이 양국 간의 교역이라는 협소한 범주를 탈피하여, 최소한 동아시아라는 광역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개별 사건들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파생된 결과물임을 논증한다. 둘째, 15~16세기 동아시아 각지에서 공식적으로 파생된 동전 유통의 동요 현상을 국지적 화폐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일련의 동아시아 역사 동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생한 구조적 현상으로 재조명한다. 셋째,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동아시아 각지의 개별적 사상들이 상호 연관을 맺으며 동아시아 규모의 경제 성장, 왜은의 등장, 해상 세력의 발흥과 충돌 등의 거시적 상황을 창출해내고, 이 상황이 다시 다수의 사건을 파생시키며 변용해나가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기존의 동아시아사에 관한 인식을 쇄신하는 새로운 역사 서사를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서는 사치의 연쇄와 유동성 부족에 따른 통화 변동이라는 거시적 경제 동향의 전개 과정을 치밀하게 교차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시적 경제 동력이 국지적 위기라는 우연적 사건을 창출하고, 그 위기를 타개하려는 각 지역의 연쇄 반응이 다시 새로운 세계 경제 구조를 필연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논증 과정이 본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 II. 본서의 내용

상술한 바와 같이 본서는 일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은과 동전, 그리고 사치품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 광역 네트워크의 역동성을 포착해내고자 했다. 이제부터 본서가 축조해낸 치밀한 논리 구조와 세부적인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내재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서가 담고 있는 풍부한 자료와 유기적인 사건의 인과 관계 흐름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후반부에서 전개될 비판적 논의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책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먼저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저자의 방대한 서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고 본서의 전체 목차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서평자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각 장의 핵심 뼈대를 차례대로 정리해보겠다.

머리말

제1장 - 사치는 연쇄한다: 명·조선·일본의 경제 성장

제2장 - 악전(惡錢)과 악포(惡布): 일어나는 통화 변동

제3장 - 그리고 ‘왜은(倭銀)’이 나타났다

제4장 - 활황과 소란의 동아시아: 실버 러시가 초래한 것

맺음말 - ‘당물(唐物)’과 ‘이화(夷貨)’: 동아시아 역사를 움직이는 ‘물건’

본서는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자는 머리말에서 제기한 문제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사치의 연쇄와 유동성 부족에 따른 통화 변동이라는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교차 서술해나간다. 특히 제1장과 제2장은 15세기 후반 동아시아 경제가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논증 과정을 담고 있다.

제1장 ‘사치는 연쇄한다: 명·조선·일본의 경제 성장’에서는 15세기 후반 명대 중국 대륙에서 촉발된 사치 풍조가 주변국으로 파급되며 동아시아 전역의 유

통 경제를 각성시키는 과정을 묘사했다. 저자는 이 현상의 기폭제로 명나라 영락 19년(1421) 북경 천도와 그에 따른 재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주목한다. 북경 천도로 인해 강남의 부를 북방으로 수송해야 했던 명 조정은, 현물 운송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을 은(銀)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은 재정화를 진전시켰다. 특히 1449년 토목의 변을 기점으로 병사들에게 미곡 대신 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북경 시장에 막대한 구매력을 가진 은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이는 1470년대를 전후해 북경에서 금란(金欄; 금실을 사용하여 문양을 짜 넣은 고급 비단)이나 보석류, 그리고 추위를 견디기 위한 표피(貂皮) 등 이국적이고 화려한 복식을 소비하는 향락적 사치 문화를 낳았다.

저자는 이러한 북경의 소비 열풍이 해금(海禁) 정책의 이완과 맞물려 남해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덕진(景德鎮) 청화백자의 대량 생산을 추동했다고 분석한다. 초기 명나라의 엄격한 해금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도자기가 자취를 감추었던 이른바 ‘명의 공백기(Ming Gap)’가 이 시기에 해소되면서, 중국산 사치품이 다시 동아시아 해역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대륙의 동향은 조공 사행과 밀무역의 매개로 조선 반도에 전파되었다. 성종 시기 한성의 지배층 사이에서는 명대 중국의 물산은 물론, 류큐와 동남아시아 해역을 거쳐 유입되는 이국적 수입 물산 일반을 포괄하는 ‘당물(唐物)’에 대한 선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외 교역이 과열되었다. 특히 북경에서 유행하던 표피 의복이나 화려한 비단, 그리고 남해의 향료 등은 조선의 지배층에게도 필수적인 사치재로 자리 잡았다.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건명선(遣明船)을 통한 공식 무역만으로는 중국산 당사(唐絲)와 청화백자, 서적 등에 대한 수요를 메우기 부족했고, 이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류큐 왕국을 경유하는 루트가 활성화되었다. 류큐를 중심으로 한 중계 무역은 일본의 급격한 사치 소비 확대와 당물 수요를 충당했으며, 이는 교토의 고급 건직물 산업 성장과도 맞물려 있었다. 즉, 15세기 후반의 경제 호황은 다원적 교역망의 활성화가 전제된 동아시아 단위의 사치의 연쇄가 초래한 결과였던 것이다.

제2장 ‘악전(惡錢)과 악포(惡布): 일어나는 통화 변동’에서는 전술한 상품 경



제의 급격한 팽창이 야기한 심각한 통화 부족 사태와 그 방어 기제를 다루었다. 저자는 각국의 유동성 부족이라는 위기가 서로 무관한 사건이 아니며, 각국 광역 시장 형성의 필연적 귀결이었음을 보여준다.

명나라 북경에서는 은 재정화와 시장 팽창의 결과로 일상 거래에서 사용되는 소액 결제용 동전 수요가 폭증했으나, 정부는 화폐 주조를 소홀히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공급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공급 부족 속에서 시장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바로 ‘간전(揀錢)’, 즉 화폐 선별 현상이다. 북경 시장에서는 1460년대부터 종래에 모두 개당 1문(文)으로 통용되던 동전들이 갑자기 그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거래 시 동전의 질을 일일이 감별했고, 명나라 정통 화폐인 홍무통보나 영락통보는 2문을 1문으로, 조악한 사주전(私鑄錢)은 3문당 1문으로 가치를 매기는 식의 혼란이 일어났다. 이는 양질의 화폐가 시장에서 퇴장되고 조악한 화폐만 남는 그레섬의 법칙(Gresham's Law)이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러한 간전 현상을 통화 유통의 혼란이나 파행으로 해석하기보다, 정부가 공급하지 못하는 유동성을 시장이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 악전(惡錢)을 대체 통화로써 전면 수용하며 상거래를 지속하려 했던 실물 경제의 생존 투쟁이자 자구적 행위로 분석한다.

일본 역시 중국 상품의 유입 증대와 상업 팽창으로 극심한 유동성 수요가 발생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도래전(渡來錢)’의 유입량이 화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일본 역시 악전을 시장에서 활용해야만 했다. 저자는 1480년대 오우치(大内) 가문과 호소카와(細川) 가문이 발포한 찬전령(撰錢令)이 국지적 화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조선 및 류큐를 매개로 한 대외 교역 과열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초기 찬전령은 유동성 위기 속에서 수취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영락전(永樂錢)과 선덕전(宣德錢)만 배타적으로 요구하여 거래가 정색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들 우량 화폐의 수취 한도를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는 기타 저품질의 동전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였으며, 이는 당시 심각해진 유동성 부족과 화폐 질서의 교란에 대응하려는 초기적 방어 기제였다.

한편, 기축 통화로 포화(布貨)를 사용하던 조선에서도 장시 네트워크를 통한 소액 상거래의 증가로 인해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 표준 규격의 면포가 모자라자, 규격에 미달하는 단포(短布)와 질이 극도로 낮은 포가 분할 가능한 소액 통화로 반도 전역에서 활용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악화(惡貨)의 범람과 선별 행위가 베트남 북부 대월국에까지 관측되는 현상임을 밝히며, 팽창하는 시장과 화폐 공급의 경직성이 충돌하여 빚어낸 동아시아 전역의 구조적 통화 동요였음을 역설한다. 즉, 15세기 후반의 경제 성장은 각국의 통화 체계에 과부하를 걸었고, 각 지역의 시장 참여자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악화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제3장 ‘그리고 ‘왜은(倭銀)’이 나타났다’에서는 16세기 전반 동아시아 교역망에 가해진 일련의 정치·군사적 충격과 경제적 정체,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일본 은(倭銀)이 역사적 무대에 등장하는 과정을 정밀하게 서술했다. 저자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동아시아를 뒤흔들었던 여러 사건이 교역망을 단절시켰고, 그 결과로 일본 은의 등장이 촉발되었다는 인과적 연결고리를 추적한다.

먼저 조선에서는 1510년 ‘삼포(三浦)의 난(三浦倭亂)’이 발생했다. 조선 정부가 일본 사절의 왕래와 무역을 규제하고 지급하는 회사품을 쌀에서 면포로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삼포 거주 일본인들이 무력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조일 간의 공식 교역은 급감했다. 이어 일본 내부에서는 무로마치 막부의 권위 실종과 다이묘 간의 대립으로 인해 대명 무역의 독점권을 둘러싼 다툼이 격화되었고, 이는 1523년 ‘영파(寧波)의 난(寧波爭貢)’으로 비화되어 명나라와 일본 간의 공식 통교가 장기간 단절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 대륙에서도 상황은 악화되었다. 1511년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점령하고 동아시아 해역에 진출하자, 명나라 조정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 선박에 대한 과세인 추분제(抽分制)를 전면 중단하고 해금 정책으로 회귀했다. 이로 인해 광주를 중심으로 한 환중국해 교역이 침체에 빠졌으며, 이는 류큐 왕국의 중계 무역 붕괴로 직결되었다.

저자는 이처럼 동아시아 전역의 교역망이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사분오열된 상황이 초래한 경제적 파장을 분석한다. 국제 교역의 단절로 인해 일본 내부로 유입되던 중국 동전(도래전)의 물줄기가 말라버리자, 일본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동전 표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 15세기 후반의 활황이 정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반면, 중국 대륙은 이 시기 큰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었다. 국가 재정과 시장 경제가 확대되었음에도 국내 은 생산이 부족하여 통화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명나라는 유동성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악전을 방치하거나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1530년대 이와미 은산(石見銀山) 등에서 생산된 일본 은의 등장이 중국의 은 수요 증가라는 단일 요인만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당시 일본과 명나라, 심지어 조선과의 공식 통교가 모두 단절되거나 위축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일본 은이 등장 직후에 중국 본토가 아닌 조선 반도로 먼저 쇄도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일본 은의 등장이 명나라의 수요에 의한 수동적 촉발에 기인하기보다, 국제 무역에서 고립된 일본이 부족한 중국 상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역설적이고 복합적인 역사적 귀결에 해당한다. 저자가 서문에서부터 거듭 강조하듯, 일본 은의 등장은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 충족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지닌 자구책이라기보다는 명나라의 조공 제한, 류큐 중계무역의 쇠퇴, 그리고 조선 내부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은 결제망 등 여러 우연과 필연이 겹쳐 만들어낸 거대한 추세의 산물이었다. 초기에 조선으로 쇄도하던 일본 은은 그 유입량이 막대해짐에 따라 조선 내 은값의 폭락을 초래했고, 결국 조선 시장에서의 교역 수익성이 상실되었다. 그 결과 1540년대 이후 일본 은의 흐름은 조선을 경유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주요 투입 경로를 중국의 영파 및 복건, 절강 등으로 전환하여 중일 간 직접 밀무역의 형태로 투입되기 시작했다. 일본 은의 막대한 구매력은 침체되어 있던 아시아 해역의 물류를 일변시켰고, 왕직(汪直)을 위시한 밀무역 세력의 활동을 폭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즉, 일본 은은 교역로의 단절이라는 위기 속에서 탄생했으며, 16세기 후반 동아시아 경

제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동력이 되었다.

제4장, ‘활황과 소란의 동아시아: 실버 러시가 초래한 것’에서는 16세기 중 후반 동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은의 격류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이에 대응하여 17세기 각국이 이질적 화폐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1540년대 이후 일본 은과 중국 상품이 교환되는 밀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일본 내 상품 유통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은 화폐 수요 폭증을 동반했다. 그러나 정작 명나라는 해금 완화와 신대륙 은의 유입으로 동전의 유통량이 줄어들어 대외 수출 역시 중단했고,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동전 수입이 줄어들어 양질의 동전이 부족해지는 사태에 직면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복건성 장주(漳州)에서 대량 생산된 조악한 사주전인 이른바 ‘남경전(南京錢)’ 등이 일본으로 쇄도했고, 품질이 나쁜 화폐가 다량 유포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지역별로 주로 유통되는 동전이 달라지는 화폐 유통의 영역 분리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1550년대 왕직 세력의 토벌과 가정대왜구 사태의 진압, 그리고 1567년 명나라의 해금 완화는 화폐 유통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마닐라를 통해 유입된 아메리카 신대륙 은으로 인해 장주 일대의 화폐 유통이 은 중심으로 재편되자, 이 지역은 동전 사용에서 은 사용으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그동안 일본으로 공급되던 중국 동전의 물줄기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정전(精錢)의 극단적인 부족에 직면한 서일본 지역에서는 쌀 결제 체제로의 이행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는 동전 부족에 기인한 일방적 결과가 아니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각 지역은 동전의 효용성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변화의 속도를 보였다. 저자는 기나이(畿内) 및 그 주변 지역을 ‘중앙형’, ‘중앙 인접형’, ‘기나이 주변형’의 세 가지 모델로 정밀하게 분류하여 분석했다. 동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품 유통이 활발했던 ‘중앙 인접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쌀 결제가 먼저 확대된 반면, 조세 납부 방식이나 원격지 결제 수요 등으로 인해 동전 의존도가 높은 ‘중앙형’이나 ‘기나이 주변형’ 지역은 동전 사용 기간이 얼마간 지속되었다. 또한 중앙과 지리적으로 멀어 우량 동전 확보가 만성

적으로 어려웠고 발농사 비중이 높아 쌀이 귀했던 동일본 지역에서는 서일본과 같은 급격한 쌀 결제로의 전환 대신, 조악한 악전(‘비타센’)이나 글자가 없는 무문전(無文錢) 등을 일상 통화로 수용하며 동전 거래를 유지하는 독자적인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1570년대 전후로 중국발 우량 동전의 유입이 완전히 단절되면서 서일본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된 쌀 결제 현상은 점차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일상적 소액 거래에 동전을 고수하던 동일본 지역마저 영주의 조세 수취 기준을 동전에서 쌀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결국 쌀은 지역의 편차를 넘어 일본 열도 전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보편적 가치 척도로 일반화되어갔다. 저자는 민간 경제와 조세 제도를 관통하며 자생적으로 확립된 이러한 쌀 중심의 경제 기반이, 훗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의 토지 생산력과 조세, 무사의 봉급을 쌀의 수확량 기준으로 일원화한 태합검지(太閤檢地)와 에도 막부의 석고제(石高制)가 무리 없이 국가 체제로 안착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한편, 저자는 16세기 말 전 세계적 실버 러시가 금은비가를 평준화하고 동아시아 각국에 장기적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가격 혁명’은 명나라 멸망의 경제적 배경이 되었으며, 17세기에 접어들어 동아시아 각국은 급변하는 국제 은값과 그 충격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어 기제를 구축했다. 에도 막부는 쇄국 정책하에 금·은·동의 ‘삼화제(三貨制)’와 번찰(藩札)을 확립하여 대외적 의존도를 낮춘 자급 경제권을 구축했다. 청나라는 원격지 무역에는 은을, 지역 내 소액 결제에는 동전을 병행하는 ‘이화제(二貨制)’로 경제 번영을 이룩했다. 반면, 조선은 은의 화폐 기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상평통보를 중심으로 한 동전 ‘단화제(單貨制)’를 고수하며 물리적 화폐 부족을 겪어야 했다. 저자는 이러한 화폐 체제의 분화 과정이 각국 통치권자의 정책적 의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적 토대와 화폐 원료 수급 상황의 차이, 그리고 대외 무역의 구조적 위치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였음을 논했다.

맺음말에서 저자는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중국이 전체 세계 경제의

지배적 중심지였다고 주장한 안드레 군더 프랑크나, 중국 대륙의 압도적인 부가 세계 경제를 기동시킨 근본 원동력이라고 파악한 미야지마 히로시의 거대 담론을 소환한다. 저자는 이들의 논의가 서구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결국 세계 경제의 중심을 유럽에서 중국으로 갈아 끼웠을 뿐인 또 다른 중국 중심적 역사상의 재생산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하며, 동아시아 경제사를 일원론적으로 조망하는 시각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본서는 15~16세기 동아시아 경제가 어느 한 중심국이 주변부를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통제하는 위계적 구조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다. 즉, 명나라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은 수요만으로 모든 변화가 파생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중국의 사치품을 갈망했던 주변국들이 은과 향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며 중국의 경제적 욕망을 자극하는 쌍방향적 공진화(co-evolution)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역사의 동력을 단일 중심과 그 교체로 환원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향료의 산지이자 동서 교역의 매개인 동남아시아, 당물의 생산지인 중국 대륙, 막대한 은의 공급자인 일본 및 서구 세력이라는 복수의 '다원적 기점'들이 각자의 지정학적 자원을 바탕으로 상호 작용하고 충돌한 역동적 네트워크 자체가 초기 글로벌 경제를 직조한 핵심 동력임을 역설한다.

### III. 본서의 의의

앞서 II 장에서 본서의 전체적인 윤곽과 전개 과정을 따라가 보았다면, 이제는 이 방대한 서사가 동아시아 경제사학계에 던지는 학술적 의미를 조명할 차례다. 본서는 파편화되어 있던 개별 국가들의 경제적 사상(事象)들을 정교하게 교직하여 전혀 새로운 거시적 풍경을 그려내었다. 여기서는 본서가 기존의 역사상에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고 동아시아 화폐 및 경제사 연구에 어떠한 성취를 남겼는지, 그 의의를 몇 가지로 압축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는 단연, 동아시아 경제사를 일국사적 시각에서 탈피

하여 비교사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이다. 근세 동아시아의 경제사를 논하면서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명·조선·일본은 물론 류큐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공진화’의 양상을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저자는 역사적 사건이 우연과 필연의 복잡한 교착 속에서 전개된다는 다층적 인식론을 무기로 삼아, 기존 학계의 통설이었던 “중국의 은 수요가 일본 은의 등장을 이끌었다”는 일원론적이고 단선적인 인과론을 정면으로 논파한다. 특정 국가의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단일 변수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 상황들을 입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변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데 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서는 사치의 연쇄라는 역사상을 통해 15세기 후반 동아시아 각지에서 발생한 경제적 호황을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데 성공했다. 특정 지역에서 발원한 소비 문화가 인접국으로 파급되는 과정은, 단지 유행의 전파나 일국적 차원의 퇴폐 현상이 아니라 광역적 유통 경제를 각성시키는 구조적 동력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명의 해금 정책으로 인한 ‘명의 공백기(Ming Gap)’라는 침체 국면으로만 규정되던 시기를, 도리어 해상 세력의 성장과 밀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타파해나가는 동태적 시기로 탈바꿈시킨다. 즉, ‘사치’라는 미시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을 16세기의 대규모 세계 경제 변동을 준비하는 거시 경제적 촉매제로 격상시켜 설명했다는 점에서, 경제 동인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크게 확장한 학술적 성과라 할 수 있다.

화폐 경제의 동요 현상, 즉 찬전(撰錢)과 악화(惡貨)의 범람을 동아시아 전역의 구조적 현상으로부터 재해석한 점 역시 본서의 중요한 공헌이다. 본서에서는 일국사적 시각으로 각국의 화폐 유통 문제를 해당 국가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나 정부의 화폐 제도 미비로 인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를 급속한 상품 경제의 팽창과 화폐 공급의 경직성 사이에서 빚어진 유동성 부족의 결과로서, 동아시아의 공통 맥락 위에 올려놓는다. 또한 이질적인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동시대에 겪은 유사한 통화 위기를 일차원적 혼란의 징후가 아니라 팽창하는 실물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자구적 방어 기제이자 생존 투쟁으로 치환하



여 해석한다. 이러한 접근은 당대 동아시아가 이미 고도로 연동된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어가고 있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화폐사 연구에 국가 주도의 제도사적 한계를 넘어 민간 시장의 자생적 역동성에 주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본서는 16세기 말 전 지구적 실버 러시의 충격 이후, 동아시아 각국이 은을 매개로 강력하게 동조화되던 단계를 지나 17세기에 이르러 각기 고착화된 독자적 화폐 체제로 분기하는 과정을 구조화해낸다. 저자는 이러한 화폐 제도의 이질화가 각국 정부의 주관적이고 고립된 정책 의도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적 토대와 대외 무역의 구조적 위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빚어낸 거시적 ‘공진화’의 또 다른 이면임을 밝히고자 했다. 이는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이 비로소 독자적 질서로 진입하는 메커니즘을 경제사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 대목은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세계 체제론이나 안드레 군터 프랑크의 리오리엔트론과 같이 서구 중심적이거나 중국 중심적인 거대 담론이 갖는 환원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복수의 ‘다원적 기점들’이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사 서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본서의 서술 체계가 갖는 논리적 구성 역시 학술서로서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1장의 사치의 연쇄가 2장의 통화 변동을 필연적으로 낳고, 이어지는 3장의 교역로 단절 및 일본 은의 등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4장의 동아시아의 활황과 소란, 그리고 은을 매개로 한 거시적 통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러한 유기적 서술 구조는 개별 사건들이 어떻게 거시적 상황을 형성하고, 다시 그 상황이 국지적 사건을 파생시키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은 독자로 하여금 15~16세기 동아시아의 복잡다단한 경제사가 파편화된 역사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 IV. 쟁점과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서는 15~16세기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공진화’라는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동아시아 경제사 연구에 유의미한 시각을 제공했다. 특히 다원적 기점론에 입각한 거시적 접근은 기존의 일국사적 연구나 세계체제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구조적 쟁점들을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단, 이러한 포괄적인 서사가 지닌 학술적 의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자의 거시적 논리가 남겨둔 한계와 사각지대를 엄밀하게 짚어보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본서의 핵심 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향후 동아시아 근세사 연구에서 더욱 정교하게 다루어야 할 몇 가지 이론적 문제와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쟁점

비판적 독해의 관점에서 본서의 논리 구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근세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변별이 요구된다. 본서는 15~16세기 동아시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관측된 화폐 선별 현상을 팽창하는 상품 경제의 규모와 화폐 공급의 경직성 사이에서 발생한 연동된 유동성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내부적 모순과 화폐 제도의 성격은 극명한 차이를 지닌다. 명나라에서 발생한 간전(揀錢)은 영락제의 북경 천도와 1449년 토목의 변 이후 폭증한 군사적 은 지출, 그리고 보초 제도의 완전한 붕괴라는 국가적 재정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대운하를 통한 물자 수송과 은의 흐름이 거대한 경제 파동을 일으키며 소액 결제용 유동성 수요를 폭발시킨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 나타난 찬전(撰錢)은 은 본위제가 정착되기 이전 단계에서 중국에서 유입된 송전(宋錢)과 명전(明錢), 그리고 일본 열도

내에서 사사로이 주조된 조악한 사주전이 혼재하는 독자적 화폐 경제권을 형성 하던 중 발생했다. 즉, 일본의 사례는 통일된 화폐를 주조하고 유통량을 통제할 강력한 중앙 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악한 불량 화폐가 범람하자 동전의 가치에 대한 민간 시장의 자생적 신뢰마저 무너지면서 벌어진 특수한 현상이었다. 물론 저자가 명나라의 은 재정화와 일본 다이묘들의 파편화된 지배라는 양국의 정치 권력 구조 차이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거시 경제적 유사성과 연동성에 서술의 무게 중심을 둔 나머지 각국 체제의 특수성이 화폐 질서에 미친 질적인 차이가 다소 평면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각국의 경제 체제 발전 단계와 국가 권력의 개입 양상이 지닌 특수성을 탈각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거시적 위기의 공유를 넘어서, 각국의 상이한 국가 역량이 위기의 해결 방식과 이후의 제도적 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밀한 비교 사적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사치의 연쇄라는 수요 측면의 프레임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공급 주체인 해상 민간 세력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역동성이 ‘소비 문화의 파급’이라는 하위 변수로 종속되거나 가려질 우려가 있다. 본서는 15세기 후반 명의 공백기(Ming Gap)를 종식시킨 실질적 동력이 복건 및 절강 연해의 해상 세력이 주도한 민간 밀무역 네트워크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왕직을 비롯한 해상 민간 세력의 무장화와 자율적인 역동성을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에도 전반부를 관통하는 사치의 연쇄라는 수요 측면의 프레임이 너무 강렬한 탓에 이들의 혁신적 활동이 소비 중심적 개념어에 다소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 즉, 공급 주체의 자율적인 조직 논리나 정치적 길항 관계가 단순한 소비 문화의 파급 현상으로 치환될 우려가 있다. 무역이라는 매개체가 각국 사회에 미친 상이한 구조적 파장과 불일치를 소비의 연동성이라는 보편적 현상으로 강조하여 서술하는 방식은, 자칫 해상 민간 세력이 구축한 독자적 교역망의 구조적 변동을 소비자의 기호 변화라는 하위 변수로 종속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 측면의 사치뿐만 아니라, 해상 세력이 체제의 금압을 뚫고 어떻게 독자적인 물류망과 신용 체계를 구축했는지 그 자체의 내재적 동력에 대한 이론적 격상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미시적 화폐 유통의 지역적 편차가 거시적 시장 통합 혹은 분절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서는 일본 내 지역별 동전 의존도를 결정하는 5가지 지표로 도시적 소비 인구, 쌀 소비재 수요, 역내 동전 축적량, 원격지 결제 수요, 유동성 수요의 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토 등 중앙형 지역이 고수한 동전 표시 거래와 상품 유통이 활발한 인접형 지역이 채택한 쌀 표시 거래로의 전환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명나라의 간전 현상이 북경을 진원지로 하여 전국적 파급력을 지니며 일률적인 화폐 시장의 징후를 보인 것으로 서술된 것과 대조적으로, 화폐 가치 평가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했던 일본의 상황은 시장 통합 수준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거나 질적으로 이질적인 시장 성숙 과정을 거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저자는 동전 결제와 쌀 결제의 혼재 양상이 이후 에도 막부의 태합검지와 석고제, 나아가 삼화제(三貨制)가 성립하는 역사적 토대가 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 유통의 지역적 분화 현상이 다이묘 영지 단위의 분권적인 경제권에서 배태된 파편적 질서임에도 훗날 어떻게 막부의 중앙집권적 조세 체제로 원활히 포섭되고 통합될 수 있었는지, 그 정치경제학적 연결 고리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이론적 설명이 추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대로 명대 중국의 압도적인 스케일에 비해 지역별 화폐 사용의 다양성 유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서술된 것은, 본서의 미시적 분석 잣대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다소 불균형하게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 거대한 제국이었던 명나라 내부에서도 강남과 화북, 해안과 내륙 간에 화폐 수급과 신용 체계의 분절적 양상이 존재했을 것을 독자는 예감하게 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함을 갖게 된다. 일본의 사례에 적용된 치밀한 지역 분류 모델을 중국 대륙의 내부 시장에도 적용했다면, 동아시아 각국의 시장 통합 수준과 다원적 전개 과정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넷째, 다원적 기점론이 자칫 역사 서술의 선명한 인과 관계를 흐릿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저자는 도입부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수명

이나 유라시아의 지형적 환경을 언급하며 역사의 우연과 필연을 논하는 방법론적 시각을 제시했다. 비록 이러한 사례들이 역사 철학적 전제를 설명하기 위한 수사적 유추로서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문에서 다양한 기점의 상호 작용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서술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주된 구조적 동력과 부차적 우연 요인 사이의 위계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 변동의 기점을 단일한 중심에서 찾지 않는 저자의 시각은 일원론적 환원주의를 경계하는 장점이 있으나, 질적으로 이질적인 변수들을 다원적 네트워크라는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각 요인이 지닌 비중과 중요도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다. 무수한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변화를 추동한 결정적 동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점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적 귀결을 초래한 결정적 요인과 그에 수반된 부수적 변수 사이의 인과적 위계를 보다 선명하게 설정하는 논리적 장치가 요구된다.

## 2. 제언

앞서 제기한 쟁점들은 혹여 범할지 모를 과도한 일반화나 오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본서를 치열하게 비판적으로 독해해 본 결과물이다. 저자가 이미 견고하게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동아시아 경제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의 이정표를 찾기 위한 탐색 과정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이어서, 본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개척해나갈 수 있는 연구 과제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은의 급류와 교역망 재편 과정을 상세히 복원한 본서의 분석은 17세기 체제 위기와 국가 운명의 분기점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로 발전될 수 있다. 17세기 명의 멸망과 청의 대두, 조선의 병자호란과 전후 체제의 재편, 일본 에도 막부의 성립이라는 상이한 역사적 행로는 통치권자의 주관적 결단 이전에 16세기에 고착된 화폐 원료 수급 상황과 경제적 토대에 의해 강하게 제약되고 규정되었다. 일본의 경우 16세기

후반 동전 유입 단절이 촉발한 화폐 부족 사태를 쌀 결제와 석고제라는 현물 중심의 수취 체제로 전환하여 극복했는데, 이러한 경제적 조율이 막부 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는 충분조건으로 작용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동시에 조선이 16세기 초 선도적으로 도입한 회취법을 통한 막대한 은 생산이 대명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은 유출 구조를 고착화한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역설적으로 기술 혁신과 교역 구조가 조세 제도의 경직성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가 17세기 전 지구적 은가 변동의 충격 앞에서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취약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삼국 간의 구조적 비교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명나라의 해금 정책, 화폐 통일을 의도한 보초 제도의 강제 등 국가의 강력한 통제 의지가 시장 주체들에 의해 무력화되고 도리어 대규모 밀무역과 민간 주도의 은 결제를 부상시킨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 보다 정교한 해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의 통치력이 미약하여 정책이 실패했다는 식의 평면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수 없는 현상이다. 오히려 국가의 억압적인 개입이 존재했기에, 역설적으로 이를 우회하려는 상인과 해상 세력의 생존 본능이 자극되어 거대한 지하 시장과 상업 자본이 형성된 면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나 인간 행위의 거시적 패턴을 연구하는 타 학문과의 융합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의 억압 대 시장의 저항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국가 권력의 통제와 시장 행위자의 반발이 서로 길항하고 자극하며 동아시아의 경제사상을 형성해나가는 복합적인 상호 작용의 과정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매뉴얼 윌러스틴의 체제론이 동아시아를 자본주의적 분업 체계 외곽의 외부 세계로 취급한 것에 대비하여, 이 공진화 모델이 유럽의 핵심-주변부 논리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동아시아만의 독자적인 경제 작동 원리와 가치 교환 체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엄밀한 이론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상품 교환 및 이국적 사치품 소비의 표면적 공시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더하여, 이러한 느슨한 상호 의존적 교역 구조가 각국의 근본적인 생산

양식, 노동력 배치, 그리고 사회 계급 구조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는지, 각 체제 내부에서 파국적 위기 요인을 어떻게 배양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나타난 경제 성장과 교역 확대라는 거시적 현상 속에서, 17세기에 이르러 조선과 명나라는 화폐 경제의 안정적 정착에 실패하고 치명적인 체제 위기를 맞이한 반면, 일본은 대외 충격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근세 자급 경제로 이행한 궤적의 극단적 편차 역시 본서의 분석 틀을 확장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를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에서 본서의 분석 논리 및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본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17세기 체제 분기에 대한 해석 및 담론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구분하여 서술했다. 본서가 제시한 다원적 기점의 상호 작용 및 동아시아적 공진화 모델은 15~16세기라는 특정 시공간의 화폐 경제적 변동을 설명하는 국지적 틀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후 시대로의 거시적 역사 서술로 그 논의의 반경이 확장될 수 있는 이론적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본서는 은과 동전, 그리고 사치품이라는 물질적 매개체가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각지의 욕망을 어떻게 연쇄시키고 상호 규정했는지 치밀하게 복원해낸 노력이다. 저자는 15~16세기 동아시아 해역을 관통한 유동성의 위기와 경제적 활황이 어느 한 중심의 일방적 파급이 아니라, 다원적 기점들의 상호 작용이 빚어낸 거대한 합주곡이었음을 논했다. 미시적인 화폐 유통의 현장과 거시적인 교역망의 변동을 정교하게 교차시킨 본서의 서술은, 중국 중심론이나 일국사 중심의 시각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서가 축조해낸 15~16세기 경제적 토대와 시장 역동성에 대한 정밀한 복원 작업은 향후 동아시아 근세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고 새로운 경제사적 해석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연구(책임)자 : \_\_\_\_\_ (인)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 및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2026년 2월 12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차기 호 일정에 맞춰 수정·재투고해야하며, 차기 호 일정에 맞춰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다만 해당 논문이 당 호 투고논문(특집구성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등 편집상 필요가 있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호 재심사 일정으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2026년 2월 12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편집위원

**구도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은**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중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동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최은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교수

**함예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91호(2026.3)

초판 1쇄 발행 2026년 3월 31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http://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